

농지관리기금 운용실적보고서

제3권 사업운영부문

2000. 4

농 립 부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농지관리기금운용실적보고서

(사업운영평가)

총괄책임자: 농림부 농지과장 나승렬
 작성책임자: 각 지표별 책임자 참조
 연 락 처: 농림부 농지과(☎02-503-7265)
 농업기반공사 기금관리처(☎0343-420-3581)

차 례

1. 주요사업 실적	
가. 영농규모화사업	1
나. 농지조성사업	63
다. 농지정보화사업	125
라. 농지관리위원지원사업	205
마. 한계농지정비사업	279
바. 기타사업	313
1) 조성토지매각관리	313
2) 진흥지역밖자원조사	349
3) 농지이용증진조사	383
2. 사업간 자원배분의 적절성	411
가. 농지관리계정	411
나. 농지조성계정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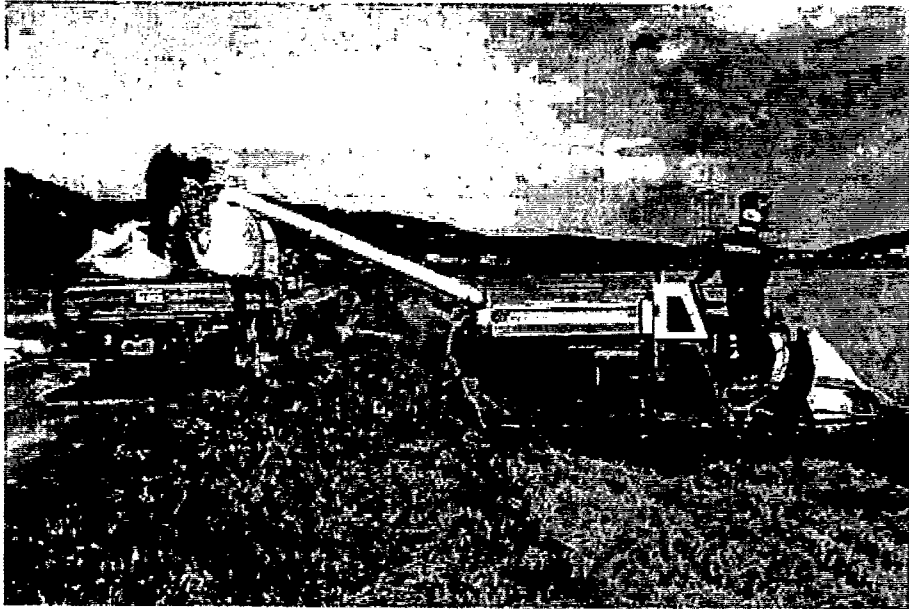
1. 주 요 사 업 실 적

가. 영농규모화사업

여 백

지표명	2.1 사업선정의 타당성	가중치
		15점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전종철(☎02-503-7264)
 농업기반공사 농지관리부 2급 신현국(☎0343-420-3220)



평가내용

1. 기금 설치목적과의 적합성

가. 사업목적과 기금 설치목적의 부합

2. 예산 및 타기금과의 사업중복

나. 예산 또는 타 기금의 유사사업 존재

다. 본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1. 운용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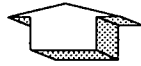
- 세계인구 증가 및 중국의 식량수입국 전환등 세계 곡물시장 불안정
- 뉴라운드 협상시 쌀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있는 쌀전업농의 조기육성 필요성이 증대됨
- 농지관리기금 잠식의 심화로 영농규모화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적정 예산확보의 어려움 예상

2. 지표관리 방향

- 쌀전업농 10만호 육성을 위한 영농규모화사업의 효과적 수행
-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성과 확보
- 대내외 평가등을 통한 사업의 발전적 추진방안 모색
- 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기관의 전담 인력 전문성 강화 및 업무전산화등 종합적인 Infra구축

3. 지표관리 체계도

주곡자금을 위한 경쟁력 있는
쌀전업농 10만호 육성



- 쌀생산비 절감
- 농가소득증대
- 농업경영체의 청·장년화



사업의 효과적 수행

- 사업목표 100% 달성
- 제도개선 노력
- 업무의 전산화



사업성과 확보

- 지원농가 효과분석
- 사후관리철저
- 대내외 평가실시



장기발전방안 모색

- 시·군계획수립
- 농지이용증진
- 경영진단·지도

Ⅱ. '95~'99년도 추진실적 요약

1. 기금 설치목적과의 적합성

- 영농규모화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농지관리기금 설치
 - '90년 7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정
 - 영농규모화사업 추진근거 : 동법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23조 등
- 농지관리기금 설치 및 영농규모화사업 시행 목적
 - 농가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
 - 논면적 및 쌀생산량 감소에 대처 자급기반 마련
 - 전업·은퇴농가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생산적으로 이전

2. 예산 및 타 기금과의 사업 중복

- 쌀전업농 육성을 위한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고유업무
 - 영농규모화사업은 국내에서 벤치마킹할 수 없는 정책사업으로 외국사례를 수집하여 업무 Process 개선등 효율적 추진에 활용
 - 매년 정기적인 자체평가회를 개최, 사업성과분석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사업평가 의뢰 및 세미나 개최 등으로 개선방안 마련
- 영농규모화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 쌀전업농의 규모확대로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42조 농어촌구조개선 투융자사업중 가장 건실한 사업으로 평가
 - 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쌀시장 개방폭 확대 이후에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주곡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므로 2004년까지 경쟁력있는 대규모 쌀생산 전문경영체의 육성이 시급히 필요함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평가내용

1. 기금설치 목적과의 적합성

1. 영농규모화사업 시행목적 및 추진실적

가. 사업목적

농가의 경영규모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 농가당 논면적이 0.8ha로 영세한 우리농업의 현실에서 WTO체제 출범에 따른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규모화된 전업농육성이 필수적임.
- 농가경제잉여금이 적어 자력확대가 어려우므로 장기저리인 영농 규모화자금 지원을 통한 규모확대 추진 필요
 - 농가경제잉여 : ('95) 6,299천원 → ('98) 3,506천원

쌀생산감소에 대응한 자급기반 조속 마련

- 매년 쌀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수입개방시에는 쌀산업의 사양화 예상
 - 쌀재배면적 : ('90) 1,244천ha → ('98) 1,059천ha
 - 쌀 생산량 : ('90) 5,606천톤 → ('98) 5,097천톤
-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04년이후 규모화된 쌀전업농이 쌀 자급에 기여토록 대비
 - 세계곡물수급은 인구증가, 기상이변으로 부족상태가 심화될 전망이며 향후 통일시 쌀수요의 급증 가능성에도 대비 필요

□ 전업·은퇴농가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생산적으로 이전

- 전업·은퇴농가의 농지를 쌀전업농에게 이전, 농업자본의 농외유출 방지
- 쌀전업농을 통한 우량농지보전 및 농지의 휴경화 방지

□ 농지의 집단화 및 젊은 농업인력 확보

- 농지매입 및 임차시 집단화를 유도함으로써 농기계 이용의 효율성 증대로 농업생산비 절감
- 매년 농업인력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로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가 가속되고 있는 농촌현실에서 젊은 농업인력 확보로 농촌사회 유지·발전

나. 사업추진경위

□ '90~'94 : 총 1조5,411억원 투입

- 농어촌발전종합대책('89),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정('90), 농어촌구조개선대책('91), 신농정추진계획('93)
- 연평균 매매, 임대차등 규모확대자금 3,082억원 투입, 경자유전 실현 및 영농규모확대 지속 추진

□ '95~'99 : 총 1조 8,162억원 투입

-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94), 쌀산업발전종합대책('96), 가족농중심의 농업구조정책('98), 농업·농촌투융자 실천계획('99)
- 연평균 3,027억원 투입, WTO쌀시장개방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쌀전업농 10만호육성 추진

다. 사업실적('95~'99)

□ 쌀전업농 지원

(단위 : 명, ha, 억원)

인 원	건 수	면 적	금 액
34,735	65,572	46,235	15,728

○ 지원농가 평균 논경영규모 확대

(지원전) 2.11ha → (지원후) 3.47ha (1.36ha증가)

* 우리나라 전체 호당 평균논면적 : 0.82ha

○ 대외기관의 사업효과 연구결과(한국농촌경제연구원, '98~'99)

<경제적효과>

- 수혜쌀전업농의 규모확대에 따른 쌀생산비 5.1% 절감
- 쌀전업농 호당 평균소득 약 1천만원 증가
- 영농규모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자긍심 및 영농의욕 증대
- 수혜쌀전업농의 81%가 50세 미만으로 청장년화
- 농지확대지원을 기존농지와 500m 이내로 인접 지원한 경우가 82%로 농지 집단화에 따른 농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정책효과>

- 정책자체가 가지는 사업목표달성도, 소득효과,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 사업실적을, 사후관리노력, 사업조기달성을등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

* '95~'99까지 예산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	실적율
계	1,572,829	1,572,822	100%
농지매매	1,066,895	1,066,894	100%
임대차	474,470	474,467	100%
교환분합	31,464	31,461	100%

2. 영농규모화사업과 농지관리기금목적과의 부합여부

가. 영농규모화사업추진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설치

□ 관련근거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관리기금 설치>

○ 농지관리기금의 설치(제27조)

「정부는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와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영농규모화사업 추진근거>

○ 농지매매사업(제13조)

- 비농가,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고자하는 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함으로써 전업농가 육성

○ 농지장기임대차사업(제15조)

-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하는 농가등으로부터 장기임차한 농지와 농업기반공사 소유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장기 임대함으로써 영농규모확대

- 농지의 교환·분합등(제20조)
 -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용자등(제23조)
 - 농림부장관은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분합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용자할 수 있음
-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관련조항
 -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나. 농지관리기금목적과의 부합여부

□ 근본취지 측면의 부합여부 검토

-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라는 농업의 주요생산수단을 지역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장·군수로부터 지역의 쌀농업을 이끌어가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젊고 건실한 우수 농업인력에게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농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지관리기금 설치의 근본취지와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음

□ 법적 측면의 부합여부 검토

- 농지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7조 규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임
-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은 영농규모적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매매사업 및 농지임대차사업과 농지의 집단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교환·분합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법적측면에서도 농지관리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함

<농지관리기금 설치목적과 영농규모화사업 내용의 부합여부 검토>

농지관리기금 설치목적	영농규모적정화사업 내용	기금설치목적과 사업의 부합여부
○ 영농규모적정화	○ 농지매매사업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하고자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법인소유의 농지등을 매입하여 이를 쌀전업농 등에게 매도하여 영농규모적정화 실현 ○ 농지장기임대차 - 전업(轉業)·은퇴하고자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하여 이를 쌀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여 영농규모적정화 실현	○ 부 합 ○ 부 합
○ 농지의 집단화	○ 농지교환·분합 - 농업인간 교환·분합시 교환·분합차액 지원 및 경지정리 집단환지시 청산금 지원으로 농지의 집단화 실현	○ 부 합

⇒ 영농규모화사업 내용은 농지관리기금 설치목적과 일치함

다. 영농규모화사업의 특성과 기금운용의 적합성

- 영농규모화사업은 경쟁력있는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적 생산수단인 농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적 인력육성 목표하에 지속적으로 투융자되어야함
- 영농규모화사업은 장기간 저리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므로 매년 상환되는 원리금을 활용하여 재융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1년단위로 사업이 완결되는 특성을 갖는 일반회계 보다는 별도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1. 예산 또는 타 기금의 유사사업 존재

□ 쌀전업농육성을 위한 영농규모화사업은 유사사업이 없는 국내에서 유일한 정책사업으로 법률에 의거 정부투자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중임.

- '90. 4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정
- '90. 7월 농어촌진흥공사 설립
 - 영농규모화사업 전담부서 설치(본사 1개처, 지사 8개부, 87개지부)
 - 사업전담인력

(단위 : 명)

1995	1996	1997	1998	1999
689	599	585	568	542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노력
 - 영농규모화사업은 국내에서 벤치마킹할 수 없는 정책사업으로서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업무 Process개선에 활용

* 연도별 벤치마킹 도서 목록

연도별	책자명	주요내용	발간부수	배부처
1996	일본의 농지규모화사업	일본의 관련제도 자료 모음집	500부	사업담당자, 농림부, 국회, 학계등
1997	농지규모화사업 총람	일본, 대만, 프랑스, EU의 관련정책 소개	1,500부	"
	일본 농지보유합리화사업의 모든것	사업과 가장 유사한 일본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 소개	500부	사업담당자, 정책담당관
1998	일본·대만의 영농규모화사업관련제도	일본·대만의 영농규모화사업관련제도 소개	200부	사업담당자, 농림부, 국회, 학계등
	프랑스·독일의 영농규모화사업 관련제도	프랑스·독일의 영농규모화사업 관련제도	200부	"

- 영농규모화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자체평가회를 개최, 사업성과분석 및 사업발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연구기관, 학계 등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사업을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외부기관 주요연구내용

연도별	연구명	연구주체	주요연구내용	배부처
1995	농지구묘화사업 평가연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사업의 제효과 분석 사업에 대한 농업인의견 수렴 문제점 및 발전방향 모색등	사업담당자, 농림부, 국회, 학계, 농민 단체등
1997	농지구묘화사업 총람	정책담당관, 학계, 연구소 등	사업의 정책방향 식량안보 및 통일대비 구상 사업에 대한 제언 등	"
1998	영농규모화사 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쌀생산비절감효과등 효과분석 사업여건변화 분석 문제점 및 효율적 추진방안등	"

□ 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후관리 철저를 통한 사업의 정책목표 달성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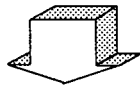
- 농지원부 D/B, 채권관리P/G, 쌀전업농관리P/G등 사업관련 각종 정보의 전산화 구축 및 활용
 - '99년도 영농규모화사업관련 8개 P/G을 통합하여 관리업무의 전산화 구축
- 영농규모화사업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관리철저로 감사원감사등에서 부실없는 정책사업으로 정착
 - '99년말 계약위반율 : 0.6%(총 조사건수 195,050건)

2. 영농규모화사업의 차별화 필요성

- 영농규모화사업은 쌀전업농의 경영규모확대로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42조 농어촌구조개선투융자사업중 가장 건설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 향후 주곡인 쌀의 안정적 공급기반유지를 위해 경쟁력 있는 쌀전업농 10만호 육성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영농규모화사업의 장기비전

◇ 우리 농업의 구조적 문제인 규모의 영세성 탈피를 위해

- 영농규모 확대지원으로 쌀전업농 육성
- 생산성 향상을 통한 주곡의 안정적 자급기반 확보



목표년도(2004년)		쌀전업농육성목표			
논면적	벼재배면적(A)	농가수	경영규모	벼재배면적(B)	소득목표
110만ha	92만ha	10만호	- 6만호 : 호당 5ha - 4만호 : 호당 3ha	42만ha (B/A: 46%)	38백만원

- 2000. 1월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등 3개 기관을 통합,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영농규모화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여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표명	2.2 사업운영의 적정성	가중치
		15점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전종철(☎02-503-7264)
 농업기반공사 농지관리부 2급 신현국(☎0343-420-3220)



평가내용

1. 용자대상 선정의 적정성

- 가. 용자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 결정과정의 투명성
- 나. 선정기준의 합리성
- 다. 선정기준 적용의 합리성

2. 용자조건 산정의 합리성

- 가. 용자조건 산정기준의 합리성
- 나. 용자조건 산정절차의 타당성
- 다. 용자조건 적용의 합리성

3. 부실채권 관리의 적정성

- 가. 부실채권관리체계의 적정성
- 나. 부실채권의 회수노력 및 실적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1. 운용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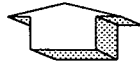
- 세계인구 증가 및 중국의 식량수입국 전환등 세계 곡물시장 불안정
- 뉴라운드 협상시 쌀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있는 쌀전업농의 조기육성 필요성이 증대됨
- 농지관리기금 잠식의 심화로 영농규모화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적정 예산확보의 어려움 예상

2. 지표관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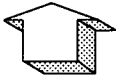
- 21세기 우리 농업발전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능한 농업 경영인력 선정
- 일정수준의 경영규모·영농능력과 경영능력을 갖추어 쌀전업농 수준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를 수혜자로 선정
- 쌀시장 개방에 대응한 집중지원 및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조건으로 사업 적극 참여 유도
- 지원자금의 부실화 방지 및 부실채권 관리기준 강화

3. 지표관리 체계도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건설한
쌀생산 전문경영체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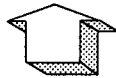


- WTO체제에 대응하는 정예쌀전업농 선정
- 사업별 지원조건 차별화로 정책목표 조기달성
- 지원자금의 부실화 방지등 엄격한 사후관리



**대상자선정의
투명성·합리성 확보**

- 신청 및 선정기준의 객관화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용자지원조건
합리성 확보**

- 각사업별 특성에 맞게 용자조건 산정
- 용자조건을 철저히 준수한 사업시행



**부실채권의
엄격한 관리**

- 부실채권 관리기준 강화
- 부실화 방지노력 강화

II. '95~'99년도 추진실적 요약

1. 용자대상 선정의 적정성

□ 용자대상 선정기준 결정과정

- 영농규모화사업 용자대상자인 쌀전업농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항목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훈령)에 명문화하여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하며 매년 사업시행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기준 재검토

□ 용자대상 선정기준

- 기본방향 : 일정수준의 경영규모, 영농능력과 경영능력을 갖추어 쌀전업농 수준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를 선정
- 용자대상자인 쌀전업농 선정시 7개항목에 대해 700점 만점으로 평가
 - 영농경력(100점), 농과계학력 및 영농교육훈련(100점), 경영규모(100점)
 - 기계화수준(50점), 재배기술 및 영농능력(150점), 사업계획 및 영농규모 확대의욕(200점), 가산점등 기타(50점)

□ 선정기준 적용

- 쌀전업농 신청자에 대해 종합평가후 400점 이상인 우수자를 선정하되 벼재배 경영규모별로 선정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
- 쌀전업농 희망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훈령)의 선정기준에 의거, 심사위원회 심의 및 농업기반공사의 추천후,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선정

2. 용자조건 산정의 합리성

□ 용자지원 배경

- 농업부문의 자본제약에 따라 산업간 형평성을 유도하고 비농가의 농지소유 억제 및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필요
- 농가인구 감소와 인력구조 고령화로 휴경농지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기계화영농이 가능한 젊고 능력있는 쌀생산 전문경영체의 확보가 필수적임
- 젊고 능력있는 농업인력은 상대적으로 자본축적이 부족하여 생산 수단인 농지의 구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부차원의 장기저리 용자 지원 필요

□ 사업별 용자조건 산정기준

- 농지매매사업 용자조건 산정기준
 - 농지매입에 따른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도록 이자율 및 기간 산정
 - 쌀전업농의 자립마인드 형성을 위해 지원상한의 10% 농업인 자부담
 - 자력으로 농지확대가 가능하도록 소득의 10% 수준 농가잉여 확보
 - * 용자조건 : 연이율 4.5%, 20년 균등분할상환
- 농지임대차사업 용자조건 산정기준
 - 쌀전업농의 대형농기계구입등 장기간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임대자의 장기계약에 따른 소유권 제약에 대한 보상으로 임대기간 임차료 선급
 - 임차농가는 개인간 임대차와 같이 매년 약정 임차료를 기금에 상환하고 자력으로 농지확대를 할 수 있도록 농가잉여 제공
 - 용자조건 : 무이자, 계약기간 균등분할상환
- 농지교환분합사업 용자조건 산정기준
 - 농지구입에 따른 수익이 상환금등 비용을 초과하도록 산정
 - 용자조건 : 4.5%, 10년 균등분할상환

□ 용자조건 산정절차

- 연구기관, 수요자, 사업시행자, 연구기관등 다각적 의견수렴 실시
- 기금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기타 대내외 의견 수렴
- 타부처(부서등)와 용자조건 관련 협의
- 농림부 훈령등 관련제도 개선

□ 용자조건 적용

- 매매 및 임대차등 사업별 특성에 맞는 용자조건 설정 및 적용
- 용자조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일관되게 적용
 - '99년도 사업지원시 용자조건 준수율 : 100%
- 자연재해에 따른 용자조건 적용 조정
 - 원리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재해농가에 대하여 실질적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경영여건 악화로 인한 부실채권화 방지
 - 자연재해 농가에 농지매매 및 교환분합사업 원리금상환 연기 및 당해연도 임차료 감면
 - '99년도 총 5,052호의 자연재해농가에 11,083백만원 상환기간 연장등 지원

3. 부실채권 관리의 적정성

□ 영농규모화사업 채권관리 체계

- 납부고지서 발부(약정일 20일전) → 1차·2차·3차 상환독촉장(약정일, 1개월, 2개월 경과시) → 기한이익상실통지(3개월 경과시) → 계약해지 통지(약정일 6개월 경과시) → 농지소유권 이전 → 법적조치(소유권이전 불응시등)

□ 부실채권 정리절차

- 농업기반공사 지사 부실채권심의회에서 정리대상 1차 심의
- 농업기반공사 자체 특별감사 실시
- 농업기반공사 부실채권심의회 심의후 농림부에 손비처리 승인 요청
- 농림부 승인 및 기금정산
- 농림부 승인후 5년간 매년 1회이상 잔여재산조사등 지속 회수관리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평가내용

1. 용자대상선정의 적정성

1. 용자대상 선정기준의 결정과정

- UR협상의 완료와 WTO체제 출범에 대응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1994년 6월 「농어촌발전대책」을 발표하였고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영농규모화사업 용자대상자를 일반전업농에서 쌀전업농으로 한정
- 전업농육성정책 수립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항목으로 쌀전업농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농림부 훈령인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명문화하였고, 매년 사업시행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기준 재검토
- 일정수준의 경영규모, 영농능력과 경영능력을 갖추어 쌀전업농 수준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를 선정
 - '95년도 쌀전업농육성시책 추진에 따라 다양한 항목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 영농능력, 농과계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경영규모, 기계화수준,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 및 영농규모확대의욕등 6개 항목을 종합 평가
 - 선정기준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명문화하여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

* 쌀전업농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영농경력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2) × 20 ※ 7년 이상 : 100
농과계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과계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졸 : 50점 - 전문대졸·최고농업경영자과정 : 45점 - 자영농과(자영농고·농고중 자영농과) : 40점 - 일반농고 졸업 :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과계 이외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졸 : 40점 - 전문대졸 : 35점 - 기타(일반고졸 이하 포함) : 20점 ○ 교육훈련 실적(통산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이상 : 50점 - 2주일이상 : 35점 - 3일이상 : 20점 <p>※ 단위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p> <p>※ 다음 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각 도, 농협의 훈련기관 -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한 농가 농장 및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학교 부설 영농훈련기관 - 쌀 선도농업경영체 농장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정보교육원
경영규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규모/3ha×100 * 비재배경영규모에 한하며 규모 3ha 이상은 100점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기계화수준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바인더포함), 경운기, 동력분무기, 건조기중 - 3종이상 보유 농가 : 50점 - 2종 보유 농가 : 30 " - 1종 보유 농가 : 20 " - 전혀 기계를 갖추지 못한 농가 10점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이용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이상 : 30점 - 120%이상 : 20점 - 100%이상 : 10점 ○ 경영여건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정리 완료지역 : 20점 -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경작지간 거리가 500m 이내로 집단화 : 40점 ○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기록(신청시점 이전 1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20, 충실 35, 매우 충실 50 ○ 계열출하실적(RPC, 대형도정공장, 농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이상 30, 60% 이상 25, 40%이상 20점 <p><가산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농기계 조작·정비능력 관련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영농사·기계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20점 - 농기계전문훈련기관 훈련이수자 및 자동차 운전면허증소지자: 10점 ○ 농림수산정보센터 또는 특성화대학의 경영·정보화교육(3박4일과정 이상)이수 가산점 : 20 ○ 품질인증미 출하가산점 : 20 <p>(*) 가산점은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항목에 합산하되 200점 초과점수는 사업계획 배점 한도까지 사업계획항목에 합산</p>
사업계획 및 영농규모확대의욕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40, 우수 70, 매우우수 100 ○ 영농규모확대의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40, 강함 70, 매우강함 100
가 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작후계자 출신 50
계	700	

2. 선정기준의 합리성

선정기준	기준 설정 근거
영농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을 전문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5년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자를 만점으로 책정
농과계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과계 학력은 대졸, 전문대졸등으로 구분하여 배점하고 영농교육훈련실적을 반영함으로써 경영능력 정도를 평가
경영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경영규모가 3ha이상인 자를 발전가능성 있는 자로 인정하고 경영규모별로 배점
기계화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보유상태를 반영하여 기계화에 의한 영농능력을 평가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이용율이 높은 자, 경지정리등 경영여건이 적합한 자,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자에 대한 평가점수를 높게 부여하고 대형농기계 조작, 정비능력, 정보화교육, 품질인증미 출하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쌀전업농의 재배기술과 경영능력을 평가
사업계획 및 영농규모확대 의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전업농 신청시 사업계획을 작성, 제출토록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와 영농규모확대의욕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쌀전업농으로서의 경영의지를 점수에 반영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작 후계자 출신은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경험있는 농업인력으로 유치

3. 선정기준 적용의 합리성

□ 쌀전업농 신청자에 대해 종합평가후 400점 이상인 우수자를 선정하되 선정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

○ 선정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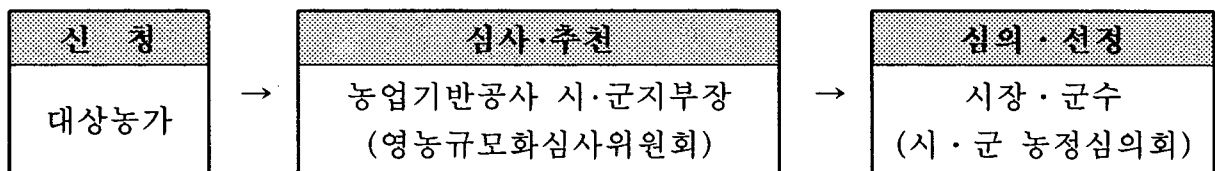
<벼재배 경영규모가 3ha이상인자>

- 경영규모가 큰자
- 경영규모가 같을 경우 평점이 높은자, 연령이 낮은자 순으로 선정

<경영규모가 3ha미만인 경우>

- 당해연도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에 따른 경영을 이양하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 또는 장기임차하는 방법으로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자 중
 - 확대후의 경영규모가 큰 자, 평점이 높은 자, 연령이 낮은 자 순으로 선정
- 벼재배 경영규모가 큰 자
 - 경영규모가 같은 경우 평점이 높은자 연령이 낮은 자 순으로 선정

□ 선정절차



○ 영농규모화 심사위원회 심의내용

- 개인별 규모확대계획이 해당들녘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의 연령분포 등을 감안하여 판단한 농지유동화 전망과 조화가 되는지, 같은 들녘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자간 경합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추천

※ 영농규모화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장), 쌀선도농가 2인, 수도작 후계자 2인, 쌀전업농 2인,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 농협관계자 및 농지관리위원 각 1인씩 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

1. 용자조건 산정기준의 합리성

□ 용자지원 배경

-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업부문의 자본제약에 따라 비농업부문과의 상대적 자본형성의 열위를 극복하고 산업간의 형평성을 유도하며,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농가의 농지소유 억제 및 농업인의 생산수단 확보를 위하여 시작됨
- 농가인구의 감소와 인력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휴경농지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외부경제 효과를 갖고있는 논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모화 및 기계화영농의 실현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며 기계화영농이 가능한 젊고 능력있는 쌀생산 전문경영체의 확보가 필수적임
- 그런데, 젊고 능력있는 농업인력은 오랫동안 영농을 해온 고령농업인 및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비농업인 등에 비해 경영규모가 작고 자본축적이 부족하여 필수적 생산수단인 농지의 구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농지의 매입을 위한 정부차원의 저금리 용자지원이 필요함
- 또한 농지임대차를 통한 영농규모 확대의 경우, 임대계약기간이 5년 이상 장기간이므로 농지소유권 사용의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하여 농지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일시불로 선급하는등 지원이 필요함

□ 사업별 용자조건 산정기준

○ 농지매매사업 용자조건 산정기준

- 산정기준

- 농가의 농지구입에 따른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도록 산정하되 지원금액이 많으므로 가능한 장기 상환토록 기간을 설정
- 사업비의 10%수준은 쌀전문경영체의 자립마인드 형성측면에서 농업인이 자부담하도록 설정
- 자력으로 농지확대가 가능하도록 소득의 10% 수준 농가잉여 확보

- 용자조건 도출

- 쌀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소득(302.5평 기준)

(단위 : 원)

조수입(수익)	경영비(비용)	소득(이익)
993,278	268,059	725,219

* 자료 : '98 농산물생산비 통계, 농림부

- 10a(302.5평) 기준 농가잉여 확보 목표

(단위 : 원)

연간소득(A)	농가잉여(A*10%)	농가잉여 제외
725,219	72,522	652,697

- 농지구입을 통한 연평균 지출(302.5평 기준)

(단위 : 원)

정부지원자금 상환액			농가자부담분 상환액			연평균 지출액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544,825	370,000	174,825	90,753	41,111	49,642	635,578

- * 사업비 단가 : '99년도 매매사업비 10a당 단가 7.4백만원 적용
- 정부지원자금 상환조건 : 연리 4.5%, 20년 균등분할상환
- 총매입금액의 10% 농가자부담분 적용금리 : 농협 농기업자금대출 이자율 9.75~13.25%의 평균치 11.5% 적용

· 10a(302.5평) 기준 농가잉여

(단위 : 원)

연간소득(A)	연평균 지출액(B)	농가잉여(A-B)
725,219	635,578	89,641

- 상환이자율 연리 4.5% 수준으로는 쌀농업소득 10%수준의 농가 잉여 확보가 가능하며, 상환이자율을 5%로 인상할 경우 농가잉여가 쌀농업소득의 10%에 미달하므로 4.5%로 결정

- 용자조건 : 연리 4.5%, 20년 균등분할상환, 10% 자부담

○ 농지임대차사업 용자조건 산정기준

- 산정기준

- 임차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5년이상 장기계약에 따라 임대자에 대한 임대기간 임차료 선급으로 인센티브 제공
- 임차농가는 개인간 임대차와 같이 매년 약정 임차료를 기금에 상환하고 자력으로 농지확대를 할 수 있도록 농가잉여 제공

※ 농지임대차사업은 지원자금을 수혜하는 주체와 지원자금을 상환하는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임대자와 임차자에 대해 별도기준 적용이 필요함

- 용자조건

- 임대자에게 임대기간동안 임차료 선급 지급
- 임차자에게 매년 약정 임차료 기금에 상환
- 용자조건 : 무이자, 계약기간 균등분할상환

※ 상환임차료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

: 임차료는 매년의 쌀작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재해 및 병충해등에 따라 임차료가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개별 농가입장에서 불합리성 존재

○ 농지교환분합사업 용자조건 산정기준

- 산정기준

- 건당 지원금액이 낮으므로('99년도 4.9백만원) 단기간에 상환토록 설정
- 경지정리지구 청산금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규모확대에 따른 쌀농업 수익이 상환원리금등 비용을 상쇄하도록 설정하되, 경지정리에 따른 집단화효과, 수확량 증가를 통한 소득증대효과 등을 감안하여, 비용이 초과하더라도 농지매매사업 이자율과 일관성 유지

- 용자조건 산출

- 쌀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소득(302.5평 기준)

(단위 : 원)

조수입(수익)	경영비(비용)	소득(이익)
993,278	268,059	725,219

* 자료 : '98 농산물생산비 통계, 농림부

- 농지구입을 통한 정부지원자금 상환액(302.5평 기준)

(단위 : 원)

적용이자율	계	원 금	이 자
4.5%	833,611	667,300	166,311
1.5%	725,275	670,000	55,275

* 사업비 단가 : '99 경지정리청산금 지원 농지교환분합사업비

10a당 단가 6.7백만원 적용

정부지원자금 상환조건 : 10년 균등분할상환

· 10a(302.5평) 기준 농가수지

(단위 : 원)

적용이자율	연간소득(A)	정부자금상환(B)	농가잉여(A-B)
4.5	725,219	833,611	△108,392
1.5	725,219	725,275	△ 56

· 상환이자율 연리 1.5%에서 상환기간 10년을 적용하면 수익과 지출이 거의 일치하나, 경지정리를 통한 소득증대를 감안하고 농지매매사업과의 이자율 적용상 일관성 유지를 위해 4.5% 이자율 적용

- 용자조건 : 연리 4.5% 10년 균등분할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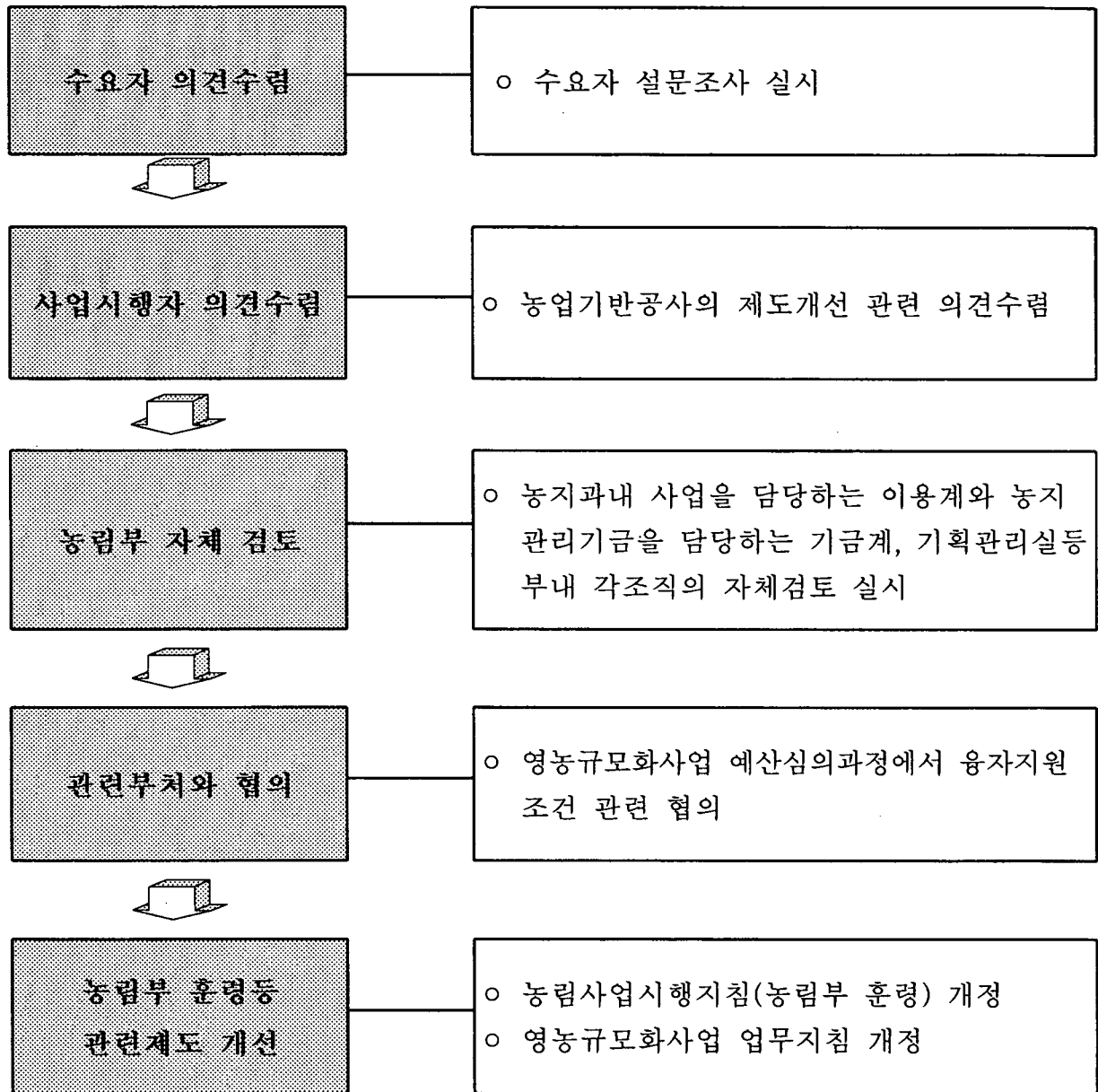
2. 용자조건 산정절차의 타당성

□ 용자조건 산정절차

○ 기본방향

- 다각적 수요자 의견수렴 실시
- 사업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 의견 수렴
- 기금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내 관련부서 자체검토 실시
- 관련부처(기획예산처)와 용자조건 관련 협의
- 농림부 훈령등 관련제도 개선

○ 용자조건 산정절차



3. 용자조건 적용의 합리성

□ 용자조건 적용기준

- 사업별 특성에 맞는 용자조건 설정 및 적용
- 합리적인 용자조건을 설정하고 일관되게 적용

□ 사업 지원시 용자조건 적용현황

○ '99년도 사업지원시 용자조건 적용결과

사 업 별	지원건수 (건)	용자조건 준수여부		용자조건 준수율
		준수건수	미준수건수	
계	12,875	12,875	-	100%
농 지 매 매	3,567	3,567	-	100%
임 대 차	8,120	8,120	-	100%
교 환 분 합	1,188	1,188	-	100%

□ 자연재해에 따른 용자조건 적용조정

○ 조정배경

- 원리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재해농가에 대하여 실질적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경영여건 악화로 인한 부실채권화 방지

○ 적용조정 내용

- 자연재해 농가에 농지매매 및 교환분합사업 원리금상환 연기 및 당해 연도 임차료 감면을 위해 연기 및 감면신청서 접수
- 읍·면등 일선행정기관의 수확량 감수확인서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상환금 연기 및 감면금액 확정
- '99년도 자연재해농가 지원실적

구 분	신청농가 (호)	금 액 (백만원)	비 고
계	5,052	11,083	
○ 원리금상환 연기	3,800	9,172	농지매매 및 교환·분합
○ 임차료 감면	1,252	1,911	농지임대차사업

1. 부실채권관리체계

□ 영농규모화사업 채권회수 절차

업무진행절차	주요내용
(1) 납부고지서 발부 ↓	상환약정일 20일전까지 사업시행자 명의로 발부
(2) 1차 상환독촉장 ↓	○ 상환약정일 경과후 10일 이내에 발송 - 납부기한이 경과한 원리금에 연체이자가 부과됨을 명기
(3) 2차 상환독촉장 ↓	○ 상환약정일 1개월 경과후 10일 이내에 발송 - 역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원리금에 연체이자가 부과됨을 명기
(4) 3차 상환독촉장 ↓	○ 상환약정일 2개월 경과후 10일 이내에 발송 - 연체이자부과 및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명기
(5) 기한이익상실통지 ↓	○ 상환약정일 3개월 경과후 10일 이내에 통지 - 기한이익을 부활할 수 있음을 명기 - 기한이익상실후에는 미상환액 전체에 대하여 연체이자 징수
(6) 계약해지통지 ↓	○ 상환약정일 6개월 경과후 10일 이내에 통지
(7) 농지소유권이전 ↓	○ 당해농지 소유권이전 또는 미상환원리금 잔액회수
(8) 법 적 조 치	○ 소유권이전등 불응시 소송, 담보권실행(임의경매), 민사조정등

2. 부실채권 회수노력 및 실적

□ 부실채권의 정의

- 상환약정기일이 6개월이상 경과하거나 계약조건위반으로 회수하여야 할 불건전채권중 법적조치등을 취하였음에도 회수 불가능한 채권
- 회수비용이 채권액보다 많은 채권

□ 부실채권정리절차

- 농업기반공사 지사 부실채권심의회에서 정리대상 1차 심의
- 농업기반공사 자체 특별감사 및 농지관리기금에 손비처리 적정여부 검토
- 농업기반공사 본사 부실채권심의회 심의후 농림부에 손비처리 승인 요청
- 농림부 승인 및 기금정산
- 농림부 승인후 5년간 매년 1회이상 잔여재산조사등 지속 회수관리

□ 과거 5년의 손비처리채권 및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총지원액(누계)	2,220,283	2,556,822	2,905,218	3,265,065	3,513,106	3,513,106
손비처리액(당년도)	30	118	17	148	48	361
손비채권비율	0.0014%	0.0046%	0.0006%	0.0045%	0.0014%	0.0102%

* 영농규모화사업 채권관리규정 및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여 손비처리 후에도 5년간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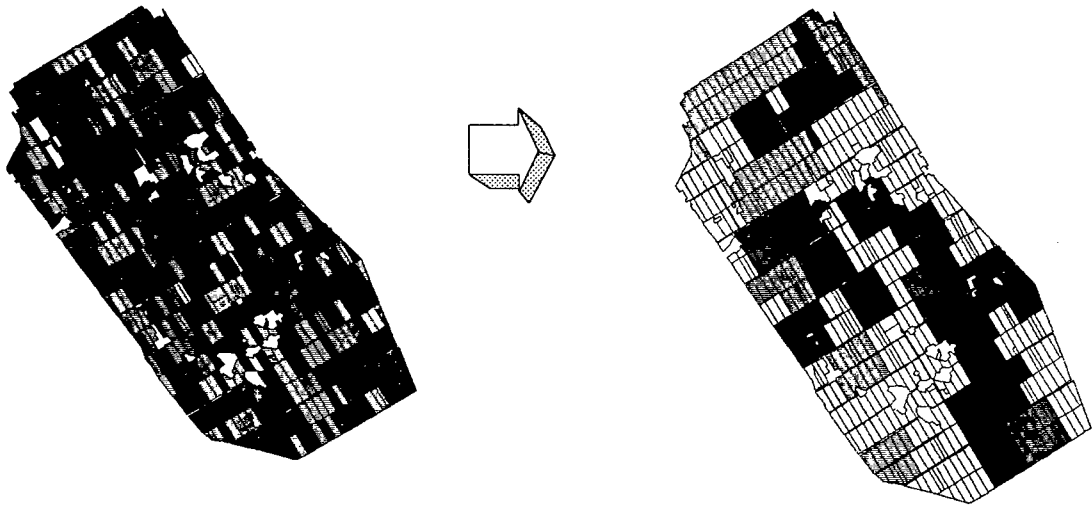
여 백

지표명	2.3 사업목적의 달성도	가중치
		15점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전종철(☎02-503-7264)
 농업기반공사 농지관리부 2급 신현국(☎0343-420-3220)

《 현재의 모습 》

《 쌀전업농 규모화·집단화 비전 》



평가내용

1. 사업목적달성정도

- 가. 목표설정의 합리성
- 나. 목표대비달성도
- 다.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서비스개선 노력

2. 성과평가관리체계의 합리성

- 가. 성과 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 나. 성과평가결과의 보고 및 사후조치체계의 적정성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1. 운용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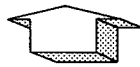
- 세계인구 증가 및 중국의 식량수입국 전환등 세계 곡물시장 불안정
- 뉴라운드 협상시 쌀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있는 쌀전업농의 조기육성 필요성이 증대됨
- 농지관리기금 잠식의 심화로 영농규모화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적정 예산확보의 어려움 예상

2. 지표관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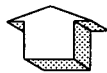
- 사업계획의 100% 달성을 위해 주·월·분기별로 지속적인 사업실적 점검 및 목표관리 철저
- 정부예산에 따른 단순, 획일적 지원에서 탈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강구
- 쌀전업농에 대한 설문조사, 외부기관의 평가결과를 경영에 반영하여 제도개선 노력 강화
- 업무의 전산화, 고객서비스 표준마련등으로 업무의 능률화와 서비스개선
- 정기적인 사업자체평가실시, 우수실적달성부서 및 직원포상으로 사업목표 달성동기 부여

3. 지표관리 체계도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계획목표 100% 달성**



- ◎ 사업의 효율적 추진
- ◎ 업무의 표준화 및 능률화
- ◎ 고객만족 사업추진



**사업계획의
철저한 관리**

- 월별,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분석
- 부진부서에 대한 사업독려 및 만회 대책 강구
- 목표관리시스템 추진등 체계적 지원

**업무의 능률화 및
고객서비스 제고**

- 업무의 전산화
- 업무프로세스의 표준화
- 고객존중 추진계획 수립, 추진

**사업성과평가 및
효과분석**

- 정기적인 자체 사업평가회 개최
- 매년 실적에 대한 효과분석
- 평가 및 보상체계 확립

II. '95~'99년도 추진실적 요약

1. 사업목적 달성 정도

사업목표 설정의 합리성

- 쌀전업농 장기육성계획에 의거, 연간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신청
- 연간 사업목표 확정 및 사업추진결과 Feed-Back

목표대비 달성도

- '95~'99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결과 사업추진목표 100% 달성
- 3ha이상 대규모농가 증대에 기여
- 수혜쌀전업농의 규모확대에 따른 쌀생산비 5.1% 절감

수요자의 만족도와 서비스 개선노력

- 쌀전업농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기관의 사업발전방향 연구용역시행 및 연구결과 사업시행에 반영
- '99년도 1,400농가에 대한 무료 쌀전업농 경영진단·지도 실시
- 고객서비스표준마련, 고객서비스실천계획 수립, 시행

2.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합리성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 '98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들의 성과평가 및 쌀농업 발전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1999년도부터 사업 목표관리시스템 도입

성과평가결과의 보고 및 사후조치체계의 적정성

- 매년 영농규모화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분석 보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검토 및 제도개선사항 토론, 사업발전방향 모색 등 실시
- 사업평가결과에 대해 조직 및 개인별로 포상하고, 문제점 검토 및 개선 의견수렴내용을 제도개선에 반영

1. 목표설정의 합리성

□ 쌀전업농 장기육성계획에 의거, 연간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신청

○ 쌀전업농 장기육성계획

- 2004년까지 쌀전업농 10만호 육성 : 5ha규모 6만호, 3ha규모 4만호

* 자료 :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 정책방향」, '98. 7, 농림부

- '99~2004년까지 연평균 지원계획 : 3,390억

* 자료 : 「농업·농촌투융자실천계획」, '99. 9, 농림부

○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신청

- 사업여건을 감안,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

-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거 기획예산처에 사업예산 신청

□ 연간 사업목표 확정 및 사업추진결과 Feed-Back

○ 연간 사업목표 확정

- 국가경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목표 심의

- 기획예산처 심의결과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통해 연간 사업목표 확정

○ 사업추진결과 Feed-Back 실시

- 확정된 연간 사업목표와 사업추진 결과를 Feed-Back하고 사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연차별 지원계획 수정

- 필요시 전문연구기관 연구용역 및 세미나개최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육성계획 재검토 실시

2. 목표대비 달성도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결과 경영목표 100% 달성

○ 연도별 경영목표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정부예산확보	집행실적	실적율
계	1,572,829	1,572,822	100
1995	280,000	279,999	100
1996	336,540	336,539	100
1997	348,398	348,396	100
1998	359,849	359,847	100
1999	248,042	248,041	100

□ 목표달성도의 정의 및 논거

○ 목표달성도 정의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지 영농규모화사업 지표에 대해 당해연도 사업예산의 100% 집행을 목표달성도로 평가

○ 사업예산기준으로 목표달성도 설정사유

- 쌀전문경영체에 대한 농지확대지원면적은 거래되는 농지가격이 동일하지 않아 계획수립이 어려움
- 면적을 목표로 설정하더라도 실제거래가격으로 매매 또는 임대차 가격이 결정되므로 계획자체가 관리목표로서 비현실적임

□ 정책목적달성도 분석실시

○ 추진 배경

- 정책목적달성도 점검을 위해 사업지원농가 영농규모 변화등 분석
- 정책목적달성도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발전방향 모색

○ 조사·분석개요

- 조사·분석시기 : '99. 11 ~ 12월
- 조사·분석대상
 - 전체지원농가 : '90~99년도에 지원한 68천호
 - 쌀전업농가 : '95~99년도에 지원한 35천호
- 조사·분석방법 : 각종 P/G의 D/B 검색 및 분석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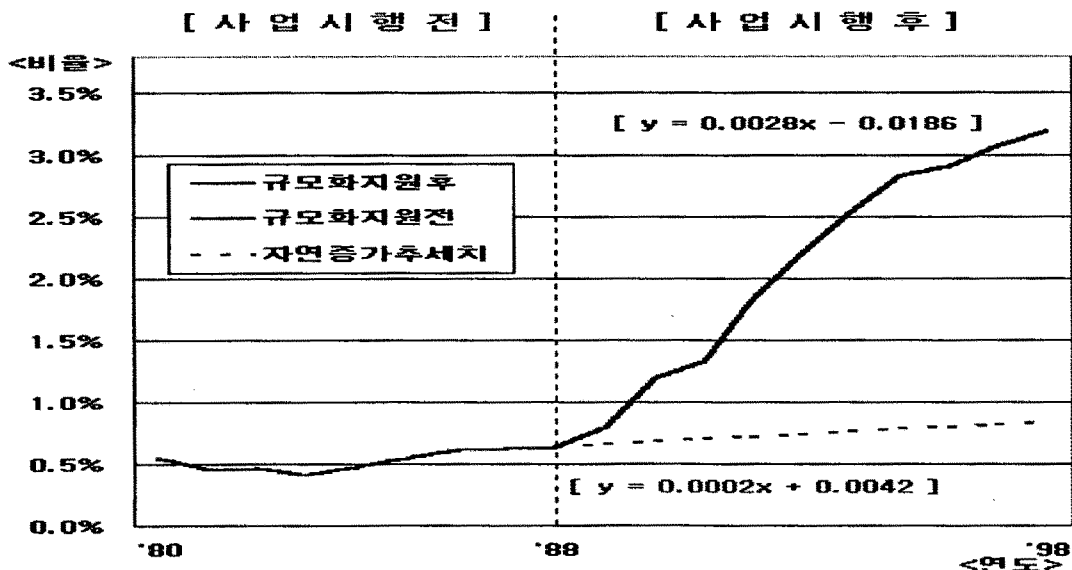
○ 조사·분석결과

- 우리나라 전체농가중 3ha이상 대규모 쌀생산농가 증가에 크게 기여
 - 영농규모화사업 시행('88)을 기점으로 3ha이상 농가 250% 증가

< 쌀생산농가 변화 추이 >

(단위: 천호)

구 분	1980	1988	1998
○ 전체 벼재배농가(A)	1,851	1,568	1,098
○ 3ha이상 농가(B)	10	10	35
- 구성비(B/A)	0.5%	0.6%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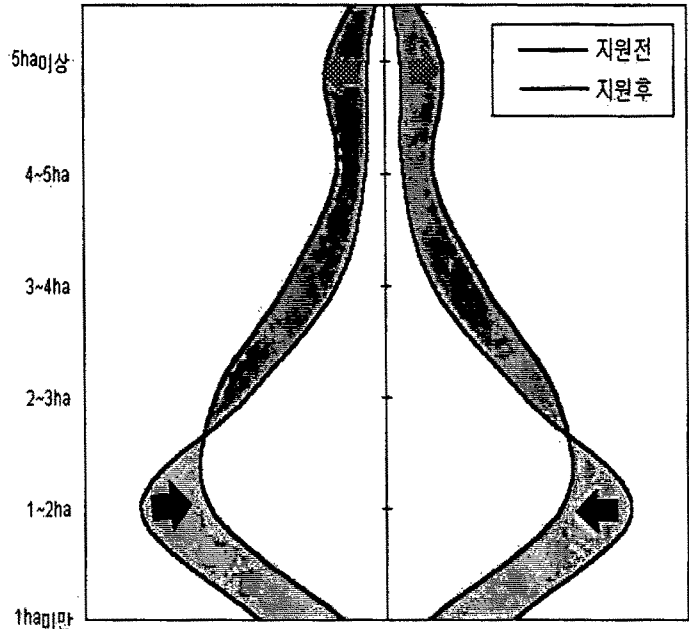


- 경영규모별 농가수 변화(지원농가 35천호)

- 3ha이상 : (지원전) 21% → (지원후) 50% ⇒ 증가 29%
- 2ha미만 : (지원전) 55% → (지원후) 18% ⇒ 감소 △37%
- ※ 3ha이상 : (지원전) 7천호 → (지원후) 17천호

< 사업지원전·후 경영규모별 농가수 변화 >

규모별	지원전 구성비	지원후 구성비	증 감
	%	%	%
계	100.0	100.0	-
5ha이상	4.4	15.3	10.9
4~5ha	5.2	12.1	6.9
3~4ha	11.4	22.8	11.2
2~3ha	24.3	31.9	7.4
2ha미만	54.7	17.9	△36.4



*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영규모별 농가수가 당초 소농위주의 램프형에서 중대형농가 중심의 표주박형으로 변화

- 호당 평균 경영규모 확대 : 쌀전업농 호당 규모가 전국 평균의 4.2배
- '95년이후 지원한 쌀전업농 35천호 4,114평 규모확대

구분	지원전(A)	지원후(B)	증감(B-A)
호당평균 (평단위환산)	2.11ha (6,383평)	3.47ha (10,497평)	1.36ha (4,114평)

- * 지원쌀전업농 호당규모 : 전국평균 2,480평(0.82ha)의 4.2배
- '90년이후 지원한 전체농가 68천호 3,388평 규모확대

구분	지원전(A)	지원후(B)	증감(B-A)
호당평균 (평단위환산)	1.74ha (5,264평)	2.86ha (8,652평)	1.12ha (3,388평)

- 쌀생산비 절감효과 : 8,725억원
 - 규모의 경제 효과 : 2,655억원
 - .규모의 경제에 의한 1ha당 직접생산비 절감액 : 176,630원
 - .지원농지 $75,159\text{ha} \times 176,630\text{원} \times 20\text{년} = 265,507\text{백만원}$
 - 농지집단화 효과 : 879억원
 - .분산된 농지의 집단화에 의한 1ha당 생산비 절감액 : 58,502원
 - .지원농지 $75,159\text{ha} \times 58,502\text{원} \times 20\text{년} = 87,939\text{백만원}$
 - 청장년화등 인력구조개선 효과 : 5,191억
 - .경영주의 고령화(60세이상 48.7%)에 대체하는 청장년화로 30%의 노동능력 증대(20~65세 노동능력:100%, 65세 이상 노동능력:70%)
 - .쌀 10a당 투입노동시간 절감 : 9.3시간 (31시간 → 21.7시간)
 - .지원농지 $75,159\text{ha} \times 93\text{시간} \times 3,714\text{원(시간당노임)} \times 20\text{년} = 519,145\text{백만원}$
 - 부재지주의 농지를 쌀전업농에게 매도함으로써 비농업부문으로 유출되던 1조 1,305억원의 임차료가 농업부문으로 귀속
- 농지매매사업으로 3조 7,612억원의 농가소득 증대
 - 농지매매사업에 의한 20년간 쌀소득 합계 : 6조 8,348억원
 - 지원받은 농지의 20년간 상환원리금 합계 : 3조 736억원

□ 향후 사업추진방향

- 지속적인 대규모 쌀경영농가 확대 추진
- 쌀생산비 절감효과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진단·지도 확대 실시
- WTO 재협상에 대비하여 농업인력구조개선 노력 강화

3. 수혜자의 만족도와 서비스개선 노력

□ 수혜자의 범위 : 쌀전업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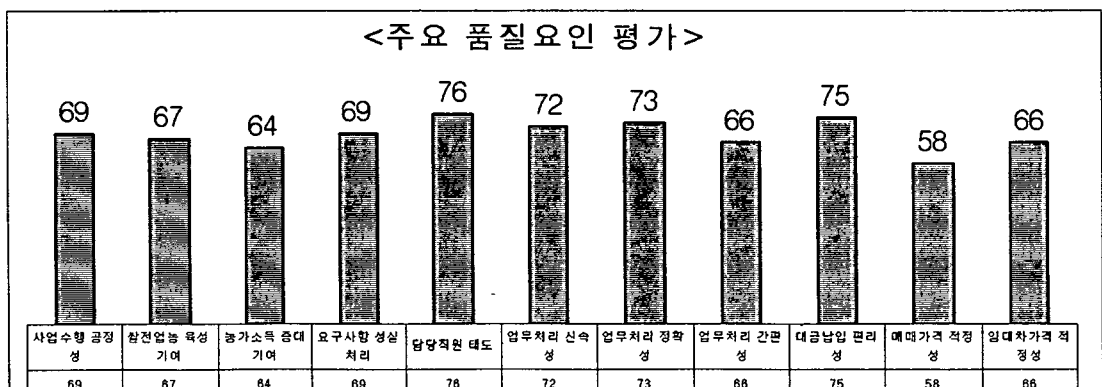
□ 수혜자의 만족도

○ '99년도 수혜자 설문조사 실시

- 조사기간 : '99. 4. 15 ~ 4. 21
- 조사인원 : 고령농업인 및 쌀전업농 1,740명
- 조사항목 : 쌀전업농 부문 14개 항목, 고령농업인 부문 12개 항목
- 주요 분석결과
 - 임대차사업 활성화 위해 비농가농지 연접규정 제한완화 요망(96.3%)
 - 직불사업 지원단가가 낮다고 응답(84.2%)
 - 농지매매사업 지원확대 등
- 조치결과 : 농림사업시행지침, 업무지침등 제도개선
 - 임차대상농지 확대 : 비농가 인접 100m이내 → 1,000m이내
 - 직접직불사업 단가 인상 : 268만원 → 281만원

○ 기획예산처의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공기업 고객서비스 평가결과

- 평가기관 : 한국생산성본부(기획예산처)
- 평가기간 : '99. 1.~10월('99. 12. 28일 평가결과 언론보도)
- 영농규모화사업 조사대상 : 쌀전업농 200농가
- 득 점 : 66점 (공기업 1위의 득점이 67점임)
- 주요 품질요인 평가결과



○ '99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평가결과(이규천 박사의 1명)
 [사업수혜농민, 도시근로자등 각계각층 총 208명 설문분석]

- 정책성공요인(75% 이상) 주요 기여지표
 - 농정방향과의 일치성 82.2%
 - 정책목표의 적합성 83.2%
 - 정책집행기관의 적합성 81.3%
 - 정책선호도 90.4%
 - 소득향상효과 인식 : 77.9%
- 정책성공에 부정적 작용(49.9% 이하) 지표
 - 정책의 일관성 29.8%
 - 집행기관의 재량권 30.8%
 -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소득격차 9.20%
 - 사회정의(빈부격차) 40.9%
- 종합평가 결과
 - 정책 자체가 가지는 사업목표달성도, 소득효과, 정책에 대한 선호도, 생산비 감소효과 등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농진공의 실적률, 지원건수, 조기달성률, 사후관리 노력, 수혜자의 생산비 감소효과 등의 관점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정책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됨
 - 경제적 효과 외에도 농업인의 정착의욕 제고 효과, 농업인력의 청장년화 효과, 농지집단화 효과가 있음
 - 영농규모화사업은 다수의 중소농업인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비수혜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국가전체 사회정의실현에 실패
 → '98년이후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정책에 따라 대농에 대한 지원 상한(10ha) 설정으로 문제점 해소

□ '99년도부터 무료 경영진단·지도 실시로 서비스 개선

- 추진 배경
 - 쌀 전문경영체의 질적측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예산 및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무료로 실시

- 추진 실적
 - 경영장부 보급 및 경영·진단 지도 실시 : 1,400농가
 - 경영진단·지도 P/G 개발 : '99. 3 ~ 12월
- 추진효과 : 무료서비스로 정부예산 및 농업인 자부담금 약 28억원 절감
 - * '99경영진단·지도 실시농가 1,400호 × 2백만원('99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지원금액 기준 : 1인당 2백만원~7백만원)

□ 고객서비스 계획 마련 및 추진

- 추진 경위
 - 영농규모화사업 고객서비스 기준과 내용 마련('99. 3)

-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안내·신청서류작성·구비서류발급요령 상담 등의 업무처리는 고객편의 우선주의로 하겠습니다.
- 쌀전업농의 경영개선과 생산성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경영장부를 개발·보급, 스스로 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사업전반에 대한 최신정보를 신속·정확히 제공하고 문의사항은 즉시 답변하며 건의사항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등 질 높은 서비스를 하여 고객만족극대화에 주력하겠습니다.

- 영농규모화사업 「고객서비스」 실천계획 수립 시행('99. 9)

- 사업신청, 구비서류발급 등의 업무처리를 고객편의 우선주의로 처리
 - 상담직원 및 상담석 운영으로 고객방문시 우선상담 및 민원편의 제공
 - 서류발급 대행 및 노약자 농가에 대한 방문계약 체결 서비스 실시
 -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쌀전업농에게 경영장부를 개발·보급하여 생산성 향상 도모
 - 경영장부의 지속적 개선 및 확대보급과 기장지도
 - 경영진단 P/G 개발·보급
 - 농가의 경영여건에 맞는 농업경영 진단·지도 실시
- 사업에 대한 최신정보 제공
 - 영농규모화사업관련 홈페이지 개설운영, 상담전담요원 지정·운영

1.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 '98년도 사업평가 결과

- KREI 전문연구진의 사업평가결과
 - 연구진 : KREI 김정부박사, 김홍상박사 등
 - 연구명 : 「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 연구기간 : '97. 9. 30 ~ '98. 7. 30
 - 주요 연구결과

문 제 점

- 경영규모 목표치 8ha를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문제
-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 경영체별 차별화 전략 부재



발 전 방 향

- 경영단위 위주의 사업지원 및 경영능력별 지원의 차별화
-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 쌀관련 전문 경영컨설팅 기능 강화 등

- 「쌀산업발전세미나」 개최를 통한 각계 의견 수렴
 - 일 시 : '98. 9. 9 (9:30~16:30)
 - 장 소 : 농어촌진흥공사 교육원
 - 주최 및 후원 : 농수축산신문, 농업기반공사 등
 - 참석자 : 전국 쌀전업농(300), 농민단체, 정책담당자등 450여명

- 주제발표
 - 제1주제 : 쌀농업경영체 육성의 방향과 과제(KREI 김정호박사)
 - 제2주제 : 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농기공 권용칠처장)
- 토 론
 - 좌 장 : 장원석(단국대 농과대학장)
 - 토론자 : 쌀전업농, 대학교수(서울대), LG경제연구원, 농민단체
(전업농중앙연합회, 한농연, 전농), 농림부 등 10명
- 주요 토론내용 및 건의사항

영농규모화사업 평가

- 부실이 적고 사업성과가 크게 나타난 성공적 사업
- 사업의 성공요인은 철저한 사전계획과 효율적인 사후관리에 있음
- 획일적 지원으로 지역적 불균형 및 불합리한 사례 발생



향후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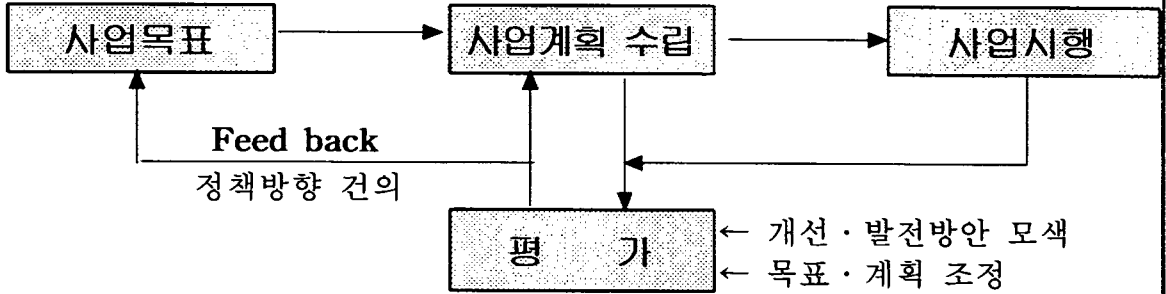
- 평야지, 중간지 및 산간지등 지역별 쌀생산경영체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추진전략 마련
-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사전계획과 사후관리 강화

□ 외부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노력

- 「목표관리시스템」 도입 위한 Task Force Team 운영
 - 기 간 : '98. 9. 21 ~ '98. 12. 31
 - 인 원 : 농업기반공사 영농규모화사업처장등 14명
 - 주요 작업내용
 - 시·군 영농규모화사업 추진계획(안) 마련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수립요령 마련, 전산 P/G 개발
 - 농업경영진단·지도지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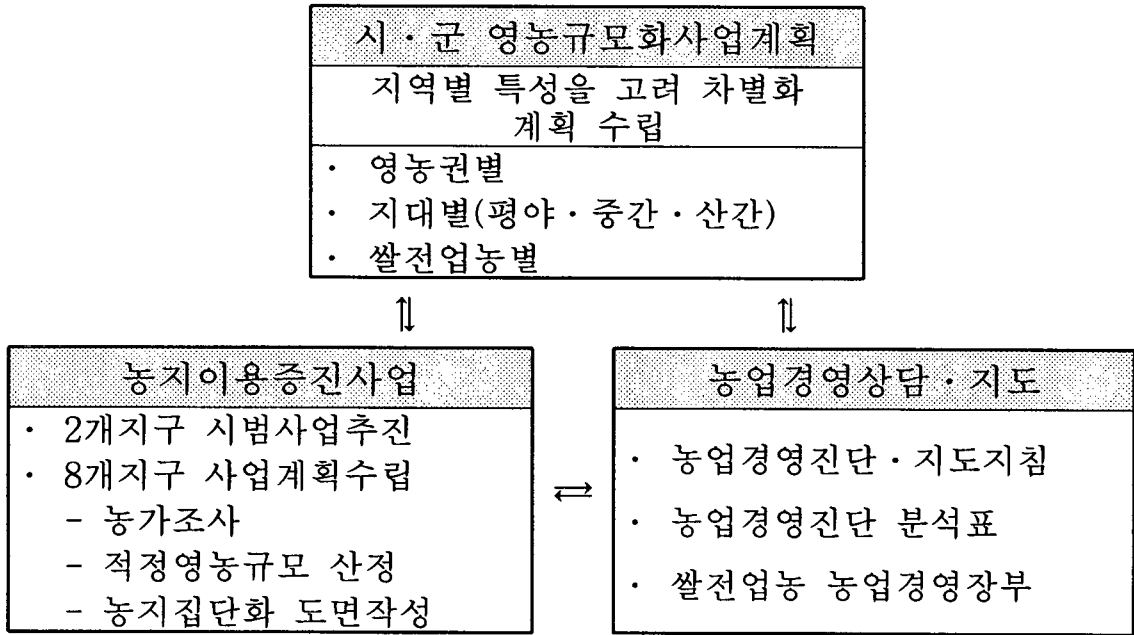
< 목표관리시스템 추진체계 >

□ 추진흐름도



□ 주요내용

- 시·군별 영농규모화사업계획 수립 및 목표관리
- 지역농업구조와 지역농민의 의향을 감안하여 영농권(지구)별 농지이용 증진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
- 개별 경영체(쌀전업농)별 경영진단·지도 도입
 - 쌀전업농 개인별 규모확대 목표 및 목표소득 등을 설정 관리
- 체계도



계획적·체계적사업시행

무료상담지도

⇒ 농업정책중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정착

- 「시·군 영농규모화사업계획 수립요령(안)」의 타당성 검토 위한 지부 현지조사 실시
 - 목 적 : 「시·군 영농규모화사업계획 수립요령(안)」의 현지적용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현실적 타당성 검토
 - 기 간 : '98. 11. 30~12. 6(7일간)
 - 대 상 : 전북(김제, 부안, 정읍)
 - 인 원 : 농업기반공사 농지사업부장등 8명
 - 조사내용
 - 계획(안)에 대한 사업비 집행부서 및 전문가 의견수렴
 - 계획(안)의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가능성, 활용도 검토
 - 영농권(지구) 설정의 타당성 검토 등
- 시스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요령 및 지침서 발간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수립요령」 발간
 - 발간일자 및 부수 : '98. 12, 200부
 - 주요내용 : 조사요령, 계획수립절차 및 방법 등
 - 「농업경영진단·지도지침」 발간
 - 발간일자 및 부수 : '98. 12, 400부
 - 주요내용 : 경영진단·지도의 내용과 방법, 경영장부기장지도 등
 - 「시·군영농규모화사업 계획수립 요령」 발간
 - 발간일자 및 부수 : '99. 2. 25, 150부
 - 주요내용 : 시·군 사업계획수립 개요, 사업계획서 표준(안) 및 수립요령등
- 시·군 영농규모화사업계획수립 추진
 - 목 적
 - 지대별 특성을 고려한 영농권별, 개별경영체별로 영농규모화 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 계획에 따라 목표관리를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성과의 극대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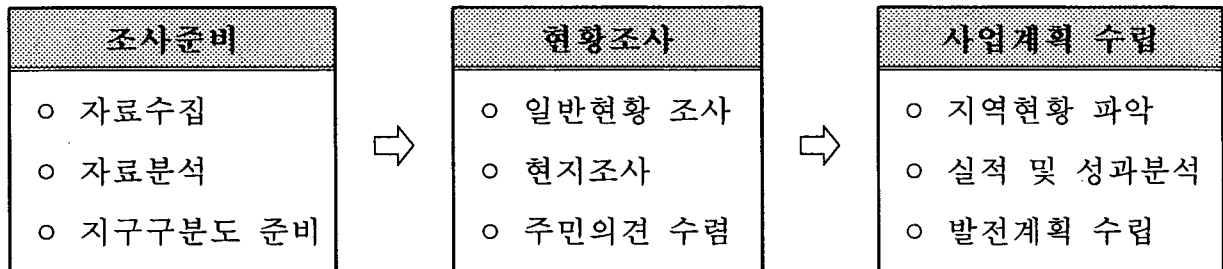
- 기본방향

- 쌀산업 전체목표 아래 지역 및 개별농가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 수립
- 계획적인 지원으로 사업효율성 및 정책추진효과 극대화
- 사업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체계적 개선·보완

- 계획수립 주요내용

- 지구현황 : 위치, 지대구분, 지역농업 특성 등
- 농업현황 : 농가 및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진흥지역 현황 등
- 사업대상 농지현황 : 영농규모화 및 직접지불사업 대상면적 등
- 쌀전업농 육성현황 : 선정현황, 연령별·경영규모별 분포현황등
- 추진실적 및 성과 : 전체 및 쌀전업농 지원실적, 규모변화 등
- 발전목표 및 추진계획 : 기본목표, 규모별 육성인원, 경영확대 목표, 지원계획, 사업비총투자계획 등

- 계획수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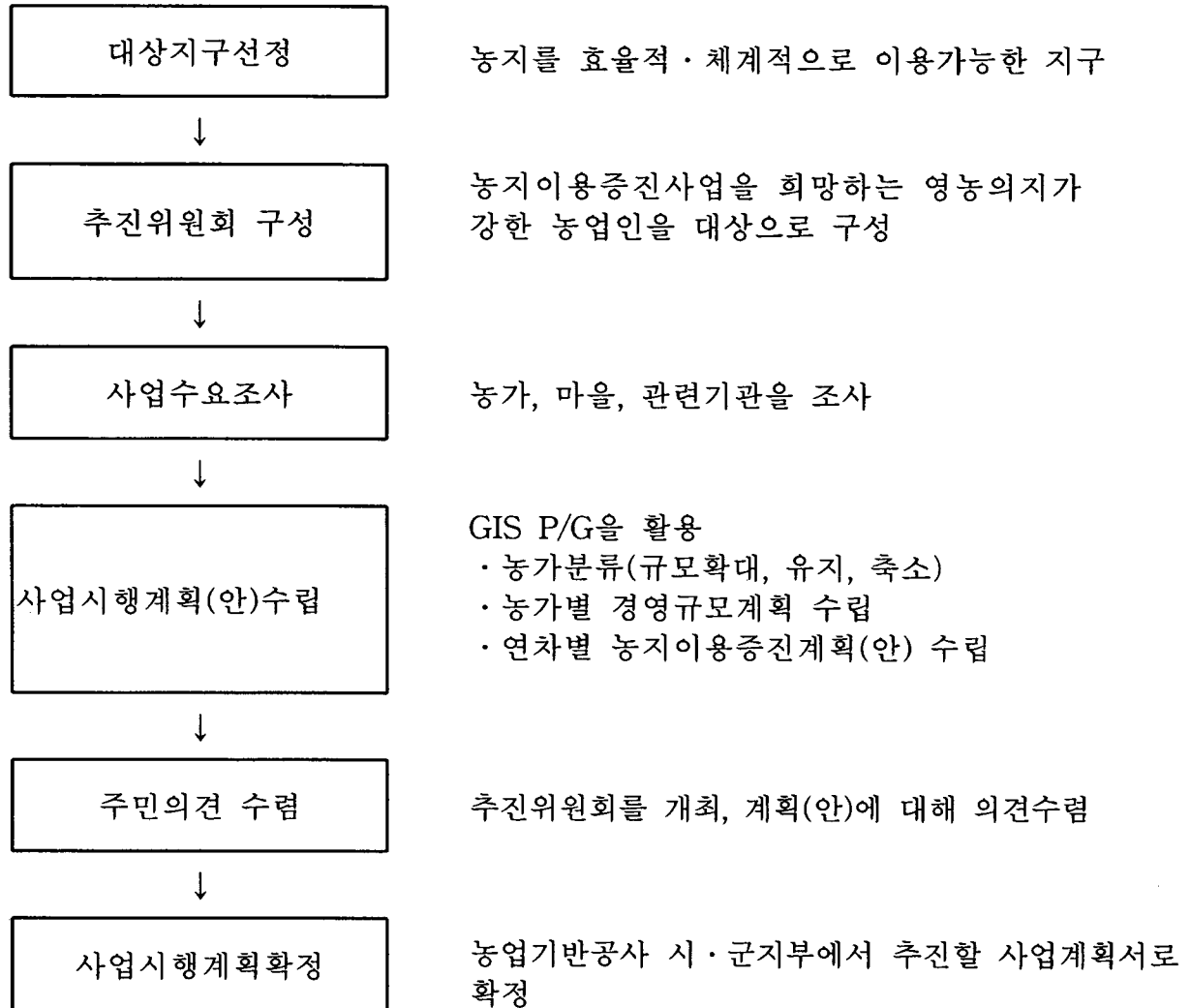


- 단계별 추진계획

단 계 별	단 계 구 분	주 요 내 용
제1단계 (’99년도)	기반구축단계	- 계획수립요령 마련 - 전산시스템 개발
제2단계 (2000년도)	계획수립단계	- 시·군 영농규모화사업계획수립 - 전산시스템 활용
3단계 (2001-2004)	시행·활용단계	-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거 목표관리 - 관련사업과 연계추진 - 매년평가후 문제점 보완 계획수립

- '99년도 추진실적
 - '99. 4. 20 : P/G과 연계한 자료조사 양식확정시달
 - '99. 6 ~ 8 : 기초자료 조사완료
 - '99. 8 ~ 12 : 시·군계획수립 P/G 개발
- 농지이용증진사업
 - 목 적
 - 영농권 단위의 영농규모화 사업지구에 대한 농지의 매매, 교환·분합, 임대차 및 수·위탁경영을 통한 농지의 규모화 및 집단화로 농지의 체계적·효율적 이용 도모
 - 성장가능성 있는 전문가족농을 육성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제고 도모
 - 추진방향
 - 우량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영농권단위로 종합적인 농지이용증진 계획 수립
 - 쌀전업농 육성 및 영농규모 확대와 집단화 촉진
 - 영농규모화사업 지구를 대상으로한 농지이용증진체계 구축
 - 영농규모화사업을 중심으로 관련사업을 연계한 권역별 종합정비방식으로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소유권이전촉진사업 → 농지매매
 - 임대권설정촉진사업 → 농지장기임대차
 - 위탁경영촉진사업 → 농작업수위탁
 - 농업경영체육성사업 → 쌀전업농, 농업법인
 - 사업시행 방법
 - 쌀전업농 선정 : 지원대상농가로 분류된 농가중 쌀전업농으로 선정되지 않은 농가는 우선적으로 쌀전업농으로 선정하여 지원
 - 영농규모화사업 추진 : 농지이용증진 시행계획에 의해 영농규모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되 연차별 추진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고, 지구내 농지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 쌀전업농에게만 지원

- 추진체계



- '99 추진실적

- '98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수립 2개지구 시범사업 시행
: 강원 철원 상사, 전북 김제 상월, 631백만원
- '99 농지이용증진사업 8지구(지사별 1지구) 시행계획수립

○ 농업경영진단·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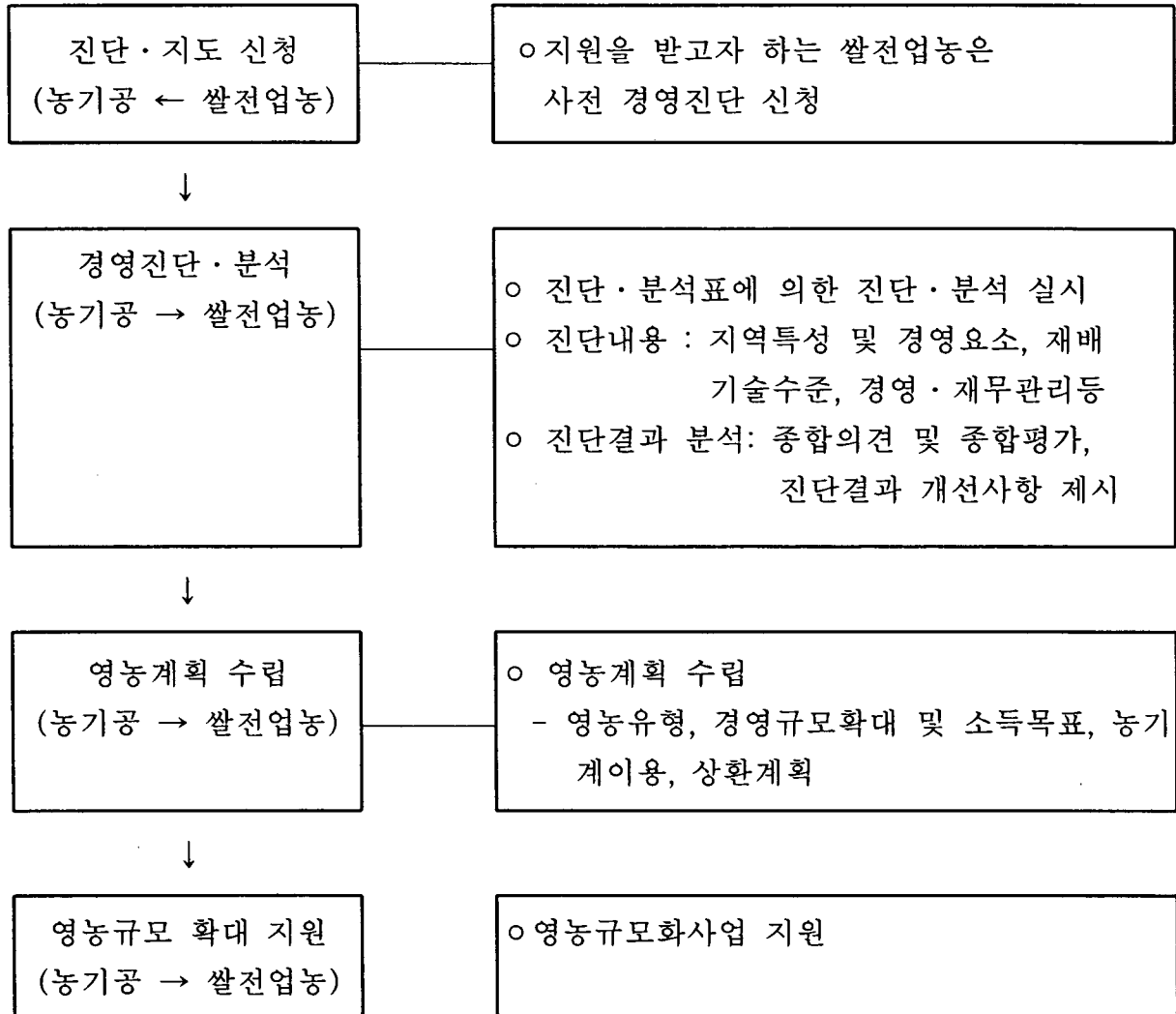
- 목 적

- 시·군 영농규모화사업 계획 및 농지 이용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개별 쌀전업농에 대한 농업경영진단·지도로 쌀전업농 육성 및 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

- 기본방향

- 규모확대의 자금지원에 따른 쌀전업농의 경영관리 능력 향상 도모
- 적정영농규모 실현을 통한 쌀전업농 경영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
- 정책추진의 효과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추진체계



- 단계별 추진계획

단계별	단계구분	내용
제1단계 (1999년)	시범시행단계	· 대상농가 : 지부당 20호 · 경영진단 희망농가
제2단계 (2000년)	보급·확대 단계	· 대상농가 : 3,000호 · 규모화사업 지원 쌀전업농
제3단계 (2001년)	정착·발전 단계	· 대상농가 : 5,000호 · 경영진단에 의한 자금 지원

2. 성과평가결과의 보고 및 사후조치체계의 적정성

□ 영농규모화사업 평가회 개최

○ 목 적

- 당해연도 사업추진결과에 대하여 사업추진성과등을 평가하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등을 도출하여 제도개선하므로써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여 정책목적달성의 원활 도모
- 사업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사업추진노고에 대한 치하 및 직원사기 진작

○ 연도별 개최내역

연 도 별	개최일자	참 석 대 상	참석인원
'94사업평가	'95.4.6	정책담당관, 사업시행자 등	150명
'95사업평가	'96.2.28~29	"	150명
'96사업평가	'97.2.28	"	200명
'97사업평가	'98.2.26	"	150명
'98사업평가	'99.3.26	"	210명

○ 평가회 주요 내용

- 사업평가결과에 대한 포상수여
-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분석 보고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검토 및 제도개선사항 토론
- 사업발전방향 모색

- 평가항목 : 금액실적률, 지원건수, 조기달성률, 1인당평균사업량, 사업여건, 사후관리등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 포상

연 도 별	평 가 결 과 포 상 내 역
'94사업 평 가	○ 표창 : 단체표창(26개), 개인표창(21개) ○ 포상금 : 12,500천원
'95사업 평 가	○ 표창 : 단체표창(22개), 개인표창(21개) ○ 포상금 : 14,600천원
'96사업 평 가	○ 표창 : 단체표창(22개), 개인표창(26개) ○ 포상금 : 15,940천원
'97사업 평 가	○ 표창 : 단체표창(22개), 개인표창(26개) ○ 포상금 : 18,700천원
'98사업 평 가	○ 표창 : 단체표창(19개), 개인표창(33개) ○ 포상금 : 13,350천원

- 평가시 토론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사업발전방향 등에 대하여는 검토후 제도개선 및 장기사업추진방향을 자료로 활용
- 주요 제도개선사항
 - 매입대상농지 확대
 - : (당초) 진흥지역안의 답만 매입
 - (개선) 농업진흥지역안의 답 및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답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우량농지에 대해 지원
 - 임차대상농지 확대
 - : (당초) 비농가능지 임차시 쌀전업농 답과 100m이내의 인접된 논
 - (개선) 1km이내의 논까지 지원하도록 하여 임차대상 농지를 확대하여 쌀전업농의 경영규모확대를 촉진토록 함
 - 전매동의요건 추가신설
 - : 쌀전업농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동의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신설함으로써 행정인력절감 및 부실채권 사전예방이 가능토록 함

여 백

나. 농 지 조 성 사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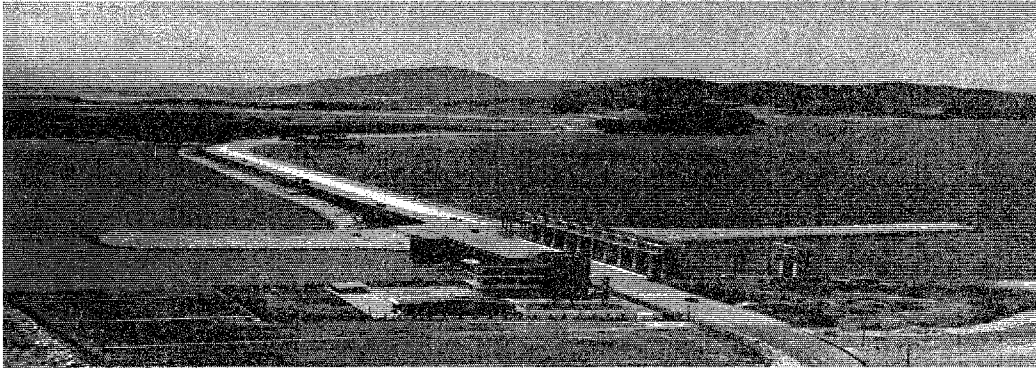
서남해안간척

대단위농업개발

유희지개발

여 백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촌용수과 사무관 이봉훈(☎02-504-9406)
농업기반공사 대단위사업부 2급 이원희(☎0343-420-3239)



< 영산강 3-2지구 금호방조제 >

- ※ 수자원 133백만톤 확보, 간척농지 4,540ha 조성기반구축, 농경지 7,840ha(간척 4,540, 배후농지 3,300)
영농급수, 교통·관광편익 발생 등



< 간척사업 시행으로 잘 정비된 농경지 >

평가내용

1. 기금설치 목적과의 적합성

가. 사업목적과 기금설치 목적의 부합

2. 예산 및 타 기금과의 사업중복

가. 예산 또는 타 기금의 유사사업 존재

나. 본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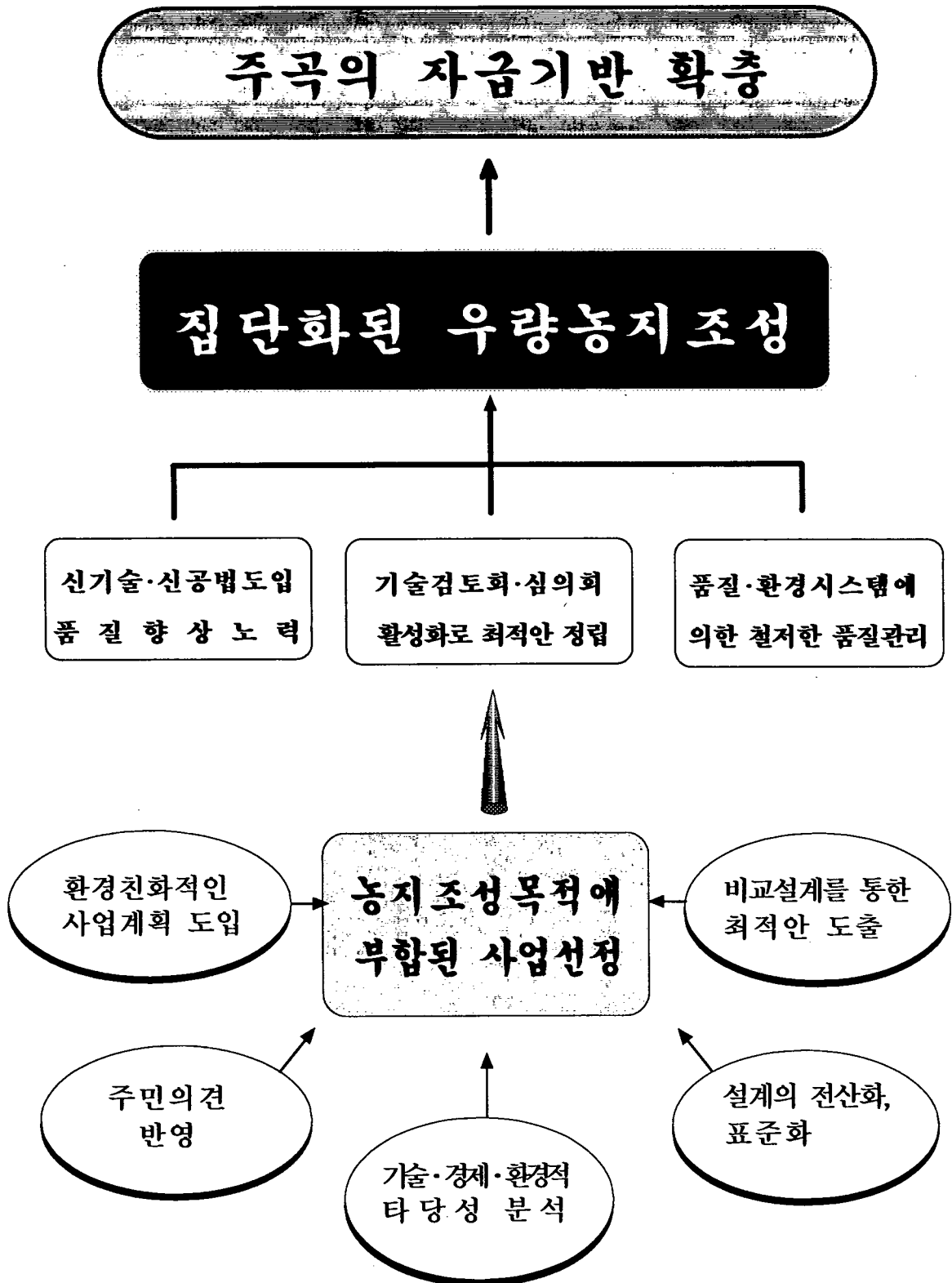
1. 운용 여건

- 도시·산업화로 농지잠식 지속 증가
 -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한 대체농지 조성
 - 종합개발방식의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 추진
- 농지조성사업을 통한 대체농지조성 필요
- 환경친화적 개발 분위기 확산
 - 설계시공시 친환경기법 도입, 환경주도사업 추진으로 환경육구 충족
- 간척사업유보 방침에 따른 신규사업 축소
 - 간척부문을 제외한 대안개발방식 도입

2. 지표관리 방향

- 농지조성목적에 부합된 사업선정
 - 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간척농지개발사업, 유희지개발 사업선정
 - 줄어드는 농지에 대해 간척 등 농지조성사업을 통한 대체농지조성
- 사업효과 조기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추진
 - 합리적 예산관리로 사업효과 조기달성 노력
 - 시행중인 사업 조기완공 위주로 추진
- 환경친화적 사업의 적극 추진
 - 환경친화적 설계·시공 지속추진
 - 인공습지·생태공원조성 등 관광·휴식공간 조성

3. 지표관리 체계도



Ⅱ. '95~'99년도 추진실적 요약

1. 기금설치 목적과의 적합성

□ 농지조성사업의 목적

- 서남해안의 간석지와 유휴지를 우량농지로 개발하여 줄어드는 농지를 대체조성하므로 농업생산구조 개선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 농경지감소면적 : 1966년 2,293천ha ⇒ 1999년 1,898천ha (△395천ha)
 - 농경지전용면적 : 1980년대 연평균 14천ha ⇒ 1990년대 연평균 32.5천ha
- 담수호를 조성하여 농·공·생활용수등 수자원을 확보·공급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 기틀 마련
 - 수자원 확보량 : 16지구 31억톤
 - '99까지 : 11지구 17억톤, · 2000이후 : 5지구 14억톤
 -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70mm로 세계평균 970mm의 1.3배이나, 국민 1인당 강수량은 세계 인구 1인당 강수량의 1/11에 불과
 -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크고,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이 매우적고 하류평야와 상류지역간의 용수 수급 불균형
-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토지수요·용도변경에 대처하여 균형적인 국가발전의 기틀 마련
 - 방조제 설치 등으로 해안선 단축, 육운개선
 - 담수호중심의 관광자원 조성
 - 수자원 및 토지공급으로 공단 등 산업입지여건 조성
- 임해공업단지의 조성, 해안정비 및 항만개발 등을 통한 국가 기간 시설 확충

□ 농지관리기금 설치 목적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31조)
 -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산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

2. 예산 및 타 기금과의 사업 중복

□ 대체농지조성을 위한 기금의 투자

- 총 17개지구 (대단위3, 서남해안12, 유희지2)
 - 14개지구 농지관리기금사업 추진중
 - 대단위 3개지구 국고와 농지관리기금 추진

□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 농지관리기금은 농림부의 타 부처의 사업기금과는 달리 공공기금에 속하며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대체농지조성을 하는 SOC·공공사업으로 유사사업이 없는 정책사업이며 법률에 따라 시·군 및 정부투자기관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중임

□ 농지조성사업의 시행

- 산업용지 및 도시용지로 전용될 농지를 대체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한 기본식량의 확보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설치목적중의 하나로 추진
 - '46년 이후 총 75,738ha를 추진하였으며, 그중 정부시행은 35,549ha(46.9%), 민간시행면적이 40,189ha(53.1%)임.

□ 농지조성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수심이 얇고, 해안선 굴곡이 심하며, 조석간만의 차가 클 뿐 아니라, 갯벌바닥의 기울기도 완만하여 간석지가 잘 발달되어 있음
- 인구증가·경제발전·사회발전 등으로 토지수요량 증가 및 식량자급 기반구축의 필요성 대두
- 21C 세계식량위기에 대비한 식량안보에 대한 필요성 증대
- 대체농지조성을 위한 간척농지개발사업의 필요성 증대
- 간척농지는 식량자급률 유지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Ⅲ. 평가내용별 추진내용

평가내용	1. 기금설치 목적과의 적합성
-------------	-------------------------

1. 농지조성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서남해안에 산재해 있는 간석지와 유휴지를 우량농경지로 개발하여 농업생산구조개선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확보
- 담수호 조성으로 농·공·생활용수 등 수자원을 확보·공급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 기틀 마련
-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으로 토지의 균형수급 및 토지 수요에 적극 대처
- 임해공업단지 조성, 해안정비 및 항만개발 등을 통한 국가기간시설의 확충

□ 사업의 필요성

- 경제·사회발전으로 농경지감소에 따른 대체농지조성
 - 농경지감소면적: 1966년 2,293천ha ⇒ 1999년 1,898천ha (△395천ha)
 - 농경지전용면적: 1980년대 연평균 14천ha ⇒ 1990년대 연평균 32.5천ha

▶ 농경지 잠식현황

(단위 : 천ha)

구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평균	
농경지 면적	2,109	2,091	2,070	2,055	2,033	1,985	1,945	1,923	1,910	1,898	2,002	
휴경농지 면적	40.4	67.5	68.9	66.5	62.5	64.6	34.3	29.5	22.3	17.0	47.4	
농지증감	잠식면적	21.8	23.4	25.9	25.1	32.0	63.1	51.9	32.9	25.7	23.1	32.5
	증가면적	3.9	5.4	5.0	10.0	9.9	15.6	12.1	11.0	12.3	11.9	9.7
	순감소면적	17.9	18.0	20.9	15.1	22.1	47.5	39.8	21.9	13.4	11.2	22.8
총경작 감소면적	58.3	85.5	89.8	81.6	84.6	112.1	74.1	51.4	35.7	28.2	70.2	

※ (1999년, 농림부 통계자료)

○ 21C 세계식량위기에 대비한 곡물 및 식량자급기반 확보

- UN, FAO 등 국제기구에서 경고하고 있는 21C 세계식량위기에 대비한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유지와 향후 통일대비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 곡물 및 식량자급현황

(단위 : %)

구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비고
전체곡물	43.1	37.6	34.1	33.8	28.0	29.1	26.4	30.4	31.7	사료용 포함
전체식량	70.3	64.1	60.7	61.3	52.7	55.7	52.4	58.0	58.5	사료용 제외

자료 : 농림부, 1999년도 농림업 주요통계(1999. 7)

○ 대규모 우량농지조성을 통한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 집단화 된 우량농지를 조성하여 자동 물관리(TC/TM)와 항공기를 이용한 피종 및 농약 살포 등으로 단위면적당 쌀생산비용을 낮춤으로서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사업시행으로 집단화 된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

○ 농업용수, 생활 및 공업용수의 수자원확보로 우리나라 용수대책 일익담당

- 수자원 확보대상 : 16지구 31억톤
 - '99까지 : 11지구 17억톤, · 2000이후 : 5지구 14억톤

< 참고 >

< 우리나라 물수급 현황 >

- ▶ 1994년 : 공급 324억톤, 수요 301억톤 (여유 23억톤)
 - ▶ 2001년 : 공급 344억톤, 수요 337억톤 (여유 7억톤)
 - ▶ 2006년 : 공급 346억톤, 수요 350억톤 (부족 4억톤)
 - ▶ 2011년 : 공급 347억톤, 수요 367억톤 (부족 20억톤)
 - ※ 현재까지는 물수급에 다소여유를 보이나, 2011년에는 산업화, 인구 증가 등으로 약 20억톤 물부족 예상
 - ※ '99현재 추진중인 대단위사업 완공시 추가확보 가능량 : 14억톤
- 한국수자원공사 자료-

-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70mm로 세계평균 970mm의 1.3배이나, 국민 1인당 강수량은 세계 인구 1인당 강수량의 1/11에 불과
-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크고,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이 매우적고 하류평야와 상류지역간의 용수 수급 불균형

- 지역사회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 계기 부여
 - 방조제 설치 등으로 해안선 단축, 육운개선
 - 담수호중심의 관광자원 조성
 - 수자원 및 토지공급으로 공단 등 산업입지여건 조성

2. 농지조성사업 현황

□ 사업개요

가. 대단위농업종합개발

- 1) 사업목적 : 강이나 하천 등 수계중심의 특정권역에 대하여 수자원 확보,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지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영농 및 생활환경 개선
-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 3) 추진배경
 - '70년초까지 농업기반시설 및 영농환경 열악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재원 및 기술부족으로 소규모 저수지, 경지정리, 간척 등의 단위사업별로 추진되고 그 실적도 미미
 - 외국원조에 의한 식량조달의 악순환
 - 대규모 종합개발방식의 농업생산기반정비의 필요성 대두
- 4) 주요사업내용 : 저수지·방조제·하구둑·양수장 등의 건설로 용수를 확보하여 농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지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
- 5) 지원조건 : 농특 및 농지관리기금 100%
 - ※ 농지관리기금은 간척으로 신규농지 조성이 가능한 사업지구에 한하여 지원
- 6)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단, 새만금은 농림부)
- 7) 추진방향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사업시행
 - 종합개발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 사업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대상으로 준공위주 및 부분 완공위주 사업 추진

나. 서남해안간척사업

- 1) 사업목적 : 서남해안에 산재해 있는 간척지와 유휴지를 우량농경지로 개발하므로 줄어드는 농지를 대체 조성함과 농업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의 국가경쟁력 확보

- 2) 근거법령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 매립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 3) 주요사업내용 : 근해의 간석지 또는 호소에 제방축조 등 공사시행과 내부매립으로 신규 우량토지 창출과 방조제·배수갑문·양배수장·용수로·배수로·방수제·도로 등 농업기반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정비
- 4) 지원조건 : 농지관리기금 100%
- 5) 추진방향
 - 시행중인 사업의 조기완공 및 농지매각
 - 다목적개발 및 농지구모 대구획화로 개발효과 제고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 철저시행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 피해어업권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강구
- 6) 사업시행자 : 시·군, 농업기반공사
- 7) 지원대상
 - 환경영향평가결과 수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구
 - 수산자원보전지역 등 기타 개발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지구
 - 사업시행시 어업권보상 등에 따른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지구
 - 주변지역개발 연계효과가 양호하고 지역주민이 사업을 원하는 지구

다. 유희지개발사업

- 1) 사업목적
 - 폐염전, 폐양식장, 하천부지 등 전국에 산재된 유희토지를 우량 농지로 개발하여 기계화·전문화된 농업경영기반 구축
 - 방조제 및 배수문의 보강으로 재해예방
- 2) 사업내용
 - 방조제 및 배수문 보강, 양·배수장, 용·배수로 설치, 내부개답 등 농업생산기반 구축
- 3) 지원근거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 매립법, 환경영향평가법
- 4) 지원조건 : 농지관리기금 100%
- 5) 사업시행자 : 시·군, 농업기반공사

□ 농지조성현황(시행중지구)

가. 간척농지조성

(단위 : 억원)

구분	시도	지구별	면적 (ha)	사업비지원					사업기간
				계	'98까지	'99실적	2000계획	2001이후	
계		15지구	59,854	50,060	21,062	3,030	2,749	23,219	
서 남 해 안 간 척	소계	12지구	19,054	21,409	10,343	1,100	1,080	8,886	
	인천	진촌	347	458	283	43	48	84	'91~2001
	경기	화옹	4,482	3,523	2,129	263	215	916	'91~2001
	"	시화	3,636	4,441	-	24	40	4,377	'99~2008
	충남	남포	837	1,474	1,317	66	60	31	'85~2001
	"	석문	2,831	2,559	1,955	110	119	375	'87~2002
	"	이원	777	1,224	469	42	55	658	'90~2004
	전남	해남	2,367	1,757	1,426	84	89	158	'85~2001
	"	군내	464	972	561	63	59	289	'91~2005
	"	고금	159	380	230	38	42	70	'91~2002
	"	고흥	2,361	3,064	1,220	178	161	1,505	'91~2003
	"	사내	513	668	522	36	43	67	'89~2001
	"	삼산	280	889	231	153	149	356	'96~2002
대 단 위 간 척	소계	3지구	40,800	28,461 (23,377)	10,719 (7,290)	1,930 (1,030)	1,669 (914)	14,143	
	전남	영산강3-1	7,960	4,091 (3,096)	1,325 (765)	200 (50)	385 (100)	2,181	'85~2003
	"	영산강3-2	4,540	2,063 (1,349)	773 (239)	100 (20)	150 (50)	1,040	'89~2004
	전북	새만금	28,300	22,307 (18,932)	8,621 (6,286)	1,630 (960)	1,134 (764)	10,922	'91~2003

※ 사업기간은 연도별 예산형편에 따라 조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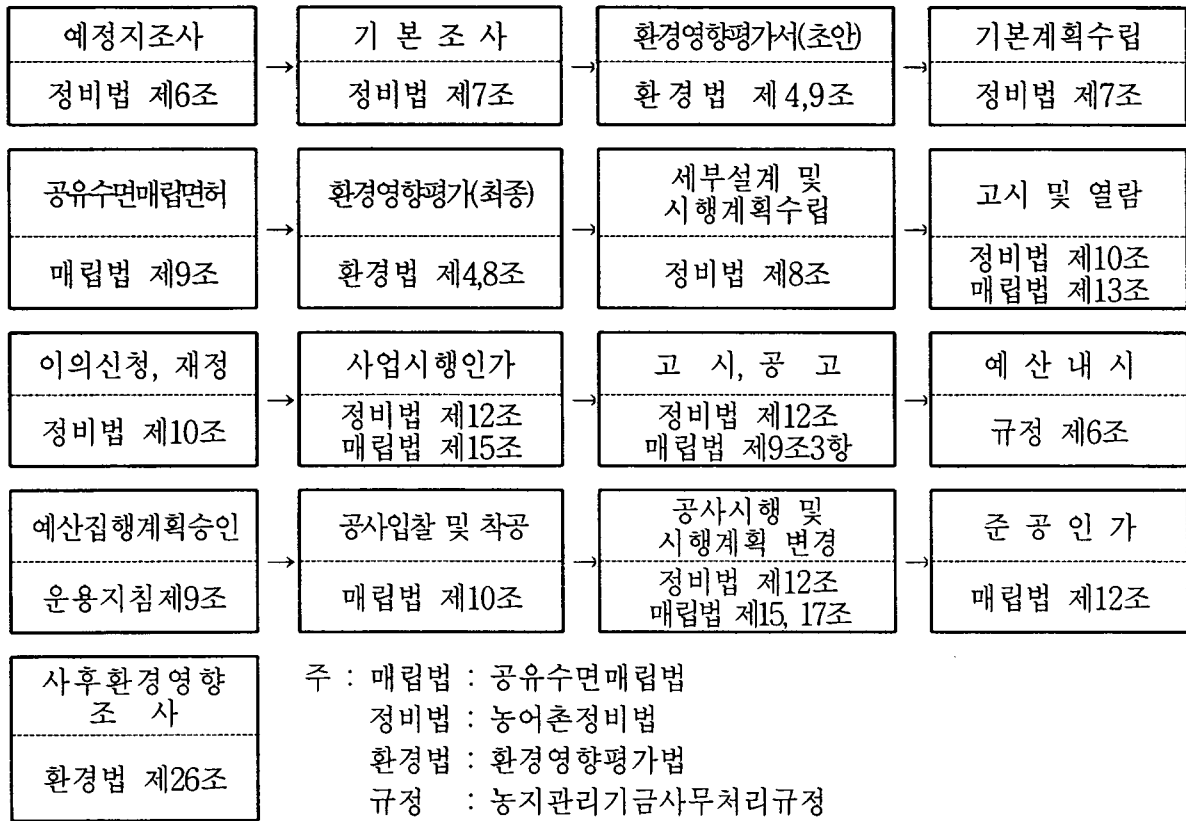
()내서는 일반예산

나. 유희지개발

(단위 : 억원)

시도	지구별	면적 (ha)	사업비지원					사업기간
			계	'98까지	'99실적	2000계획	2001이후	
계	2지구	176	213	1	30	51	131	
충남	중장	131	174	1	29	37	107	'98~2001
경남	산촌	45	39	-	1	14	24	'99~2001

다. 사업시행체계



3. 기금의 설치목적과의 적합성

□ 농지관리기금의 설치목적

가. 설치목적(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 정부는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함

나. 재원(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 정부출연금, 재특회계·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납입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간척 등 매립지의 매각대금, 기금운용 수익금

다. 용 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1조)

-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 농지의 장기 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장려금의 지원
- 농지의 교환·분합과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가 시행·알선하는 농지의 교환·분합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의 용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원
- 농지의 재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투자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용자 및 투자
-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투자
- 농지제도, 농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방지 등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및 홍보
- 농지재개발사업과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예정지조사·기본조사·시험·연구와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국가 시행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 및 매각대금의 징수업무 등

농지관리기금 운용유형(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

- 가. 농지관리계정 :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
- 나. 농지조성계정 : 대체농지 조성 및 농지 재개발자금의 공급

농지조성사업별 목적

사 업 명	목 적 (요지)	비 고
○ 서남해안 간척농지 조성	○ 농지조성, 농지조성을 위한 조사·시험·연구,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기금설치목적 및 용도에 부합
○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농지조성분야)	○ "	"
○ 유희농지 개발	○ 농지재개발 및 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

□ 기금 설치목적과의 적합성 평가

- 농지관리기금의 근본적인 설치목적 중의 하나는 「농지의 조성」이므로 농지조성사업은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대상사업임.
 - 간척사업은 농지전용시 부과하는 농지조성비 납입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농지관리기금을 투자하여 줄어든 농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농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공급」하는 농지관리기금의 목적에 부합함.
 - 농지관리비는 「농지조성비 납입금」, 「간척지의 매각대금」 등으로 조성되며, 이를 농지조성사업에 투자하고 다시 간척지 매각대금으로 회수하고 있음.
- 기존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는 과정에서 전용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징수되는 농지조성비(대체농지조성비)를 재원으로 신규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기금의 수입재원·설치목적 등과 맥락을 같이 함
- 농지관리기금은 농지조성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농업기반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4. 농지관리기금의 차별성

□ 예산 또는 타 기금과의 중복성

- 농지관리기금의 조성계정은 전부 새로운 농지를 창출하는 「농지조성사업」에 투자되고 있음.
 - 다만,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의 경우는 대권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간척사업을 비롯하여 기존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해 주는 농업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경지정리 등이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농지관리기금은 그 중에서 「농지조성」사업에만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새로운 「농지조성」이 아닌 기존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용수공급,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농특회계)에서 지원
- ⇒ 따라서, 농지관리기금이 타예산 또는 기금과 중복투자 되는 경우는 없으며, 「농지조성」사업에만 투자됨.

□ 본 사업의 차별화 필요성

- 농지관리기금의 조성계정은 농지조성비 납입금, 간척으로 인해 조성된 농지의 매각대금 등을 수입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주된 설치목적이 매년 잠식되는 농지에 대한 대체농지의 조성이므로 「농지조성사업」에만 차별적으로 투자되어야 함.
- 지난 5년간 줄어든 농지면적은 연평균 61천ha나 되나, 간척사업 등으로 새로이 대체 조성되는 농지는 연평균 32천ha에 불과함 (연간 29천ha 감소)
- 농지관리기금의 투자여력 부족으로 농지조성사업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쌀자급을 위한 적정 논면적(2004년 110만ha) 유지에 어려움이 우려됨

1.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 농지관리기금은 농림부 외 타부처의 사업기금과는 달리 공공기금에 속하며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대체농지조성을 하는 SOC·공공사업으로 유사사업이 없는 정책사업이며 법률에 따라 시·군 및 정부투자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중임
 - 농업분야는 사업완료후 사업시행자의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민자유치의 가능성이 희박한 독립된 사업임
 - 농지조성비를 수입재원으로 하여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며 지원중단시 별도의 재원이 없음

2. 농지관리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의 시행

□ 추진배경

- 산업·도시화에 따른 농지전용에 적극적으로 대처
- 인구증가·남북통일대비 주곡(쌀)의 안정적 자급기반 구축
- 대규모 영농기반구축을 통한 농업의 국가경쟁력 제고
- 대체농지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투자재원의 효율적 관리로 예산절감

□ 농지조성사업의 시행

- 산업용지 및 도시용지로 전용될 농지를 대체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한 기본식량의 확보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설치목적중의 하나로 추진
 - '46년 이후 총 75,738ha를 추진하였으며, 그중 정부시행은 35,549ha(46.9%), 민간시행면적이 40,189ha(53.1%)임.

(단위 : ha)

구분	총대상면적	'99까지준공	2000시행중	개발예정지
계	156,666	75,738	59,854	21,074
○ 정부시행	116,477	35,549	59,854	21,074
- 대 단 위	55,665	14,865	40,800	-
- 서남해안	60,812	20,684	19,054	21,074
○ 민간시행	40,189	40,189	-	-

※ '46년이후 추진된 면적임

□ 기대효과

- 감소하는 농지를 대체조성하므로써 주곡(쌀)의 자급기반구축
- 21세기 세계식량위기에 능동적 대처 기반구축
- 대규모 우량농지조성 및 기계화·전문화된 농업기반조성
-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
-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토지수요량 변화에 대처하고, 비교적 낙후된 연안역 일대의 발전기반구축
- 국토의 균형적발전과 농어민복지향상을 위한 정주공간 제공

3. 농지조성사업의 발전

□ 추진경위

■ 1974년 미완공간척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내무부, 농수산부, 건설부 및 대통령비서실로 구성)

- 미완공 상태인 민간간척사업을 마무리하여 식량증산방침 수립
- 10ha미만의 소규모사업은 새마을사업으로 시행
- 기타사업은 시·군 직영사업으로 조성하여 분양
(국고 80%, 자체부담 20%)



○ 1980년대 농지관리기금 조성

- 서남해안·미완공간척, 유휴지개발사업 등에 투자
- ⇒ 농지관리기금이 간척사업의 주 재원이 됨.



○ 1990년대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농지관리기금 투자

- 국고 재원부족으로 간척개발사업 일부분에 농지관리기금 지원

□ 민간자본 투입 및 국고지원의 한계성

가. 민간자본 투입(민간기업간척 및 소규모간척)

○ 민간기업간척

-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사 준공후 기업명의로 소유됨에 따라 국토의 상당부분이 사유화
- 간척농지에서 수확된 농작물을 일시에 시장에 방출시 농산물 가격 안정에 악영향
 - ※ 김포지구 및 서산A·B지구 이후로 사업유보

○ 소규모간척

- 막대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및 간척기술 부족
- 제염기간에 따른 투자수익 회수기간 장기화
 - ※ 미완공 간척사업 이후로 시행되지 않음

나. 국고지원간척

- 대단위간척사업에 국고지원
- 국고재원의 부족으로 1990년대부터 간척지개발사업(3개지구)에 농지관리기금투자

□ 농지관리기금에 의한 간척사업

○ 농지관리기금의 조성

- 설치목적 :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

○ 농지관리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 사업목적과 부합된 투자재원확보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투자재원의 합리적 관리로 지구별 자원배분의 효율성 도모

4. 농지조성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 추진배경

-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토지수요량 증대와 농지전용에 따른 절대 농지면적 감소로 식량자급 기반확보가 필요
- 대규모영농기반구축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농업생산 기반정비가 필요
- 21세기 선진농어촌건설 및 농어민복지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

□ 사업시행의 필요성

- 자연적·사회적 여건
 -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수심이 얇고, 해안선 굴곡이 심하며, 조석간만의 차가 클 뿐 아니라, 갯벌바닥의 기울기도 완만하여 간석지가 잘 발달되어 있음
 - 인구증가·경제발전·사회발전 등으로 토지수요량 증가 및 식량자급 기반구축의 필요성 대두
 - 21C 세계식량위기에 대비한 식량안보에 대한 필요성 증대
- 대체농지조성의 필요성
 - 대체농지조성을 위한 간척농지개발사업의 필요성 증대
 - 간척농지는 식량자급률 유지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토지공급 및 전용계획(1990~2001)>

(단위 : ha)

용도 구분	택지	공업용지	공공용지	농지	산지	수면/기타	계
농지	27,800	6,800	31,200	-	19,800	175,300	260,900
산지	11,400	1,200	27,300	12,100	-	39,700	91,700
간척	500	3,400	19,500	43,000	-	50,500	116,900
계	39,700	11,400	78,000	55,100	19,800	265,500	469,500

자료 : 건설부, 1992,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 p.121

□ 기대효과

- 대규모 우량농지조성을 통한 농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해안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 복지향상
- 합리적 사업추진을 통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기반 구축

여 백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촌용수과 사무관 이봉훈(☎02-504-9406)
 농업기반공사 대단위사업부 2급 이원희(☎0343-420-3239)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추진>

평 가 내 용

1.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 가.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 결정과정의 투명성
- 나. 선정기준의 합리성
- 다. 선정기준 적용의 합리성

2. 사업내용의 적합성

- 가.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 및 조정
- 나. 사업활동과 사업목적의 연계성

3.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 가. 효율성 평가지표와 관리체계의 합리성
- 나. 효율성 제고 실적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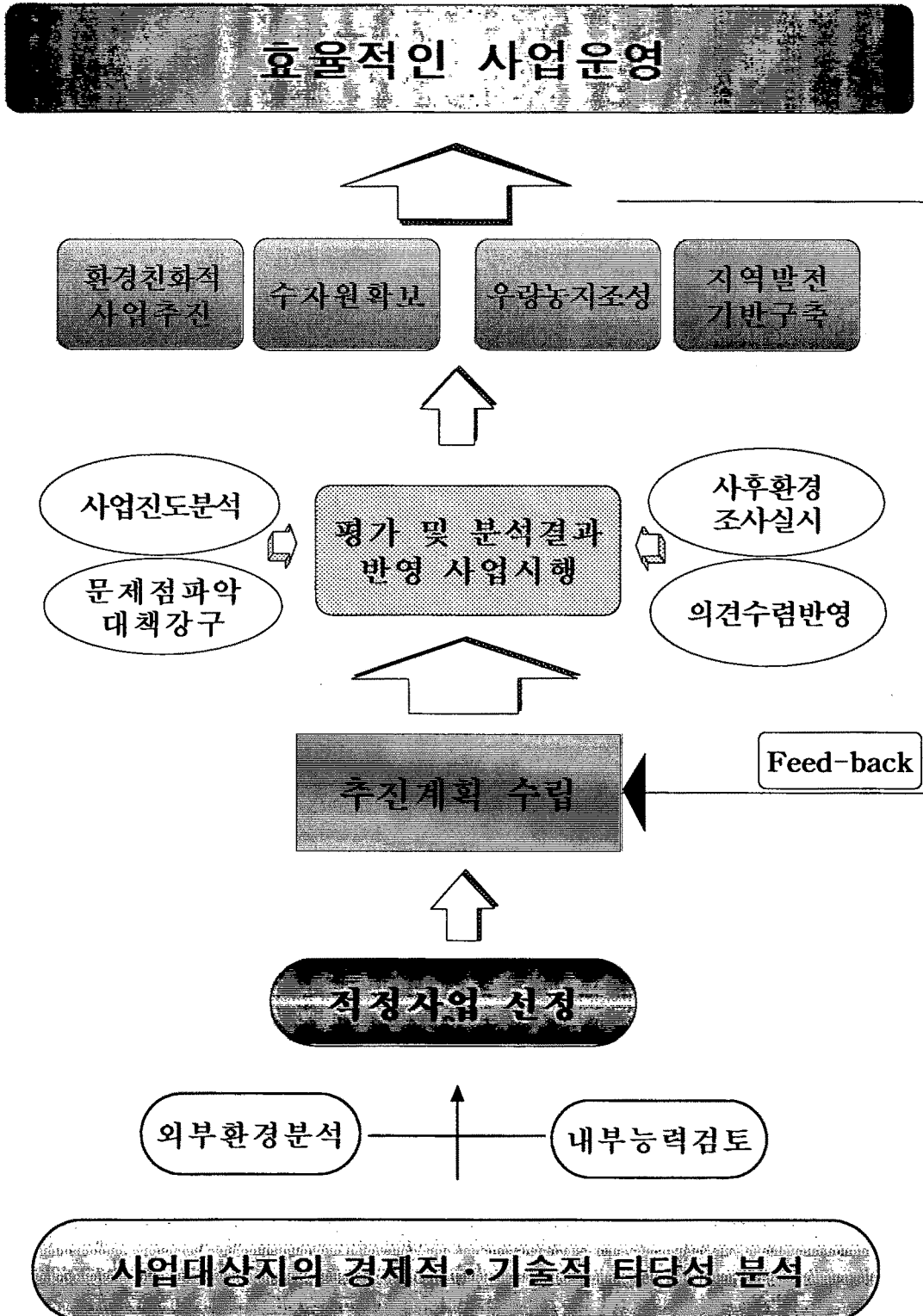
1. 운용 여건

- 타당성 분석 및 자원조사를 통한 사업 선정
 -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비교분석을 통한 최적의 기본계획 수립
-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조정
- 지역주민의 사업 동참 유도
 -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반영

2. 지표관리 방향

- 철저한 사업효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사업 대상지 선정
- 관련기관,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견 최대반영 노력
 - 사업대상지역의 의견수렴 반영으로 최적의 사업 추진
- 신기술, 신공법의 적극 도입
 - 대외경쟁력 강화 및 기술능력 향상
- 선개발 지역의 효율적 관리로 조기 사업효과 거양
 - 수자원 공급 및 간척지의 분양전 일시경작 시행 등
- 기타 개발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지역 개발
 - 중복투자에 의한 예산낭비 억제
-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사업의 적극 추진
 - 환경친화적 설계·시공 지속 추진
- 사업효과 조기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추진
 - 합리적 예산관리로 사업효과 조기달성 노력
 - 시행중인 사업 조기완공 위주로 추진

3. 지표관리 체계도



II. '95~'99년도 추진실적 요약

1.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 사업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 간척자원자료 일제조사 실시 및 조사자료 D/B 구축
 - 종합적인 자원조사를 통한 간척사업조건 및 요인 파악
 - 간척자원의 가변자료 및 신규발생자료 정립 필요
 - 간척 부존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 대상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증
 - 개발예정지의 투자사업에 대한 정확한 기대효과 예측
 - 경제분석에 따른 투자우선순위 결정
- 개발계획 수립시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의견 반영

2. 사업내용의 적합성

□ 농지조성사업에 대한 환경변화 분석 및 적용

□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조정

- 친환경 간척농지개발사업 추진
 -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수질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 추진
 - 범정부차원의 수질보전대책 수립·추진
 -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사업 추진
 - 친환경농업 연구 및 기술개발
- 간척농지대상면적 축소·조정

3.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 설계업무의 전산·자동화

- 전산대중화에 따른 사회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처
- 조사설계분야의 업무능률 및 경쟁력 향상
- 성과품 질 향상 및 설계보완 업무능률 제고

□ 농지조성사업의 기술자문회의·심의회 운영

- 대규모 간척사업을 효율적·성공적 추진
- 각계전문가의 자문으로 사업중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처
 - 대외위원 : 71인 (교수, 관련분야 전문가)

□ 시공법 도입 및 신기술의 적용

- 현지여건에 부합한 시공방법 개선
-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기술력 향상에 기여

□ 환경친화적인 사업추진 노력

- 환경친화적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확고한 환경패러다임 구축
- 개발과 보전의 발전방향 모색과 환경마인드 확산

□ 간척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 간척농지 분양전 일시경작 시행
-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 담수호 수질개선대책 수립 추진

Ⅲ. 평가내용별 추진내용

평가내용

1.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1. 사업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 간척자원자료 일제조사 실시 및 조사자료 D/B구축

가. 간척자원자료 일제조사

1) 추진배경

- 종합적 자원조사를 통한 간척사업조건 및 요인을 파악
- 간척자원의 가변자료 및 신규발생자료 정립 필요
- 간척 부존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추진목적

- 입지상의 자연, 사회적 여건 및 각종요인과 지역적 불균형성까지 포함하는 간척 잠재력 조사·분석
- 현장조사를 통한 D/B (문자D/B 및 GIS) 구축
- 대단위 우량간척농지조성 가능지 발굴

3) 추진 내용

- 간척지(458,070ha) 자원조사 일제실시('87~'90)
- 민간시행 소규모 간척지 조사('91)
- 가변자료 및 신규발생자료 조사('91~'95)
- 해저지형변화 및 수산자원 변화 조사('91~'92)
- 연안시설실태(어항현황) 조사('93~'95)

4)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87	'88	'89	'90	'91	'92	'93	'94	'95	계
사업비	688	788	771	423	450	135	133	300	300	3,988

5) 연도별 조사현황

연도별	조 사 내 역
'87년	- 자원조사 : 292,280ha
'88년	- 자원조사 : 111,190ha
'89년	- 자원조사 : 54,600ha
'90년	- 민간시행 소규모 간척지 조사(5시 37군)
'91년	- 가변자료 및 신규발생자료 조사·보완(3구·14시·37군·41기관) - 간척개발지구 해저지형변화 및 수산자원변화 조사
'92년	- 가변자료 및 신규발생자료 조사·보완(3구·15시·41군·74기관) - 간척개발지구 해저지형변화 및 수산자원변화 조사(삼교동 11지구)
'93년	- 관련기관(8개소) 조사 및 연안어항(103개소) 조사
'94년	- 관련기관 조사 및 D/B구축(GIS, 202도엽)
'95년	- D/B 구축 완료

나. 간척자원 조사자료의 D/B구축

1) 추진배경

- 수자원, 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등이 고려된 간척부존자원의 추출을 위한 문자 및 도형 데이터베이스 필요

2) 추진 내용

○ 시스템 현황

- 문자자료 : 상용 DBaseⅢ로 구축
- 지형자료 : ARC/Info로 구축
- ※ 조사자료 GIS(지형정보시스템) 구축

○ 구축내용

- 문자D/B구축

- 토 목 조 사 : 관개시설, 농업가구 및 인구 외 28개 항목
- 사회 환경 조사 : 답리작 현황 외 37개 항목
- 수문 및 해양조사 : 측후소 기상자료 외 10개 항목
- 자연 환경 조사 : 오염원 시설계획 외 8개 항목
- 재료 및 토질조사 : 골재장 위치 및 매장량 외 3개 항목
- 농업 경제 조사 : 작물별 생산량 외 3개 항목
- 토 양 조 사 : 토양별 특성 및 토양처리 외 2개 항목

- 간척자료 지형 GIS구축 : BASE MAP(기본도) 구축 (1/50,000)
(행정구역, 등고선, 도로, 하천수계, 해안선, 해안시설물 등)



[데이터베이스 이용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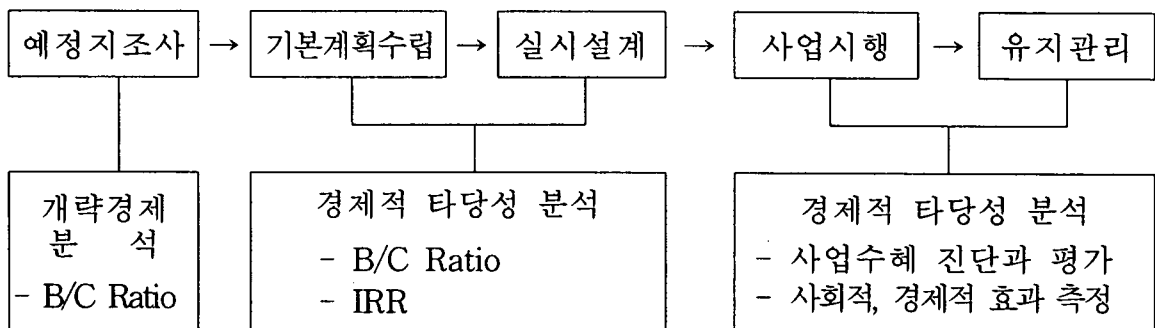
□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1) 추진 배경

- 대상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증
- 개발예정지의 투자사업에 대한 정확한 기대효과 예측필요
- 경제분석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결정

2) 추진 내용

- 경제분석 기본체계



○ 타당성 분석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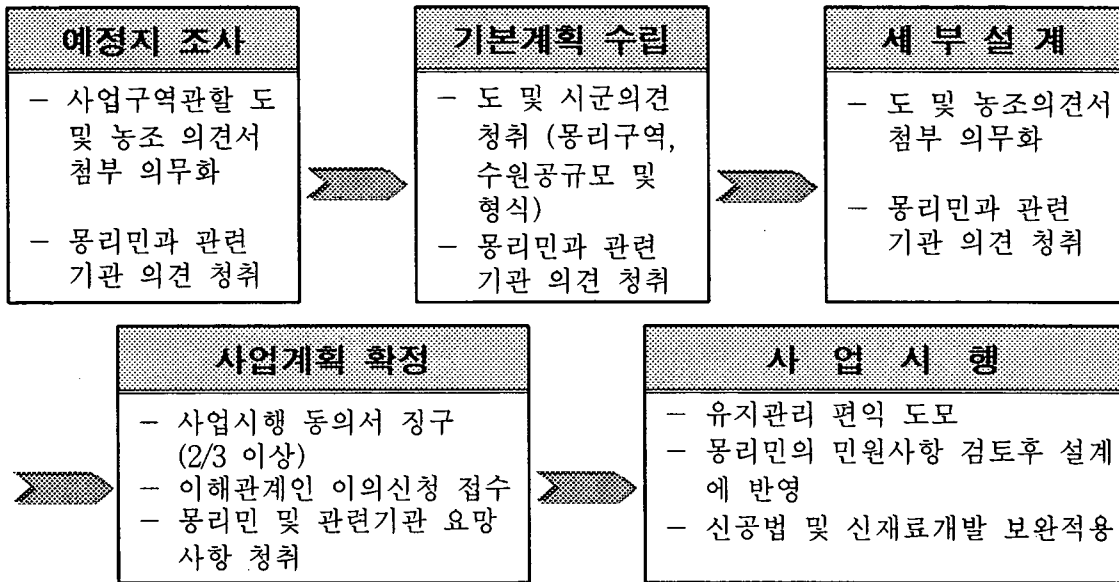
지구명	건 수	주요 내용
삼 산	4건 9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갑문 위치선정 2개안 ○ 배수갑문 권양기 형식선정 2개안 ○ 배수갑문 형식비교 3개안 ○ 선착장 위치선정
이 원	2건 4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수제 노선선정 2개안 ○ 양수장 위치선정 2개안
시 화('97)	2건 4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수제 노선선정 2개안 ○ 양수장 위치선정 2개안
시 화('99)	2건 6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도담수호 및 우정호와 연계된 수자원이용계획 조정(3개안) ○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재정립(3개안)
새 만 금	2건 11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조제 노선 6개안 ○ 배수갑문 문비구조 5개안

3) 추진효과

-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한 최적설계 도모
- 다양한 비교검토를 통한 설계변경 예방, 사업개발 방향 제시 및 규모 결정
- 기본계획의 재검토를 통한 환경친화적인 계획수립
- 새만금지구 기술적 타당성 분석 실시

□ 개발계획수립시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의견 반영

1) 사업계획수립 체계



2) 주민의견 반영내용

지구명	요구일	관련인	요구반영내용
고 금	'95.10	완도군청, 고금주민 등 15인	- 토지이용계획 - 농업용수 오염방방지 및 오·폐수 처리 등
	'96.10	완도군청 공무원 등 17인	- 경작도로폭 확대 요망 및 자갈부설 요구 외 13건
군 내	'96. 7	진도군수 등 15인	- 배수로 시설에 통수가 잘 되도록 설계요망 외 15건
고 흥	'96. 5	고흥군수 등 150인	- 배후지와 연계된 직선 농로 설치요망 외 19건
삼 산	'96. 4	장흥군수 등 64인	- 어선대피소 접안시설 설치 등
시 화	'99. 4	최윤묵 외	- 간척지내 마을간 연결도로 설치
	'99. 5	해양수산부 시민단체	- 비점오염원 유입 해결방안 - 이용계획수립시 지자체 협의
	'99. 7	안산시	- 대부동 우회도로 설치 - 농지조성지에 생태공간 설치
	'99. 8	한국전력	- 송전선로 경과지 협의
	'99.11	화성군	- 휴양시설 등 소득증대시설물 설치 -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설치

3) 추진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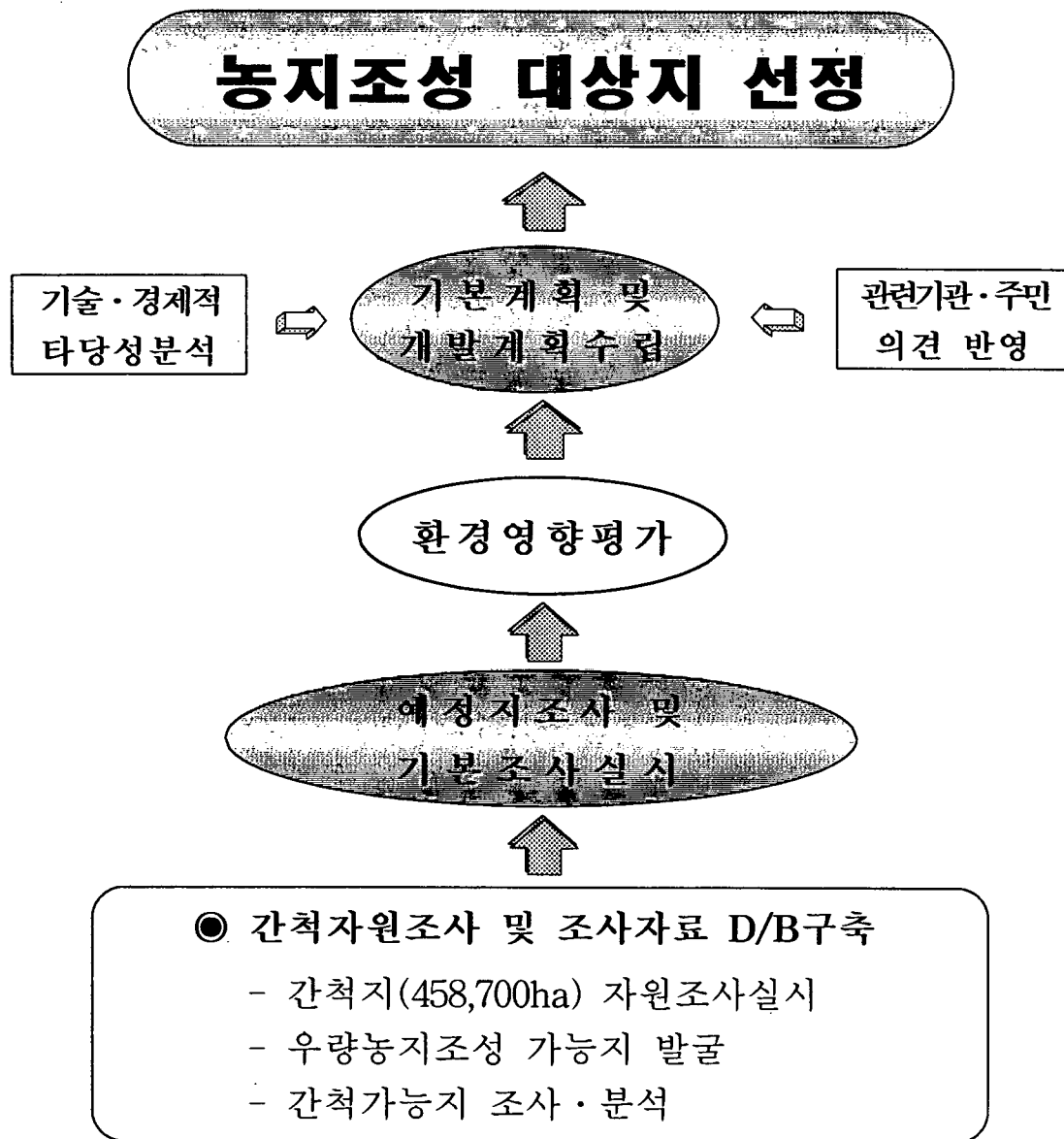
- 관련기관, 지역주민 의견수렴으로 현지역건에 부합된 합리적인 계획 수립
- 민원발생 예방 및 설계변경요인 사전제거로 사업비 절감

2.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및 절차

□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 1) 환경영향조사결과 수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구
- 2) 수산자원보전지역 등 기타 개발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지구
- 3) 사업비가 저렴하고 투자효율이 높은 지구
- 4) 공유수면매립면허 협의결과 관련기관의 이견이 없는 지구
- 5) 사업시행시 어업권보상 등에 따른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지구
- 6) 주변지역개발 연계 효과가 양호하고 지역주민이 열망하는 지구

□ 대상지선정 절차



□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의 합리성

- 농지조성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절차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농지조성 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간척지 중에서,
 - ① 지역주민이 절실히 농지조성을 원하고, ② 주변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가 적고, ③ 갯벌이 오염되어 수산업 소득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① 철저한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② 공청회를 거쳐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환경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③ 담수호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고 ④ 간척지 내에서는 인공습지와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수생식물 및 물새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환경친화적 간척을 지향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공청회 과정에서 「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지게 됨.
- ⇒ 대상지 선정은 경제성, 기술성,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환경에 피해가 적은 대상으로 적정하게 선정하게 됨.
- 간척사업의 특성상 단순하고 획일적인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대상지 선정사례 [시화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구역 : 경기도 안산시 북동, 동동, 선감동, 화성군 송산면, 서신면
- 매립면적 : 4,396ha (간척농지 3,636ha, 담수호 760ha)
- 주요공사
 - 방 수 제 : 7조 40.0km
 - 배 수 장 : 2개소
 - 배수간선 : 20조 24.6km
 - 도 로 : 115.7km
 - 양 수 장 : 3개소
 - 용수간선 : 5조 31.3km
 - 승 수 로 : 3조 7.51km
- 총사업비 : 444,117백만원 (농지기금)
- 사업효과
 - 국토확장 : 4,396ha
 - 식량증산 : 30,122M/T
 - 고용증대 : 2,333천명
 - 수자원확보 : 24백만m³
- 사업기간 : 1998. 12 ~ 2008. 12 (10년)



시화지구 간척농지조성 예정지

2) 대상지 선정시 고려사항

- '80년도 간척자원조사(개략답사)결과 개발우선순위에 선정
- 농림부·건교부간 사업시행방안 협의내용
- 사회적·지리적 입지조건 및 다목적성에 대한 분석결과
- 환경영향조사결과
- 기술적·경제적 타당성분석 등

3) 대상지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 수도권의 주요도시인 인천, 수원, 안양 등과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천-안산-아산을 연결하는 서해안개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 수도권의 인구, 산업경제의 과도한 편중현상을 완화시키고 복합 영농과 수도권 관련사업을 연계 발전시켜 농·공업이 병존하는 경제 권조성을 위해 경제성·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 관련기관협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선정
-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및 단체 등에 환경영향평가내용 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환경친화적 농지조성을 위하여 인공습지, 생태공원 등을 설계에 반영 추진중에 있음

1. 간척농지조성에 대한 환경변화

- 간척농지조성사업은 바다에 방조제를 막아서 담수호와 간척농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해양환경에 대한 변화를 수반하게 됨.
 - 바다와 갯벌이 담수호와 육지(농지)로 바뀌게 되며 그 과정에서 바다측 어족자원 분포가 바뀌고, 담수호에 새로운 수중생태계가 형성됨.
- 이러한 환경변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환경보전과 새로운 농지 창출을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함.
 - 환경보전 일변도의 주장이나, 환경을 무시한 획일적인 개발방식은 재검토, 보완되어야 함.
- 간척사업이 시행된 후, 수년이 경과하면 방조제 외측에 새로운 갯벌이 점차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어장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오랜 세월이 지나면 방조제 밖으로 갯벌이 다시 형성되므로 간척사업으로 갯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예 : 아산방조제, 남양방조제, 삼교천방조제 등)

2.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조정

- 간척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추진방식을 강구하는 등 정책조정을 강구
 - 환경피해를 저감하는 방편으로 간척지 내에 생태계 보전 및 오염물질의 자연정화를 위해 인공습지, 간척농지 말단부 수초저류지, 호유입부 침강지, 인공식물섬 등을 조성하여 수생식물과 물새의 서식처를 제공토록 함.
 - 담수호 수질보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 시행
 - 담수호 내에 물순환과 산소공급을 위한 폭기시설 설치
 - 고속응집침전처리시설 또는 심층포기시설 설치
-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어업보상 규모가 확대되는 등 간척사업에 대한 제약요인이 대두됨에 따라 간척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토론회('95. 4.26)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재정립 추진
 - 간척농지 대상면적 축소·조정(402 ⇒ 208천ha)

- 간척지 환경보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환경친화적 간척지 이용방안으로 대호환경농업시범지구를 대상으로 한 UNDP와 기술협약하여 「대호간척지 환경보전 시범사업」의 1단계 계획수립 완료(2000. 3.31)
 -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2단계로 시범사업의 조사·설계 및 사업비 확보를 추진
- ⇒ 시범사업 결과를 새만금·시화지구 등 시행중인 대규모 간척농지개발사업에 적용

□ 친환경 간척개발사업 추진

가.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1) 추진배경

-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
- 주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한 협력강화

2) 추진현황

- 환경영향평가조사 실적(1981~1998)

구분	지구수	지구명
환경영향평가	28	영산강, 시화, 새만금, 화옹, 남포, 석문, 해남, 보전, 약산, 사내, 만덕, 완도, 이원, 고금, 군내, 고흥, 진촌, 함해, 가로림, 창선, 금당, 칠량, 충도, 원포, 삼산, 황산, 마동, 안좌
사후환경영향조사	13	영산강, 해남, 석문, 남포, 시화, 이원, 진촌, 사내, 새만금, 화옹, 군내, 고흥, 고금

3) 기대효과

- 환경영향을 분석·평가함으로써 환경피해 최소화
- 쾌적한 개발환경 및 지역주민 생활개선
- 환경친화적인 기술적용 및 개발효과 증대

나. 수질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 추진

- 방조제 건설 등에 따른 자연환경변화와 담수호 수질대책 추진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간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 '95~'99기간중 환경보전관련 연구추진실적 >

연도별	연구 과 제 명
'95	- 방조제건설에 따른 해양환경변화 연구
'96	- 담수호의 수질변화예측 모형개발 연구 - 시화담수호 수질보전대책수립조사 연구 - 시화담수호 배수갑문 시험개방조사 연구
'97	- 시화간석지 비사발생원 및 성분조사 연구('96~'97)
'98	- 하구둑 설치연안의 조석특성연구('96~'98) - 해안지역 퇴적에 따른 수리시설 관리방안 연구('98~)
'99	- 간척지개발과 연안의 친수환경조성 연구('96~'99) - 방조제공사로 인한 연안의 해안지형변화 연구('97~'99) - 수생식물에 의한 수질개선기법 연구('97~'99) - 수질개선을 위한 수처리조 배열기법 연구('97~'99) - 방조제축조후 연안의 해안지형과 퇴적환경변화 연구('97~'99) - 환경진료시스템 개발('98~'99) - 하구에 설치한 어도의 이용에 관한 연구('98~'99)

다. 범정부 차원의 수질보전대책 수립·추진

- 매년 관계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질보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던 중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문제화 되자 범정부차원에서 대형 담수호의 수질보전대책을 재평가 하거나 추진중에 있음
 - 새만금호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대책 수립, 시달
 - 현재 민관공동조사단(30인)의 재평가를 받고 있으며, 동조사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의 수질대책 수립·추진 예정
 - 시화호 : 환경부 주관으로 대책 수립·추진중
 - 화옹호 : 농업기반공사와 지자체간 역할을 분담하여 대책 추진중

※ 담수호 수질대책 추진체계

- 담수호 상류지역 하천수질개선 : 환경부, 지자체
- 담수호 내부 및 간척지 내 오염방지 :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라. 새만금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 추진

- 정부는 환경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새만금사업에 대한 환경문제 중간점검과 새로운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구 성 : 30인(정부관계기관 9인, 민간전문가 21인)
 - 민간전문가중에는 환경단체 추천자 10인 포함
- 운영기간 : '99.5~2000.5

마.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사업 추진

1) 추진배경

- 갯벌보전의 국민적 관심 증가
 - 갯벌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해양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및 국민여론 증가
- 갯벌보전 정책변화
 - 습지보전법 및 연안관리법 제정(1999. 2. 8, 환경부·해양수산부)

2) 추진내용

- 환경친화적인 사업추진
 - 담수호의 수질보전 및 환경친화적 사업추진으로 개발 일변도의 간척추진방식을 전환하여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방식 도입
 - 대규모보다 중·소규모로 추진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방식이 정착될 때까지 신규착수를 억제하고 시행중인 간척지구에 집중투자하여 사업효과 조기거양 노력
 - 지역주민·지자체·시민환경단체 등에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청회를 통하여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바. UNDP와 공동 친환경간척지 모델개발

1) 간척지에서의 생태계보전·복원을 위한 토지이용방안 및 친환경모델 개발

- 간척지주변의 유희자원 활용방안 모색
- 환경친화적 생태공원조성 및 환경농법 개발방안 수립
- 모델개발후 타 간척지구에 적용

2) 추진 내용

- 현지답사 및 '99사업 추진방향 회의('99. 1.14 ~ 1.15)
- 생태복원관련 자문회의 개최('99. 1.28)
- UNDP기술협력사업 운영위원회 개최('99. 3.25)
- 대호 표본전시장 설치('99. 4.27)
- 국외전문가 초청연구 및 자문(FAO전문가, 일본자연형전문가 등)
- 환경분야 전문가 초청토론회 개최('99. 7. 2 ~ 7. 3)
- “해양간척지의 친환경적 복원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개최
- “해양간척지의 환경친화적 복원” 설명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

사. 친환경농업 연구 및 기술개발

○ 추진배경



-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간척지의 친환경적활용방안 제시
- 친환경농법의 기술개발 및 보급
- 도시민·청소년에게 농업·농촌·환경체험교육 기회제공

[대호환경농업시범지구]

○ 추진내용

- 병해충 및 양분종합관리(IPM & INM)에 따른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절감으로 친환경농업의 실천
- 친환경농업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농업·농촌현장 체험 교육 지원

○ 기대효과

- 친환경적 간척개발로 야생 동·식물의 안식처제공 및 지역민과 도시민의 휴식처 제공
- 지역의 균형발전 및 친환경적 농업생산기반 확보

□ 간척농지대상면적 축소·조정

- '90년대 중반이후 갯벌보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성이 없거나 대규모인 간척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95년 : 402천ha ⇒ 208천ha(△194천ha)
 - 타계획과 중복, 미완공 민간간척, 유희간척, 지자체 및 지역주민 반대지역, 기타 사업성이 없는 지역 등 제외
 - '98년 : 208천ha ⇒ 157천ha(△51천ha)
 - 영산강4단계 등 대규모 간척예정지 제외

< '95 및 '98년 간척농지대상면적 조정내역 >

(단위 : 천ha)

구 분	'95년 이전 (A)	'95년 조정 (B)	'98년 조정 (C)	증 △ 감		
				B-A	C-B	C-A
계	402	208	157	△194	△51	△245
○ 정부시행	362	168	117	△194	△51	△245
- 서남해안	292	98	61	△194	△37	△231
- 대 단 위	70	70	56	-	△14	△14
○ 민간시행	40	40	40	-	-	-

□ 사업활동과 사업목적의 연계성

- 농지조성 및 농지조성에 수반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은 농업 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과 간척농지조성사업에 명시된 기금설치 및 사업목적과 부합됨.
 - 또한 부분완공된 시설의 준공처리 이전에 영농을 허용하는 정책은 소득증대와 기금투자의 효율성 제고측면에서 바람직함.
 - 폐양식장 등 유휴토지를 포함한 간척농지조성사업은 대체농지를 조성함으로써 줄어드는 농지를 확충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이 또한 사용목적과 부합됨.(현재 17지구 60천ha의 간척농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또한 폐염전 등의 유휴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유휴지개발사업」도 전국을 대상으로 적지조사를 거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점차 시행할 계획임.
 - 시범사업으로 충남 태안군 소재 「중장지구」와 경남 거제시 소재 「산촌지구」를 추진중에 있음.
- ⇒ 「농지조성사업」은 그 목적과 사업활동이 명확히 부합되는 사업임.

1. 효율성 평가지표와 관리체계의 합리성

□ 효율성 평가지표

- 농지조성사업 관련업무의 전산·자동화
- 농지조성사업의 기술자문회의·심의회 운영
- 신공법 도입 및 신기술의 적용
- 환경친화적 사업추진노력
- 간척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 효율성 평가지표의 합리성

- 농지조성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표를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 이러한 평가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연말에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효율성 평가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각 사업별 평가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음.

2. 사업관리체계의 합리성

- 농지조성사업은 크게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자(농림부)와 수탁관리자(농업기반공사),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시·군 및 농업기반공사, 1차 감독기관인 시·도 등이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농지조성사업 대상지의 선정은 시·군 및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현지 조사를 하여 농림부에 제출하면 사업시행여건, 농지관리기금의 투자여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농림부가 대상지를 선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게 됨.
- 사업이 착수되면 사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서남해안간척사업의 경우는 시·도가 1차 감독기관, 농림부가 2차 감독기관이 되어 사업을 관리하게 되며, 대단위사업의 경우 농림부가 직접 감독자가 되어 사업을 관리하는 등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3. 효율성 제고실적

□ 농지조성사업 관련업무의 전산·자동화

가. 추진배경

- 전산 대중화에 따른 사회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처
- 조사설계분야의 업무능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
- 성과품 질 향상 및 설계보완업무 능률 제고

나. 추진내용

- 전산·자동화 현황

연도별	프로그램	적용지구	업무량
1995	-방조제설계시스템 -LCDS	-진촌지구 -영산강Ⅲ-1지구의 4	-방수제 7.8km -토적 및 공사비산출
1996	-용수로CAD시스템 -WCAD -바른물길 -방조제설계시스템 -HDSP	-고흥지구 -영산강Ⅲ-1지구의 5 -고흥, 군내지구 -고흥, 군내, 고금, 삼산 -삼산지구	-도로설계1km -평면도 5,195ha -용배수로115km -방조제, 방수제15km -도로 5.3km
1997	-용수로CAD시스템 -WCAD -바른물길 -RDCSS	-영산강Ⅲ-1지구의 5 -영산강Ⅲ-1지구의 6 -영산강Ⅲ-2지구의 4 -고흥지구 외 3	-용배수로 설계 -평면도 작성 -종횡단도 작성 -구조도
1998	-용수로CAD시스템 -WCAD -바른물길 -RDCSS -방수제설계시스템	-영산강Ⅲ-2지구의 3 -영산강Ⅲ-1지구의 6 -고흥지구의 4 -고흥지구 외 3 -고흥지구	-용배수로 설계 -평면도 작성 -종횡단도 작성 -구조도 -방수제 설계
1999	-용수로CAD시스템 -ACAD -바른물길 -HDSP -구조해석프로그램 -최적장비선정·조합 P/G개발	-영산강Ⅲ-1의 2	-용배수로, 평면도, 종횡단도, 구조해석 -최적장비 선정

다. 기대효과

- 설계자동화에 의한 시간단축, 인력절감 및 비용절감
- 성과품 신뢰성 제고 및 구조물 호형도 표준화 구축
- 설계기술력 향상, 설계의 표준화로 합리적이고 일관된 설계 가능

□ 농지조성사업의 기술자문회의 · 심의회 운영

가. 추진 배경

- 대규모 간척사업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
- 사업중 발생하는 제반중요사항에 대한 각계 전문가 자문

나. 추진 내용

- 기술자문회의 구성 현황
 - 대외위원 : 71명(대학교수, 관련전문가 등)
 - 대내위원 : 42명
 - 기 타 : 업무관련 실무자 등
- 기술자문회의 개최 현황(새만금지구)

지구명	연도별	주요내용	처리결과
새만금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과량 검증을 통한 방조제 높이 재검토 ○ 끝막이 바다보호공 파괴방지 대책검토 ○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이용한 최적공정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조제 단면 변경 ○ 준끝막이와 경계부위 보강 ○ 공정계획에 반영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끝막이 계획 및 지형변화 대책 ○ 지형변화를 최소화 하기위한 끝막이 구간의 바다보호공 시공방법 ○ 방조제 도로계획고 조정방안 ○ 수리모형실험 추진내용 및 공사추진과의 연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끝막이구간 변경 ○ 평탄시공지침 마련 ○ 도로승상 계획에 반영 ○ 수리모형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가력배수갑문 APRON보강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시행계획 검토 ○ 제4호방조제 끝막이 구간 위치 변경 ○ 방조제 도로승상계획 검토 ○ 4호방조제 설계과량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내용 반영 ○ 계획보완 반영 ○ 4호방조제 종점부 승상 ○ 설계과량 재산정
	'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곽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 ○ 수리모형실험 추진현황 및 계획 ○ 환경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 '97.제1차 자문사항 처리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사항 반영 ○ 수리모형실험 실시 ○ 환경관리계획에 반영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현안사항 ○ 새만금사업의 환경친화적 개발방안 ○ 외곽시설 공정계획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개발시 반영 ○ 끝막이전 신시배수갑문 조기완공으로 변경

○ 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연도별	건 수	추진 내용
계	15	
1995	3	○ 화옹지구 외곽공사 '95계획보완(안) ○ 영산강Ⅱ·Ⅲ-2지구 '95계획보완(안) ○ 새만금지구 '95계획보완(안)
1996	3	○ 새만금지구 가력배수갑문 설계계획(안) ○ 화옹지구 설계변경(안) ○ 시화간척농지개발사업 1공구(방수제) 세부설계계획(안)
1997	3	○ 새만금지구 '97계획보완(안) ○ 시화지구 내부개답 기본구상(안) ○ 새만금지구 어도변경(안)
1998	5	○ 고흥지구 서남해안간척사업 (Ⅱ)공구 배수개선(안) ○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기전공사 입찰방법(안) ○ 새만금지구 '98계획보완(안) ○ 새만금지구 신시배수갑문 기전공사 ○ 새만금지구 '98계획보완안(2차)
1999	1	○ 새만금지구 '99계획보완(안)

다. 추진효과

- 기술적 오류방지를 통한 완벽한 사업추진
-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인 억제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신공법 도입 및 신기술의 적용

가. 추진배경

- 현지여건에 부합한 시공방법 개선
-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기술력 향상에 기여
- 최신 해양조사측량장비, 전산장비, 조사자료처리 S/W를 도입
- 신속·정밀한 해상측량 자동화 시스템 구축

나. 추진내용

○ 신공법·신기술 도입 현황

연도별	지구별	주요내용	비고
1995	새만금	○ 해상측량 자동화시스템 도입	
	화 용	○ 공사용덤프 적재함의 자동개폐장치 설치 ○ 조위관측용 수압식 전파수위계 설치 ○ 배수갑문 특수거푸집(SIMONS MAX-A-FORM)제작사용	
1996	새만금	○ 선착장 사석경사제 공법 적용 (선박접안 유리) ○ 「GEONAV(외업용)+GEOCOMP(내업용)」 컴퓨터이용	
	화 용	○ 배수갑문 교량동바리공, 특수제작설치 ○ 방조제 성토세굴방지 수제공 설치	
1997	새만금	○ 방조제 측구 및 암거 시공방법 개선 ○ 제2호방조제 2호가적장 및 선착장 변경 ○ 해상측량 전산화시스템(31백만원 절감)	
	화 용	○ 최신 GPS측량시스템 도입 ○ 복주머니형 돌망태 포설	
1998	영산강II	○ 환경친화적인 아스콘매트공법 적용	
	새만금	○ 유발줄눈 설치 공법 개선 ○ 신시석산 규격석 생산증대를 위한 발파공법개선	
	화 용	○ 화옹지구 끝막이공사 수리모형시험 결과 적용	
1999	새만금	○ 바다보호공 돌망태 연결 투하 공법 개발 ○ 가력배수갑문 교량 조립식 철재 동바리 도입 ○ 전천후 규격석 적재장 설치 ○ 배수갑문 개도 측정시스템 도입	
	화 용	○ 화옹배수갑문 권양기실 가설발판 설치공	

다. 기대효과

-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완벽시공으로 민원감소
- 구조물의 품질고급화 및 질 향상
- 공사의 효율성 도모와 예산절감

□ 사업의 환경친화적 패러다임 구축

가. 추진개요

- 환경친화적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확고한 환경패러다임 구축
- 개발과 보전의 발전방향 모색과 환경마인드 확산

나. 추진실적

- 환경친화적인 사업추진
 - 고흥지구 2공구 간척지내 418ha 인공습지 조성
 - 해남지구 간척지내 50ha 철새도래지 조성
 - 대호간척지의 친환경농업시범모델개발 등(UNDP, 서울대 공동)
 - 만덕지구 수로 갈대숲 조성 등
- 환경친화적인 연구개발
 - 수생식물을 이용한 수질개선기법 연구
 - 갯벌과 논외 수질정화 효과 시험
 - 습지의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연구
- 환경친화적 설계현황

연도별	지구명	환경친화적 설계내역
1998	고 흥	- 인공습지 418ha를 조성하여 갈대 등 수생식물에 의한 농경배수를 정화하고 철새도래지 제공 - 정화수로 조성으로 수로내 식생을 통한 오염물질정화 - 어도설치로 생태계 보존 - 배수장, 용수로, 교량 등의 터파기로 인한 이동토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쉬트파일공법 채택 - 취토장, 복토원 등에 방음, 방진막 설치
1999	영산강Ⅲ-1	- 승수로(4조 0.2km) 자동보, 정화수로 설치 - 배수지선 사면식생보호 Mat 13조 11.65km설치(친환경 생태 여건 조성) - 기존갯골을 최대한 살려 식생저류지로 활용(3개소 15ha)
	시 화	- 자연습지보전지역지정 473ha - 생태공간조서 70ha - 수초저류지조성 65ha - 환경농업시범단지조성 137ha

다. 기대효과

- 지속적인 환경친화적 사업추진으로 국민정서에 부합
- 연구개발 결과를 사업시행에 반영하여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인프라 구축 기여
- 호안생물 서식공간제공으로 조류 및 수생 동·식물의 서식처 확보, 지역주민의 휴식처 및 자연학습장 제공
- 수질정화 및 생태계보전에 기여

□ 간척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가. 추진개요

- 간척농지 분양전 일시경작 시행
- 공업용수 확대공급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 원격조정 자동물관리 시스템(TM/TC)에 의한 수위관리 및 수문조작
- 담수호 수질개선대책 수립 추진

나. 추진실적

- 간척농지의 일시임대경작시행에 대한 영농급수
 - 영산강(Ⅱ)지구 간척농지 489ha를 피해 농어민에게 임대하여 일시경작시행
 - 염분이 많은 간척농지 조기 숙답화 (373kg/10a)
 - 일시경작료 수익으로 시설물유지관리
 - 대호지구 급수면적 6,010ha에 대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 8개 양·배수장 사전정비 및 적기 가동
 - 생육시기별 적정용수량의 공급 및 배수
 - 용수로 236km, 배수로 414km 관리 및 수초, 토사제거
- 공업용수 확대공급 시행
 -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확대공급 지역발전에 기여
 - 공급현황

(단위 : 백만톤)

연 도	지 구 명	공 급 량	공 급 처
1995	대호, 영산강	17	삼성, 현대, 극동정유, 한국수자원공사
1996	“	25	“
1997	“	35	“
1998	“	48	“
1999	“	56	“
계		181	

- TM/TC 운영
 - 홍수 예·경보시설 운영으로 재해예방(금강호·영산호)
- 담수호 자체 수질개선대책 수립
 - 수면사용 동의내용의 이행실태 정기점검(월 1회이상 점검)
 - 가두리 양식장 및 낚시터 수질오염 조사, 불법행위 행정조치
 - 호소별 수면관리자 임명 및 관리카드 비치(환경부 참조)
 - 호소내 부유쓰레기 처리

다. 기대효과

- 쌀생산 증진으로 농가소득증대
- 공업용수 확대공급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 대형농업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절감
- TM/TC 설치운영으로 재해예방 및 깨끗한 물 확보

지표명	2.3 사업목적의 달성도	가중치
		20점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촌용수과 사무관 이봉훈(☎02-504-9406)
 농업기반공사 대단위사업부 2급 이원희(☎0343-420-3239)

평 가 내 용

- 1. 사업목적 달성 정도**
 - 가. 목표설정의 합리성
 - 나. 목표대비 달성도
 - 다.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서비스 개선노력
- 2.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합리성**
 - 가.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 나. 성과평가 결과의 보고 및 사후조치체계의 적정성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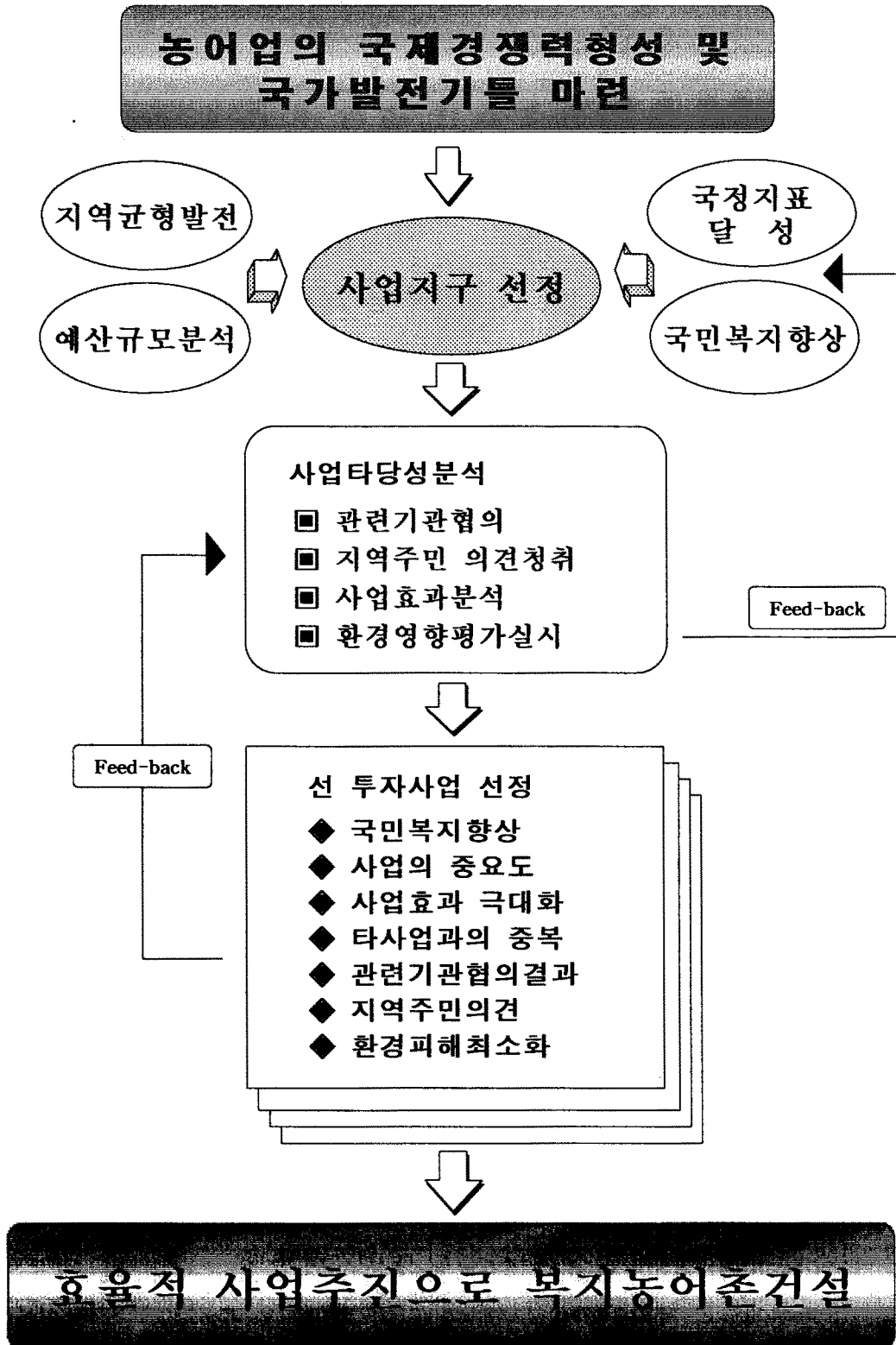
1. 운용 여건

- 분양전 간척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 간척농지 일시경작 시행
- 대형 우량농지조성 및 수자원확보 지속 추진
- 사업성과 평가 관리체계의 수립
 - 성과평가 실시로 사업의 효과 검증

2. 지표관리 방향

- 합리적 공정계획 수립 추진으로 사업효과 조기거양
 - 부분 및 조기완공위주 사업 추진
- 우량농경지 조성 및 수자원 확보로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타사업과의 연계추진으로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계획수립
- 사업목표달성으로 농업정책에 적극 부응
- 평가규정에 의한 공정한 사업평가 및 피드백

3. 지표관리 체계도



II. '95~'99년도 추진실적 요약

1. 사업목적 달성 정도

- 대규모 우량농지조성으로 쌀자급기반 구축
 - 간척농지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달성도는 '99년말까지 48%가 농지조성되었고, 38%가 시행중에 있으며 14%를 앞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총대상면적 : 157천ha, '99까지 : 76천ha, 2000시행중 : 60천ha
- 간척지 일시경작시행으로 쌀증산 추진
 - 일시경작지침 기준마련 및 대상자 지정
 - 경작면적 : 23,122ha, - 식량 증수량 : 94,638톤
- 간척지 분배추진으로 재투자 재원확보
 - 간척농지 조기분배로 농가소득증대 및 영농규모화 추진
 - 매각면적 : 1,074ha, - 매각금액 : 656억원

2.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합리성

-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
 - 환경변화에 대응한 개선노력
 - 간척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추진방식의 정책방향 정립·추진 및 대규모 간척계획 철회
 -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
 - 경쟁력 강화, 기술력향상 등을 위해 신공법을 도입하고 신기술 적용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 미비점 발굴보완 및 평가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추진방향 정립
- 성과평가 관리의 합리성
 - 사업시행시 도출된 문제점을 타지구에 적용 등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평가내용

1. 사업목적 달성 정도

1. 목표설정의 합리성

□ 사업목표 설정

- 간척사업은 서남해안에 산재한 간척지를 대상으로 총 간척농지 개발 대상지 157천ha를 목표로 하여 추진
- '99년도까지 완료된 농지조성사업은 76천ha이며, 2000년현재 60천ha를 조성중에 있고, 앞으로 21천ha를 새로이 농지조성할 계획임.

□ 목표설정의 합리성

- 최근 갯벌의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갯벌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간척농지 조성목표를 대폭 축소 조정하였음.
 - 앞으로 추진할 신규 간척농지조성 대상면적 21천ha는 총대상면적 157천ha의 14%에 불과
- 간척사업을 새로이 착수하는 것보다 이미 방조제를 막거나 막은 지구 등 시행중인 간척지구를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보전대책도 아울러 수립·시행하고 갯벌이 황폐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중·소규모로 시행하는 등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음.

2. 목표 대비 달성도

□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으로 쌀자급기반 구축

가. 추진배경

-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으로 인한 농경지 잠식으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영농규모화와 과학영농이 가능한 집단화된 신규 우량농지를 확보
- 주곡(쌀)의 자급기반 확보 및 남북통일 대비 식량수요 대처
- 대규모 우량농지조성을 통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제고

나 추진실적

- 간척농지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달성도는 '99년말까지 48%가 농지 조성되었고, 38%가 시행중에 있으며 14%를 앞으로 시행할 예정임.

(단위 : ha)

구 분	총대상면적	'99까지준공	2000시행중	개발예정지
계	156,666 (100%)	75,738 (48%)	59,854 (38%)	21,074 (14%)
○ 정부시행	116,477	35,549	59,854	21,074
- 대 단 위	55,665	14,865	40,800	-
- 서남해안	60,812	20,684	19,054	21,074
○ 민간시행	40,189	40,189	-	-

- 유희토지개발사업은 최근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므로 시범사업으로 3개 지구를 시행하였으며, 그 중 1개지구(심원지구 : 폐염전 농지조성)는 완료, 2개지구는 공사중에 있음.

(단위 : ha)

시도별	지구별	면적 (ha)	사 업 비 지 원					사업기간
			계	'98까지	'99실적	2000계획	2001이후	
계	3지구	176	213	1	30	51	131	
충남	증장	131	174	1	29	37	107	'98~2001
경남	산촌	45	39	-	1	14	24	'99~2001
전북	심원	49	27	27	-	-	-	'97~'98

다. 기대효과

- 대규모 우량농지조성을 통한 쌀자급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증대
- 인구증가 및 산업발전으로 인한 토지수요에 대처
-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제고

□ 수혜자(농업인)의 만족도와 서비스 개선 노력

- 농지조성사업은 간척지나 유희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면서 농업용수를 확보해 주고, 도로와 용·배수로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한 후 수혜자(실경작농업인)에게 분양하므로 수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임.

- 사업시행자는 농지조성사업이 끝나서 경작농업인에게 분양하게 되면 관련시설을 포함한 유지관리책임을 농업기반공사에 이관하게 되며, 농업기반공사는 영농기에 시설과 용수관리를 담당하게 됨.
- 농업기반공사는 「농어촌연구원」을 통해 물관리 방식의 개선과 현대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서비스 개선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음.

□ 간척지 일시경작시행으로 쌀증산 추진

가. 추진배경

- 농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간척지 내부공사가 완공된 간척농지를 관련법에 따라 사업준공 인가시까지 일시적으로 이용케 함으로서 식량증산 및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기여

나. 추진내용

- 일시경작지침에 의한 대상면적 및 지역, 대상자를 선정 추진
- 일시경작지침 기준 마련 시행 (매립지 관리 및 분양규정)
- 연도별 일시경작시행 실적

연도별	지구별	일시경작 지정		생 산 량		비 고
		면적(ha)	세대수	총수량(M/T)	경작료(백만원)	
계		23,122	34,327	94,638	11,429	
1995	영산강Ⅱ	3,471	6,705	13,314	1,521	
	대 호	3,846	3,953	12,151	1,388	
1996	영산강Ⅱ	3,575	6,906	14,895	1,770	
	대 호	3,854	3,990	16,410	1,949	
1997	영산강Ⅱ	3,577	6,906	15,647	1,859	
	대 호	3,847	3,998	18,565	2,206	
1998	영산강Ⅱ	463	901	1,832	496	
1999	영산강Ⅱ	489	968	1,824	240	

다. 기대효과

- 일시경작 시행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일시경작료의 부과징수로 농지관리기금 수입 증대
- 불법경작 방지로 집단민원 사전예방

□ 간척지 분배추진으로 재투자 재원확보

가. 추진개요

- 간척농지 조기분배로 농가소득증대 및 영농규모화 추진
- 매각대금 수익발생에 따른 농지관리기금 상환 재원확보로 농지조성 사업의 활성화

나. 추진실적

- 분양대상 면적

구분	계			답			잡종지 등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계	1,525	2,527	1,074	1,504	2,338	1,025	21	189	49
지정분양	1,525	2,360	1,031	1,504	2,329	1,020	21	31	11
공개경쟁	-	167	43	-	9	5	-	158	38

- 매각결과

매각면적 (ha)	세대수	세대당 면적 (ha)	평당단가 (원)	매각금액 (백만원)
1,074	1,637	0.5~11	20,200	65,603

다. 기대효과

- 농경지 조성으로 농가영농규모 확대 및 소득증대
- 농지분배요구에 부응한 민원해소
- 영농의욕 고취로 쌀생산 증대
- 매각대금수익 발생으로 농지관리기금 상환재원 확보
- 매각대금을 10년간(3년거치 7년 균등상환, 년리5%) 분할 납부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1.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

□ 환경변화에 대응한 개선노력

- 간척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추진방식의 정책 방향 정립, 추진
 - 사업시행 전·후에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주민·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사후환경영향을 조사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마련에 주력
 - 방조제 건설 등에 따른 자연환경변화와 담수호 수질대책 추진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간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범정부 차원의 수질보전대책을 수립·추진
 - 간척사업을 대규모보다 중·소규모로 추진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방식이 정착될 때까지 신규착수를 억제하고 시행중인 간척지구에 집중투자하여 사업효과를 조기 거양하는데 노력
 - 간척지에서의 생태계보전·복원을 위한 토지이용방안 및 친환경모델 개발
 -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대체농지를 조성할 수 있는 폐염전, 폐양식장 등의 유휴지를 농지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
- 갯벌보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성이 없거나 대규모인 간척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간척대상면적 축소·조정 : 402천ha → ('95년) 208천ha → ('98년) 157

□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

- 전산 대중화에 따른 사회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능률과 경쟁력 향상, 완벽한 시공을 위해 전산·자동화하는데 노력
- 대규모 간척사업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회 운영
- 경쟁력 강화,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신공법을 도입하고 신기술을 적용

2.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 미비점을 발굴하여 보완

- 사업추진과정에서 계획 또는 시공상 도출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책 강구·보완
- 간척농지개발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추진전략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추진방향 정립

3. 성과평가 관리의 합리성

- 농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 등 여러 가지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간척을 철회하는 등 앞으로의 간척방향을 정립
- 여러 가지의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 꾸준한 연구와 대책 강구로 보완해 나가면서 사업전반(타 지구)에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운영이 되도록 추진

여 백

다. 농지 정보화 사업

- 농지원부전산화
- 농촌지형정보구축
- 진흥지역상세도면작성
- 농지지번도 전산화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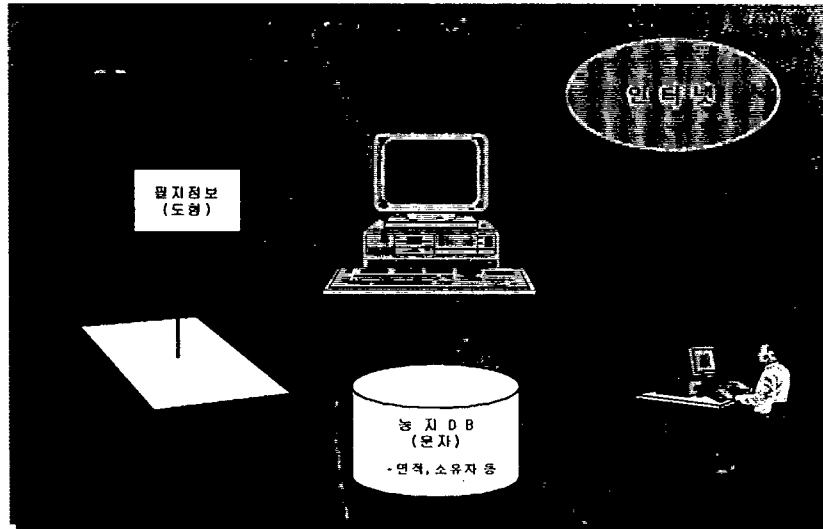
지표명

2.1 사업선정의 타당성

가중치

15점

- ♣ 지표관리부서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윤명중(☎02-503-7265)
농업기반공사 사업정보부 2급 이석태(☎0343-420-3207)



평가내용

1. 기금 설치목적과의 적합성

- 사업목적과 기금 설치목적의 부합

2. 예산 및 타기금과의 사업중복

- 예산 또는 타 기금의 유사사업 존재
- 본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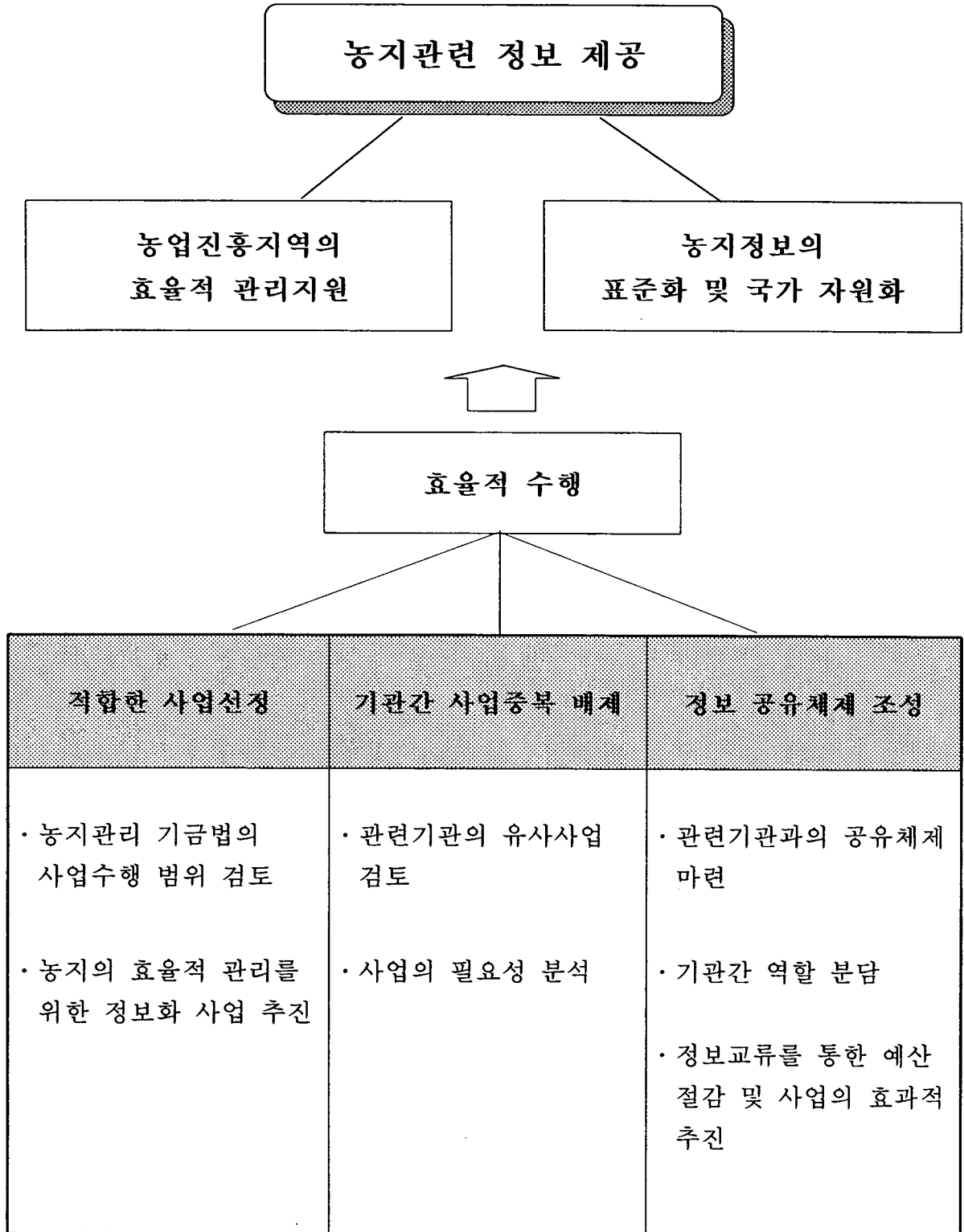
1. 운용 여건

- 일선 행정기관의 농지관리업무 증가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업무, 불법 전용 단속 등
- 산업화에 따른 농지의 무분별한 잠식 등으로 농지보전 필요성 증대
 - 무분별한 농지 전용 및 공업화에 따른 환경문제 심각
 - 비효율적인 농지관련 행정처리(관련대장, 종이도면 등)
- 농지정책 입안에 필요한 농지정보 제공을 위한 관리체계 요구
 - 영농규모화사업 및 직접지불제 대상농가 선정자료 제공
 - 약정수매 대상농가 선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 농촌관련 공간정보 구축의 필요성 증대
 - 막대한 도면관리 및 정보활용의 한계성
 - 사업별 도면의 중첩 및 사업의 연계 추진 필요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고시도면 및 토지조서 재정비 및 관리
 - 농업진흥지역이 1/25,000지형도로 작성·고시되어 필지별 포함 여부 확인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

2. 지표관리 방향

-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정보화 사업 수행
- 농지관리 기금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선정
- 농지정보화 사업의 중복 배제
-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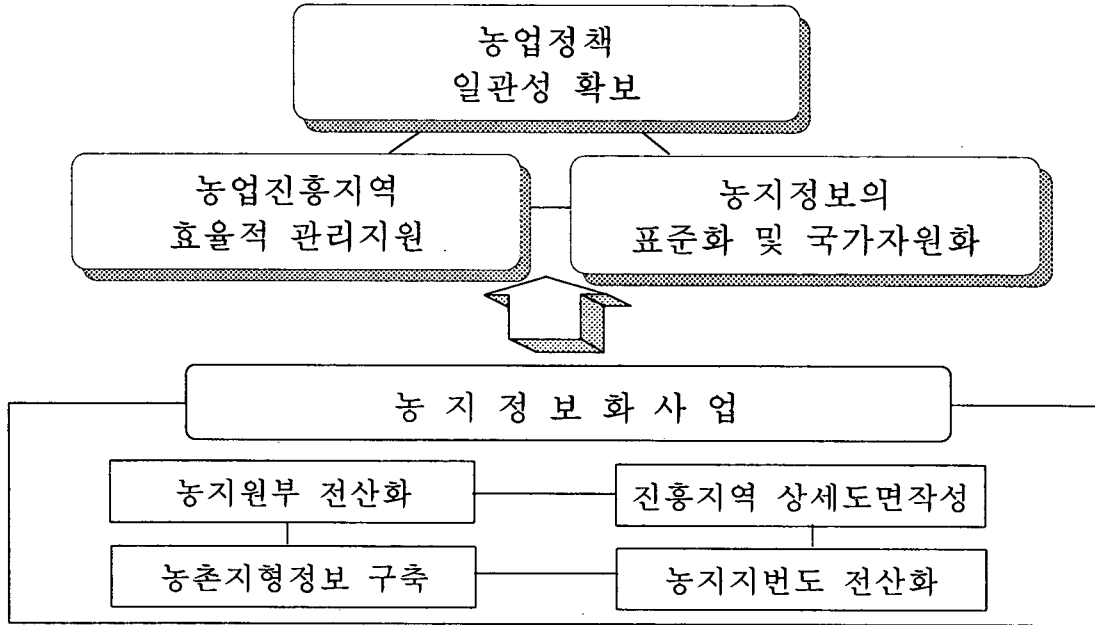
3. 지표관리 체계도



II. '95~'99년도 추진실적 요약

사업기금 설치목적과의 적합성

□ 사업목표



□ 농지정보화사업 시행 근거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1조

예산 및 타 기금과의 사업중복

□ 사업의 중복성을 배제토록 사전검토 연계성 구축

- 농지정보화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산 및 타기금과의 사업중복성을 피하고 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 호환토록 구상하고 농지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자료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 관련기관의 사업을 조사·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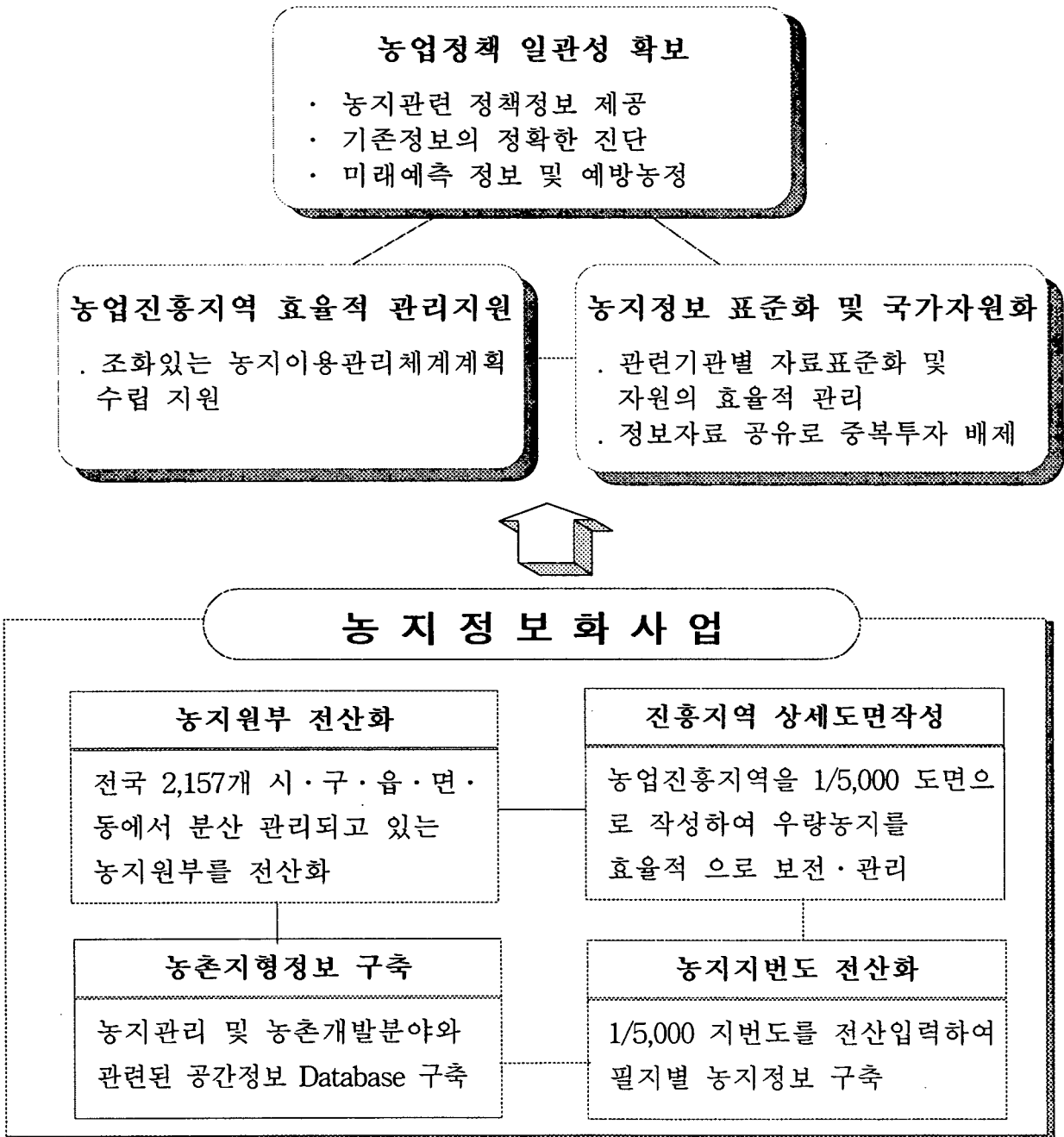
□ 자료공유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노력

- 농지정보화사업은 관련기관의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농지관리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예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생산성을 높이고 정부부처간 업무협력체제 유지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농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 토지관리정보체계와 연계추진
 -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 지원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평가내용	사업기금 설치목적과의 적합성
------	-----------------

1. 사업 목적



2. 농지정보화사업 시행 근거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1조

- ① 항 농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및 홍보
- ② 항 농업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한 자료수집 및 관리
- ③ 항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기술지원
 - 농업진흥지역지정·관리 규정 제12조

3. 설치목적과의 적합성

농지관리기금으로 시행중인 본 사업은 농지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사업으로 농지관리기금법의 사업종류와 기금의 용도에 적합함.

1. 사업의 중복성을 배제토록 사전검토 연계성 구축

농지정보화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산 및 타기금과의 사업중복성을 피하고 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 호환토록 구상하고 농지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자료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 관련기관의 사업을 조사·분석하였음.

2. 관련기관의 유사사업 현황

가. 국가GIS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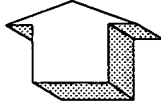
사 업 명	사 업 대 상	사업기간	비고
지형도 전산화	- 1/1,000 지형도(78개 도시) - 1/5,000 지형도(산악지역을 제외한 전국) - 1/25,000 지형도(산악지역)	'95~'99년	
주제도 전산화	- 시계획도, 도로망도, 국토이용계획도, 지형지번도, 토지이용현황도, 행정구역도	'98~2000년	
지하시설물도 전산화	- 상·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 난방열관, 송유관 등 7개 시설물	'97~2000년	
GIS 기술개발	- Mapping기술, GIS기본S/W기술, DB 틀 기술, GIS시스템통합 및 응용S/W기술 등	'95~2000년	
GIS 인력양성	- 장기적으로 대학(원)에 관련학과를 신설하고 우수연구기관 지원 - 단기적으로 중앙교육기관 설치	'95~2000년	
GIS 표준화	- 디지털지정 표준, DB구축내용 표준,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 Mapping tool 표준	'95~2000년	
지적도면 전산화	- 전국 지적·임야도면(702,372) 전산화	'98~2002년	
공공GIS활용 체계 개발	- 토지관리정보체계, 토양자원정보시스템,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지하수지리정보시스템, 지질정보관리시스템	'98~2001년	
지하시설물 관리 체계 개발 시범사업	- 과천시 시가화 구역(21.25km ²)	'96~97년	

나. 기타 유사사업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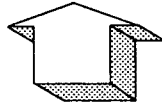
사업 구분	토지관리정보체계	지적도면전산화	시군구행정정보화
사업주체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시행주체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추진기간	'98~2001(예정)	'99~2003(예정)	'99~2002
사업내용	지번도(748,000매) 전산화 - 도형자료 위주	지적도(748,000매) 전산화 - 도형자료 위주	토지지적, 농촌, 환경, 보건복지 등 시군구단 위 모든 민원사무 통 합전산망구축 - 문자정보위주
사업비	2,200억원	1,058억원	1,002억원
재원부담	국가·지방 공동부담	국가·지방 공동부담	국가·지방 공동부담

3.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농지정보의 표준화 및 국가자원화로
전산화 효율증대 및 비용절감



정보 공유에 따른
정확한 현황 파악 · 분석 · 진단으로
최적의 정책자료를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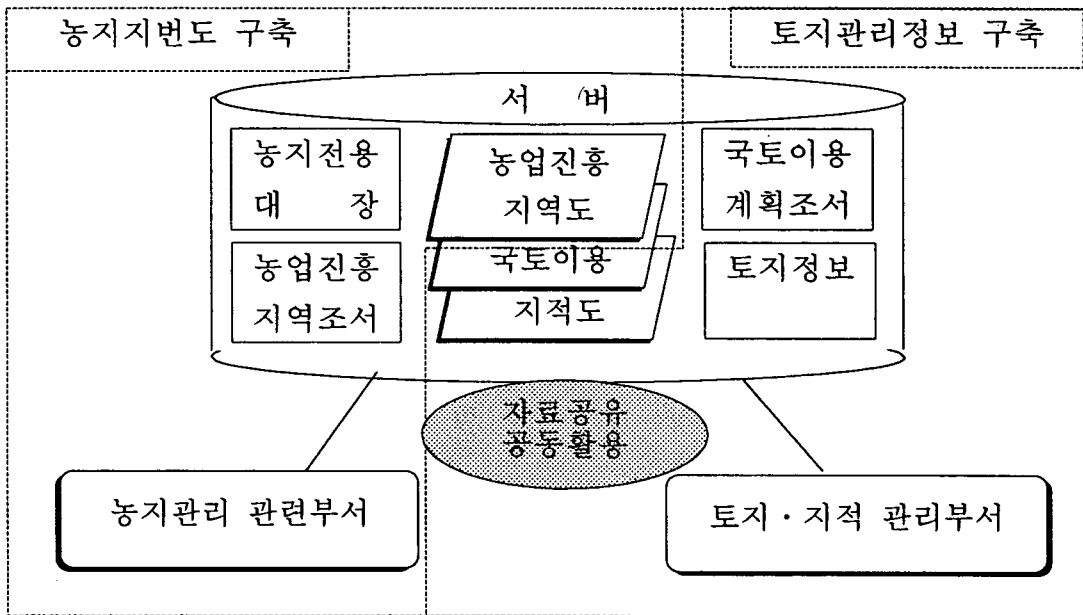
농어촌의 실상	정보체계 미흡으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	관련기관별 유기적 협조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 증대 · 지역별 농지이용계획 미비 · 지역간 불균형 투자 · 환경오염문제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자료 및 행정 처리업무 증가 · 자료매체 이용방법 제약에 따른 계통확인불가 및 자료의 사장화 · 수작업에 의한 업무효율 저하 · 사용자별 다양한 요구정보제공 기능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전산화추진에 따른 자료통합 및 공유관계 불확실 · 연관사업의 집중투자 정도 파악 곤란 · 다양한 중첩분석 곤란

4. 자료공유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노력

농지정보화사업은 관련기관의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농지관리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예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생산성을 높이고 정부부처간 업무협력체제 유지 및 정보 교류를 통하여 농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가. 토지관리정보체계와 연계추진

□ 구축 및 활용체계



□ 추진경위

- 1999. 10 : 건교부(토지관리정보체계)와 1차 연계협의회 참석
 - 자료공유 필요성 설명
- 1999. 11 : 건교부(토지관리정보체계)와 2차 연계협의회 참석
 - DB설계 내용 및 기관별 역할 분담협의
- 1999. 11 : 지방자치단체 사업설명 및 자료 공유협의
 - 전북 순창군 등 7개 시·군
- 1999. 12 : 건교부로부터 연계추진협의 구성 요청
 - 관련호 : 건교부 토관58300-1751('99.12.30)

□ 기대효과

○ 자료의 불일치 해소 및 일관성 확보

농업진흥지역도와 국토이용계획용도간의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불일치지역 발생하는데 논리적인 문제를 도출한 후 공동(농림부, 건설교통부)으로 해결하여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신뢰성 있는 민원업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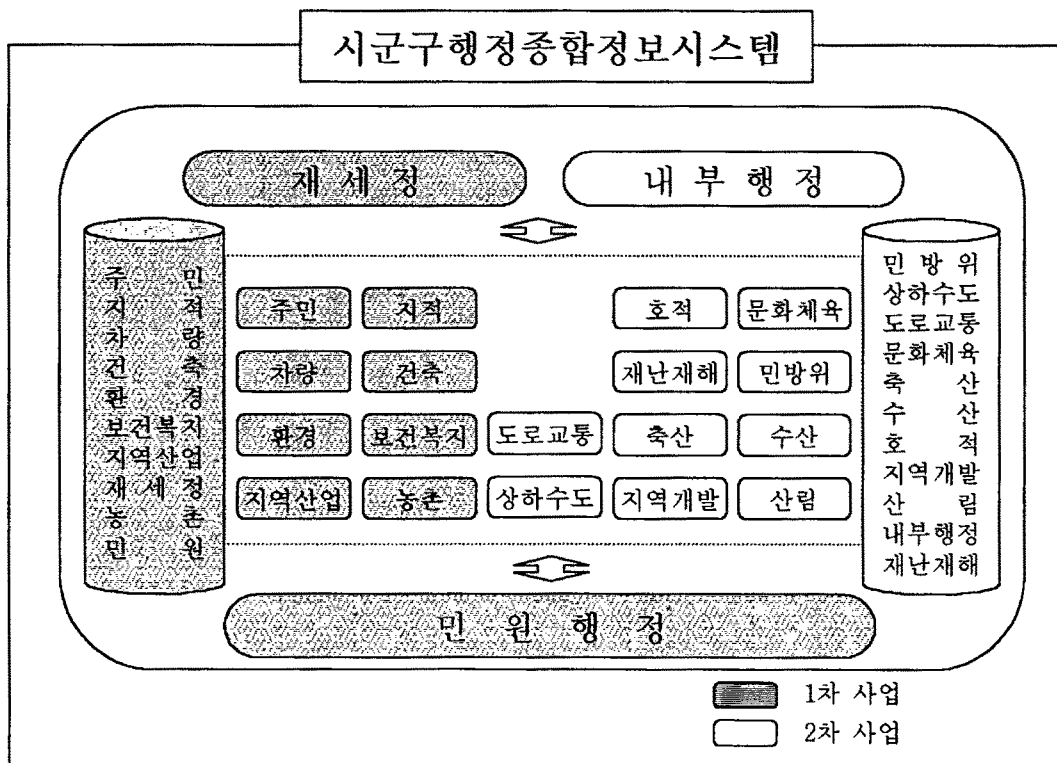
○ 사업대상지역 공동 선정으로 효과 극대화

농지지번도사업 대상은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 중인 지역을 선정하여 업무추진 및 사업효과를 극대화.

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효율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
- 주관기관 : 행정자치부
- 사업대상 : 232개 시군구
- 사업예산 : 4,105 백만원
- 사업내용(1단계) : 지적, 환경, 보건복지, 지역산업, 농촌, 민원, 주민, 건축, 차량, 재세정 등의 정보시스템
- 시스템 내용



□ 지원업무

농지정보자료를 5개 파일(농가, 가족, 소유농지, 임차농지, 농지조서)로 자료 변환처리하여 파일로 제공

- 지원부처 : 행정자치부
- 지원사유
 - 시군구 종합행정정보화시스템을 조기 정착하기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는 전국 농지정보시스템 DB자료를 전환 후 설치행정기관에 제공토록 행정자치부·농림부와 협의하였기에 이를 이행하기 위함.
- 지원경위
 - 1차지원(1999. 6) : 4개 시범 시·군·구
 - 2차지원(1999. 11) : 20개 시범 시·군·구
- 자료지원내역

(단위 : 건)

구 분	총자료량	농가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	임차농지	농지조서	행정기관수
계	3,995,398	171,477	432,779	1,621,056	149,030	1,621,056	227
1차 지원	729,752	33,460	91,822	288,697	27,076	288,697	53
2차 지원	3,265,646	138,017	340,957	1,332,359	121,954	1,332,359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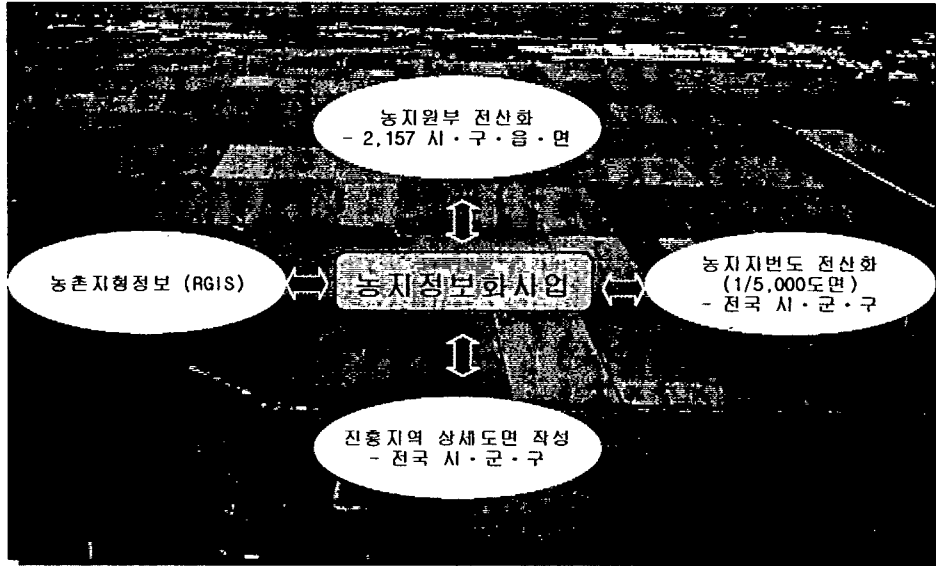
□ 향후 Data 지원 계획

- 210개(실제 208개) 시·군·구의 확산적용계획이 2000년 9월 완료예정 이므로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단 요청에 의거 자료지원 예정
- 확산 시·군·구 확대계획의 2개월전 사전통보에 의한 변동자료수거 철저로 자료지원효과 증대
- 1999년 data지원 24개 시군구는 일선행정기관에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의 농촌행정시스템에 변동자료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농업기반공사의 PC용 농지정보시스템과의 data연계 및 유지관리(추출 P/G개발 및 상호 자료보완 등)

여 백

지표명	2.2 사업운영의 적정성	가중치
		15점

♣ 지표관리부서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윤명중(☎02-503-7265)
 농업기반공사 사업정보부 2급 이석태(☎0343-420-3207)



평가내용

1. 사업대상선정의 타당성

-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 결정과정의 투명성
- 선정기준의 합리성
- 선정기준 적용의 합리성

2. 사업내용의 합리성

-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및 조치
- 사업활동과 사업목적의 연속성

3.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 효율성 평가지표와 관리체계의 합리성
- 효율성 제고 실적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1. 운용 여건

- 일선 행정기관의 농지관리업무 증가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업무, 불법 전용 단속 등
- 산업화에 따른 농지의 무분별한 잠식 등으로 농지보전 필요성 증대
 - 무분별한 농지 전용 및 공업화에 따른 환경문제 심각
 - 비효율적인 농지관련 행정처리(관련대장, 종이도면 등)
- 농지정책 입안에 필요한 농지정보 제공을 위한 관리체계 요구
 - 영농규모화사업 및 직접지불제 대상농가 선정자료 제공
 - 약정수매 대상농가 선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 농촌관련 공간정보 구축의 필요성 증대
 - 막대한 도면관리 및 정보활용의 한계성
 - 사업별 도면의 중첩 및 사업의 연계 추진 필요
- 농업진흥지역 대한 고시도면 및 토지조서 재정비 및 관리
 - 농업진흥지역이 1/25,000지형도로 작성·고시되어 필지별 포함 여부 확인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

2. 지표관리 방향

- 농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상 업무의 적절한 선정
- 환경변화에 따른 농지정보화 사업의 적절한 대응
- 농지정보의 활용과 기금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분석
- 농지정보화 사업의 추진체계 구성과 역할 분담 정립

3. 지표관리 체계도

농지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화 구축



- ◎ 농지정보화 대상 업무의 적절한 선정
- ◎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농지정보화 사업 선정
- ◎ 사업추진체계 정립과 전문분야별 역할 분담의 적절한 수행

대상업무의 적절한 선정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	사업목적의 합리성 확보	기관간 역할분담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사업에 부합한 업무선정 · 사업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평가표를 통한 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정보화 추세 반영 · 사업이해 당사자들의 요구 및 기대사항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업무별로 사업활동 분석 · 관련기관간 정보 공유 노력 · 구축된 정보의 적극적 활용 및 사업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한 구성 ·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수행

II. '95~'99년도 추진실적 요약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 사업대상

사업별	선정사유	대상업무
농지원부	○ 전국 일선행정기관(시·구·읍·면)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농지원부(143만 농가)를 전산화	- 전국 143만 농가 - 전국 1,550만 농지(전·답·과수)
농촌지형정보	○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세부 실천계획, 농업기반시설관리계획, 시·군 농지이용계획, 국가지리정보 구축계획등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농촌 관련 개발계획수립과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전국 농지관리 및 농어촌 개발관련 도면자료 20종
진흥지역상세도면	○ 농지면적이 3,000ha이상 시·군·구 ○ 1/5,000 지번도 작성 시·군·구 우선시행	- 전국농업진흥지역 농지 690만 필지
농지지번도전산화	○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 업무	- 농업진흥지역관리 - 농지전용

□ 농지정보화 업무 선정의 타당성

- 사업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평가기준을 설정하였으며 평가결과 농지원부 전산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GIS, CAD정보의 기반조성후 진흥지역 관리를 위한 농지지번도 전산화 사업을 수행하였음

사업내용의 적합성

□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 및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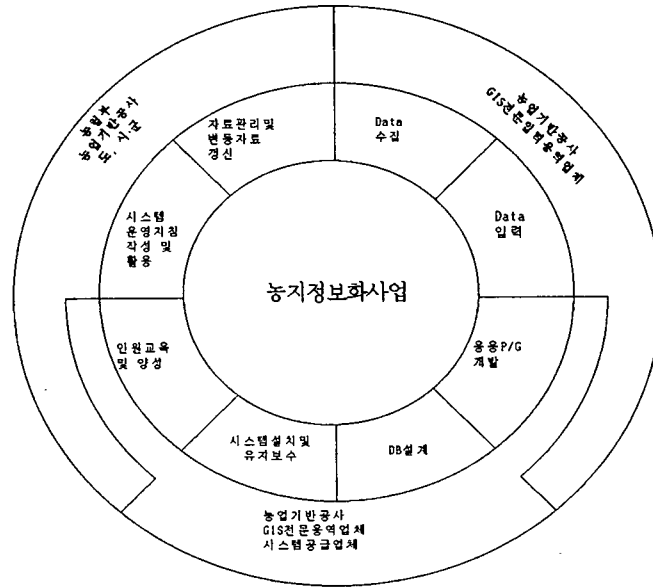
요구 및 기대사항	대응조치
○ 농지DB등 전산정보를 정책수립에 이용	○ 농지전산 DB구축을 조기('94.12)완료하여 전략 자원화
○ 실경작자 확인 및 소유자 확인 민원서류 대체 활용	○ "
○ 농촌지형정보시스템 구축 과학적인 자료 활용	○ 연차적 계획으로 구축하여 자료의 표준화 및 국가자원 공유화에 도모코저 계획

□ 사업별 사업활동

사업명	대상업무	사업활동
농지원부	농가일반사항 관리	· 농가일반사항 변경신청 접수 · 농가일반사항 변경 정리
	농지이동관리	· 농지이동 변경신청 접수 · 농지이동 정리
농촌지형정보	농정자료 제공	· 농업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농지이용계획수립 지원자료로 활용 ·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정책에 대한 대농어민 설득력 제고에 활용
진흥지역 상세도면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 정비	· 고시도면(1/25,000 지형도)중 오류부분 수정, 고시후 변동사항 표시
농지지도 전산화	농업진흥지역관리 및 농지 전용	· 농업진흥지역 자료 구축 · 응용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관리 - 농지전용 업무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 사업추진체계와 역할분담 정립



□ 농지정보화사업 효율성 제고 실적

- 관련기관과 연계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각 기관별 정보의 공유 노력
 - 환경부 보유 위성영상 자료 취득
 - 농림부 ↔ 한국자원연구소 GIS 자료 공유 추진
 - 농림부 ↔ 농촌진흥청 GIS 자료 공유 추진
- 농촌지형정보의 전략적 활용실적
 - 국토개발연구원 등에 농업진흥지역도 등 20종 41,045매
- 농지원부 Database 운영개선 노력
 - 농지 DB 운영개선
 -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P/G 설치 및 변동자료 출력배부
- 원격탐사 신기술 도입으로 표준화된 농업정보 제공 기반조성
- 중앙전산개발 및 정보이용경진대회 참석
- 감사원 감사결과 수범사례선정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평가내용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	---------------------

1. 사업대상 선정기준

사업별	선정사유	대상업무
농지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일선행정기관(시·구·읍·면)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농지원부(143만 농가)를 전산화하여 농가 및 농지에 대한 종합정보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43만 농가 - 전국 1,550만 농지 (전·답·과수)
농촌지형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세부실천계획, 농업기반시설관리계획, 시·군 농지이용계획, 국가지리정보 구축계획등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농촌 관련 개발계획수립과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시설물관리 등에 활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지역발전연구원 등에서 농촌에 관련된 연구추진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농지관리 및 농어촌 개발관련 도면자료 20종
진흥지역 상제도면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면적이 3,000ha이상 시·군·구 - 농지법 제13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의거 향후 농지정보화 구축에 대비 농지이용계획과 연계하기 위함. ○ 1/5,000 지번도 작성 시·군·구 우선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농업진흥지역 농지 690만 필지
농지지번도 전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 관리 - 농지전용

2. 농지정보화 관련업무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조사 내역

조사기관		조사내용
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 활용업무 조사
농 업 기 반 공 사	정보관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관리 업무파악을 위한 관계자료 수집 • 공사보유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파악 • 시스템 활용현황 및 향후 계획사항 파악 •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
	영농규모화사업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정보 활용자료 조사 • 농지원부에 추가할 항목조사 • 농가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실시 요령
	총무관리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 직업훈련 교육자료 • 서식, 장표명세서
	농어촌환경개선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개요
	지사 및 군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 농어민 직업훈련 추진일정 및 조치계획 • 농어민 직업훈련 현황 • 농가원부 작성시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

조사기관		조사내용
외 부 관 련 기 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원부 양식에 대한 검토 • 시범지역 조사자료 분석
	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관리정보체계 • 지가전산도면전산화 사업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원부 관련항목 검토 • 농지정보 시스템과 연계사항 검토를 위한 협의 •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 지적도면전산화사업
	토지개발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토지 상세설계서(안) • 경영정보시스템 기본계획보고서
	한국 데이터 통신 한국 전자계산(주) ORACLE KOREA 다우기술 금성사 삼성전자 한국 IBM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동 코드자료 입수 • 전산망 R성을 위한 참고자료 조사 • DBMS에 대한 소개자료 조사 • H/W 장비의 성능 및 가격정보 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삼성생명 농촌진흥청 철도청 전산망 조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망 구성형태 조사 • 자료처리의 유형조사 • 구성 H/W의 성능 및 특성조사 • 국가기간 전산망 추진현황 자료조사
	전산업 협동조합 한국전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원부 자료천공을 위한 소요기간 및 소요경비 산출자료 조사

3. 농지정보화 업무 선정의 타당성

가. 기준의 설정

사업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 평가기준을 설정하였으며 평가결과 농지원부 전산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GIS, CAD정보의 기반조성후 진흥지역 관리를 위한 농지지도 전산화 사업을 수행하였음.

□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평점	평가 기준
업무의 중요도 및 활용도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할 업무 정책적 요구도가 강한 업무 활용도가 높게 기대되는 업무
업무량 및 처리빈도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동 데이터량이 대량인 업무 정기적,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정형화한 업무 업무처리상 시간적 제한을 요하는 긴급한 업무
시스템 개발 용이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화한 투자대 효과가 높은 업무 전산화에 의한 기존 업무체계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업무 기개발 활용되고 있는 S/W의 적용이 용이한 업무 업무체계가 정형화되어 문제점 및 요구사항의 도출이 용이한 업무
업무개선 효과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처리의 시간적 단축이 가능한 업무 업무 처리상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업무
파급 효과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외 이미지 제고가 기대되는 업무 정책결정의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업무 기타 경제적, 관리적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업무
총 점	50점	

□ 타당성 평가 등급

등급	평 점	비 고
A	40점 이상	• 전산화가 시급한 업무
B	30점 ~ 39점	• 전산화가 필요한 업무
C	20점 ~ 29점	• 전산화의 필요성이 약한 업무
D	19점 이하	• 전산화가 불필요한 업무

나. 평가결과

구분	등급	업 무 명	비 고
대상 업무	A	농지원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도, 활용도, 정책성, 효과등 전 부문에서 전산화 필요도 강함
		농어민 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용도, 요구도 시급성이 높음 전산화시 업무처리 시간 단축효과 강함
	B	농지매매 농지 구입자금 지원 농지 장기 임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사업시행 활용도, 요구도 높음 전산화시 업무처리 시간 단축효과 높음 직업훈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급성 낮음
		간척, 개간 농지매매 영농 복귀지원 농지교환 분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사업시행 활용도, 요구도 높음 데이터량이 적음 (점차 발생량 적어짐)
비대상 업무 (향후 고려 업무)	C	전업(專業)농 해외연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 예정업무로 개발 용이성 낮음 사업시행시 활용도 있음 향후 대상업무의 필요성 있음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공단지 조성 농지 재개발 정주생활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D 정보 필요로 개발용이성 낮음 농지원부 통계로 기초정보 활용 가능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전산 활용도 낮음

다. 평가내역

업 무 명	업무의 중요도 활용도	업무량 처 리 변 도	시스템 개 발 용이성	업 무 개 선 효 과	파급 효과	총점	등급
농지매매	9	7	7	8	7	38	B
농지구입 자료지원	8	6	6	8	7	35	B
농지 장기임대차	8	7	6	8	7	36	B
장기임대차 간척, 개간 농지매매	7	4	5	8	6	30	B
영농복귀 지원	7	4	5	8	7	31	B
농지교환,분합	7	4	5	8	6	30	B
전업농 해외연수지원	7	5	5	6	6	29	C
농어민 직업훈련	9	8	8	9	8	42	A
농업진흥지역 지정	7	5	5	5	6	28	C
농공단지 조성	7	4	4	5	6	26	C
농지 재개발	7	4	4	5	6	26	C
정주생활권 개발	7	5	5	5	6	28	C
농지원부 관리	10	10	7	9	10	46	A

1.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 및 조치

가. 대내외 환경 분석

□ 환경분석

구분	주요변화 및 향후전망	대응조치
일반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통제식에서 자발적인 지방자치 제 방법 - 능동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참여 ○ 선진경제권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경제발전 유도 - 지속적 연구개발 발전 ○ 정보화분위기 확산 및 성숙화로 편의시설 강구 ○ 전산업의 급격한 발전 - 상대적 낙후 우려 ○ 농업인의 생활의식 수준 향상 - 사업의 질적, 양적 고급화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행정기관과 긴밀한 관계유지로 치 밀한 계획, 분석으로 급변하는 국내정 세에 능동적으로 대처 - 지속적인 연구, 개발 축척과 선진기술 도입 보급 및 기술발전 - 전산교육으로 전산마인드 조성 - 신기술 및 신장비 도입과 국·내외 기 술 연수 전문 인력 양성
경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의 합리성과 질의 고급화 ○ 정보화사회 종합대책 수립 추진 ○ 정책개발 및 통제조사 등 영상화면 을 통한 과학적인 최적 계획 - 신뢰성 및 체계적인 계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정보의 집중투자개발로 계획의 질 향상 -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정보시스템구축 - 농촌지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농정의 일관성 확보 및 농정자료의 표준화 국 가자원의 공유화

□ 이해당사자 분석

구 분	요구 및 기대사항	대 응 조 치
<p>정 부 (농림부) (시,군,읍,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DB등 전산정보를 정책수립에 이용 ○실경작자 확인 및 소유자 확인 민원서류 대체 활용 ○농촌지형정보시스템 구축 과학적인 자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전산 DB구축을 조기('94.12) 완료하여 전략 자원화 ○ " " ○연차적 계획으로 구축하여 자료의 표준화 및 국가자원 공유화에 도모코저 계획
<p>사업자 (농업기반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척된 기술력으로 시중 민간기업보다 우수한 성과품 기대 ○노동생산성이 향상된 성과품 요구 및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화 개방화에 대응한 우위성 확보 -모든 축척된 자료를 DB화로 기술 축적 우위성 확보로 서비스 제공 도모 -분산된 자료의 통합DB화로 노동 생산성 향상 -지역 전산중심센터 운영으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p>농업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농업인 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의 양질화 및 신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선행정 기관을 통한 농지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사업관련 P/G의 완벽한 개발과 기준화, 표준화, 전산화로 선진기술도입 보급

나.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 노력

<농어촌관련 통합정보 DB 구축의 필요성 증대>

- 농촌관련 사업에 대한 종합개발 추진시 각 단위사업별로 재원과 시행부처가 다른 연관사업들을 유기적으로 통합, 집중투자개발하고,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함으로써 투자계획의 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하나, 이러한 투자방식의 제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농지정보와 통계 및 정책정보를 통합한 DB 구축과 실제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 개발이 시급함.
- 따라서 농지정보화 구축이 빠른 시간내에 완료되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만 앞으로 전개될 WTO체제의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 농어촌의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농어촌 공간계획이나 농업기반시설관리 정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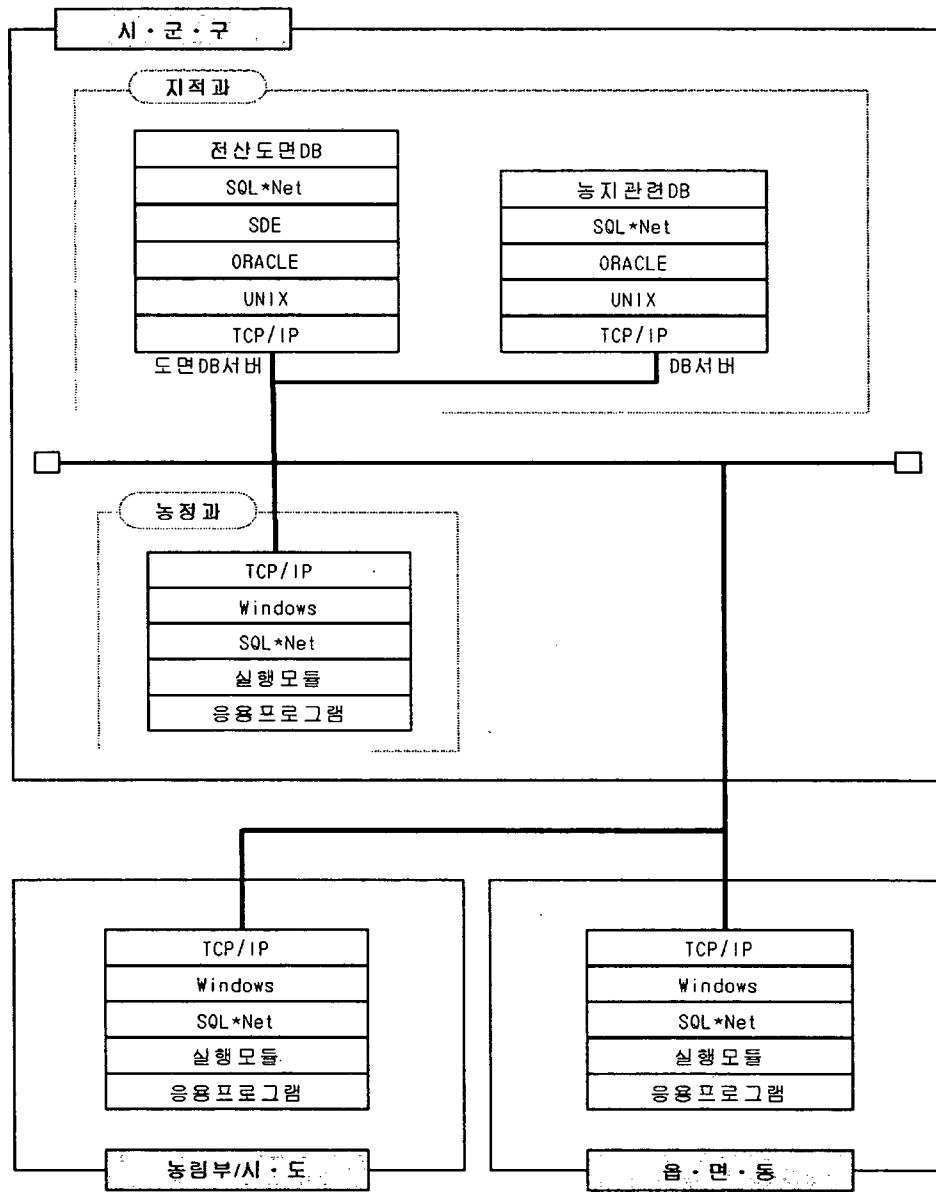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도모하고,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산업유치 등 농업이외 목적을 위한 농지 전용이 계획적으로 실시되도록 하여 농지의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수립하는 각종 농지관련계획, 농어업구조개선 및 생활환경개선을 포함하는 농촌발전계획,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농어촌관련계획 및 농업기반시설관리 등에는 다양한 통계 및 정책정보와 지형정보가 기초가 되어야함.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유사부처의 행정업무에 비해 전산화 정도가 낮음>

- 농지지번도 전산화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도모하고 필지별 농지정보의 전산관리체제 구축

<부처별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중복 투자 발생 우려>

- 관련부처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



<자료 공유 체제로 인한 시스템 환경 변경사항 발생>

- ⇒ 조치 : 토지관리정보체계와 자료 공유하는 체제에서는 Client/Server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관리하여 농지변동에 대한 자료수정 또는 변환작업 없이 실시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사업 활동과 사업목적의 연계성

가. 사업별 대상업무별 및 사업활동

□ 농지원부전산화

대상업무별	사업활동
○농가일반사항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일반사항 변경신청 접수 : 농가일반사항 변경 신청 등록 및 농가일반변동자료 기록화일 등록 · 농가일반사항 변경 정리 : 농가변경처리 및 농가일반 변동자료 기록화일, 농가 기본화일, 연혁화일 등 관련파일정리
○농지이동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이동 변경신청 접수 : 농지이동 신청서 등록 및 농지이동 변동자료기록 파일 등록 · 농지이동 정리 : 농지이동처리 및 농지이동 변동자료 기록부 정리, 농지기본화일, 연혁화일 등 관련화일 정리
○소유권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변경신청접수 : 소유권변경 신청 및 소유권 변동기록 화일등록 · 소유권변경 정리 : 소유권 변경 처리 및 소유권변경 기록 화일정리, 농지기본화일, 소유권연혁화일, 농지 통계화일등 정리
○임대차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 변경신청 접수 : 임대차 변경신청 등록 및 임대차 변경 사무파일 등록 · 임대차 변경정리 : 임대차 변경처리 및 임대차 변경 기록정리 파일정리, 농지기본 파일, 임대차 연혁 파일, 농지통계화일 등 정리
○변동자료 기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자료 기록관리는 농가일반사항, 농지이동, 소유권, 임대차 등의 업무처리로 각 항목별 변동기록정리 화일, 농가 및 농지기본화일, 농지관련 통계화일 등을 정리하고 변동자료 기록결과를 출력하여 작업결과를 대조

□ 농촌지형정보

대상업무별	사업활동
<p>○ 농정자료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농어촌발전대책 등 개발업무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자료로 활용 · 농지이용계획수립 지원자료로 활용 · 농촌 공간DB 제공으로 상위 개발정책수립 지원 ·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정책에 대한 대농어민 설득력 제고에 활용
<p>○ 농지생산기반종합정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이용계획 - 경지정리 - 배수개선 - 농촌용수개발 - 대단위농업종합개발 - 간척자원조사 - 농지생산기반종합정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의 농지이용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제공 · 지역별 농지에 적합한 영농유형 기초자료로 활용 · 시설배치를 위한 적지선정 기초자료로 활용 · 각종 연구 시험업무에 분석도구로 활용 · 경지정리종합관리 기초자료 · 대규모 영농구축을 위한 대필지 경지정리 대상지역 선정자료로 활용 · 경지정리 재개발사업에 활용 · 배수개선 종합관리 기초자료 · 전·답 윤환이 가능한 범용농지 선정을 위한 농지의 물리적 특성 기초자료로 제공 · 농발법 제46조 규정에따라 용수구역고시 및 농어촌용수구역개발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농촌용수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위한 기초자료 · 대단위농업 종합개발사업 현황관리 기초자료 · 간척자원 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한 가장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 · 농지이용계획에 맞는 전국 및 지구단위별 농지생산기반 종합정비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제공 ·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제공

대상업무별	사업활동
○농업진흥지역밖 농지활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지역밖 농지의 영농형태를 찾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 농지의 타용도 전용 요구시 농지의 우량정도 판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시·군의 농지이용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 · 농업진흥지역으로 쌀자급에 부족한 논을 진흥지역밖 농지중에서 확보하여 농지생산기반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지역종합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에 잠재되어 있는 사업별 개발물량 도출자료로 활용 · 업종간, 지역간 중복투자 방지 기초자료활용 · 연관사업에 집중투자정도 파악자료로 활용
○농촌생활환경정비 - 농촌정주생활권 개발 - 집단마을조성 - 농어촌오폐수 처리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 및 군단위 개발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농지생산기반 종합정비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현황관리 자료로 활용 · 집단마을 조성사업 현황관리 자료로 활용 · 농촌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관리 자료로 활용
○지하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개발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 지하수 보전구역 설정시 기초자료 · 지하수 환경영향 조사 기초자료 · 지하수개발 현황자료 관리 및 분석 · 지하수 개발신청시 판단자료
○공통정보 - 지형도 - 지구구분도 - 행정구역도 - 진흥지역도 - 정밀토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e map 기능, 표준화기능 · Base map 기능 · Base map 기능 ·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농지이용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지하배수개선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토양,토질,작목선택 등의 분석자료로 활용

□ 진흥지역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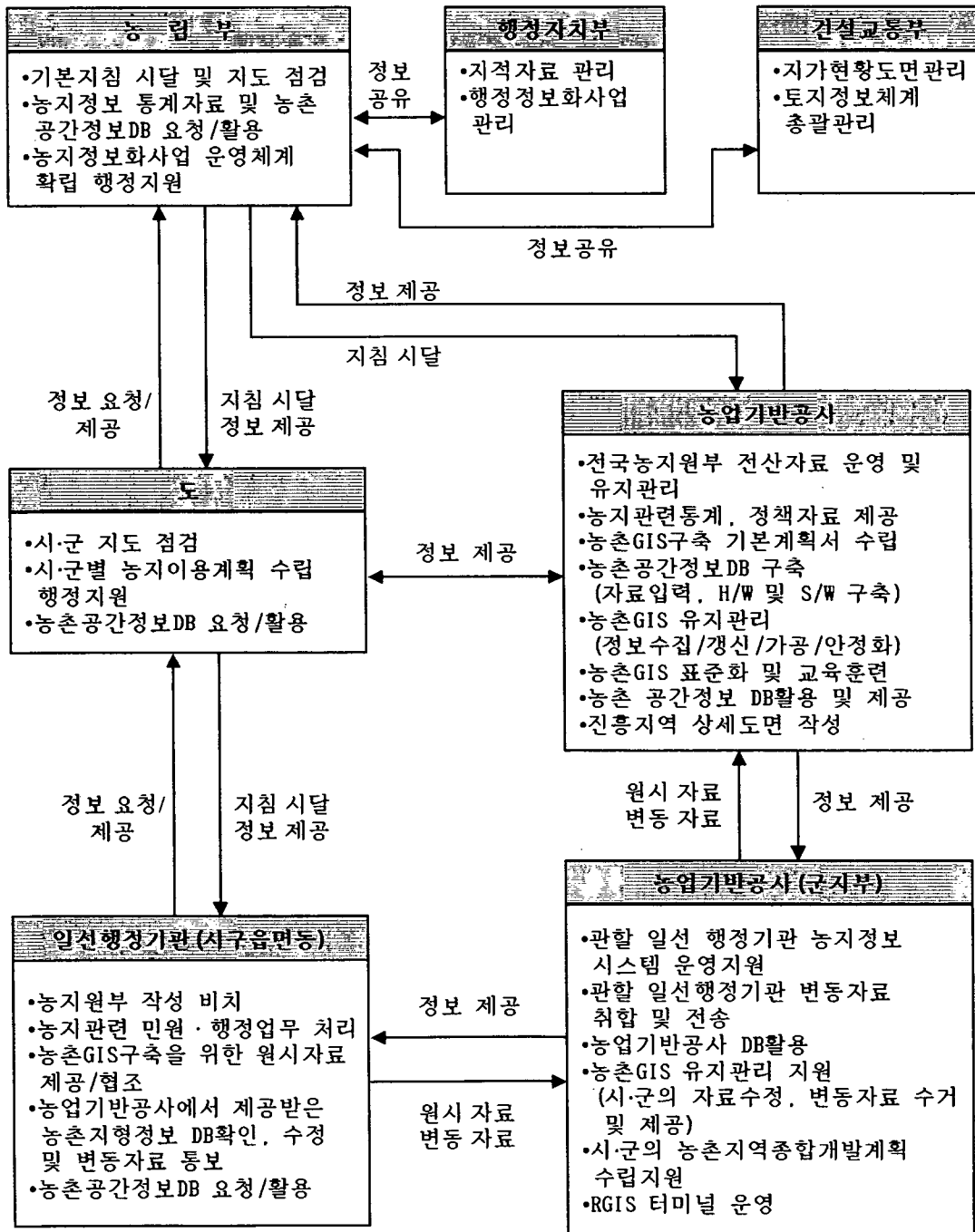
대상업무별	사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도면(1/25,000 지형도)중 오류부분 수정, 고시 후 변동사항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상세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된 1/25,000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을 1/5,000 지번도에 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시도면 구획선 → 1/5,000 지형도에 이기 ② 1/5,000 지형도 구획선 → 1/5,000 지번도에 이기 ③ 1/1,200 지적도와 1/5,000 지번도 비교검토 ④ 토지조서에 의한 편입필지 검색 ⑤ 1/5,000 상세도면(안) 작성 (필요시 현지확인) ⑥ 상세도면 검토·확정 (시·군·구 검토 → 시·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토지조서 재작성 및 DB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 작성(농업기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시·군, 시·도) → 농림부 심사후 확정·고시

□ 농지지번도전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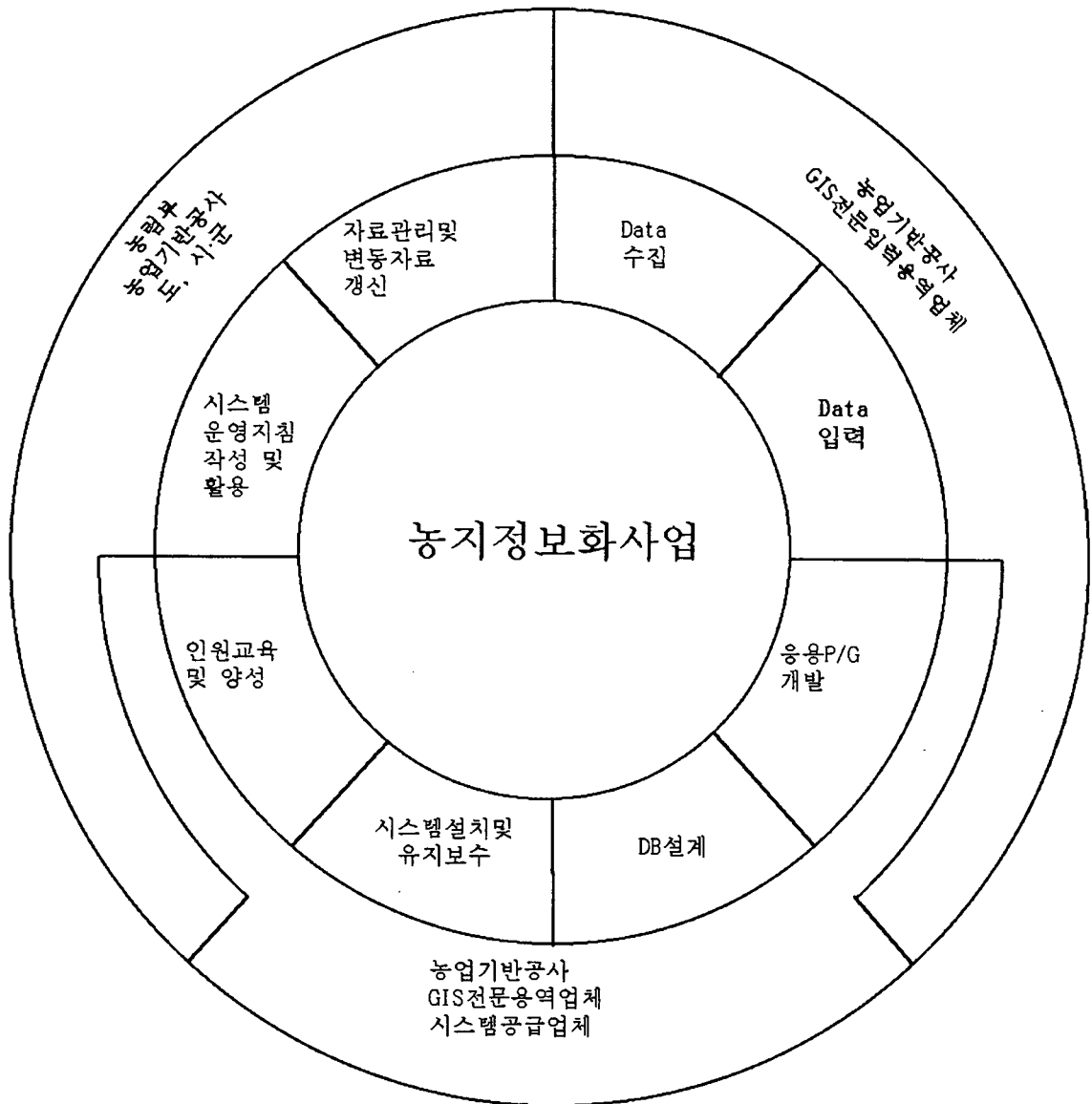
대상업무별	사업활동
○ 전산도면자료공동구축 및 공유체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도면 자료공유 협의 - 건교부, 농림부, 국토연구원, 농업기반공사
○ 농업진흥지역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 자료 구축 - 대상지역 : 충북 진천군 - 구축방법 : 스캐닝하여 도면 전산화 - 입력매수 : 95매 - 축척 : 1/5,000 - 지적도와 대사하여 보완 입력 - 농업진흥지역토지조서 DB 구축 · 응용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관리 - 농업진흥지역 자료검색 - 농업진흥지역 통계현황 - 농업진흥지역토지조서와 지번도를 연계하여 활용
○ 농지의 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용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지전용허가심사업무에 활용 - 농지전용허가 관리 - 농지전용협의 관리 - 농지전용신고 관리 - 타용도일사사용 관리 - 농지전용용도변경 관리 - 농지전용 사후관리에 활용 - 농지전용허가상황보고 자료 출력 - 농지전용대장과 지번도를 연계하여 활용
○ 시범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운영 - 충북 진천군청 및 7개 읍·면사무소 설치/운영 · 농지원부시스템과 연계

1. 사업추진체계와 역할분담 정립

가. 추진체계



나. 역할분담



2. 농지정보화사업 효율성 제고 실적

가. 관련기관과 연계추진협의회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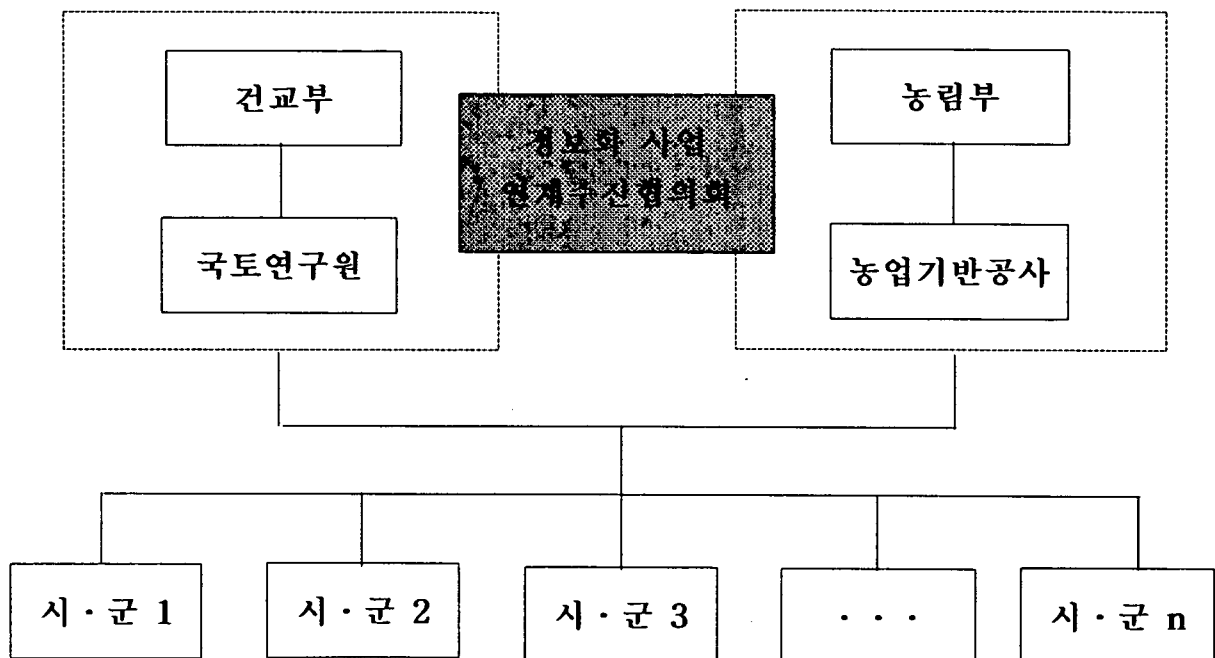
□ 필요성

- 활용빈도 및 대상지역 유사성으로 파급효과 기대
- 자료의 공유 및 중복투자 방지(감사원 NGIS감사결과 권고사항 관련)
- 자료의 불일치 해소 및 일관성 확보
- 자료의 생산·활용·유지관리체계 확립

□ 협의회 구성 목적

- 정보인프라 중복구축 방지 및 데이터베이스 공유방안 도출
- 농지지번도 전산화사업과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연계방안 모색
- 연계추진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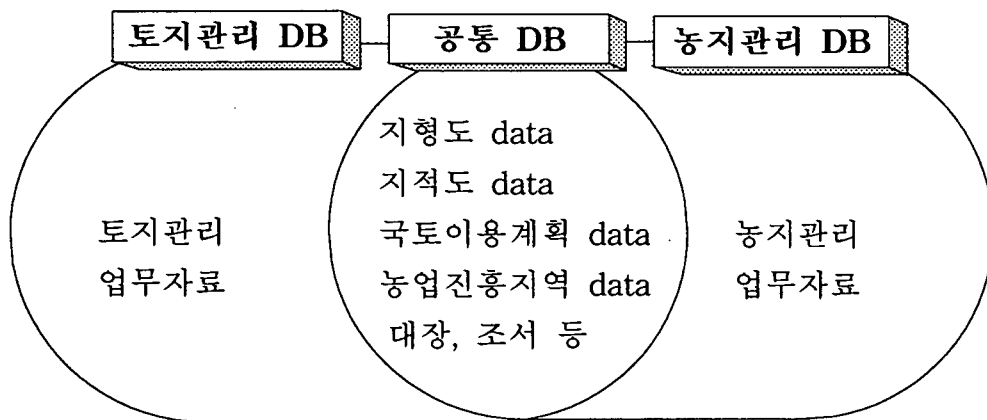
□ 연계추진을 위한 추진 체계



□ 추진 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

- 지형도, 지적도, 국토이용계획도, 농업진흥지역도 등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료를 공유
- 농업진흥지역도는 농지지번도 전산화사업에서 구축하며, 지형도·주제도 등은 토지관리정보체계에서 구축하되, 자료는 공유 또는 공동활용



- 농업진흥지역도는 농지관리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지형도·주제도 등은 토지관리정보체계에서 유지관리
- 국토이용계획도와 농업진흥지역도의 일관성을 확보

○ 응용시스템 개발

- 국토이용계획도와 농업진흥지역도의 일관성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

□ 전산자원 공동활용

- 주전산기 및 민원발급용 PC, 칼라프린터(시·군·구 및 읍·면·동 보급)와 해당 소프트웨어 등 전산자원을 공동으로 활용

나. 각 기관별 정보의 공유 노력

□ 환경부 보유 위성영상 자료 취득

○ 목 적

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성영상 등 GIS관련자료를 취득하여
농어촌지형정보시스템의 도형정보와 연계 활용하기 위함

○ 추진경위

- '98. 12. 22 : 위성자료 등 GIS 관련자료 제공요청
환경부 토지피복분류 기준안 검토회의 참석시
- '99. 2. 9~6. 15 : 자료제공 방법에 대한 1, 2, 3차 협의
- '99. 8. 17 : 환경부 위성영상 등 GIS 자료 취득

○ 자료 취득내용

구 분	위 치	매 수	용 량	비 고
위성영상 자료 등 5종	전국	2,768매	9.7GB	

□ 농림부↔한국자원연구소 GIS자료 공유 추진

○ 목 적

- 농림부와 한국자원연구소 자연재해방재사업단이 보유하고 있는
GIS자료의 공유로 예산절감 및 자료의 활용성 제고

○ 추진경위

- '99. 10.20 : 한국자원연구소를 방문하여 GIS 자료·등 각종 기술
정보에 대한 정보공유 협의
- '99. 11.18 : GIS 자료공유 2차 업무협의
- '98. 11.22 : 한국자원연구소에서 GIS자료 공유 협약 요청

○ 공유방안

- 1단계 ⇨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치지형도와 지질도, 인공
위성자료를 상호교환

기관명	공유자료명	축척	매수	비고 (총매수)
농림부	지형도	1:50,000	239매	등고, 수계, 도로, 행정경계
한국자원연구소	지질도	1:50,000	227매	(363매)
		1:250,000	13매	(13매)
		1:25,000	6매	(132매)
		1:1,000,000	1매	(1매)
	소 계	247매		
인공위성 (레이다 영상)	18M×18M	40매	JERS [일본위성]	

- 2단계 ⇨ 보유하고 있는 지형도 이외의 수치지도와 한국자원연구소 자연재방재사업단에서 보유 또는 구축예정인 GIS자료의 공유

□ 농림부↔농촌진흥청 GIS자료 공유 추진

○ 목 적

-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GIS자료의 공유로 입력비용 절감 및 자료의 활용성 제고

○ 추진경위

- '98. 7. 6 : 농촌진흥청에서 수치지형도 제공요청
- '98. 7. 16 : 농촌진흥청에서 구축한 토양도등 각종 기술정보의 공유 방안협의

○ 공유방안

- 1단계 ⇨ 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치지형도와 정밀토양도를 상호 교환

기관명	공유자료명	매 수	축 척
농림부	지형도 (등고, 수계, 도로, 행정경계)	239매	1:50,000
농촌진흥청	정밀토양도	1,559매	1:25,000

- 2단계 ⇨ 농림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형도이외의 수치지도와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GIS자료의 공유

다. 농촌지형정보의 전략적 활용실적

연도별	요청기관명	목적	자료제공내역	
			주제도명	대 수
'98 이전	농촌경제연구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 기준연구	농업진흥지역도 등 6종	650
	국토개발연구원	한정된 국토와 농지의 효율적 관리연구	지형도 등 11종	611
	환경부	전국토지이용분류 연구	농지이용현황도 등 7종	5,327
	전국 시·군	농업진흥지역고시 및 농지이용계획 수립	농업진흥지역도 등 7종	5,327
	농촌진흥청	토양자원 정보전산시스템 개발	지형도	239
	전국 시·군	영농조건 불리지역 추출	농지이용계획도 등 2종	1,000
	국토개발연구원	수도권 정비를 위한 공간구조 개편연구	농업진흥지역도	25
	농림부 자체이용	농어촌지역개발관련 연구 등	행정구역도 등 14종	10,014
'9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 기준연구 중 농업적성도 조사·분석부문연구	정밀토양도 등 6종	650
	충청남도	안면도 종합 개발 계획	농지능력 구분도 등 5종	32
	농업기반공사 설립위원회	농업기반공사 설립업무 중 지역 사무소설치를 위한 기초 자료	농업진흥지역도 등 3종	1,169
	강원대학교 농공학과	소양강 유역 환경 연구	토양도	34
	서울대학교 농공학과	대구획 경지종합정보 기본계획수립	지형도 등 11종	42
	환경부	토지피복분류	지형도 이미지	239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GIS를 이용한 병해 방제연구	지형도 등 4종	130
	기상연구소	광릉수목원 주변의 지리 정보시스템 구축	하천수계도 등 5종	12
	농촌경제연구원	충북지역 농업종합발전 계획수립연구	지형도 정밀토양도	136
	농림부 자체이용	농촌용수구역 지하수 환경 재해 대책사업 등	농촌용수구역도 등 15종	15,408
계			농업진흥지역도 등 20종	41,045

라. 농지원부 Database 운영개선 노력

□ 농지DB 운영개선

○ 개요

- 전국 일선 행정기관에 분산된 농지원부의 종합적 전산관리로 농가 및 농지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90년부터 연차적으로 입력한 전산자료를 보완하여 자료의 내실화와 실용화를 조기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
- 농지정보시스템(PC용) 사용자 지침서 배부 및 P/G 운영교육
- 농지정보시스템(PC용) 변동자료 처리 요령교육을 실시하였음.

○ 농지정보시스템(PC용) 사용자 지침서 배부

- PC용 농지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 농지 DB 운영을 위한 지부 Data설치 및 교육

- 교육목적 : 농지정보 자료의 내실화 및 실용화를 하기 위함
- 교육내용 : 농지정보 PC용 시스템 운영방법 및 시스템 데모
- 교육인원 : 농업기반공사 9개 지부 167인

□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P/G설치 및 변동자료 출력배부

○ 변동자료 보완입력

업무구분	단위	업무량		증감
		계획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보완 - 농가변동 - 가족변동 - 농지변동 	건	-	250,309	
		-	128,555	
		-	1,716,590	
계		-	2,095,454	

○ 농지조서 출력배부

업 무 구 분	단 위	업 무 량		증 감
		계 획	실 적	
○ 변 동 자 료 출 력 배 부				
- 경 기 도	매	135,588	135,588	200
- 강 원 도		64,781	64,781	-
- 충 청 북 도		68,792	68,792	-
- 충 청 남 도		119,720	119,720	-
- 전 라 북 도		109,625	109,625	-
- 전 라 남 도		169,785	169,802	17
- 경 상 북 도		180,603	180,603	-
- 경 상 남 도		151,612	151,612	-
- 제 주 도		16,630	16,630	-
- 6 광 역 시		50,661	50,661	-
계		1,067,797	1,068,514	717

○ 농지정보 PC용 프로그램 및 Data 설치

업 무 구 분	단 위	업 무 량		증 감
		계 획	실 적	
○ PC용 시 스템 설 치	기관			
- 경 기 도		50	122	72
- 강 원 도		32	110	78
- 충 청 북 도		30	77	47
- 충 청 남 도		40	60	20
- 전 라 북 도		38	155	117
- 전 라 남 도		27	171	144
- 경 상 북 도		64	221	157
- 경 상 남 도		52	75	23
- 제 주 도		7	11	4
계		340	1,002	662

마. 원격탐사 신기술 도입으로 표준화된 농업정보 제공 기반조성

□ 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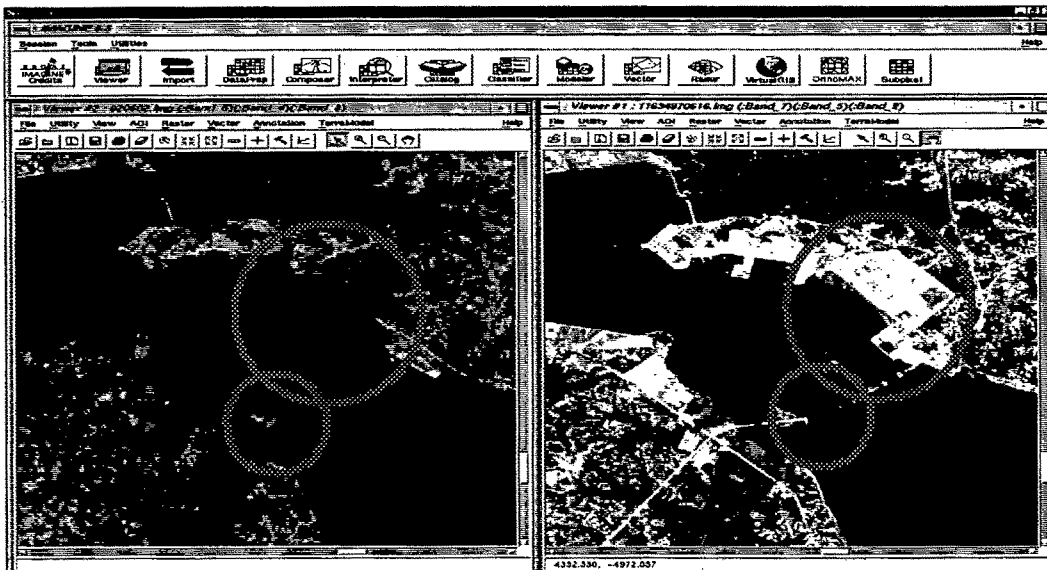
- RGIS 도형자료와 위성자료 연계를 통한 농지관련 정보 분석
- 농지에 관련된 표준화된 고품질 정보 제공

□ 업무범위

- 원격탐사 실용화
- 관련기관과 자료공유
- 대내외 자료제공

□ 추진실적

- 원격탐사 실용화 : 사업대상지구의 지형분석 간척지 및 담수호 환경오염 모니터링
- 관련기관과 자료공유 : 환경부, 한국자원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소
- 대내외 자료제공 : Landsat 위성영상 21매 (Full Scene)



〈원격탐사를 이용한 아산만부근 변화추이분석 '92.6(좌), '97.6(우)〉

□ 추진효과

- 광범위한 사업대상지역의 체계적인 분석으로 표준화된 정보제공
- 농업토목 분야의 신기술 도입으로 기술경쟁력 우위확보
- RGIS 도형자료와 위성자료 연계를 통한 농지관련 정보 분석
- 농지에 관련된 표준화된 고품질 정보 제공

바. 중앙전산개발 및 정보이용경진대회 참석

- 일 시 : 1998.10.29
- 장 소 : 행정자치부
- 참석대상 :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 목 적 : 전산자원 확대 보급에 따른 정보 활용능력 극대화 및
업무 전산화로 생산성 향상
- 출품내용 : 농지지번도전산화 시스템
- 수상내역 :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 주관기관 : 행정자치부

사. 감사원 수감결과 모범사례 선정

연도	수감기관	수 감 사 항	조 치 사 항
'94	감사원	지형정보전산화 기술축적으로 예산절감	모범수범사례
'99	감사원	자료공유 추진으로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	모범수범사례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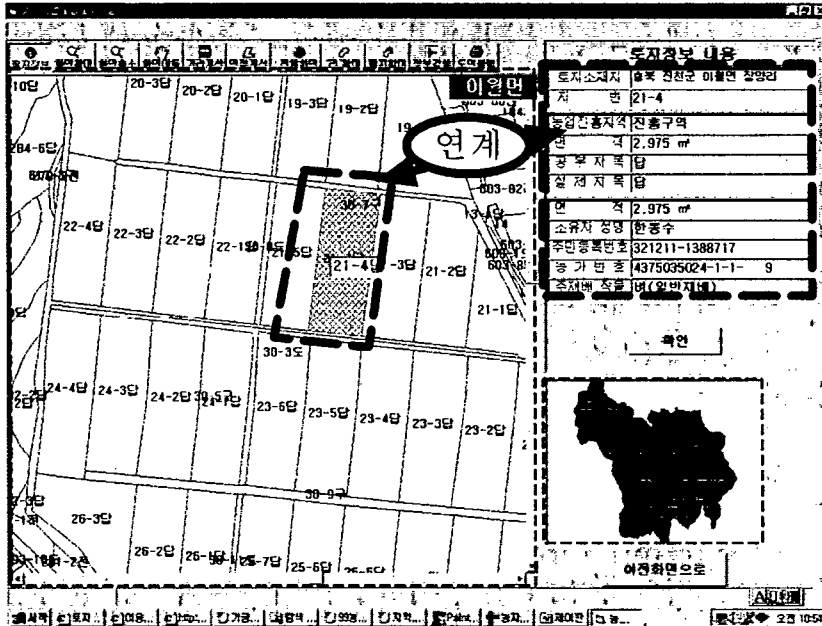
지표명

2.3 사업목적의 달성도

가중치

15점

- ♣ 지표관리부서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윤명중(☎02-503-7265)
농업기반공사 사업정보부 2급 이석태(☎0343-420-3207)



평가내용

1. 사업목적달성정도

- 목표설정의 합리성
- 목표 대비 달성도
-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서비스개선 노력

2. 성과평가관리체계의 합리성

- 성과 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 성과평가결과의 보고 및 사후조치체계의 적정성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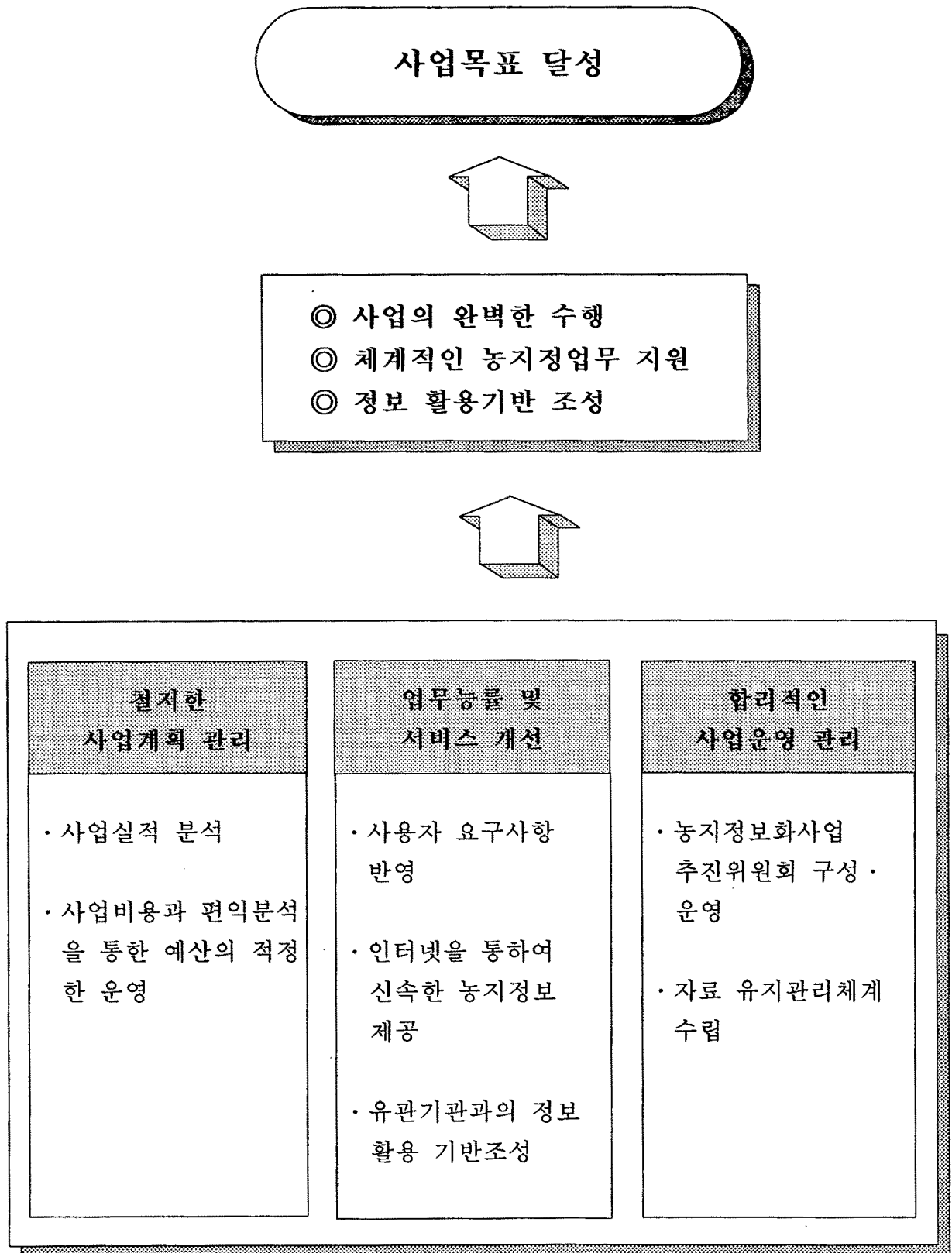
1. 운용 여건

- 일선 행정기관의 농지관리업무 증가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업무, 불법 전용 단속 등
- 산업화에 따른 농지의 무분별한 잠식 등으로 농지보전 필요성 증대
 - 무분별한 농지 전용 및 공업화에 따른 환경문제 심각
 - 비효율적인 농지관련 행정처리(관련대장, 종이도면 등)
- 농지정책 입안에 필요한 농지정보 제공을 위한 관리체계 요구
 - 영농규모화사업 및 직접지불제 대상농가 선정자료 제공
 - 약정수매 대상농가 선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 농촌관련 공간정보 구축의 필요성 증대
 - 막대한 도면관리 및 정보활용의 한계성
 - 사업별 도면의 중첩 및 사업의 연계 추진 필요
- 농업진흥지역 대한 고시도면 및 토지조서 재정비 및 관리
 - 농업진흥지역이 1/25,000지형도로 작성·고시되어 필지별 포함 여부 확인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

2. 지표관리 방향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운영 관리 철저
- 대농민 및 일선행정기관 농지정보제공으로 농정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
- 농지정보화사업 홍보를 통한 농촌정보화 인식제고
- 사업관리 체계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 사용자 요구사항 및 업무개선에 따른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 및 운영 지원

3. 지표관리 체계도



II. '95~'99년도 추진실적 요약

사업목적 달성 정도

□ 목표대비 달성도

- 예산 집행 실적

연도별	사업별	계	'95	'96	'97	'98	'99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계	계획	13,023	1,964	2,000	2,948	4,511	1,600
	실적	11,771	1,648	1,632	2,491	4,411	1,589
	%	90	84	82	84	98	99

- 사업목표 대비 분석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목표달성 제고
 - '95년(84%)→'99년(99%) 달성도 상향화(↑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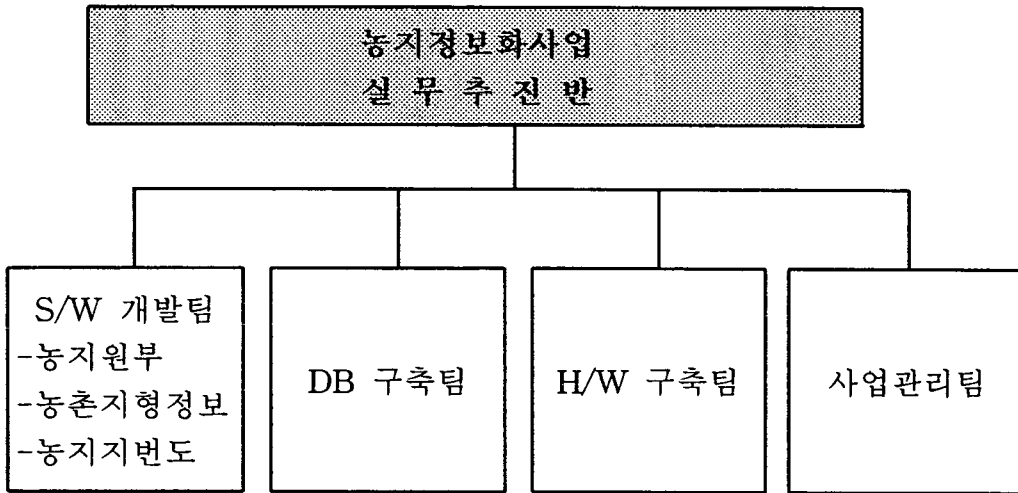
□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서비스 개선노력

- 일선 행정기관 PC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 설치
-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정확도 제고 노력
 - 정비기간 : '98.1-12 (1년간)
- 농지정보시스템으로 행정기관 민원처리 활용
- 고객 만족을 위한 P/G 및 DATA 수정보완 · 설치지원
- 농지정보 자료갱신을 위한 DATA 교류
- 농지정보화시스템의 원활한 자료 구축운영을 위한 Y2K 해결노력
- RGIS 웹서비스시스템 개발로 대농민 및 일선 행정기관 농지정보제공
- RIGS 통합운용시스템개발로 일선 행정기관 활용기반 조성
- 시군 행정기관 시연회 개최 및 중앙단위의 전시회 참가로 사업 홍보
 - 유관기관에 대한 농촌지형정보시스템 설명회 개최
 - 농업기반정보기술 설명회 전시
 - GIS 주제도 활용에 관한 주제 발표
 - 대농업인 및 유관기관 홍보용 리플렛 발간 배부
 - 농지지번도전산화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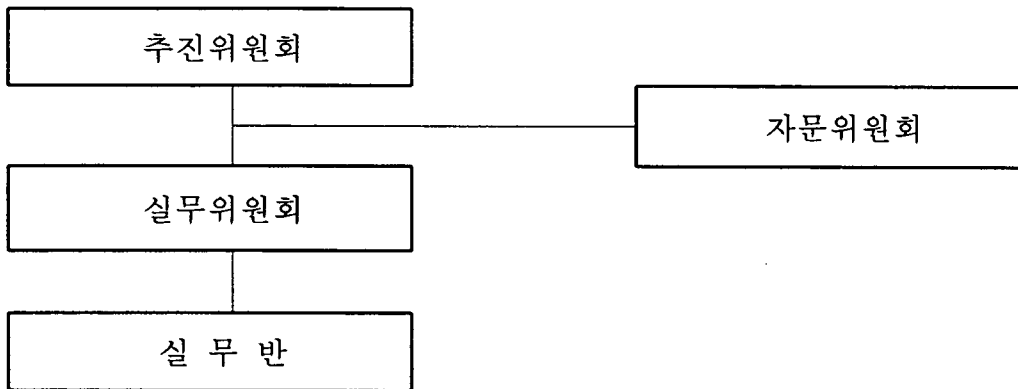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합리성

□ 사업관리체계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노력

- 농지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계획은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음.
 - 조직 및 업무분장



- 추진위원회 구성



- 자료구축 후 유지관리체계 수립
 - 방대한 자료의 처리, 자료의 항상성 및 최신자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의 갱신과정이 필요

□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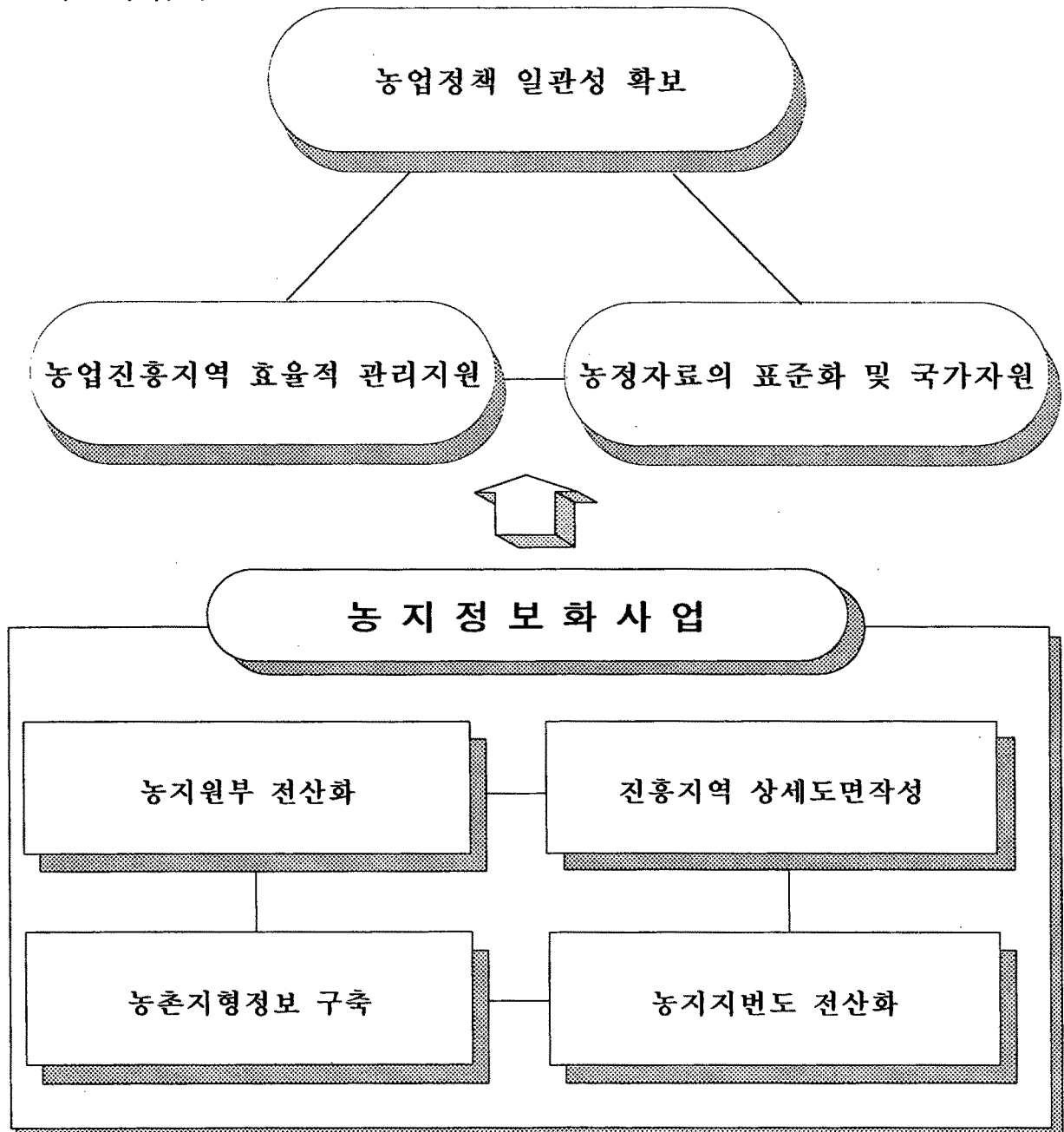
- 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 응용프로그램 보완
 -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 및 운영 지원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평가내용	사업목적 달성 정도
------	------------

1. 목표설정의 합리성

가. 사업목표



나. 단계별 사업추진전략

단 계 별	내 용
1단계 (기반조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원부 입력 및 P/G 개발 ○ 국내외 GIS기술 개발현황 및 이용실태분석 ○ 진흥지역 상세도면 작성 ○ 농촌지형정보DB 구축을 위한 시스템 도입 ○ 농촌관련 정보DB구축 ○ 농지지번도 필지별 정보구축 ○ 시범사업 추진
2단계 (활용보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정보DB 보급 및 P/G 업무활용 ○ 시구읍면동 농지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지도 ○ 변동자료 유지관리 및 P/G 보완설치
3단계 (정 착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정보망 구축을 통한 타기관과의 정보공유

2. 목표대비 달성도

가. 사업추진 실적

사 업 명	사 업 실 적
농 지 원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화 내용 : 전국 143만 농가 및 1,550미만 농지 ○ 전국 2,157개 일선 행정기관(시·구·읍·면)에서 운영
농 촌 지 형 정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구축(도형자료) : 20종 14,735매
진 흥 지 역 상 세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 작성 : 전국 152개 시·군·구
농 지지 번 도 전 산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지역 DB구축 : 1/5,000 지번도 95매(충북 진천군) ○ 응용P/G 개발 및 시범운영

나. 예산집행 실적

연도별	사업별	계	농지원부	농촌지형 정보	진흥지역 상세도작성	농지지번도 전산화
계	계획	13,023	2,000	5,963	4,898	162
	실적	11,771	1,820	4,916	4,890	145
	%	90	91	82	99	90
'95	계획	1,964	506	1,458	-	-
	실적	1,648	506	1,142	-	-
	%	84	100	78	-	-
'96	계획	2,000	405	1,575	-	-
	실적	1,632	368	1,264	-	-
	%	82	87	80	-	-
'97	계획	2,948	419	1,406	1,084	39
	실적	2,491	335	1,045	1,084	27
	%	84	80	74	100	69
'98	계획	4,511	400	984	3,051	76
	실적	4,411	361	936	3,043	71
	%	98	90	95	99	93
'99년	계획	1,600	250	540	763	47
	실적	1,589	250	529	763	47
	%	99	100	98	100	100

다. 사업목표대비 분석결과

- '95년(84%)→'99년(99%) 달성도 상향화(↑15%)
- 전년도 예·결산 차이분석에 따라 향후 집행전망 및 탄력적 예산 운영
- 사업에 불필요한 항목은 사전에 검토하여 삭제하며 예산집행에 따른 증감액은 항목간 조정으로 목표달성을 합리적으로 수행
- 사업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으로 IMF체제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한 예산운영
- 당해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월별로 파악한 후 실적이 저조한 공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집중관리 하였음.
-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부족인력을 일용직으로 대체 운영하여 정부 예산의 대폭적인 축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이익 달성

3. 농지정보화사업 편익비교를 통한 투자효율분석

농지정보화사업의 사업별 편익분석을 연차별로 분석하여 사업시행의 적정성 검증 및 예산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시 기본자료로 활용

□ 분석방법

- 행정업무 처리시 수작업과 전산작업을 대비한 인건비 절감액(1년 기준)
 - 비용 : 투자사업비,
 - 편익 : 전산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액

가. 농지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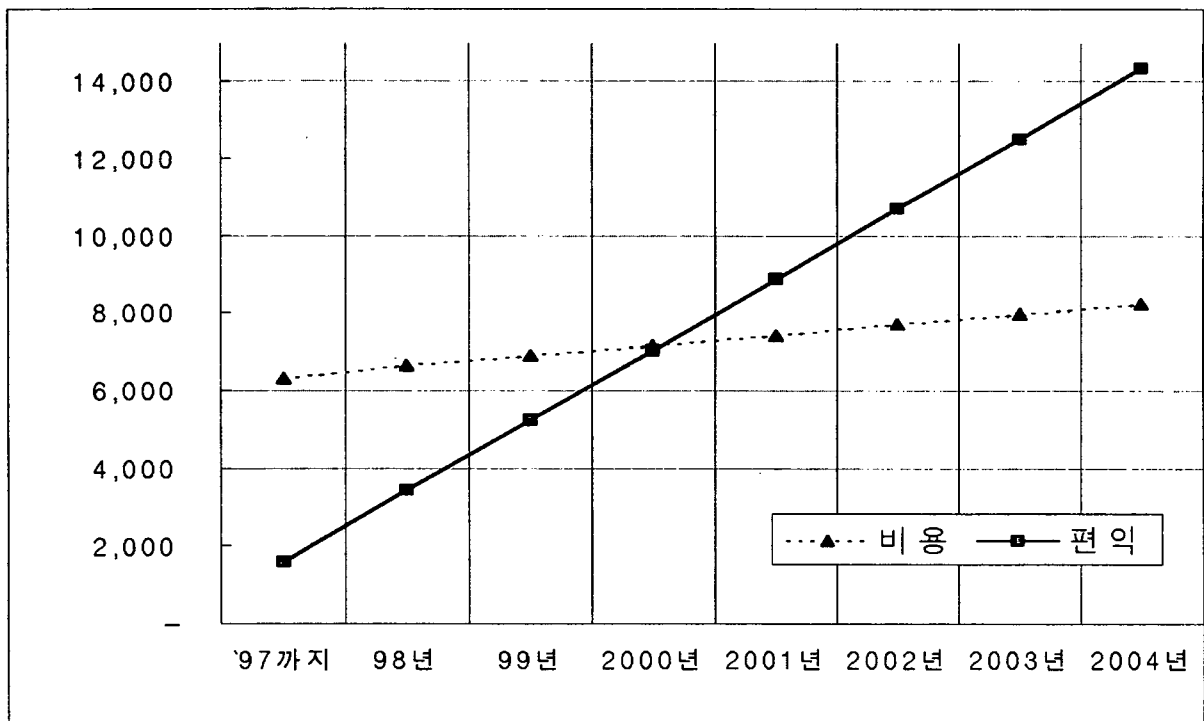
□ 비용-편익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비용 대 편익분석 내용							
	'97까지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비용	6,284	361	250	250	275	275	275	275
(누계)	6,284	6,645	6,895	7,145	7,420	7,695	7,970	8,245
편익	1,596	1,839	1,807	1,807	1,839	1,807	1,807	1,839
(누계)	1,596	3,435	5,242	7,049	8,888	10,695	12,502	14,341
증감	-4,688	-3,210	-1,653	-96	1,468	3,000	4,532	6,096

□ 비용-편익 도표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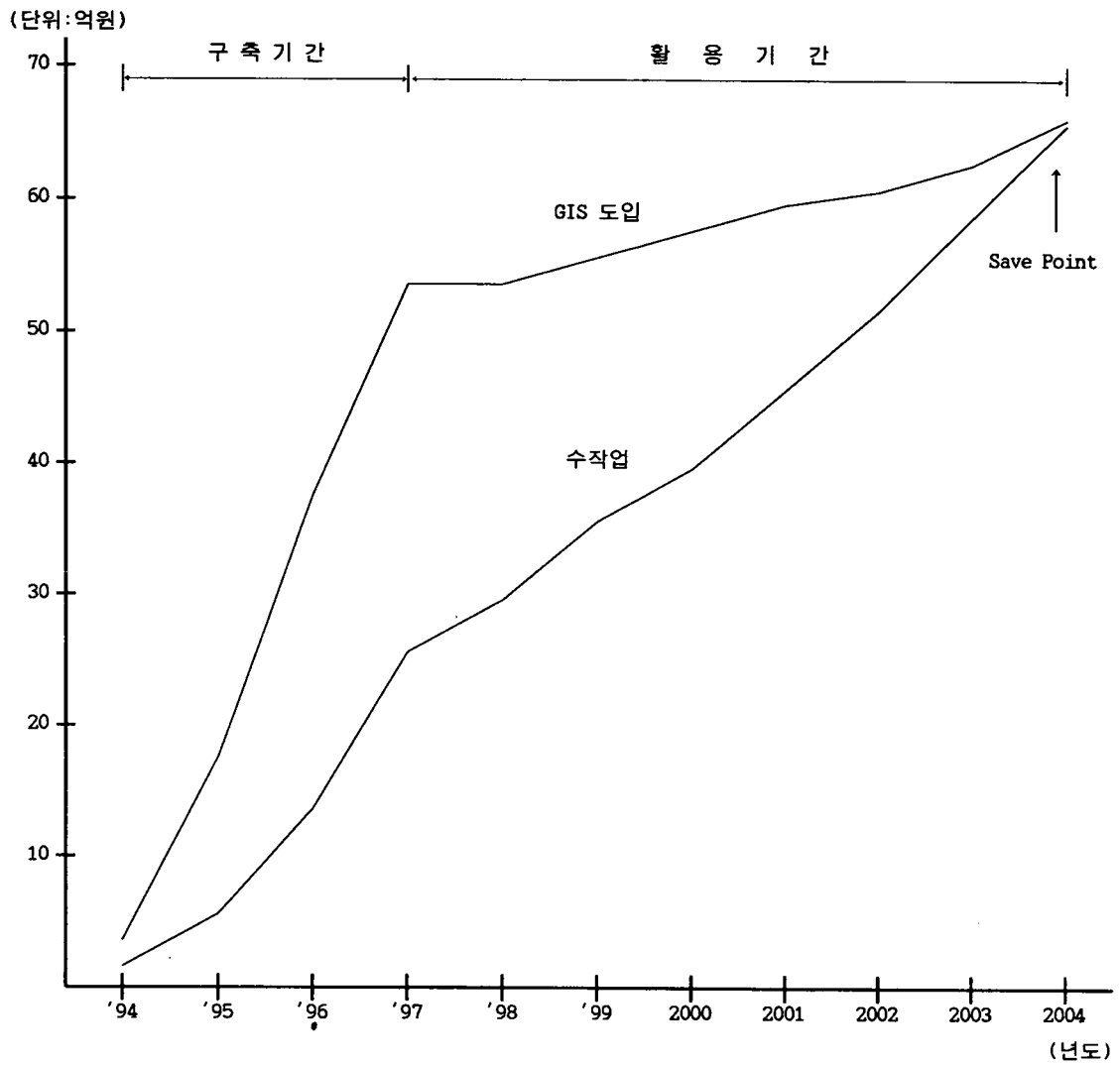
나. 농촌지형정보

□ 비용-편익 내역

(단위:백만원)

연도별	GIS 이용 (A)			수작업 (B)			차 인	비 고
	구 축 비 용	유지 관리비	소 계	인건비	도면 구입비	소 계		
1994	429	-	429	260		269	160	
1995	1,458	-	1,458	462		480	978	구축기간
1996	2,000	-	2,000	792		819	1,181	↑
1997	1,533	-	1,533	1,160		1,202	331	—————
1998	64	87	151	415	9	415	△264	↓
1999	70	87	157	456	18	456	△299	활용기간
2000	77	87	164	502	27	502	△338	
2001	85	87	172	552	42	552	△380	
2002	93	87	180	607		607	△427	
2003	103	87	190	668		668	△478	
2004	113	87	200	735		735	△535	
계	6,025	609	6,634	6,609	96	6,705	△71	

□ 비용-편익 비교곡선



[GIS를 도입한 경우와 수작업시 발생하는 누계비용곡선]

다. 농지지번도전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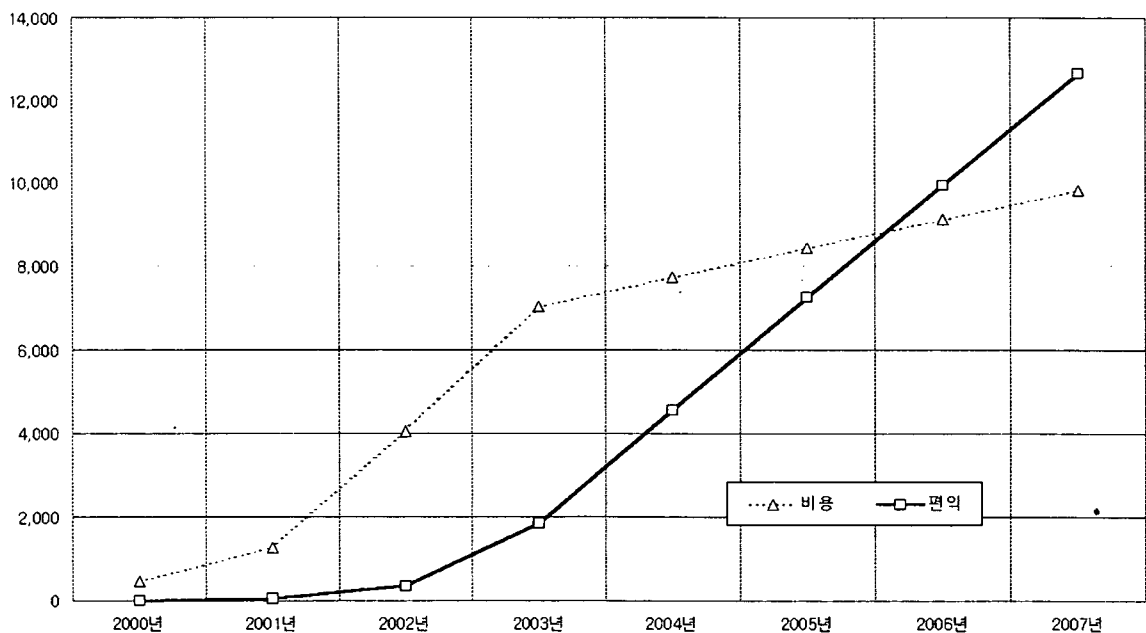
□ 비용 - 편익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용 대 편익분석 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사업 시·군		4	25	110	114	253	253	253	253
활용 시·군		0	4	29	139	253	253	253	253
비용	금액	445	816	2,772	2,992	702	702	702	702
	누계	445	1,261	4,033	7,025	7,727	8,429	9,131	9,833
편익	금액	0	43	310	1,488	2,708	2,708	2,708	2,708
	누계	0	43	353	1,841	4,549	7,257	9,965	12,673
증 감		△445	△1,218	△3,680	△5,184	△3,178	△1,172	834	2,840

□ 비용-편익 비교곡선

(단위 : 백만원)



4.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서비스 개선노력

가. 일선 행정기관 PC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 설치

(단위 : 개)

구 분	'97까지	'98실적	계	비 고
설치기관 (시·구·읍·면·동)	1,491	666	2,157	100%설치

나.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정확도 제고 노력

- 정비기간 : '98.1~12 (1년간)
- 대상기관 : 2,157개 시·구·읍·면·동
- 농가신규등록 : 133,629 농가
- 중복·오류농가 삭제 : 82,309 농가
- 농지전산 담당자 교육

(단위 : 명)

구 분	행정기관 공무원	공사직원	계	비 고
사용자교육	844	168	1,012	3회실시

다. 농지정보시스템으로 행정기관 민원처리 활용

- 농지원부 발급 : 681,228건
- 자경증명 발급 : 5,371건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161,335건

라. 고객 만족을 위한 P/G 및 DATA 수정보완·설치지원

'95 실적	'96 실적	'97 실적
- 농지정보DB P/G보완81본 - 시범운영 : 8도 8개지부 • 경기 이천군 • 강원 홍천군 • 충북 청원군 • 충남 홍성군 • 전북 정읍시 • 전남 화순군 • 경북 청송군 • 경남 울산시	- 농지전산 BD자료 유지 관리 : 변동자료 수정 보완 (21,520천건 중 4,283천건)	- 변동자료 보완 : 4,376천건
- 일선 행정기관 1,100개 읍·면·동 PC용 데이터 설치 및 운영교육 - 원활한 농지정보 대 농어민 민원서비스 제공	- 일선행정기관 농지정보 PC용 P/G 및 DATA 설치 : 727개소 - 농지정보 PC용 P/G 보완 : 22본 - 농지전산 DB보완 : 내무부 지적전산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산자료 Update	- 일선행정기관 농지정보 PC용 P/G 및 DATA 설치 : 401개소 - 농지정보 PC용 P/G 보완 : 245본 - 농지전산 DB보완 : 내무부 지적전산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산자료 Update

마. 농지정보 자료갱신을 위한 DATA 교류

- 행정자치부 : 지적자료
 - 소유권 : 985천건
 - 농 지 : 492천건
- 국민연금관리공단
 - 농가 : 107천건
 - 가족 : 775천건

바. 농지정보화시스템의 원활한 자료 구축운영을 위한 Y2K해결노력

□ 추진배경

-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추진으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확보

□ 추진경위

- 정부에서 주요정책사업으로 관리
 - Y2K문제 종합대책('98.3, '98.6, '99.2)을 수립
 - Y2K관계장관회의(위원장 : 국무총리) 격월 개최
 - Y2K대책협의회(위원장: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에서 주요정책으로 결정
- 공사에서도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우려되는 Y2K문제 해결 추진
 - 1998. 1~ 7 : 종합계획수립, 자원조사 및 영향평가 실시
 - 1998. 8~12 : 변환계획 및 자원일부 문제해결 완료
 - 1999. 1~ 8 : 정보(H/W, S/W), 비정보분야 변환작업 및 시험 운영
 - 1999. 10. 9~10. 13 : Y2K 비상대응 모의훈련 실시
 - 1999. 12 : 인터넷/인트라넷 게시 및 공사 간행물 기고
 - 1999. 12. 22 : Y2K 비상대응 계획 수립 및 대책반 운영

□ 추진실적

구 분	대상자원	해 결		소요비용 (공사전체)
		건수	율(%)	
합 계	65점	65점	100	80,750천원
정보분야	H/W	22점	22점	자체해결 및 업체
	S/W	8점	8점	무상지원
비정보분야	35점	35점	100	80,750천원(전문업체유상)

□ 기대효과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고객의 불안감 해소

사. RGIS웹서비스시스템 개발로 대농민 및 일선 행정기관 농지정보제공

□ 목 표

- RGIS 자료의 대외 공개로 대민서비스 제고
- 웹 환경에서의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농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 업무범위

- 홈페이지 보완
- TEXT자료 보완
- 도형자료 추가
- 문자DB 연계
- 문자자료 추가

□ 추진실적

- 농업진흥지역도등 11종 7,183매 자료공개
- 도면검색기능 강화, 홈페이지 화면보완
- RGIS 홍보자료
- 농어촌발전계획도,농지이용현황도,지번도(충북진천) 농지적성구분도, 농지능력유형구분도 도형자료
- 도면정보와 문자DB(농업진흥지역조서) 연계
- 시·군일반현황, 도면별 관련자료



□ 추진효과

-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일반인들의 농정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
- 미래지향적인 농어촌개발정책 지원

아. RGIS 통합운영시스템개발로 일선 행정기관 활용기반 조성

□ 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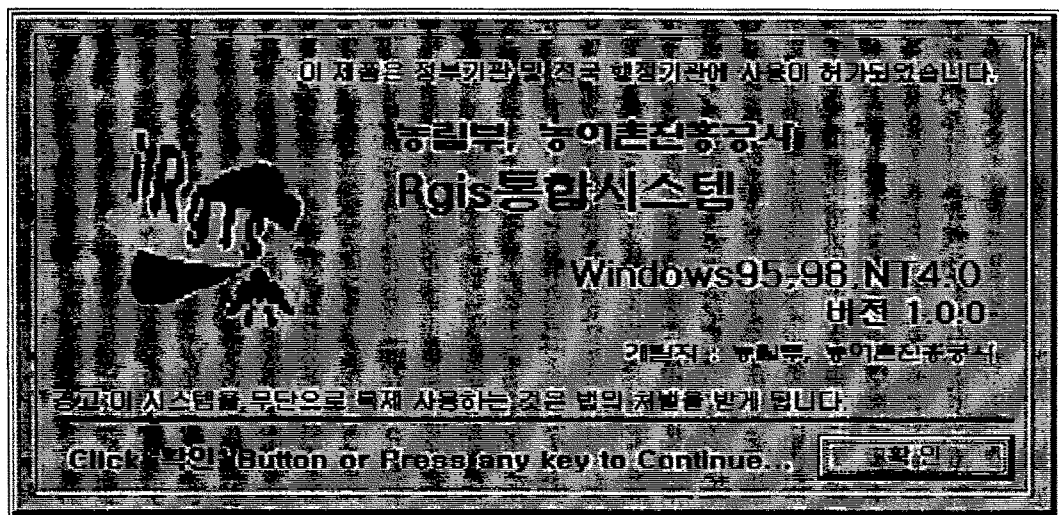
- 일선행정기관을 대상으로 RGIS 홍보 및 활용방안 제시
- 지구축 RGIS 정보를 활용한 시·군 업무의 일관성 유지
- 지번도와 연계한 활용

□ 업무범위

- 문자자료관리 프로그램
- 정보조회 프로그램
- 통계분석 프로그램

□ 추진실적

- 대상지역(시.군)별 문자자료관리
- 각 주제도별 속성자료 관리(입력,조회,출력)
 - 농업진흥지역지정현황 등 6개도면 관련자료
- 각 주제도별 구축 자료(도형 및 문자자료)에 대한 정보조회 및 검색
- 주제도를 이용한 Map 작성 및 출력
- 행정구역별 진흥지역 면적산출
- 지구별 진흥지역 면적산출



□ 추진효과

- 중앙행정기관의 농업정책 수립 및 정책결정 기초자료로 활용
- 시·군 행정업무의 일관성 확보
- 각종도면 검색의 용이성과 원활한 도면관리

자. 시군 행정기관 시연회개최 및 중앙단위의 전시회 참가로 사업 홍보

□ 정보화 추진 종합전시회 참가

- 일 시 : '98, 99 (2개년)
- 장 소 : 한국종합전시장(COEX)
- 참석대상 : 전시, 홍보요원 9명
- 목 적 : 정보의 정보화 추진성과와 비전을 제시
- 전시내용 :
 - 「전자정부관 농수축산 코너」
 - RGIS 시스템
 - RGISWeb서비스시스템
 - 농지지번도전산화시스템
- 주관기관 : 정보통신부

□ 「소프트엑스포 '99」 참가

- 일 시 : '99.12 .6 ~12. 9
- 장 소 : 한국종합전시장(COEX) 3층
- 참석대상 : 전시, 홍보요원 6명
- 행사목적 및 내용
 - 목 적 :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및 공공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시스템을 홍보
 - 출품내용 : RGIS Web서비스시스템을 「열린정부관」에 전시, 홍보
- 주관기관 : 정보통신부

□ 농림부 주관 농업인의 날 전시 협조

- 목 적
 - 대농어민 서비스 개선
 - 농산물 품평회 등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 동참
 - 농정정책에 적극 동참

- 협조내용
 - 일시 : '98 .11. 11
 - 장소 : 농촌진흥청
 - 전시품명 : 농촌지형정보시스템
- 기대효과
 - 농업관련기관 및 농업인에 대한 공사기술력 홍보
 - 농정정책 홍보에 선도적 역할 담당

유관기관에 대한 농촌지형정보시스템 설명회 개최

- 개최실적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비 고
'98. 10. 13	경남지사 회의실	도시군 관련공무원 - 133명	
'98. 11. 13	제주지사 회의실	도시군 관련공무원 - 81명	
'98. 11. 21	전남지사 회의실	도시군 관련공무원 - 151명	
'98. 12. 11	충북지사 회의실	도시군 관련공무원 - 130명	
'98. 12. 10	경북지사 회의실	도시군 관련공무원 - 153명	
합 계		5회 648명	

- 교육내용 : 농촌지형정보시스템(RGIS)사업 설명
- 기대효과
 - 개방화 정보화에 따른 설계자동화시스템 기반 구축
 - 건설기술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하여 사업의 수주 원활
 - 지사직원들 신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

농업기반정보기술 설명회 전시

- 일시 : 1999. 2
- 장소 : 농업기반공사

- 참석대상 : 농업관련 기관, 단체, 연구원, 교수, 학생
- 행사목적 및 내용
 - 목적 : 농업·농촌정보화 인식제고 및 정보문화 확산 기여
 - 출품내용 :
 - 농지원부시스템
 - 농촌지형정보시스템(RGIS웹서비스시스템, 원격탐사시스템)
 - 농지지번도전산화시스템 시연
 - 주관기관 : 농업기반공사

□ GIS 주제도 활용에 관한 주제 발표

- 일시 : 1999. 6.10
- 장소 : 국토연구원 대강당
- 참석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GIS 관련 전문가 및 학생
- 발표내용 : GIS 선도기관으로서의 「농지지번도 구축 및 활용」 발표
- 주관기관 : 국토연구원

□ 대농업인 및 유관기관 홍보용 리플렛 발간배부

- 배포대상 : 일선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 공사방문객, 지부 방문 농업인
- 홍보내용
 - 농지원부
 - 농지원부전산화 목적
 - 시스템연관도
 - 기대효과
 - 농촌지형정보
 - GIS의 목적 및 필요성
 - 효율적인 농지이용관리체계 구축
 - 농정자료의 표준화 및 국가자원화
 - GIS 활용분야
 - GIS의 구축내용 및 방법
 - 의사결정, 계획, 설계, 평가, 관리방향

- 농지지번도
 - 농지지번도전산화목적
 - 활용분야
 - 기대효과

□ 농지지번도전산화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 목 적
 - 시범시스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하여 운영상 문제점 및 시스템 보완점 파악
 - 시스템 타당성 검토
 - 사용자 요구에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개발
 - 2000년 사업 대상지 선정 의견 수렴(2차 설문조사)
- 일 시
 - 1차 설문조사 : '99년 10월 6일 ~ '99년 10월 9일
 - 2차 설문조사 : '99년 11월 25일 ~ '99년 12월 1일
- 대상자
 - 충북 진천군청, 읍·면사무소 시스템 담당자
 - 7개 시·군 농지전용 및 진흥지역관리 담당자
- 설문조사 주요내용
 - 농업행정분야 업무처리 도움정도 : 도움(100%)
 - 시스템 만족도 : 만족(100%)
 - 시스템 운영환경 편리성 : 편리(77.7%)
 - 시스템 활용빈도 : 평균 1-2회/주
- 설문조사결과 분석
 - 시스템에 대한 호응도(시스템 만족도 100%)가 상당히 높았으며 시스템에 대한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현재 농지관리(농지전용관리, 농업진흥지역관리 등)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보화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농지지번도시스템은 농지전용관리, 농업진흥지역관리는 물론 직접지불제사업 지원·농지이용실태조사현황관리 및 농지이용증진사업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기대효과가 상당히 높고, 지적관련부처와 자료공유 및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하여 농업행정력 향상이 기대됨.

1. 사업관리 체계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가. 사업운영계획

농지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계획은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 조직계획

○ 계획 및 통제기능

- 농지정보화사업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 전산화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책정 및 집행관리
- 전산화 소요자원 파악관리
- 단위업무 개발 및 운영사항 통제
- 인력교육, 훈련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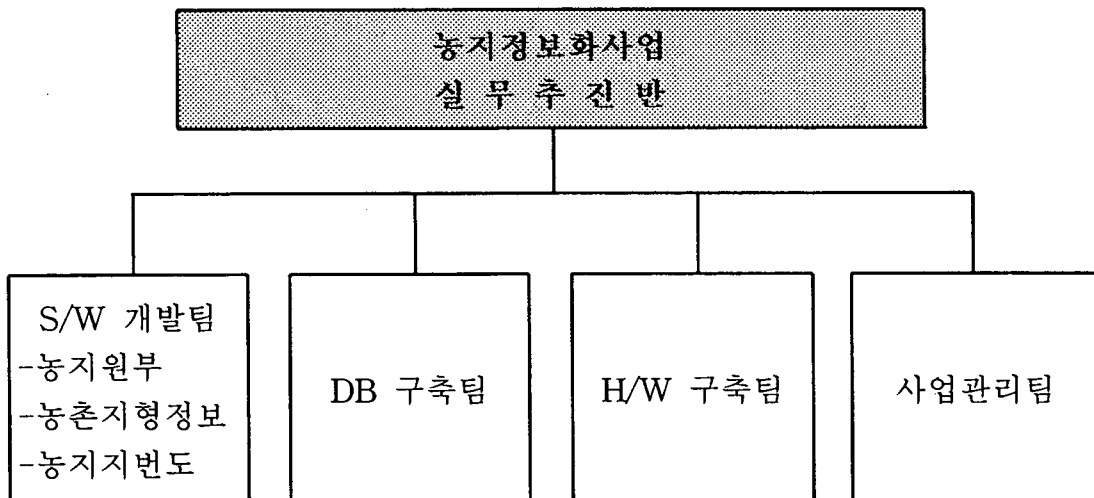
○ 조사 및 개발기능

- 기본계획에 따른 개발 단위업무별 시스템 개발
- 현행업무의 상세분석 및 개발
- 개발시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신기법 적용

○ 시스템 운용기능

- 기 개발된 시스템의 운용관리
- 데이터 통신관리
- 주전산기, 주변장치등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관리

□ 조직 및 업무분장



□ 업무분장

조 직 명	분 장 업 무
○ S/W 개발팀	·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DB 구축팀	· 농촌지형정보 자료입력 - 입력자료 검증 및 수정
○ H/W 구축팀	· H/W 도입및 설치 · 전산망 구축
○ 사업관리팀	· 법령 및 제도개선 · 운영절차 정의 · 사용자 교육담당및 행정처리 · 현장조사 업무

□ 교육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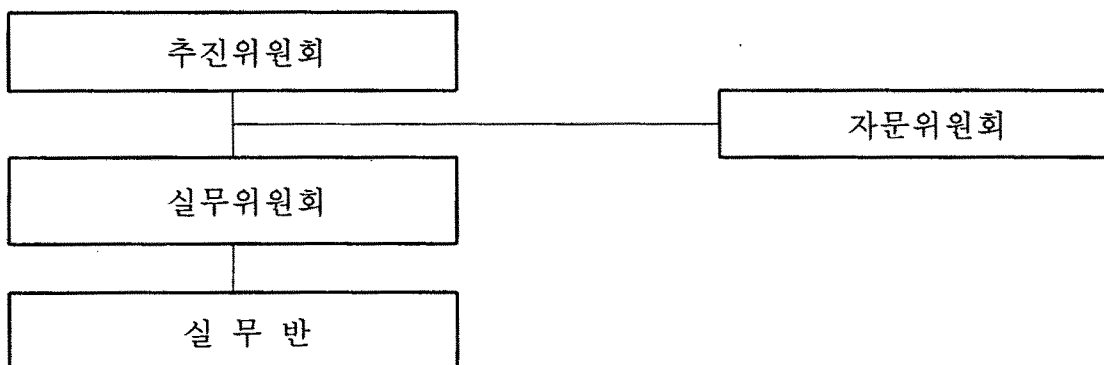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교육을 위한 비용투자는 그 조직에 대한 기여도가 수량적으로 평가될수 없기 때문에 경시되기 쉬우나 단기 비용 성격보다는 장기투자비용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 주기적인 교육과 선진기술 연수는

- 신기술 수용에 따른 지적 탐구욕구를 충족시켜 업무의욕 고취
- 기본데이터 중요성 인식에 따른 데이터 정확도
- 창의성 유발 동기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 추진위원회 구성

□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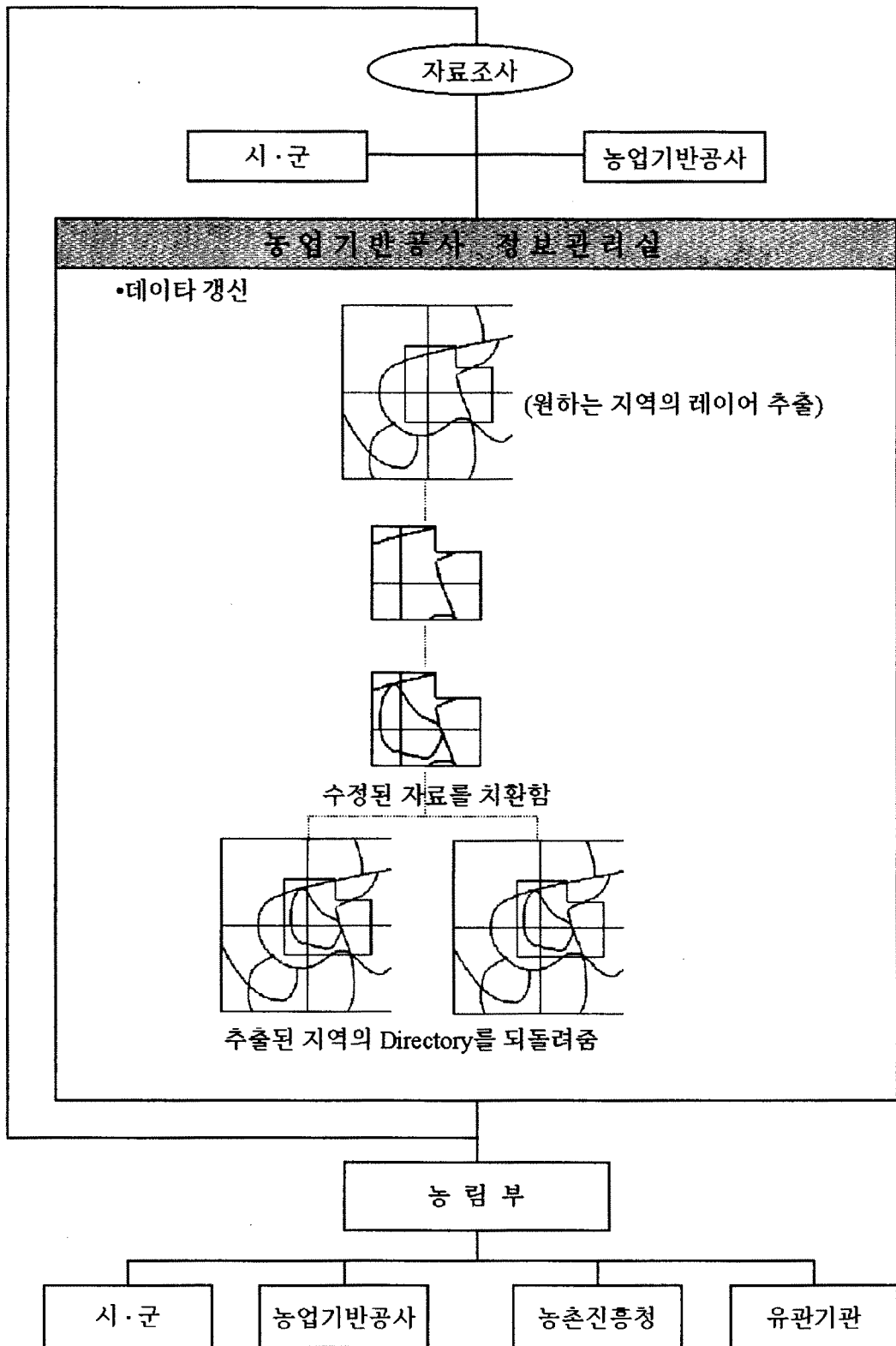
□ 주요기능

구 분	기 능	구 성	비고
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구축계획 타당성 심의 · 법령및 제도개선 심의 · 추진상황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전산화추진위원회 활용 	
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구축방향설정에 대한 자문 ·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해결방안 자문 · 새로운 기술,기법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타기관직원 · 관련 대학교수 약간명으로 구성 	
실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구축구축계획 타당성 검토 · 추진상황 취합보고 ·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 각 부서에 대한 역할분담 업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위원 	
실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입력 · DB 관리 · 시스템 분석 · 응용P/G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반원 	

나. 자료구축 후 유지관리체계 수립

방대한 자료의 처리, 자료의 향상성 및 최신자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DB구축은 한번 자료 구축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자료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기구축된 자료들의 갱신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체계적인 자료의 갱신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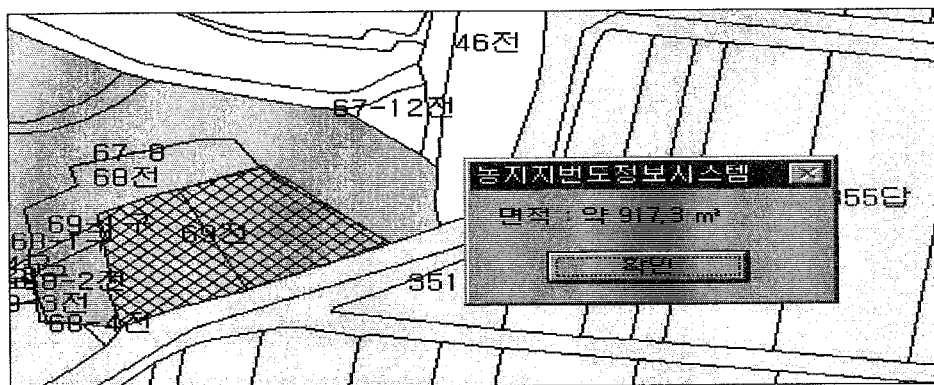
2.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 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응용프로그램 보완)

- 농지전용에 대한 업무가 가장 빈번(주 1-3회이상 사용)하므로 농지 전용 프로그램을 최우선 개발
- 각종 기능 보완 (거리·면적 계산 등)
 - 지번도에서 거리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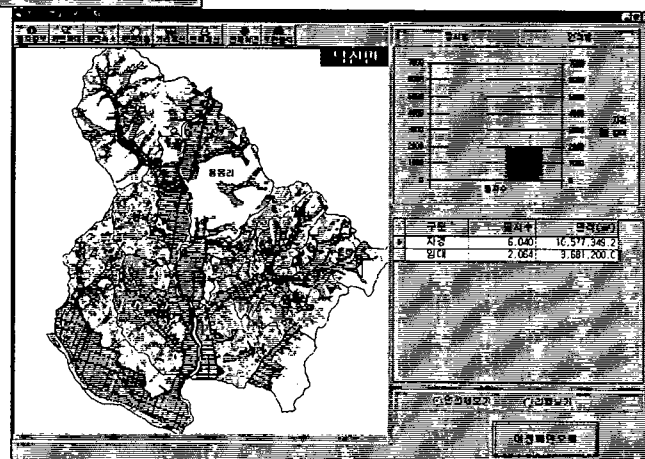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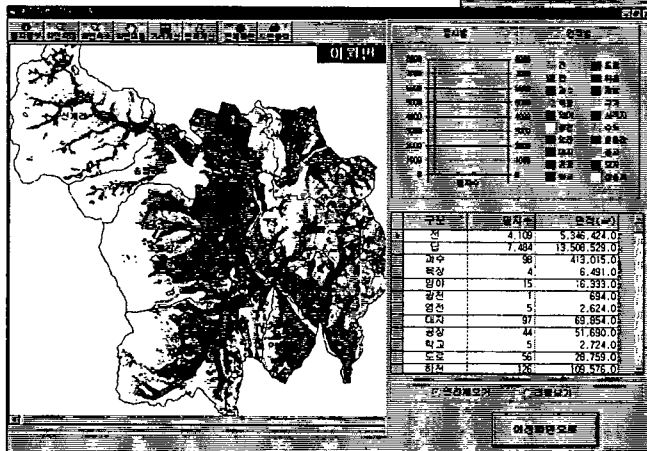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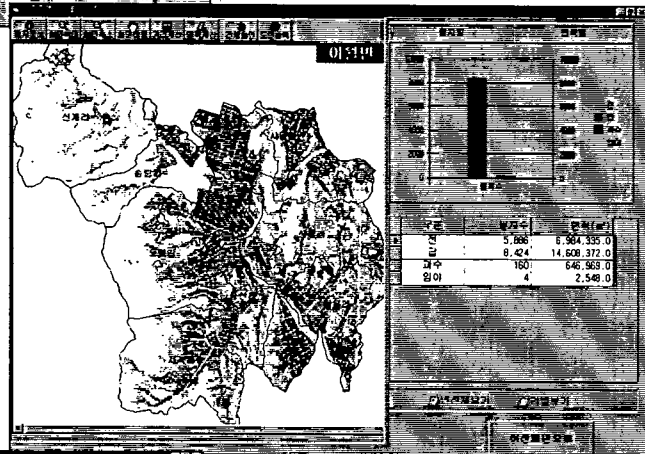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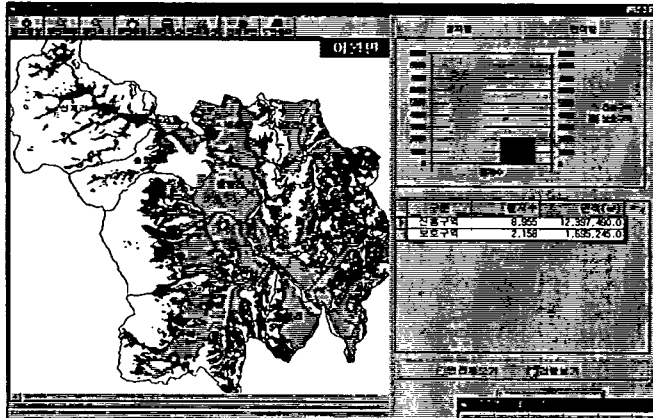


- 지번도에서 면적계산



- 시스템 내 도움말 기능에 농지 법령집을 포함하여 좀 더 편리한 업무 수행

○ 연말 보고를 위한 각종 통계현황 및 보고서 출력프로그램 개발



- 농지전용허가상황보고

충북 진천군청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1999년 상반기 농지전용허가(국·도·군·시·읍·면) 상황보고														
구분	용도별	건수	계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담	전	계	담	전	계	담	전	계	담	전
합계		62	56,586	32,472	24,054	12,122	10,902	1,220	2,596	661	1,935	41,818	20,909	20,909
허가	공소	7	4,194	2,097	2,097	0	0	0	0	0	0	4,194	2,097	2,097
	(1)국방·군사시설	0	0	0	0	0	0	0	0	0	0	0	0	0
	(2)도로,도로,항만,공공시설	6	2,464	2,097	357	0	0	0	0	0	0	2,464	2,097	357
	(3)기타시설	1	978	0	978	0	0	0	0	0	0	978	0	978
	소	55	52,392	30,375	21,957	12,122	10,902	1,220	2,596	661	1,935	37,624	18,812	18,812
	(4)공장시설	15	10,580	9,255	1,325	0	0	0	0	0	0	10,580	9,255	1,325
(5)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0	0	0	0	0	0	0	0	0	0	0	0	0	
(6)기타시설	2	16,812	2,120	8,113	1,889	660	1,220	1,831	661	660	12,623	6,677	6,677	

- 읍·면별 농업진흥지역 현황

농업진흥지역 현황									
(단위 : ha)									
행정구역별	용도구역별	합계	농지					비농지	
			소계	담	전	과수원	기타농지		
진천군 진천읍	농업진흥지역	9,840,388.0	9,751,734.0	9,058,041.0	685,945.0	7,748.0	0.0	88,654.0	
	진흥구역	9,185,041.0	9,128,256.0	8,674,266.0	449,096.0	4,894.0	0.0	56,785.0	
	보호구역	655,347.0	623,478.0	383,775.0	236,849.0	2,854.0	0.0	31,869.0	
진천군 덕산면	농업진흥지역	9,628,861.0	9,574,729.0	8,480,826.0	1,054,278.0	39,625.0	0.0	54,132.0	
	진흥구역	7,798,096.0	7,762,393.0	7,326,346.0	398,158.0	37,889.0	0.0	35,703.0	
	보호구역	1,830,765.0	1,812,336.0	1,154,480.0	656,120.0	1,736.0	0.0	18,429.0	
진천군 초량면	농업진흥지역	10,251,104.0	10,152,331.0	8,185,949.0	1,939,176.0	27,206.0	0.0	98,773.0	
	진흥구역	9,069,748.0	9,008,664.0	8,041,528.0	942,403.0	24,733.0	0.0	61,084.0	
	보호구역	1,181,356.0	1,143,667.0	144,421.0	996,773.0	2,473.0	0.0	37,689.0	
진천군 문배면	농업진흥지역	6,728,550.0	6,651,051.0	5,579,123.0	1,048,966.0	22,962.0	0.0	77,499.0	
	진흥구역	5,329,192.0	5,269,029.0	4,676,876.0	592,153.0	.0	0.0	60,163.0	
	보호구역	1,399,358.0	1,382,022.0	902,247.0	456,813.0	22,962.0	0.0	17,336.0	
진천군 벽곡면	농업진흥지역	4,070,919.0	4,034,124.0	2,801,329.0	1,228,422.0	4,373.0	0.0	36,795.0	
	진흥구역	2,119,770.0	2,101,092.0	1,718,057.0	378,662.0	4,373.0	0.0	18,678.0	
	보호구역	1,951,149.0	1,933,032.0	1,083,272.0	849,760.0	.0	0.0	18,117.0	

□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 및 조치

요구 및 기대사항	대응조치
○ 농지DB등 전산정보를 정책수립에 이용	○ 농지전산 DB구축을 조기('94.12)완료하여 전략 자원화
○ 실경작자 확인 및 소유자 확인 민원서류 대체 활용	○ "
○ 농촌지형정보시스템 구축 과학적 자료 활용	○ 연차적 계획으로 구축하여 자료의 표준화 및 국가자원 공유화에 도모코저 계획

□ 사업별 사업활동

사업명	대상업무	사업활동
농지원부	농가일반사항 관리	· 농가일반사항 변경신청 접수 · 농가일반사항 변경 정리
	농지이동관리	· 농지이동 변경신청 접수 · 농지이동 정리
농촌지형정보	농정자료 제공	· 농업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농지이용계획수립 지원자료로 활용 ·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정책에 대한 대농어민 설득력 제고에 활용
진흥지역 상제도면	농업진흥지역 고제도면 정비	· 고제도면(1/25,000 지형도)중 오류부분 수정, 고시후 변동사항 표시
농지지번도 전산화	농업진흥지역관리 및 농지 전용	· 농업진흥지역 자료 구축 · 응용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관리 - 농지전용 업무

라. 농지관리위원회지원사업

- 농지관리위원회지원
- 농지관리위원회교육
- 농지관리위원회해외연수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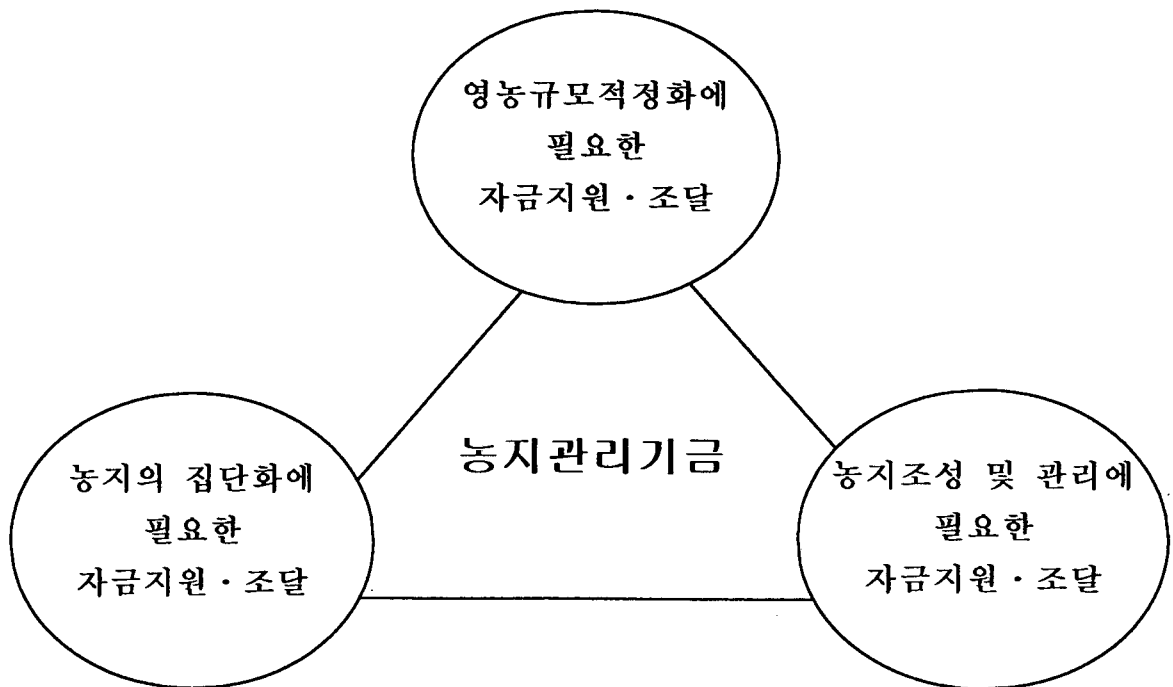
지표명	2.1 사업선정의 타당성	가중치
		15점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윤명중(☎02-503-7264)
 농업기반공사 교수부 2급 곽창호(☎0343-420-3219)

평가내용

1. 기금 설치목적과의 적합성
 - 가. 사업목적과 기금 설치목적의 부합

2. 예산 및 타 기금과의 사업 중복성
 - 가. 예산 또는 타기금과의 유사사업 존재
 - 나. 본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1. 운용 여건

농지관리 필요성 부각

- 식량안보를 위한 적정 농지면적 확보 필요
- 공익적 기능요구

환경보전적 측면이 강조되는 여건 변화 대처 미흡

- 환경농업 농산물의 부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중요성 인식 필요

농지관리담당주체인 농지관리위원등의 의식변환 필요

- 농업 및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정보 습득 필요
- 농업현장에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의식변환교육 필요

2. 지표관리 방향

농지관리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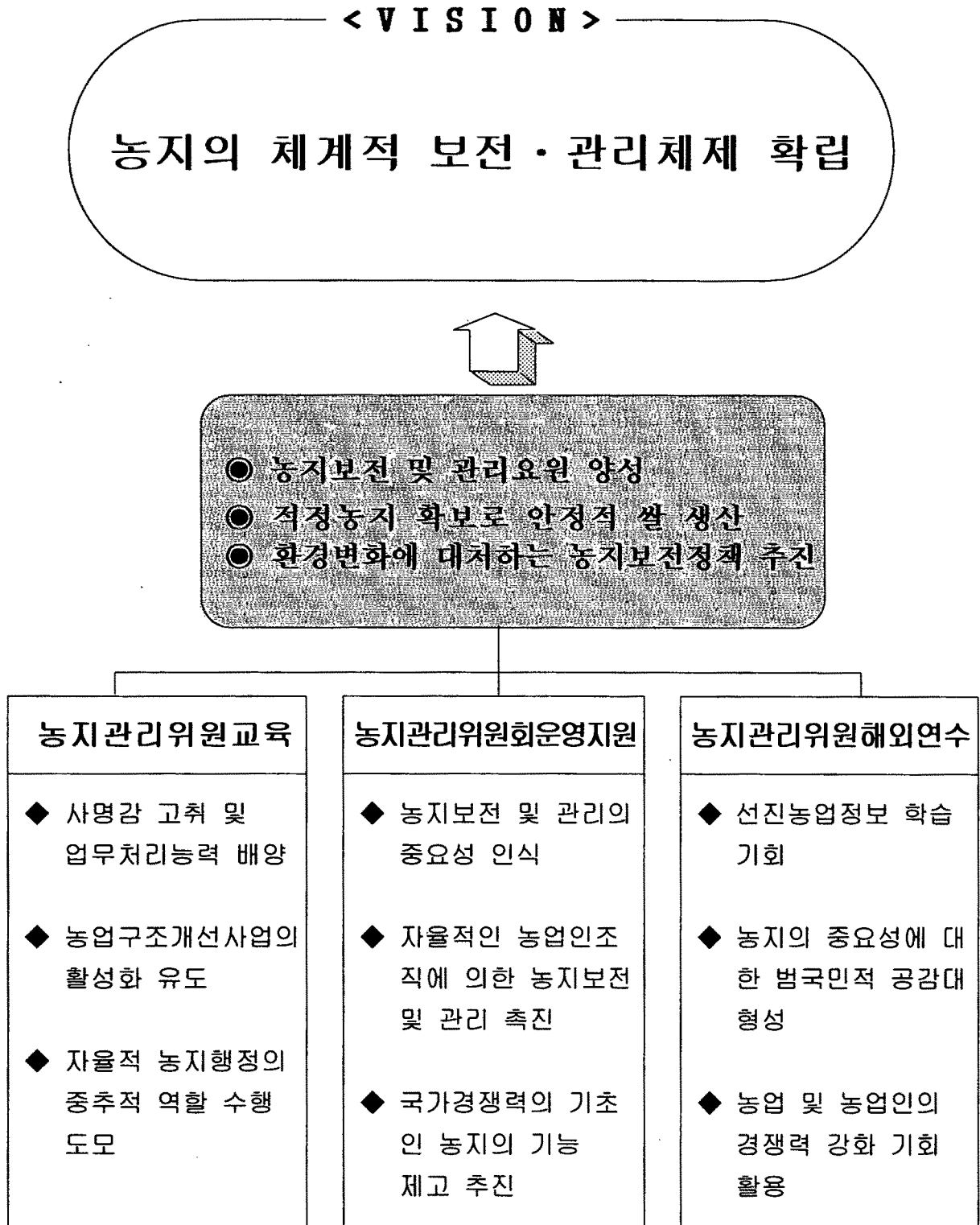
- 농지관리의 기초단체인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 국내·외 교육사업을 통한 농지관리의 효율성 증대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 농지관리위원관련사업을 통한 농지의 중요성 인식 부각
- 농지의 친환경적 이용 및 개발 도모

정책변화에 부응한 합리적 사업추진

3. 지표관리 체계도



II. '95~'99 추진실적 요약

1. 기금 설치목적과의 적합성

- 농지관리기금 설치근거
 -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정
 - 농지관리위원관련사업 추진근거 : 동법 제10조, 제31조 등
- 농지관리기금 설치 및 농지관리위원관련사업 시행 목적
 -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촉진 도모
 - 사명감 고취 및 농지관리업무처리 능력 배양
 - 선진농업국의 사례전파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2. 예산 및 타 기금과의 사업 중복

- 농지관리위원관련사업은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고유업무
 - 농지관리위원관련사업은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정책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조성과 병행, 추진
 - 농지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의 지속
- 농지관리위원관련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통하여, 우리 농업 및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
 - 뉴라운드 협상과 연관, 식량안보차원에서 주곡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안하여, 그 전제가 되는 농지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인력배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평가내용

1. 기금 설치 목적과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기금 설치목적의 부합

가. 농지관리기금의 설치목적

- 농지관리기금에 관한 기본법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 「정부는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한다」

2. 각 사업별 목적

가. 농지관리위원 교육사업의 목적

- 위원들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농지관리에 따른 업무처리능력을 배양
-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활성화 유도
- 농지의 자율적 관리체제 확립 도모
- 농지행정의 중추적 역할 담당 유도
- 농업정책 및 농지정책에 대한 홍보매체 활용
 - 교육사업의 법적 근거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목적)

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의 목적

-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지임대차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는 농지문제를 일반 행정기관에서만 처리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되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현장감 있고 공개적·자율적으로 농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농지관리위원회를 도입·운영하고 필요경비를 지원

□ 농지관리위원회 기능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 기타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사업의 목적

- 농지관리에 관계되는 일선 행정기관의 농지관리 담당공무원 및 농지관리위원등에게 농업선진국의 농지관리제도와 농업경영실태를 연수토록 함으로써 농지관리의 중요성 재인식 기회 제공 및 사기 진작 도모

3. 사업목적과 기금의 설치목적 부합성

가. 농지관리위원교육과 기금설치목적과의 부합성

-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인적요소 배양 필요
- 영농규모화적정사업의 추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공유 기회 마련
- 환경중시의 농지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반 확립
 - ※ “농업농촌기본법”(2000. 1. 1)의 제정
 - ： 농지보전강화의 제도화(농업농촌기본법 제19조 내지 제21조, 제41조)
 - 국가의 농지보전의무를 규정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

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과 기금설치목적과의 부합성

- 국민식량을 외국에 100% 의존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임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기지로서의 농지의 기능은 가장 본질적인 핵심 기능이며, 향후 세계식량사정의 불안정성, 식량의 무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식량자원으로서의 농지보전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경영 전략이라 볼 수 있음
- 그 전략의 일환으로 농지관리기금 농지조성계정이 설치되었고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자경농지 조사·농지이용증진·농지 전용확인 등 농지를 보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은 농지관리기금 설치목적에 정확히 부합된다고 판단됨

다.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사업의 목적

- 농지관리기금은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농지관리 담당주체인 농지관리위원 및 농지관리 담당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선진농업정보학습 및 공유 기회를 제공하여 농지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명감 고취

1. 농지관리위원 교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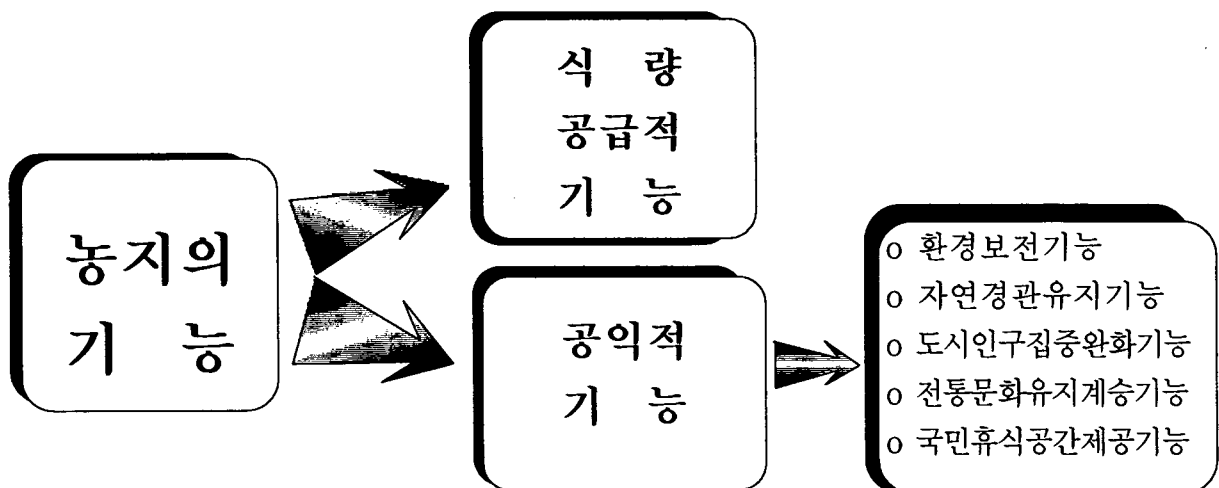
가. 예산 또는 타 기금의 유사사업 존재

- 농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중 인적 요소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정부예산 또는 타 기금의 유사사업은 존재하지 않음

나. 농지관리위원 교육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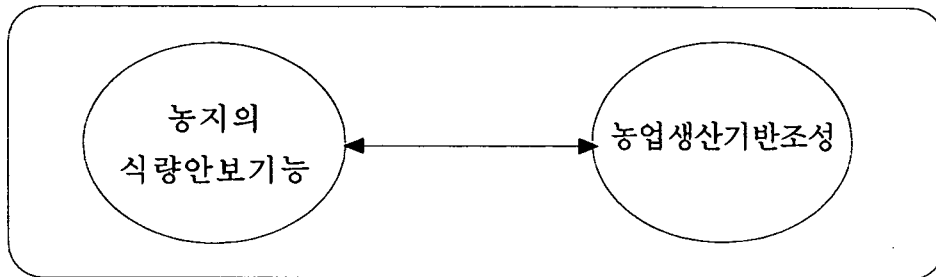
□ 농지의 기능

- 식량공급적 기능
 - 식량공급적 기능 → 식량안보기능
- 공익적 기능
 - 환경보전기능, 자연경관 유지기능, 도시인구집중완화기능 등



□ 농지보전의 필요성

○ 식량안보기능과 농업생산기반조성의 연관성



- 농지의 식량안보기능은 농업생산기반조성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식량안보기능은 농업생산기반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활용될 때에 만 가능

○ 농지보전의 필요성

- 농지법('96. 1. 1)에서도 “농지는 국민의 식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 되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보전되어야 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에 대한 기본이념 및 농지정책의 지표 제시
- 농업생산기반조성과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농업의 기초자원인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가 전제로 이뤄져야 함

□ 농지관리위원 교육사업의 필요성

- 농지보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농업관련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 농지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지보전의 중요성 인식 및 농지보전에 필요한 업무지식 학습 필요
-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농지의 보전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교육 강화

□ 농지관리위원교육사업의 차별적 우위성

○ 농지관리위원의 필요성 증대

- 이수자 연령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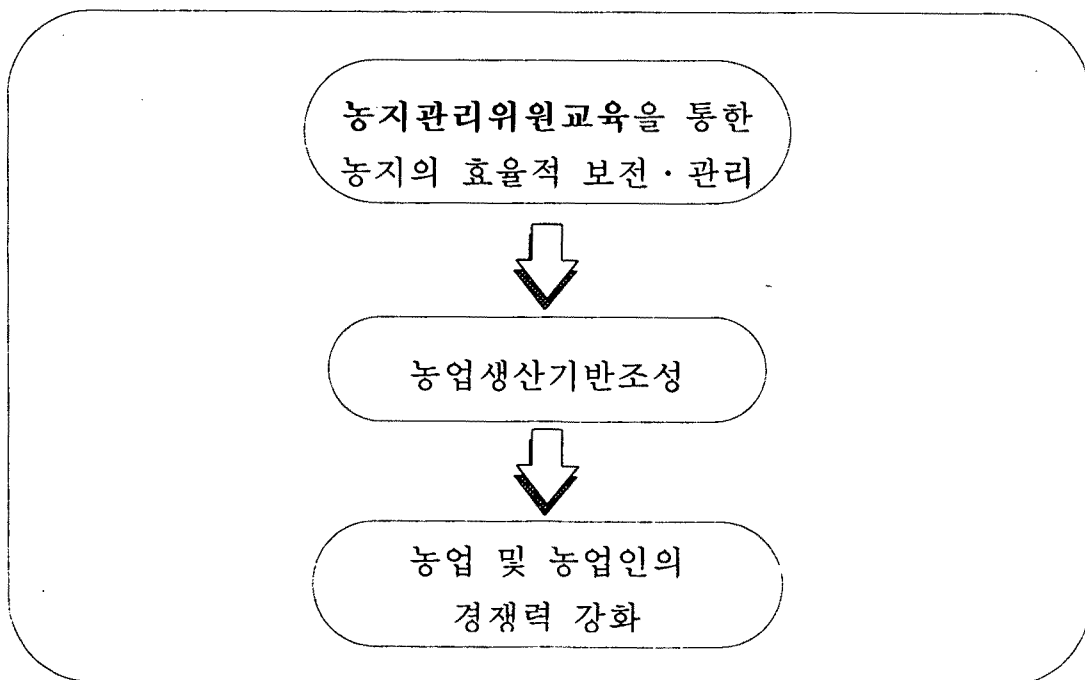
- 교육이수자 16,337명 중 5,633명인 35% : 41~50세
- 교육이수자 16,337명 중 6,829명인 42% : 51~60세
- 교육이수자의 77%가 농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연령임을 감안하여 농지관리위원교육의 계속적 추진 필요

- 이수자 직책 검토

- 교육이수자의 61%인 8,856명 : 이장 겸직
- 농지관리위원이 주로 이장 등의 중요직책을 겸직하고 있어, 농지관리체제의 확립 및 농업정책 홍보 등의 교육목적 달성효과 큼

- 농지보전정책의 주도적 부서인 농림부가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및 조직을 활용, 정부의 농업정책과 연계하여 농지관리위원교육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정부 타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위성 확보

- 농지관리위원교육사업은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농업생산기반조성이 이뤄서 궁극적으로 농업 및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추구



2.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

가.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연혁

- 1986년 제정된 농지임대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990년 12월 설치
- 1996년 농지법에서 농지임대차관리법상의 농지관리위원회 조항 흡수
 - 현재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 및 농지전용 협의시의 확인, 취득 농지 실태조사 등 농지의 소유에서 보전에 이르는 농지관리 기능 수행

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목적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업구조개선을 촉진

다. 추진 방향

- 농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단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
- 농지의 효율적 관리 등 지역실정에 맞고 현장감 있는 농지행정추진 도모

라. 위원회 구성(농지법 제47조)

- 시·구·읍·면단위로 설치되고 위원장은 시·구·읍·면장이 됨
- 위원은 위원회당 10~40인으로 구성, 이중 5~30인은 농업인 대표로, 5~10인은 농협등 농업관련기관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농업인 위원자격을 3년이상 영농종사자로 한다.

<농지관리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수	위 원 수		
	계	농업인대표	농업관련기관
1,538개소	38,144명	32,937명	5,207명

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은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현장감 있게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농지법(제46~제49조)에 근거를 둔 유일한 조직으로 유사사업은 물론 타 기금에서 중복되는 사업시행이 전혀 없음

3.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사업

가. 사업관리 코드

회계	소관	계정	관	세항	세세항	세사업
농지관리 기금	농림부	농지관리기 금조성계정	농 어 촌 구조개선	농지제도보전 이용관리에관 한연구조사교 육홍보등	농지관리위원 등해외연수	민간경상보조
1563	210	-	411	1502	1502-02	304-02

나. 국고지원 기준

□ 지원형태 및 수준

지원수준	지 원 형 태				계
	직접수행	보조	융자	출연(출자)	
정액지원(백만원)	-	100	-	-	100
정률지원(%)	-	100	-	-	100

다. 예산지원의 타당성 검토

- 우리농업은 국제 여건의 변화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농지의 이용은 농업부문과 비농업 부문에서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되고 있음
 - 농업부문에서 토지이용형 농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지 유동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
 - 그러나 비농업 부문에서도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값싸고 양질의 토지인 농지를 비농업목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첫째 과제로 삼고 있음
 - 이러한 현실속에서 농지의 이용과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인 농지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더욱 중요하며 농지관리는 확실적인 규제가 불가능하며 농지행정을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기구임
- 이들로 하여금 농업선진국의 농지관리제도를 연수토록 함으로써 농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라. 사업추진의 시급성

- 국내와 같이 농지가 난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농지관리위원, 환경단체 및 담당공무원 등이 농업선진국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연수(견학)를 실시함으로써 농지의 보전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시급

마. 사업추진 주체(범위)의 적합성

- 농림부(수행기관 :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국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국외연수도 국내연수와 같이 같은 조직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 자원조달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 농지관리위원회는 전국 1,538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수는 38,340명으로 이 중 농업인이 32,773명, 농업관련기관인원이 5,567명임
- 그러나 현재까지 해외연수사업비 부족으로 연수인원이 176명에 불과해 사업실적이 저조한 편임

사. 타 기금과의 중복성

- 타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기금사업 중 농지와 관련하여 중복 시행되는 해외 연수사업은 없음

지표명

2.2 사업운영의 적정성

가중치

15점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윤명중(☎02-503-7264)
농업기반공사 교수부 2급 곽창호(☎0343-420-3219)

평 가 내 용

1.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 가. 사업대상 선정기준 결정과정의 투명성
- 나. 선정기준의 합리성
- 다. 선정기준 적용의 합리성

2. 사업내용의 적합성

- 가.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 및 조정
- 나. 사업활동과 사업목적의 연계성

3.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 가. 효율성 평가지표와 관리체계의 합리성
- 나. 효율성 제고 실적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1. 운용 여건

- 농지관리위원관련사업에 대한 적절한 선정 기준 필요
- 농업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지보전에 필요한 지속적 노력 필요
- 농지관리기금 잠식 심화로 농지관리위원과 관련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난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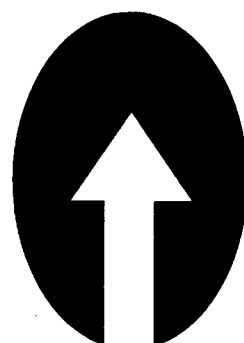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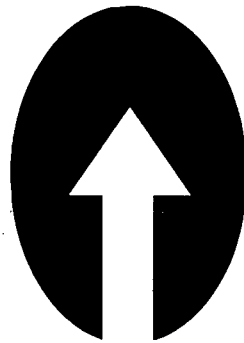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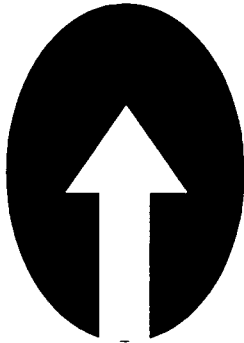
2. 지표관리 방향

- 농지관리위원과 관련된 각 사업에 있어서 사업별로 특성화된 선정기준확립으로 효율적 사업추진 노력
-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농지보전정책의 대응책을 사업별 다각적 추진 모색
- 사업별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농지관련 제도개선 지속 추진
 - 보고서 분석을 통한 사업별 효율성 제고 도모
 - 사업수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속적 개선 보완

3. 지표관리 체계도

< V I S I O N >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사업별 및 사업간 적정성 도모



농지관리위원교육

- ◆ 교육인원 및 지역 선정기준 제시 및 합리적 선정
- ◆ 실무중심교육을 통한 교육사업과 교육목적간의 연계성 도모
- ◆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 추진

농지관리위원회운영지원

- ◆ 농업인위원 중심의 위원 선정 및 위원회운영
- ◆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 ◆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농지문제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농지관리위원해외연수

- ◆ 농지관리위원 및 관련공무원에 대한 연수 실시
- ◆ 사업과 관련한 연수국 및 방문농가·단체 선정
- ◆ 사전국내교육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 도모

Ⅱ. '95~'99 추진실적 요약

1.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 농지관리위원 교육사업

- 농지관리위원 교육인원 및 지역에 대한 기준을 책정, 합리적인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농지관리위원 교육이수자 자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활용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

- 농지관리위원 선정기준
 - 관할지역에서 3년이상 농업경영자중 시장·군수가 5인이상 위촉
 -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농업관련 단체임직원
 - 시·구·읍·면장(당연직 위원장)
- 농지관리위원 구성비
 - 현지 농업인 : 86%
 - 농업관련기관 임직원 : 14%
- 위원 임기
 -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사업

- 농지관리위원 해외 연수대상국 및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
농업선진국의 최신정보 습득 및 파급이 이루어지도록 함
- 연수효과극대를 위하여 적정인원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연수 추진

2. 사업내용의 적합성

□ 농지관리위원 교육사업

-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지방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앙교육에 주력
- 농지관리를 위한 실무중심교육을 추진하여, 교육사업과 교육목적의 원활한 연계 도모
 - 사명감인식 및 실무지식습득 기회 제공
 -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활성화 유도
 - 농지행정의 중추적 역할 수행
 - 자율적 농지관리체제 실현
 - 농업정책 및 농지정책 홍보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

- 일선농업현장에서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농지관리 및 보전의 체계 확립에 노력
- 식량자급기반유지를 위한 전제인 농지의 적정한 보전은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사업

- 농지이용과 관리의 주체인 농지관리위원 및 농업정책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선진국의 농지관리제도 등 다양한 농업관련정보습득 기회로, 해외연수사업을 활용하고 있음
- 급변하는 국제경영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업 및 농업인의 국제 경쟁력 활성화 촉진

3.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 농지관리위원교육사업

- 교육이수인원관리 등 교육서비스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모색을 통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효율성 제고 실적
 - 교육인원 및 지역의 합리적 선정
 - 교육업무의 정보화
 - 모범 농지관리위원 표창 등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

- 농지관리위원회는 현지 지역주민 위주로 구성되어 현장감있고 공개적이며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자율적 농업조직인 농지관리위원회에 의한 농지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음

□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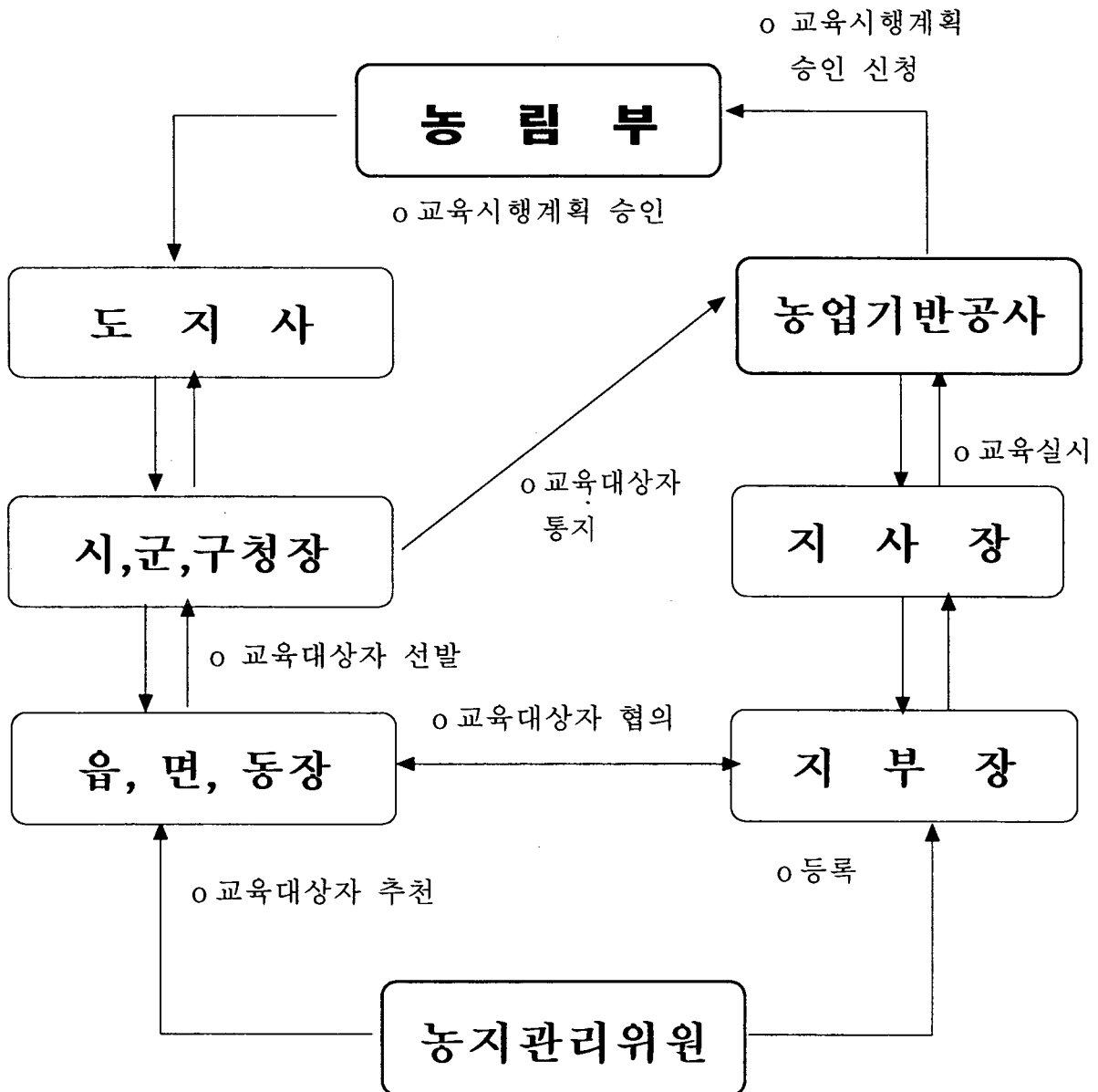
-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사업은 사전국내교육, 연수보고서 작성 등을 통한 연수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평가내용	1.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	-----------------

1. 농지관리위원 교육사업

가. 사업대상 선정기준의 결정과정의 투명성



나. 선정기준의 합리성

□ 교육시행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

-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관리위원교육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 농림부의 교육계획 및 기금사용 승인

□ 교육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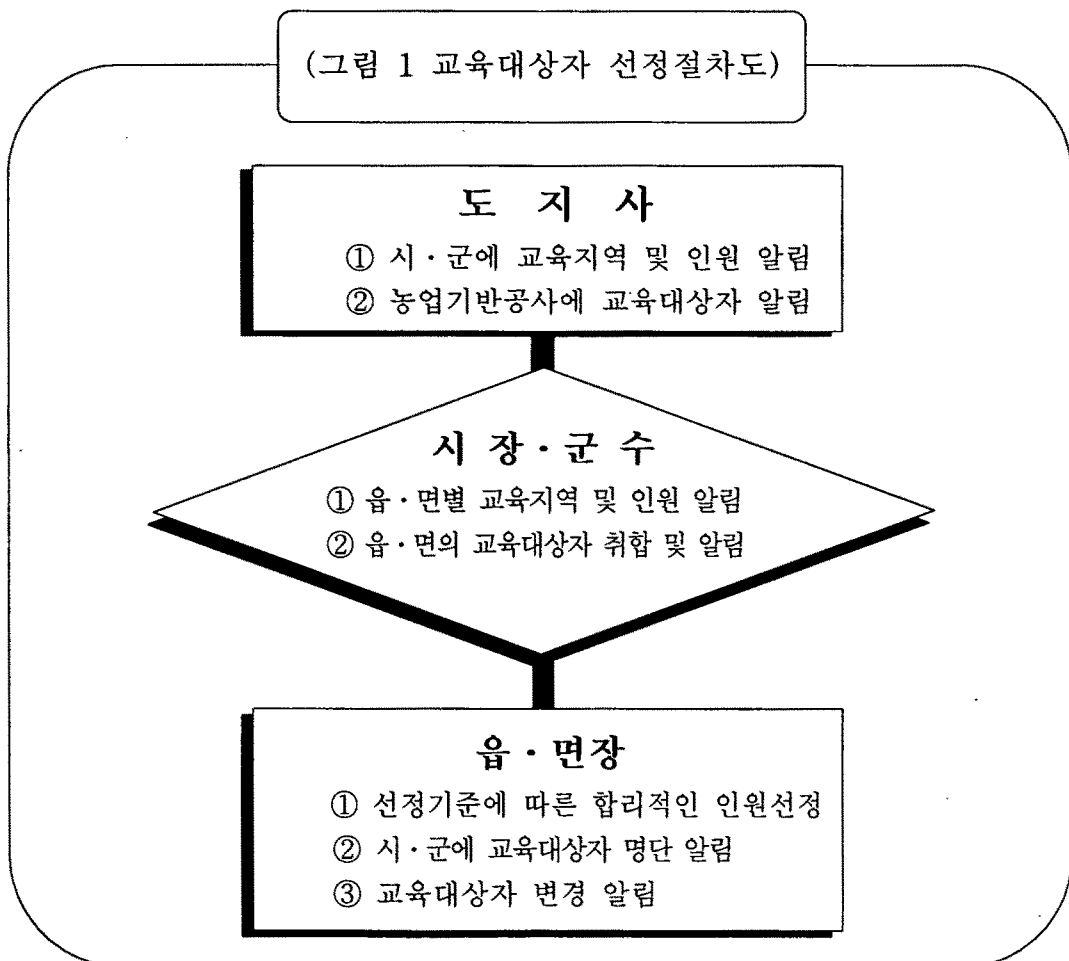
- 농림부의 교육대상자 선정 통지
 - 교육인원 및 지역 선정
 - 교육인원 선정
 - 전체 교육인원을 100%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한 인원배정 이뤄짐
 - 1순위 : 농업인 농지관리위원의 총인원수비율(교육인원의 70%)
 - 2순위 : 농지관리위원교육 미이수자비율(교육인원의 20%)
 - 3순위 : 해당 시·군의 농업진흥지역비율(교육인원의 10%)

(표 1 농지관리위원교육인원 선정 기준)

도별 지수	1순위:위원수비율(70%)		2순위:미이수자비율(20%)		3순위:면적비율(10%)			
	총인원(명)	비율(%)	도별	총인원(명)	비율(%)	도별	면적(ha)	비율(%)
계	31,427	100.0	계	15,298	100.0	계	1,038,892.3	100.0
경기	3,695	11.8	경기	1,607	10.5	경기	123,340.9	11.9
강원	2,068	6.6	강원	953	6.2	강원	50,682.9	4.9
충북	2,315	7.4	충북	1,062	6.9	충북	61,091.1	5.9
충남	4,216	13.4	충남	2,075	13.6	충남	182,640.0	17.6
전북	3,894	12.4	전북	1,920	12.6	전북	134,401.0	12.9
전남	5,688	18.1	전남	3,085	20.2	전남	215,388.1	20.7
경북	5,098	16.2	경북	2,514	16.4	경북	164,668.0	15.9
경남	4,220	13.4	경남	1,972	12.9	경남	103,082.0	9.9
제주	233	0.7	제주	110	0.7	제주	3,598.3	0.3

* 특별시 및 광역시는 교육규정상 교육대상자선발지역에서 제외
 → 선정기준관련 인원수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해당인원 제외

- 교육지역 선정
 - 지역실정과 전년도의 교육일정을 감안, 운번제로 교육일정에 따른 지역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대상자 선정
 - 도지사의 교육대상자 선정 계획 알림(특별시 및 광역시는 제외)
 - 시·군청의 교육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각 위원회별로 1명씩 선정
 - 시장·군수는 관할 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와 협의하여 적격대상자 선정
 - 교육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최근에 위원으로 선발된 신임농지관리위원
 - 2순위 : 농지관리위원교육을 미이수한 농지관리위원
 - 3순위 : 해당 읍·면지역에 해당자가 없을 경우 인근 읍·면 농지관리위원
 - 4순위 : 기이수자 또는 60세이상의 자이나 교육을 희망하는 농지관리위원 또는 농지관리위원회활동에 적극적인 위원



다. 선정기준 적용의 합리성

교육인원 및 지역 선정

- 교육인원 선정시 농지관리위원수, 농지관리위원교육미이수자 및 농업진흥지역 비율을 다단계로 적용하여 합리적인 교육인원 선발이 되도록 노력함

교육대상자 선정

-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 농지관리위원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92년~'99년 이수자현황을 해당 시·군청에 알리어 32,000여명의 농지관리위원 전원의 교육이수 유도
 - 기이수자라 할지라도 재교육을 희망하는 위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교육참여로 인한 교육효과 향상

2.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

가. 농지관리위원 선정기준

-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구·읍·면에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등 포함한 1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자격
 - 관할 시·구·읍·면장
 -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서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이상
 -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촌지도소, 농업기반공사, 농업협동조합및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중 각1인
- 위원장은 관할 시·구·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은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나. 위원의 임기

-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 위원의 해임

- 시장 또는 군수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한다
 - 해당위원회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
 - 질병·징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계속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위원 2/3이상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 2000년도 농지관리위원회 구성현황 >

시·도	위원회설치 개 소 수	농지관리위원수		
		계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	농업인위원
계	1,538	38,144	5,207	32,937
서울	9	137	37	100
부산	10	248	30	218
대구	13	364	92	272
인천	27	392	52	340
광주	5	130	38	92
대전	5	65	21	44
울산	16	353	56	297
경기	179	4,323	622	3,701
강원	120	2,339	338	2,001
충북	107	2,556	242	2,314
충남	175	4,915	683	4,232
전북	166	4,425	525	3,900
전남	234	6,500	862	5,638
경북	248	6,052	928	5,124
경남	210	5,046	615	4,431
제주	14	299	66	233

주) 시·군의 조례로 정한 정수기준으로 작성

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농지관리위원 선임은 농업에 직접 종사하여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현장감있는 농업인이 위원회 구성인원의 86%,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관련기관의 임직원이 14%로 선임되어 공개적, 자율적으로 농지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농지보전 및 대체농지조성이 주목적인 기금사업으로 타당

3.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사업

가. 연수중점사항

- 친환경적인 농지관리제도 운영실태 파악
- 농지 및 농업전담기구의 조직, 업무내용 및 운영실태 파악
- 농지관리제도 및 농업경영실태 파악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인과 유관기관의 농업기술개발 노력
- 농촌의 생활환경 실태
-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및 농지관리 정책방향 등

나. 연수대상국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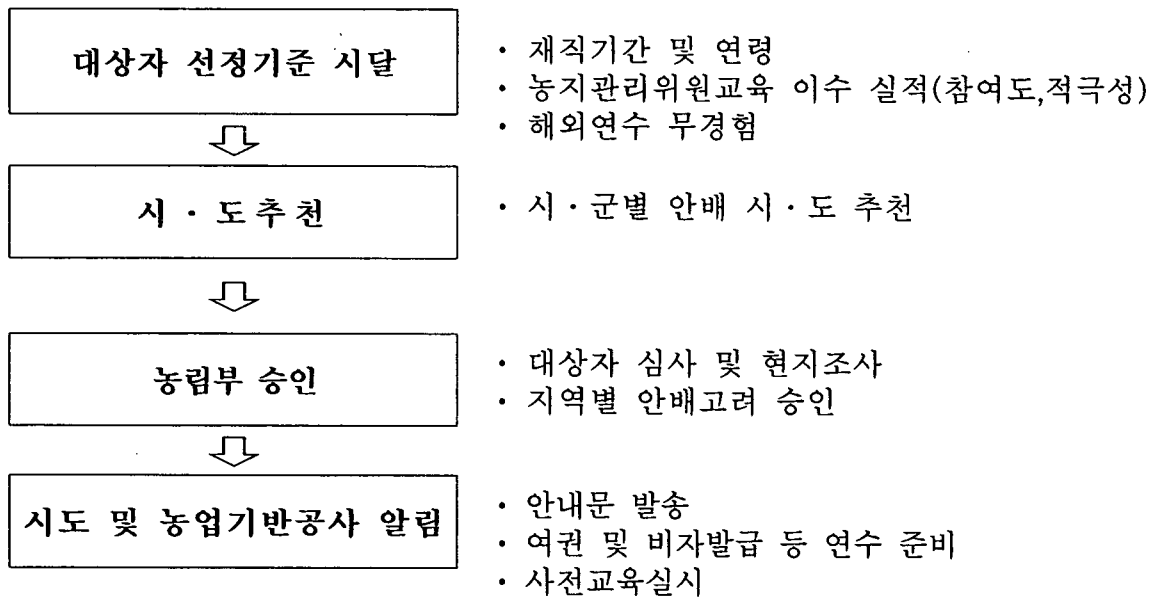
- 기술 집약적 농업으로 생산성이 높고 고소득 및 수출 산업화한 농업선진국
- WTO체제하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선진 농업국
- 친환경적 농업을 통한 농업생산을 하는 농업선진국
- 자조·자립의 농업인 조직 및 농산물 유통선진국
- 자연조건을 잘 이용,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업을 수출산업화한 국가

다. 연수대상자 선정기준

- 농지관리위원
 - 업무량이 많은 지역의 농지관리위원 중에서 추천일 현재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만55세 이하이고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을 이수한 자
 -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선발기관 : 도지사 추천을 받아 농림부장관이 선정

- 연수단장(인솔자) 및 관련전문가
 - 농림부, 연구기관, 농업기반공사 등 관련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중 농림부장관이 선발
- 시·도, 시·군 담당공무원
 - 농지보전실적이 우수한 도 및 시·군에 근무하는 농지업무 재직기간이 현재 2년 이상이고 6급이하인 하위 공무원중에서 시·도 지사의 추천에 의해 선정

라.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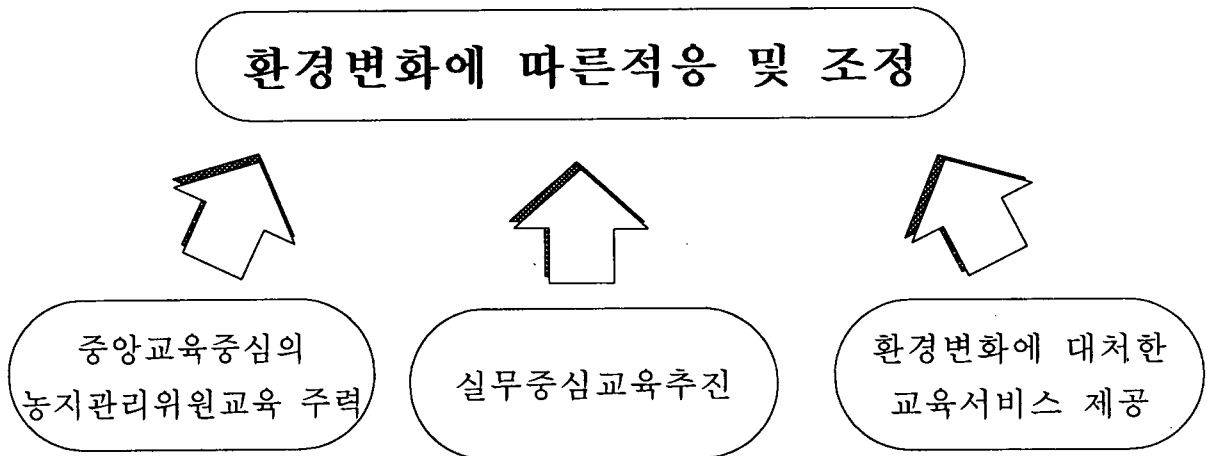


마. 개선내용 및 효과

- 시·도의 추천에 의해 선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의견 적극 수렴
- 농한기 집중연수실시로 농업인 편의제공
- 연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정인원 연수실시 : 연수반별 20여명
- 연수후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을 통한 Feed-Back
 - 다음연도 연수계획수립시 반영
 -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한 연수효과 극대화
-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연수팀 구성
 - 시·도간 농업정보 기회부여
 - 시·도, 시·군간 적정인원 배정으로 투명성 제고
- 실무 담당 공무원 선정으로 하위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1. 농지관리위원 교육사업

가.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 및 조정



□ 중양교육중심의 농지관리위원교육 주력

○ 지방교육 실시

- 사업첫해인 92년 시·군 주관으로 농지관리위원 지방교육 실시
- 지방교육 실적인원 : 9,123명
- 지방교육의 문제점
 - 1일 교육으로 농지관리에 관한 실질적 교육내용 미흡
 - 계획대비 교육실적 저조
 - 교육이수자의 체계적 관리 곤란

○ 중양교육 중심의 농지관리위원교육 주력

- 지속적인 교육인원확대를 통한 지방교육 미실시로 인한 문제점 해결 노력
- 교육참석비 및 여비 지급을 통한 편의제공 및 참석독려
- 농지관리위원의 사명감 고취 및 업무처리능력 배양
- 농업정책입안자와 농업인의 정보교환 및 공유의 기회 마련

□ 농지관리를 위한 실무중심 교육 추진

- 유사한 내용의 교과목 통합·편성
 -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및 농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 농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중심의 과목 편성
 -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및 농지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요령
 -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처리요령으로 과목 통합
- 교육생들의 교과목에 대한 호응도 증대로 교육효과 향상
- 실무중심교육 추진
 - 정책중심교육에서 탈피하여 실무중심교육 실시
 - 실무중심교육의 주요내용(연도별 특기사항 중심)
 - '92년 :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93년 : 농지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요령
 - '94년 :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처리요령
 - '95년 : 농지보전제도 실무
 - '96년 : 농지법 해설
 - '97년 : 농지전용확인요령
 - '98년 : 영농규모화사업 및 직접지불제도
 - '99년 : 농지정보화사업현황
 - 농지관리위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내용 편성·실시
-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교육서비스 제공
 - 농업환경 및 농업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서비스 제공
 - 환경변화에 대처한 주요 교육내용
 - 1992년
 - UR농산물협상 : 농업의 대변혁을 가져온 UR농산물협상의 내용과 대처방안 제시
 - 농어촌환경오염과 그대책 : 환경지향적인 미래농업의 나아갈 방향 모색
 - 1993년
 - UR농산물협상에 대한 계속적 교육 실시
 - 농수산분야 예산편성방향 및 우리나라의 경제현황과 농정방향 : 농업에 대한 경제·경영마인드 형성
 - 1994년
 - 우수농업인 경영성공사례 : 농업경영정보공유 및 성공사례 파급효과 유도
 - 1995년
 - WTO체제 출범에 대응한 농정추진방향 : 무한경쟁체제인 WTO체제에 대한 농업 및 농업인의 대응전략 모색

- 1996년
 -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 이용 : 환경친화적인 농어촌정주권개발 일조
- 1997년
 - 농림사업실시제도해설 :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 1998년
 - 환경변화와 신사고 : IMF체제에 필요한 신사고 함양
 - 농지정보화 사업현황 : 농업인의 정보마인드 형성
- 1999년
 - 인터넷 유통정보 : 인터넷을 통한 농업정보접근 용이 및 농업경쟁력 제고
- 교육기법의 다양화
 - 1992년 교육 첫해부터 강의중심 교육기법과 동시에 VTR등의 다양한 시청각 교재 활용 교육
 - 교육이수자의 41%가 중졸임을 감안, 위원들의 능력수준에 맞는 교육기법 활용

나. 사업활동과 사업목적의 연계성

□ 사명감 인식 및 실무지식 습득 기회 제공

- 교육회수 분석
 - 설문분석 결과, 교육이수자의 57%인 8,352명 : 최초 교육대상자임
 - 위원으로서의 사명감 인식 및 위원회활동에 필요한 실무지식 습득 기회 마련

(표 2 농지관리위원교육 연도별 이수현황)

(단위 : 명)

교육연도	이수현황	계	없다	1회	2회	3회	4회이상
	계 (%)	14,543 (100)	8,352 (57.5)	3,859 (26.5)	1,562 (10.7)	588 (4.0)	182 (1.3)
1992년		-	-	-	-	-	-
1993년		1,981	769	731	334	123	24
1994년		2,136	1,565	231	164	150	26
1995년		2,072	1,224	591	177	70	10
1996년		2,264	1,277	606	244	88	49
1997년		2,246	1,262	641	245	59	39
1998년		1,953	1,114	546	220	51	22
1999년		1,891	1,141	513	178	47	12

※ 1993년 설문 신설

○ 교육효과 분석

- 설문분석 결과, 교육이수자의 90%가 농지관리위원교육이 농지관리위원회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함
- 실무중심의 교육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활성화 기초 마련

□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활성화 유도

○ 영농기간 분석

- 설문분석 결과, 교육이수자의 83%인 8,647명 : 10년 이상 영농 경험
- 교육을 통해서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활성화 도모

(표 3 농지관리위원교육 연도별 영농기간 현황)

(단위 : 명)

연도	영농기간	계	1~3년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이상
	계 (%)	10,426 (100)	357 (3.4)	469 (4.5)	953 (9.1)	8,647 (83.0)
1992년		-	-	-	-	-
1993년		-	-	-	-	-
1994년		-	-	-	-	-
1995년		2,072	72	126	161	1,713
1996년		2,264	71	84	260	1,849
1997년		2,246	70	82	217	1,877
1998년		1,953	68	80	157	1,648
1999년		1,891	76	97	158	1,560

※ 1995년 설문 신설

○ 영농규모 분석

- 1ha~2ha미만 영농규모 : 4,068명(39%)
- 2ha이상 영농규모 : 3,417명(33%)
- 1ha~2ha이상의 영농규모를 갖춘 농지관리위원이 전체 72%임
-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중요성 인식 및 사업의 활성화 유도 가능

(표 4 농지관리위원교육 연도별 영농규모 현황)

(단위 : 명)

연도	영농규모	계	0.5ha미만	0.5ha~1ha미만	1ha~2ha미만	2ha이상
	계 (%)	10,426 (100)	869 (8.3)	2,072 (19.9)	4,068 (39.0)	3,417 (32.8)
1992년		-	-	-	-	-
1993년		-	-	-	-	-
1994년		-	-	-	-	-
1995년		2,072	197	412	808	655
1996년		2,264	189	404	835	836
1997년		2,246	181	465	870	730
1998년		1,953	163	411	765	614
1999년		1,891	139	380	790	582

※ 1995년 설문 신설

□ 농지행정의 중추적 역할 수행

- 설문분석 결과, 교육이수자의 61%인 8,856명 : 이장 겸직
- 농지관리위원직외에 농지행정과 관련되는 직책을 겸임하여 주요 업무 처리

(표 5 농지관리위원교육 연도별 직책 현황)

(단위 : 명)

교육연도 \ 직책	계	이 장	새마을 지도자	농어민 후계자	기 타	없 다
계	14,543 (100)	8,856 (60.9)	1,602 (11.0)	1,087 (7.5)	2,258 (15.5)	740 (5.1)
1993년	1,981	1,275	159	84	278	193
1994년	2,136	1,396	192	107	285	156
1995년	2,072	1,273	216	137	275	-
1996년	2,264	1,463	188	132	377	-
1997년	2,246	1,580	171	92	456	67
1998년	1,953	1,374	89	72	242	176
1999년	1,891	1,263	75	60	587	148

※ 1993년 설문 신설

□ 자율적 농지관리체제 실현

- 재직기간 분석
 - 교육이수자의 42%인 4,290명 : 3년 이상 재직 한 위원
 - 농지관리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들을 통해서 자율적 농지관리체제실현이 가능하도록 유도

(표 6 농지관리위원교육 연도별 재직기간 현황)

(단위 : 명)

연도 \ 재직기간	계	1년미만	1~3년미만	3년이상
계 (%)	10,426 (100)	2,957 (28.4)	3,179 (30.5)	4,290 (41.1)
1992년	-	-	-	-
1993년	-	-	-	-
1994년	-	-	-	-
1995년	2,072	456	730	886
1996년	2,264	710	673	881
1997년	2,246	705	640	901
1998년	1,953	554	606	793
1999년	1,891	532	530	829

※ 1995년 설문 신설

○ 모임횟수 분석

- 년 모임횟수 1~3회 : 6,535명(45%)
- 년 모임횟수가 다소 미약한 실정에서, 농지관리위원교육이 농지관리 업무의 중요성 인식 및 업무지식 학습 기회로 선용됨

(표 7 농지관리위원교육 연도별 모임횟수 현황)

(단위 : 명)

연도	모임횟수	계	1~3회	4~6회	7회이상	없다
	계 (%)	14,543 (100)	6,535 (44.9)	2,905 (20.0)	2,941 (20.2)	2,162 (14.9)
1992년		-	-	-	-	-
1993년		1,981	1,097	406	329	149
1994년		2,136	1,004	358	450	324
1995년		2,072	993	469	314	296
1996년		2,264	964	488	445	367
1997년		2,246	964	493	473	316
1998년		1,953	789	359	438	367
1999년		1,891	724	332	492	343

※ 1993년 설문 신설

○ 처리업무현황 분석

- 농지관리위원으로서 농지행정과 관련된 업무 처리
- 농업현장에서 농업인 조직에 의한 자율적인 농지행정 운영 유도

(표 8 농지관리위원교육 연도별 처리업무현황)

(단위 : 명)

연도	처리업무현황	계	1번	2번	3번	4번	5번
	계 (%)	2,966 (100)	706 (23.6)	197 (6.6)	273 (9.1)	1,672 (55.8)	148 (4.9)
1992년		-	-	-	-	-	-
1993년		-	-	-	-	-	-
1994년		-	-	-	-	-	-
1995년		-	-	-	-	-	-
1996년		-	-	-	-	-	-
1997년		-	-	-	-	-	-
1998년		1,554	401	87	151	847	68
1999년		1,442	305	110	122	825	80

※ 농지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법개정으로 인한 설문내용 조정으로 추산치산출을 위해 최근 2개년의 설문만을 분석 : 각 항목별로 1순위만 기재

(주) 농지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현황 설문 : 5문항에 대한 순위 선택

- 설문형태 : 5문항에 대한 순위 선택
- 설문내용 : 1번-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
2번-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자문
3번-임차료상한에 관한 심의
4번-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에 관한 확인
5번-농업구조개선사업의 촉진과 지원

□ 농업정책 및 농지정책 홍보

- 농지관리위원교육을 통한 홍보 유도
 - 매년 90%을 상위하는 위원들이 농지관리위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답함
 - 교육에 의하여 자연스런 농업정책 및 농지정책 숙지가 이뤄져, 이에 따른 홍보매체로서의 기능 수행
- 농업인과 농업정책자의 정보공유 기회 제공
 - 농지관리위원들이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 및 현장실정 전달
 - 강사진 대부분이 정부의 농업정책 수립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어,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 노력

2.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

가.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 기타 농지관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한 사항

나. 농지조성비부과 목적

- 공장설립등 기존의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마련

다. 농지전용 억제효과

- 식량자급기반유지를 위한 농지의 적정선 보전은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 농지관리기금에서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는 것과 시·군·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모두 농지전용을 억제하여 농지보전 효과가 크므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지원사업내용은 기금사업으로 적합함

3.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사업

가. 해외연수 목적

- 농지관리위원등으로 하여금 농업선진국의 농지관리제도와 농업경영실태를 견학토록 함으로써 이해증진과 사기진작 도모 및 선진농업 등 사례전파

나. 농지관리위원회 제도

설 치

-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88호로 제정 공포된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1990년 설치, 농지법 제46조~48조 지원근거

기 능

- 농지의 임대차관리, 농지이동 상황의 확인과 투기억제, 농지의 전용과 이용에 관한 확인등 농업구조개선의 촉진과 지원 등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한 농업경영능력 및 농지소유 타당성 여부 확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조사(년 18만ha)

구 성

- 전국 1,538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면, 위원수는 38,340명으로 이중 농업인이 32,773명, 농업관련기관인원이 5,567명임

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중요성

- 우리농업은 국제 여건의 변화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농지의 이용은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에서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되고 있음
 - 농업부문에서 토지이용형 농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지 유동화를 통한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
 - 그러나 비농업부문에서도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값싸고 양질의 토지인 농지를 비농업목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첫째 과제로 삼고 있음
 - 이러한 현실속에서 농지의 이용과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인 농지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더욱 중요하며 농지관리는 획일적인 규제가 불가능하며 농지행정을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기구임

- 농지관리위원 및 농지관리 담당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농업선진국의 농지관리제도와 농업경영실태등의 연수를 통한 농지제도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기 진작 도모

- 현재 농지관리제도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등 농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전기 마련 및 농업에 대한 국제적 감각 배양 필요

- 급변하는 국제 경영여건과 농업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지관리위원 및 농지담당 공무원이 자긍심과 참여의식을 갖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도록 농업선진국에 대한 농지관리제도등의 국외연수를 통한 농지관리위원의 사기 진작 및 농지관리위원회 활성화 도모

- 연수 방문국의 관련기관, 농가방문 또는 농장방문을 통하여 방문국의 농업현황과 농업생산기술, 유통체계, 농업인 조직, 농가의 생활상등 관련분야 연수견학 실시로 농업 및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자긍심을 피부로 느끼게 함

- 선진 농업국의 농업기술 및 지식의 습득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UR협상 등에 따른 정부의 농어촌대책에 대한 이해 제고

라. 효과

- 농업선진국의 농지관리제도와 농업경영실태등의 연수를 통한 농지 제도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기 진작 도모

- 농지관리제도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등 농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전기 마련 및 농업에 대한 국제적 감각 배양 필요

- 급변하는 국제 경영여건과 농업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지관리제도등의 국외연수를 통한 농지관리위원의 사기 진작 및 농지관리위원회 활성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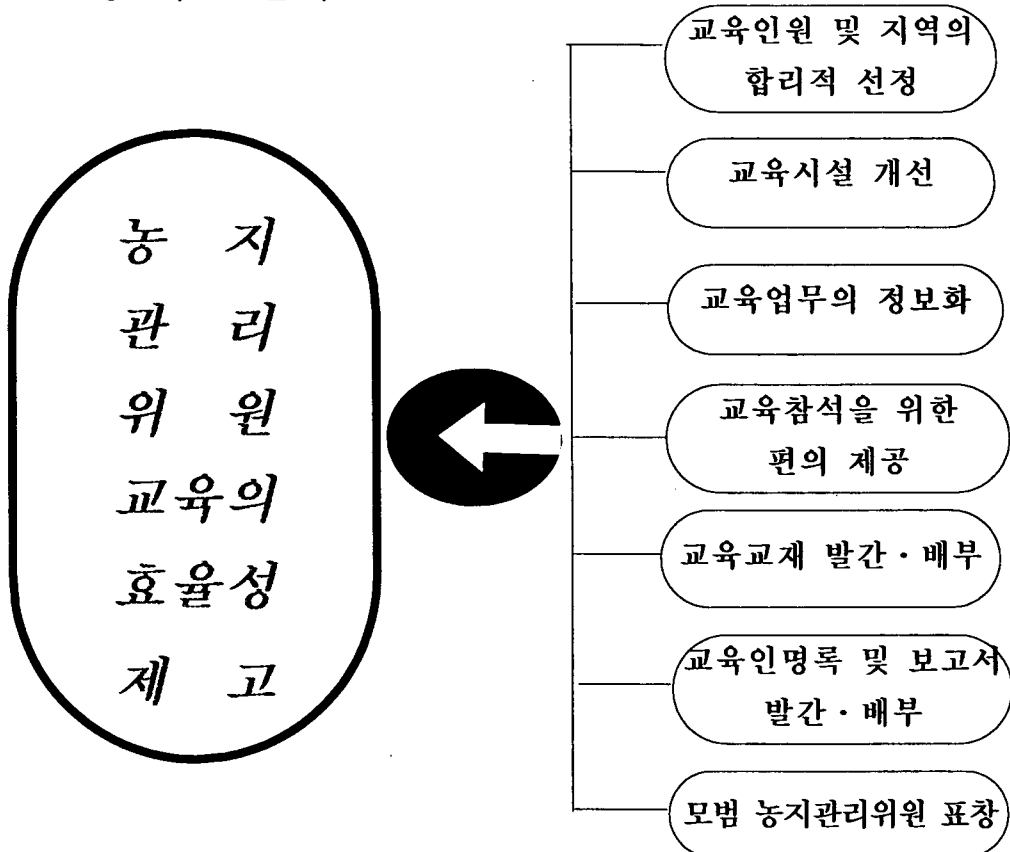
- 방문국의 농업현황과 농업생산기술, 유통체계, 농업인 조직, 농가의 생활상등 관련분야 연수견학 실시로 농업 및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자긍심을 피부로 느끼게 함

1. 농지관리위원 교육사업

가. 효율성 평가지표와 관리체계의 합리성

- 농지관리위원교육사업의 효율성은 교육이수인원 및 예산편성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함
- 예산편성시 농지관리위원들의 교육편의 제공 중심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매년 94%이상의 높은 실적 거둠
- 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 추진

나. 효율성 제고 실적



□ 교육인원 및 지역의 합리적 선정

- 합리적 인원 및 지역 선정지수에 따른 도·시·군별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실적을 제고 노력
- 도·시·군의 담당자와의 긴밀한 업무협약에 의한 교육에 대한 지역실정 반영

□ 교육시설 개선

- 교육효과 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실시

□ 교육업무의 정보화

- 교육운영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교육자료의 정보체계구축으로 합리적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가능
- 업무의 전산화로 사업에 필요한 인력운영의 효율화
 - 1993년 : EMS(Education Management System)프로그램
 - 1998년 : 인력정보프로그램

□ 교육참석을 위한 편의 제공

- 위원회활동에 대한 지원의 보완책으로 교육참석비 및 여비를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음(지역별로 구분하여 지급함)
- 예산상태를 감안하여 일정액을 지급하여 교육참석 독려

□ 교육교재 배부

- 교육내용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농지관리위원 및 농림부 등 관련기관에 교재배부
- 시·군청의 농지관리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줌

□ 교육인명록 및 보고서 배부

- 지속적인 교육효과 파악 및 이수자관리를 위한 교육인명록 및 보고서 배부
- 농지관리위원교육목적의 중요성 인식 및 교육기회 확대에 일조

□ 모범 농지관리위원 표창

- 농정시책유공포상과는 별도로 모범 농업인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포상 실시
- 농지관리위원으로서의 사기 진작

2.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

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방법

- 농지관리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관이 아니고 의결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음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농지관리위원회는 현지 지역주민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기관의 권위적이고 탁상공론을 벗어나 현장감 있고 공개적이며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상당한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다.

나. '99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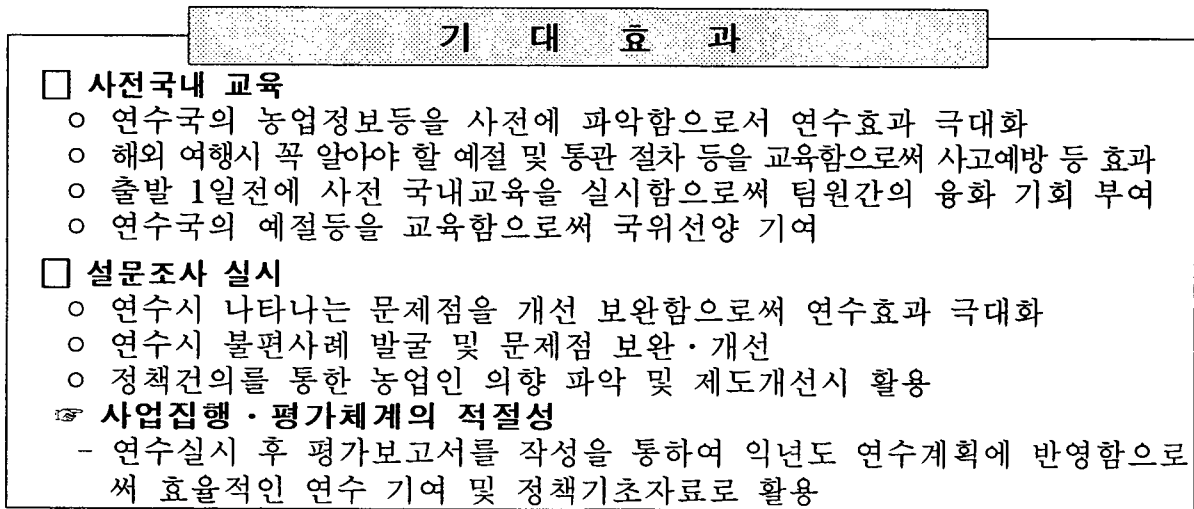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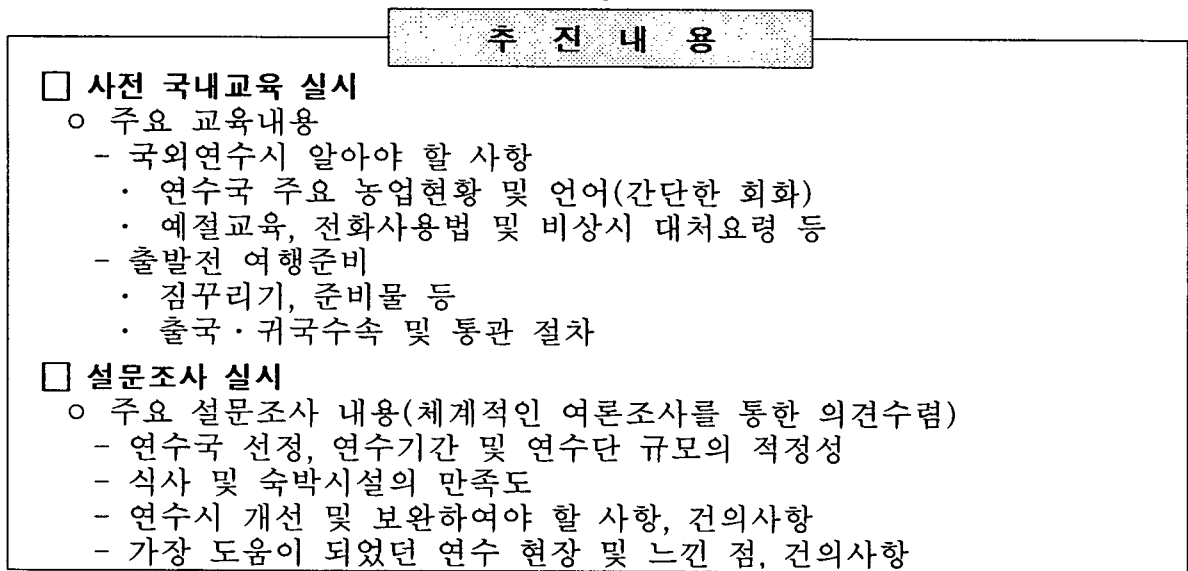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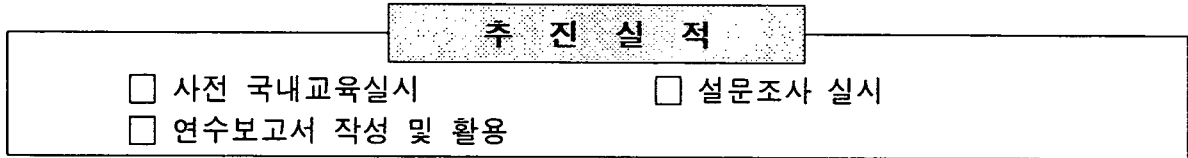
- 1999년도에 총29,447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인원만도 172,790명에 이른다
- 안전처리
 - 총상정 안전 : 54,497건
 - 원안가결 : 53,413건
 - 수정의결 : 472건
 - 부 결 : 612건
- '99 시·도별 운영실적

시도별	위원회개최실적		안 전 처 리 실 적				비 고
	개최회수	참석인원	상정안전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 결	
합 계	회 29,447	명 172,790	건 54,497	건 53,413	건 472	건 612	
서울	8	92	5	5	-	-	
부산	108	588	117	106	-	11	
대구	143	765	142	138	2	2	
인천	304	3,003	747	709	7	31	
광주	3	69	3	3	-	-	
대전	29	149	38	33	3	2	
울산	327	1,628	416	400	2	14	
경기	4,412	25,000	22,323	21,821	189	313	
강원	2,276	11,670	4,190	4,148	31	11	
충북	2,189	10,579	2,808	2,779	9	20	
충남	4,561	34,585	6,161	6,094	39	28	
전북	2,311	13,729	2,378	2,344	12	22	
전남	3,571	19,131	4,054	4,005	27	22	
경북	4,077	25,203	5,310	5,186	66	58	
경남	3,941	21,808	4,519	4,357	85	77	
제주	1,187	4,791	1,286	1,285	-	1	

3. 농지관리위원회 해외연수사업

가. 사업운영방식의 효율성

- 농지관리위원회 국외연수 사업은 국외 농업관련기관, 단체, 농가 등의 방문 및 조사, 연구를 하는 특수분야의 연수로서 민간위탁 등에 의한 사업추진은 곤란



나. 주요검토 요구사항

- 환경농업의 중요성 및 식량안보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 농업선진국의 농지보전 및 이용실태 연수견학 확대 필요

지표명

2.3 사업목적의 달성도

가중치

15점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윤명중(☎ 02-503-7264)
농업기반공사 교수부 2급 곽창호(☎0343-420-3219)

평 가 내 용

1. 사업목적 달성 정도

가. 목표 설정의 합리성

나. 목표 대비 달성도

다.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서비스 개선 노력

2. 성과평가관리체계의 합리성

가.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나 성과평가결과의 조치 및 사후조치체계의 적정성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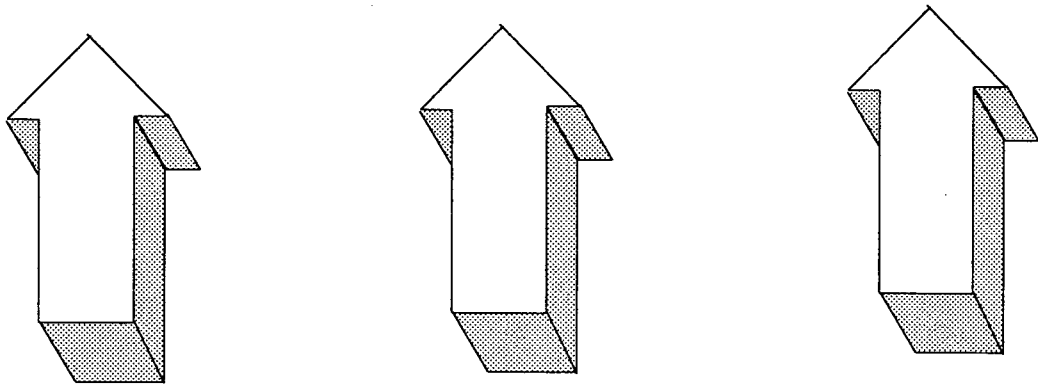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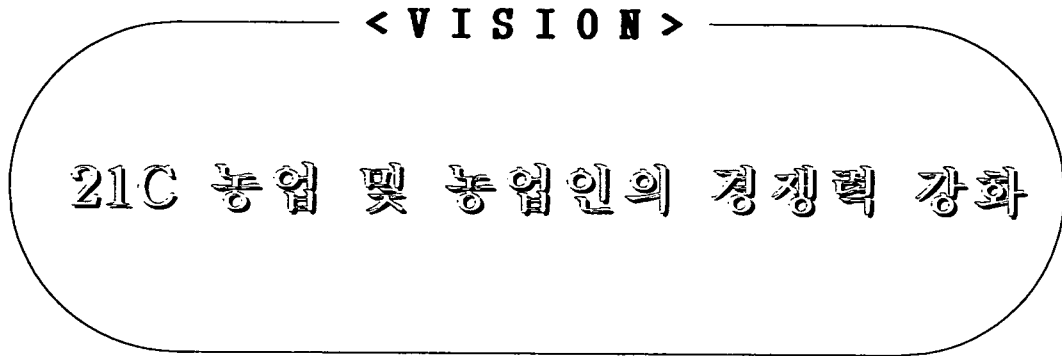
1. 운용 여건

- 정부예산부족으로 농지관리위원관련사업의 실적 저조
- 식량안보측면에서 농지보전 및 관리요원의 필요성 증대됨
- 농업 및 농업외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경쟁력 취약

2. 지표관리 방향

- 사업계획의 100%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실적 점검 및 계획관리 철저
- 사업별 평가결과를 사업경영전반에 반영하여 제도개선 노력 강화
- 업무의 능률화와 서비스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

3. 지표관리 체계도



농지관리위원 교육	농지관리위원회운영지원	농지관리위원회해외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를 통한 교육 사업의 활성화 도모 ◆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FEED-BACK 추진 ◆ 교육이수자 관리를 통한 농지관리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한 농지이용증진 사업계획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농지전용확인 등을 통한 농지보전에 기여 ◆ 식량자급도 증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결과 사례전파를 통한 공감대 형성 ◆ 홍보자료 및 정책기초 자료로 활용 ◆ 지속적인 추진으로 사업목적 달성

II. '95~'99 추진실적 요약

1. 사업목적 달성 정도

□ 농지관리위원 교육사업

- 농지보전의 중요성에 따라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반영한 목표 설정
- '92~'99년까지 전체대상인원 중 16,337명에 대한 교육완료(실적을 50%)
- 서비스개선 노력
 -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를 익년도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 노력
 - 교육업무의 정보화를 통한 경영개선 도모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

- 농지관리실태조사,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을 통한 농지보전에 크게 기여
- 농지감소면적이 '96년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원의 결과로 파악됨

□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사업

- 환율 및 연수국에 따른 사업인원의 증감을 감안하여, 사업비대비 연수국, 연수기간을 고려한 목표 설정
- 해외연수 후 사업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연수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사전 국내교육 등 운영

2.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합리성

□ 농지관리위원 교육사업

- 설문분석을 통한 평가사항을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개선노력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함
- 성과평가결과의 조치 및 그 적정성
 - 종합보고서 발간·배부
 - 교육개선 실무협의회 개최
 - 농지관리위원교육사이트 구축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활동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주력

□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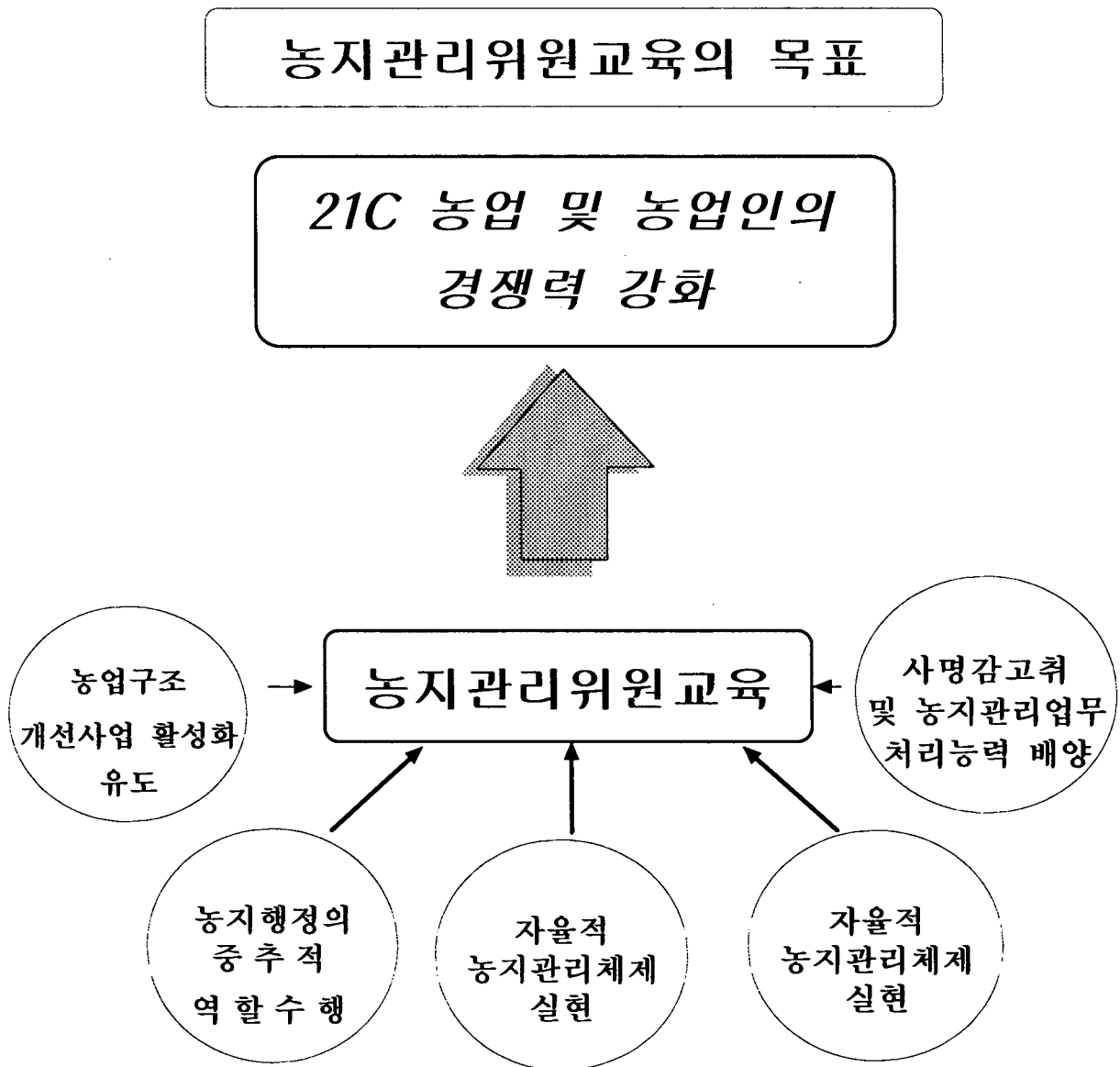
- 연수평가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농업인 교육자료, 농지정책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평가내용	1. 사업목적 달성 정도
------	---------------

1. 농지관리위원 교육사업

가. 목표 설정의 합리성



□ 사명감 고취 및 농지관리에 관한 업무처리능력 배양

- 현장에서 농지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의 사명감 고취
- 자발적이며 긍정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배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켜 보다 원활한 농지관리업무처리 수행 촉진

□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활성화 유도

- 우리 농업의 구조적 문제점
 - 영농규모의 영세성으로 농가의 농업소득만으로는 가계비 충당 곤란
 -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 등으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조성의 어려움 산재
 - 농외소득원의 부재로 농업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 제약
 -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등 제반사항의 낙후성
-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활성화 유도
 - 농업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 농업구조개선사업
 - 농업과 농촌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 농가의 영농규모적정화 촉진
 - 농업생산기반조성 정화 촉진
 - 농촌정주생활권 개발
 - 농지관리위원의 역할
 - 농지의 매매, 장기임대차사업 등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시행기관인 농업기반공사의 협조요청사항 처리업무 수행
 - 전업농육성대상농가의 선정에 관한 의견제시 등 농지유통화를 통한 농업구조개선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역할 담당
 -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활성화 유도
 - 농지관리위원은 구조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광범위한 활동 전개
 - 관할구역내의 대상농가를 방문하여 농지의 권리이동 독려
 - 고령농업인에 대하여 경영이양 권유, 농작업의 위탁 알선 등
 - 농지관리위원들의 역할수행에 의해 농지의 유동성증대를 통한 농업구조개선효과 제고
 -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활성화 유도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 농업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참여독려 모색
 - 농촌과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

□ 농지의 자율적 관리·보전체제 확립 도모

○ 농지법 제37조

- 농업인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과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복잡한 농지전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농지가 전용되고 있다

○ 농지의 자율적 관리·보전체제 확립 도모

- 농지의 전용에 관한 확인기능의 의의
 - 비농업인에 의한 부당한 농지의 형질변경 방지 및 비농업적 이용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부당한 사유화 견제
 - 농지전용에 따른 개발이익의 공적환수 및 개발이익의 농업인 환원을 위한 조직으로 농지관리위원회를 인정함
- 농지전용에 관한 확인사항
 - 농지의 정비상태와 관련하여 경지정리 여부, 수리시설 등 생산기반정비여부
 - 농지전용으로 인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칠 영향 유무 및 피해방지 계획수립 여부
 -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등의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
 - 신고로 전용할 수 있는 경우의 확인에 있어서는 농지전용신청인이 농어업인 여부와 법령에 정하는 면적이내에서 전용하고자 하는지 여부

○ 농지의 자율적 관리·보전체제 확립 도모

- 농업인의,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을 위한 농지관리·보전 실현
 - 각종 특별법에 따른 협의 등에 의한 농지전용을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농지전용에 관한 의견 제시 가능
- 농지관리에 필요한 실무적인 교육 실시 필요
 - 교육을 통해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식 제공
 -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업생산력 저하 방지
 - 농지에 대한 농업인중심의 자율적인 관리·보전체제 실현 노력

□ 농지행정의 중추적 역할 담당

○ 농지문제의 특이성과 해결책

- 농지문제의 특이성

- 농지문제는 농지의 소유, 보전 등의 문제가 관련제도와 함께 복잡한 이해관계 수반

- 농지문제의 해결책

- 일반행정기관에 의한 해결

□ 농지문제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문제 해결 곤란

- 농업인 조직에 의한 해결

- 이해당사자와 해당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인식
- 객관성과 공정성 및 중립성을 가지고 문제해결 용이하게 가능

- 농업인 조직이 현장성있게, 공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 행정기관은 제도적인 수렴 및 관리기능 담당하도록 조치

○ 농지행정의 중추적 역할 담당

- 농지관리위원회에 의한 농지문제 해결

-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농지법 제46조 내지 제48조)
- 농업현장에서 가장 적절하게 농지문제의 해결책을 제시
- 정부주도의 농지행정이 아닌, 농업인 조직에 의한 농지행정 유도

- 농지행정의 중추적 역할 담당

- 농지의 소유자가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자문
-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촉진과 지원
- 기타 농지관리에 관한 각종 사항의 확인 등의 업무 수행

□ 농업정책 및 농지정책에 대한 홍보매체로서의 효과 제고

○ 농업정책 또는 농지정책관련 교과목 편성

- 당해연도의 농업정책 또는 농지정책의 기본방향 교육
- 국제적인 농업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
- 농업정책 담당자를 강사 초빙

○ 농업정책 및 농지정책에 대한 홍보

- 정부 및 정책에 대한 자료 공개로 정부 및 정책에 대한 신뢰 배양 유도
-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로 정책시행의 오류 최소화 추구

나. 목표 대비 달성도

□ 농지관리위원교육실시 결과

-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발전에 일조
- 각종 농업정책의 전달과 국정홍보를 통하여 농업발전 기여 노력
- '92년 1,794명, '93년 1,981명, '94년 2,136명, '95년 2,072명, '96년 2,264명, '97년 2,246명, '98년 1,953명, '99년 1,891명 등 총 16,337명을 실시
- 지속적인 교육 실시 계획
 - 농지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
 - 농지관리위원의 업무처리 능력 배양
 - 사명감 고취를 통해 지역 및 국가발전 이바지

□ 농지관리위원교육의 목표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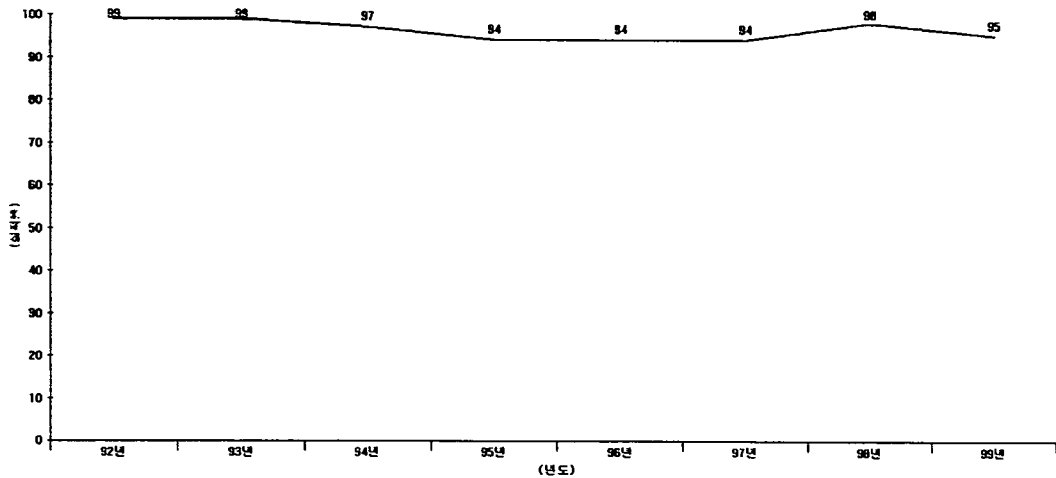
- 목표달성도의 내용
 - 농지관리위원교육의 목표달성도
 - 교육대상자인 농지관리위원의 교육이수인원을 중심으로 측정
 - 계량지표인 교육인원중심의 측정으로 비계량적 지표의 등한시 우려
 - 설문분석등을 통한 비계량지표의 목표달성도의 내용으로 규정하려 함
 - 계량지표인 교육인원과 서비스개선등의 비계량지표를 함께 운영하려 노력함
 - '99년 현재까지 16,337명 교육 이수(실적율 : 전체 교육대상인원의 50%)

(표 9 농지관리위원교육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내용	예산	인원			비고
			계획	실적	실적율(%)	
1992		371	1,800	1,794	99.6	○ 1992~1999년 누계실적 : 50%
1993		371	2,000	1,981	99.1	
1994		371	2,200	2,136	97.1	
1995		410	2,200	2,072	94.2	
1996		493	2,400	2,264	94.3	
1997		502	2,400	2,246	93.6	
1998		446	2,000	1,953	97.7	
1999		436	2,000	1,891	94.6	
합계		3,400	17,000	16,337	96.1	

(그림 2 농지관리위원교육 실적을 추이)



○ 목표달성의 어려움

- '92년 계획 : 2005년까지 전체 농업인 농지관리위원들에 대한 1회의 교육이수 완료 목표
- 국가의 정책중심이 농업에서 다른 분야로의 이동으로 매년 예산액배정 축소
- 21C가 환경시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식량생산자의 우위 당연
- 환경친화적인 식량생산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원인 농지보전이 시급함
- 생명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농지관리위원교육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충실한 목표 달성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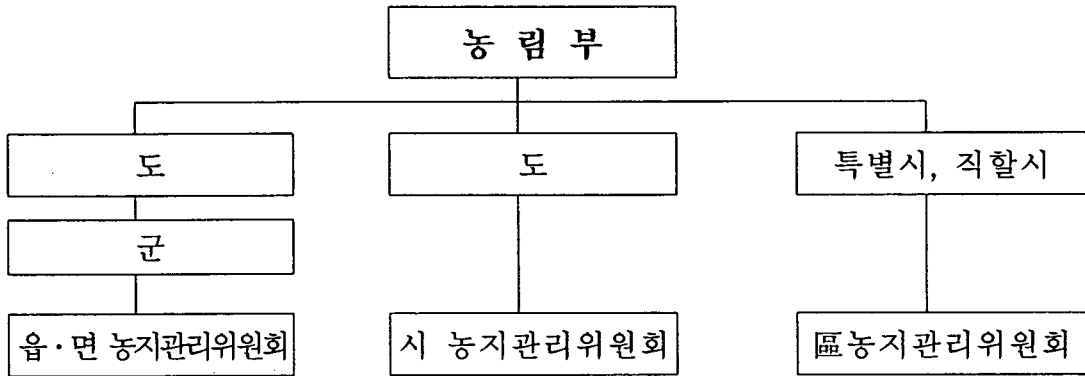
다.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서비스개선 노력

□ 사업대상의 범위

○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체제

- 농지법 제46조
 -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를 말하며, 도농 복합형태에 있어서는 동에 한한다)·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읍 또는 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관할구역내에 농지가 없는 시·읍 또는 면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 또한 지역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로 인접한 2개이상의 시·구·읍 또는 면에 하나의 농지관리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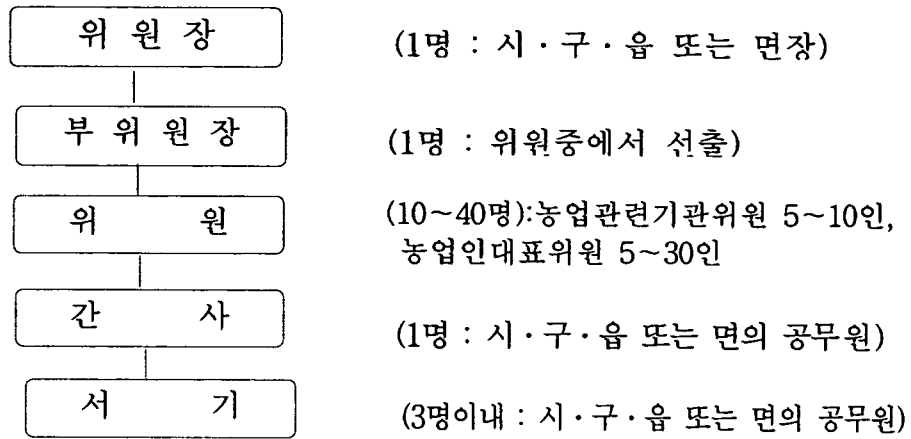
(그림 3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체계)



○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직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농지관리위원으로 구성
-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구·읍·면장
- 부위원장은 농지관리위원가운데서 선출
-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농지관리위원
 - 농업인대표 농지관리위원
 -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시·군조례에 의해 선출됨
 -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인 시·구·읍·면에 3년이상 영농중인 농업인가운데서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5~30인
 - 농업관련기관 농지관리위원
 - 농업협동조합, 농촌지도소, 농업통계사무소 출장소,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및 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 등 5개 농업관리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중 각 1인으로 총 5~10인
 - 1개 농지관리위원회의 농지관리위원은 총 10~40인으로 구성
 - 각 농지관리위원회의 농지관리위원정수는 10~40인의 범위내에서 시·군의 조례로 당해 지역의 리·동수, 농지면적, 농가호수 등을 고려하여 정함
 - 간사와 서기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과 3인 이내의 서기가 있음
 - 간사와 서기는 위원이 아님
 - 위원회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의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임명

(그림 4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직)



○ 농지관리위원

- 농지관리위원교육사업의 대상

- 농업관련기관 농지관리위원을 제외한 순수 농업인 농지관리위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9개도 각 시·군의 32,000여명 농지관리위원

(표 10 농지관리위원회 구성현황)

(1999. 12. 31 기준)

구분	위원회설치 개소수	위원(명)		
		계	농업관련기관추천위원	농업인위원
합계	1,538	38,340	5,567	32,773
소계	85	1,659	313	1,346
서울	9	113	27	86
부산	10	248	30	218
대구	13	360	94	266
인천	27	392	52	340
광주	5	128	36	92
대전	5	66	22	44
울산	16	352	52	300
소계	1,453	36,681	5,254	31,427
경기	179	4,225	530	3,695
강원	120	2,468	400	2,068
충북	107	2,613	298	2,315
충남	175	4,913	697	4,216
전북	166	4,473	579	3,894
전남	234	6,615	927	5,688
경북	248	5,996	898	5,098
경남	210	5,074	854	4,220
제주	14	304	71	233

- 농림부의 교육대상자 선정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농지관리위원을 선정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발, 교육 실시
 - 농지관리위원의 교육이수자 현황 분석
 - 연령 현황
 - 교육이수자 중 41%가 51~60세임

(단위 : 명)

교육년도	연령	계	40세이하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계 (%)		16,337 (100)	2,604 (15.9)	5,633 (34.5)	6,829 (41.8)	1,271 (7.8)
1992년		1,794	274	600	758	162
1993년		1,981	330	643	862	146
1994년		2,136	404	712	936	84
1995년		2,072	360	685	900	127
1996년		2,264	350	791	966	157
1997년		2,246	342	832	874	198
1998년		1,953	293	720	758	182
1999년		1,891	251	650	775	215

- 학력 현황
 - 교육이수자 중 41%가 중졸의 학력을 지님

(단위 : 명)

교육년도	학력	계	초등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계 (%)		16,337 (100)	3,053 (18.7)	6,711 (41.1)	6,221 (38.1)	128 (0.8)	224 (1.3)
1992년		1,794	357	737	653	12	35
1993년		1,981	365	833	758	7	18
1994년		2,136	395	906	792	13	30
1995년		2,072	421	898	714	24	15
1996년		2,264	454	961	806	20	23
1997년		2,246	402	851	930	13	50
1998년		1,953	329	770	805	17	32
1999년		1,891	330	755	763	22	21

· 직책 현황

□ 교육이수자 중 이장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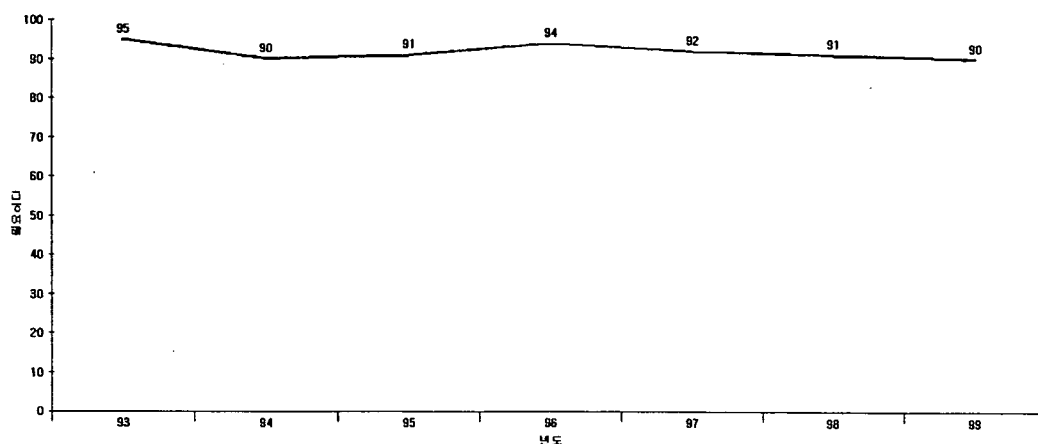
교육년도	직책	계	이 장	새마을 지도자	농어민 후계자	기 타	없 다
	계	14,543 (100)	8,856 (60.9)	1,602 (11.0)	1,087 (7.5)	2,258 (15.5)	740 (5.1)
1993년		1,981	1,275	159	84	278	193
1994년		2,136	1,396	192	107	285	156
1995년		2,072	1,273	216	137	275	-
1996년		2,264	1,463	188	132	377	-
1997년		2,246	1,580	171	92	456	67
1998년		1,953	1,374	89	72	242	176
1999년		1,891	1,263	75	60	587	148

※ 1993년 설문 신설 : 1992년 자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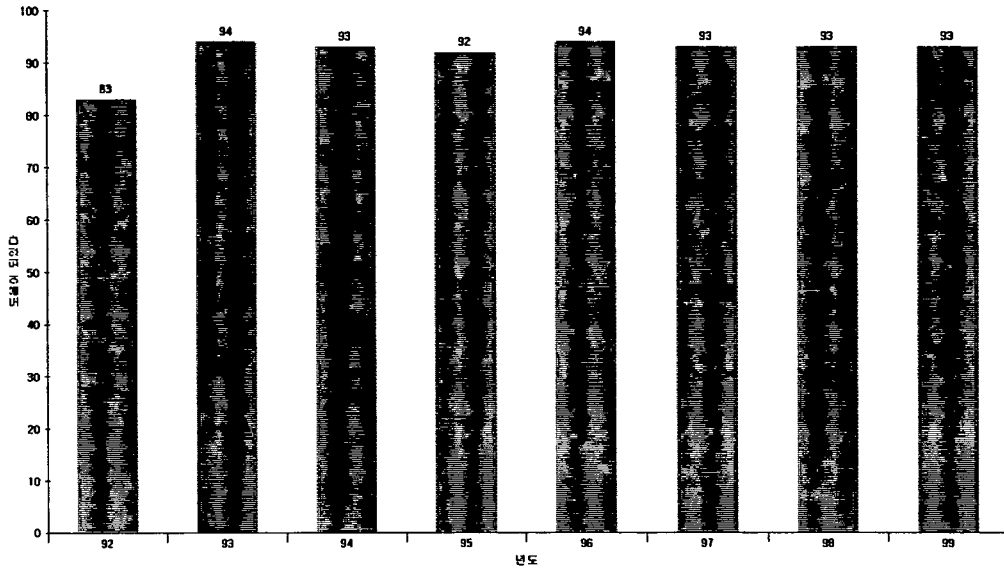
□ 만족도 분석

- 농지관리위원교육은 매년 기수별로 설문 실시(백분을 분석)
- 농지관리위원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
- 다음해 교육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 노력
 - 농지관리위원교육의 필요성 및 도움여부
 - 전반적으로 교육의 필요성 및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음
 -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시사하며,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제공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그림 5 농지관리위원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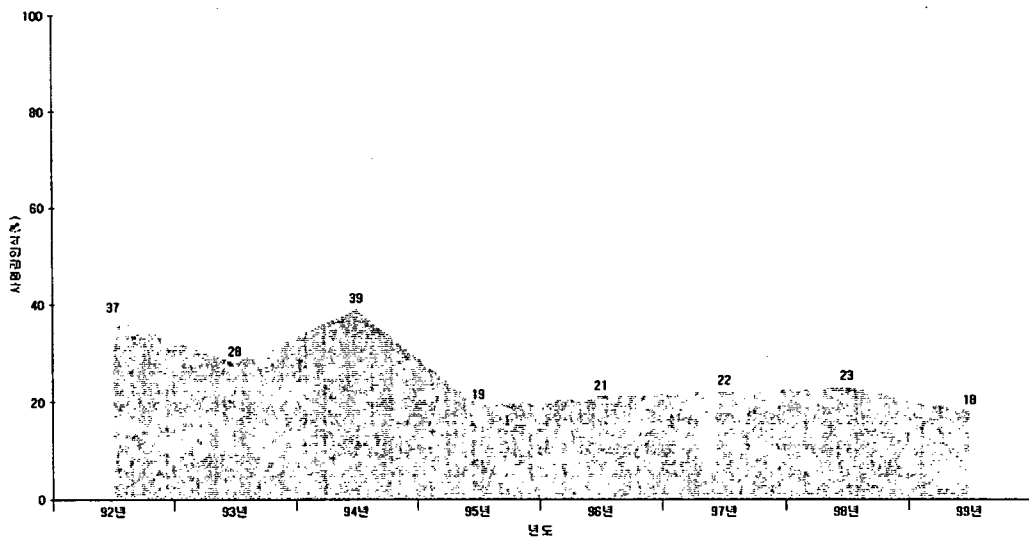
(그림 6 농지관리위원교육의 도움여부에 대한 추이)



- 농지관리에 대한 사명감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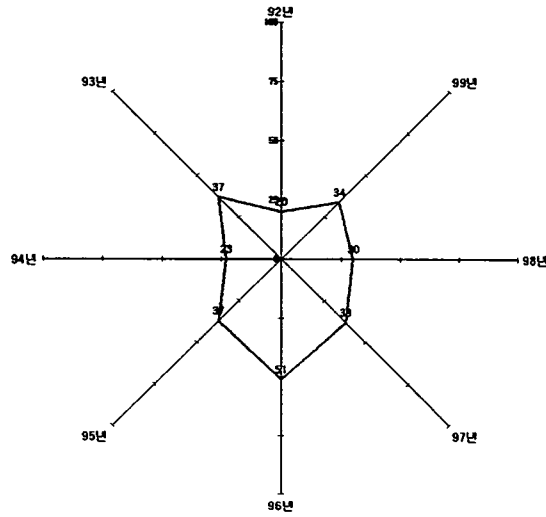
- 교육을 통한 사명감 고취가 일정수준 이뤄지고 있음
- 교육외적인 측면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위원 개개인의 사명감 제고 필요

(그림 7 농지관리에 대한 사명감 인식정도에 대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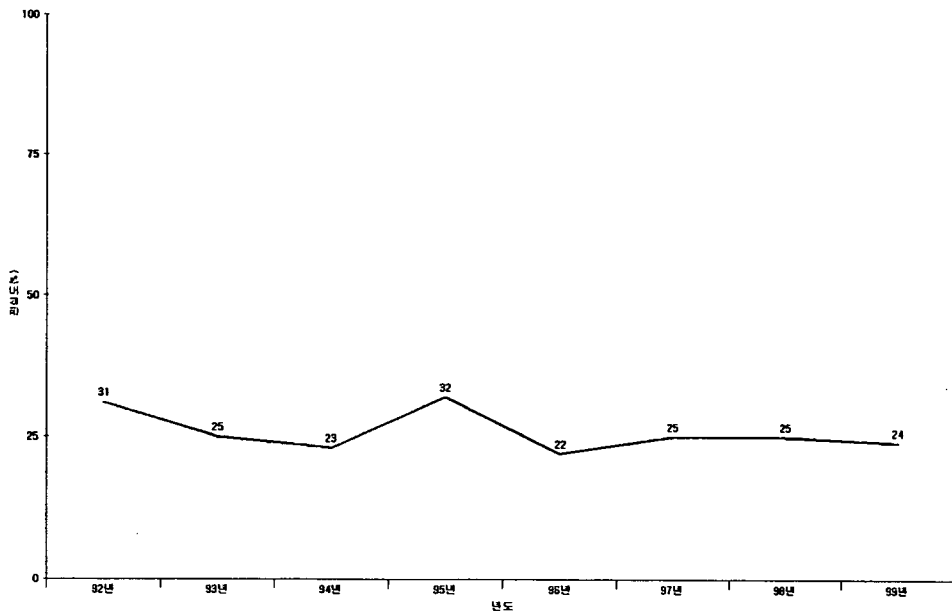
- 농지관리위원들의 실무처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 내지 약간 상승
- 농지관리위원들의 실무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계속적 충족 필요

(그림 8 농지관리실무처리에 대한 도움여부에 대한 추이)



- 농업정책 및 농지정책에 대한 관심은 지속성을 유지
 - 농업인으로서 농지관리위원들의 농업정책 및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의 지속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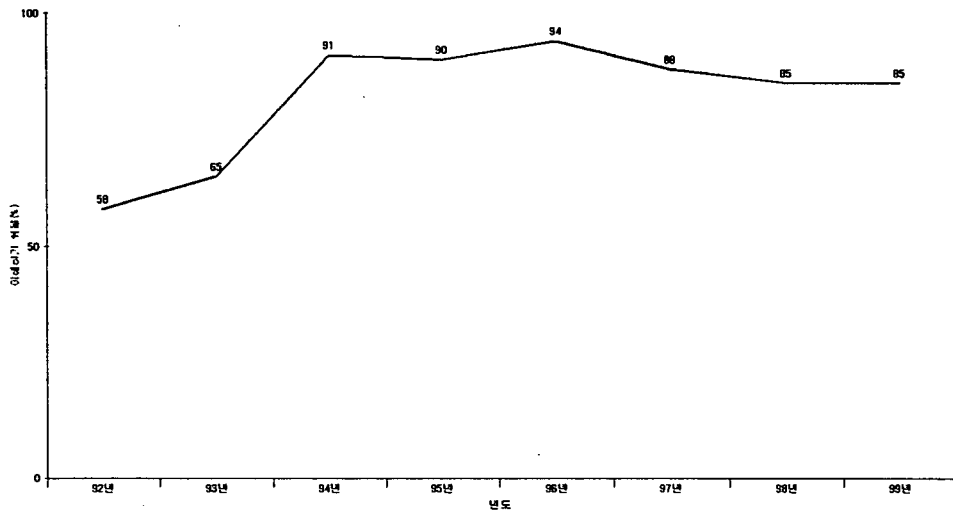
(그림 9 농업정책 및 농지정책에 대한 관심도 추이)



- 강의내용의 이해정도

- 농지관리위원의 학력 및 연령을 고려한 교과목 편성 및 다양한 교육기법의 활용으로 교육에 대한 농지관리위원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교육효과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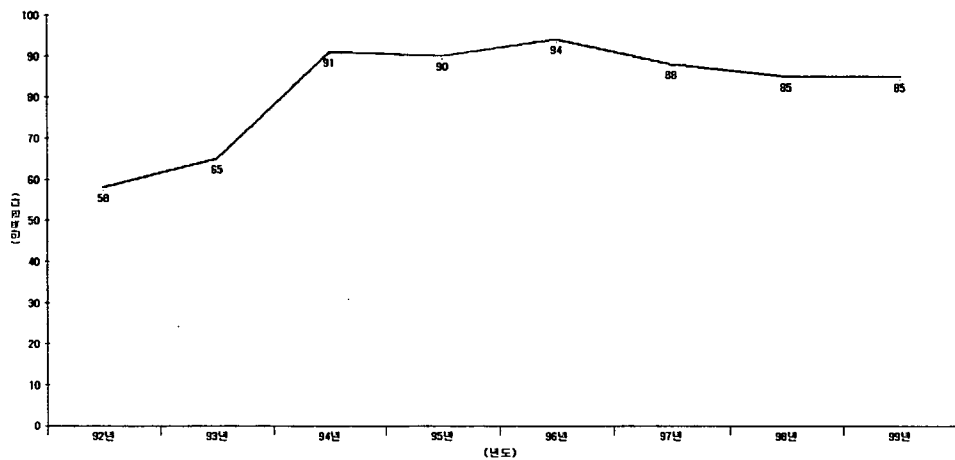
(그림 10 강의내용의 이해정도에 대한 추이)



- 교육서비스 만족도

- 농지관리위원교육서비스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일정수준 유지
-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서비스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필요

(그림 11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추이)



- 농업정책수립자와 농업인과의 대화 기회 도모
 - 농업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제도 및 농업정책에 관한 자료 제공
 - 농업정책 수립자가 직접 현장(농업인)의 의견을 듣게 되는 기회제공으로 정책 수립에 반영 노력
- 설문분석 결과 전체문항의 응답이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교육목적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 농지관리위원교육 설문 결과<'92~'99>)

항 목	응 답	응 답 율 (%)							
		'92	'93	'94	'95	'96	'97	'98	'99
교육의 필요성	필요하다	-	94.5	90.0	91.0	93.6	91.9	90.9	90.3
가장 도움이 된 교육내용	농지관리 사명감인식	37.6	27.9	37.8	18.9	20.9	21.8	22.9	17.7
	농지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요령	19.9	36.8	22.7	37.2	50.5	38.6	30.0	33.9
	농지정책 및 농업정책	31.3	24.5	23.1	31.9	21.8	24.5	25.3	24.1
	위원간 유대강화	5.3	4.2	9.2	8.5	4.2	8.8	10.6	8.7
	의식전환	2.9	4.1	7.2	3.5	2.6	4.9	5.6	5.3
	무응답	3.0	2.5	-	-	-	1.4	5.6	10.3
교육의 도움여부	도움이 되었다	83.2	93.7	93.1	92.4	93.8	93.4	92.8	92.5
강의내용 이해도	이해하기 쉬움	58.1	65.4	91.4	90.0	94.0	87.7	85.2	84.8
교육서비스 만족도	만족한다	80.7	81.7	71.7	64.1	62.0	66.1	59.4	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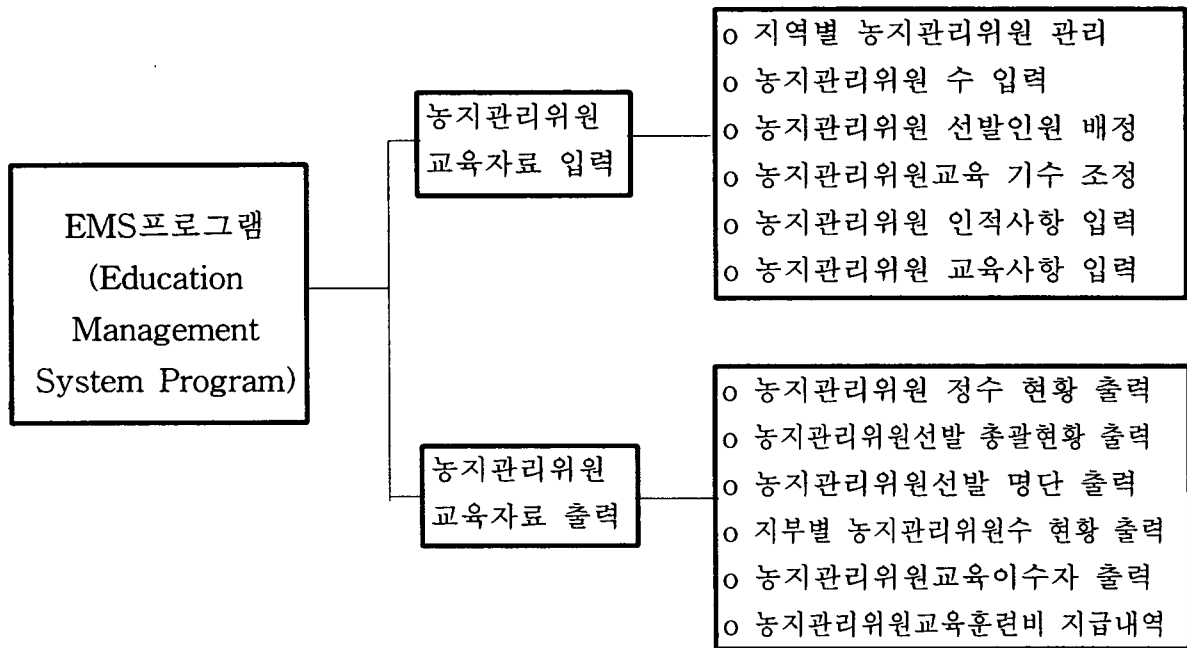
□ 서비스 개선 노력

- 교육업무의 정보화
 - 교육운영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 교육서비스 제공
 - 목 적
 - 농지관리위원교육 자료의 활용도 제고
 - 농지관리위원교육업무의 능률화
 - 교육자료정보공유에 의한 농지관리인력의 체계적 관리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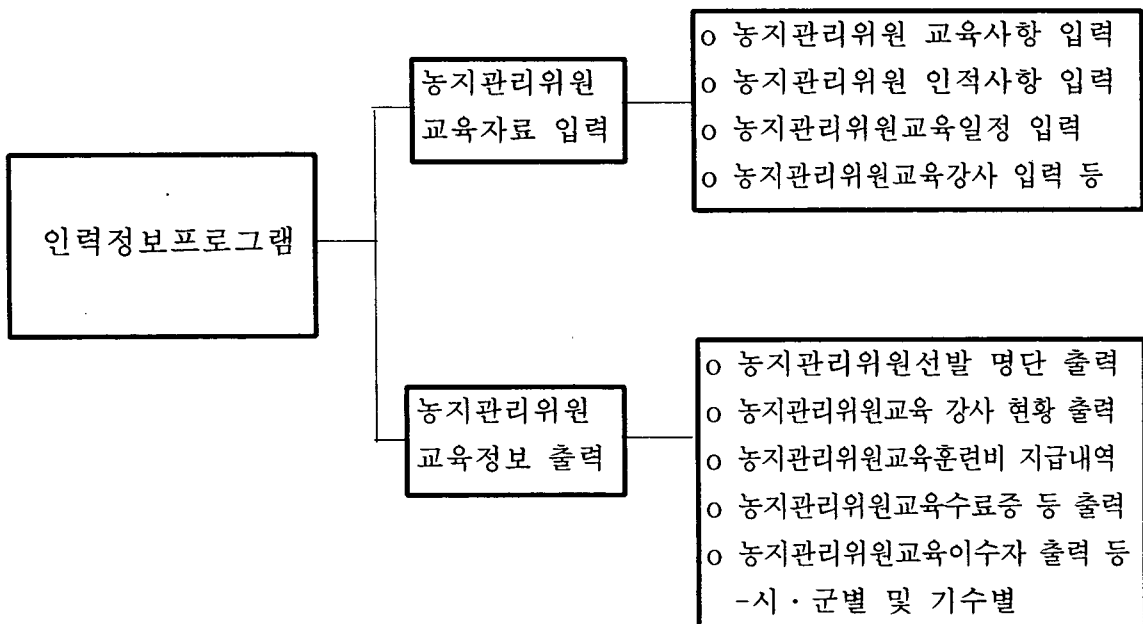
· 1993년

- EMS(Education Management System)프로그램 개발
- 1997년까지 농지관리업무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 1998년

- 인력정보 프로그램 개발
- EMS(Education Management System)프로그램 보완·개발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강사관리 프로그램 등의 보완을 통한 교육서비스 향상 노력



- 효과
 - 교육자료의 정보시스템 구축
 - 합리적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인력, 시간, 비용절감으로 경영개선 도모
- 교육이수자의 체계적 관리
 - 교육서비스의 정보화를 통한 이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책자 발간·배부
 -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력
 - 교육프로그램 개발
 - 인명록 발간 · 배부
 - 1994년: '92~'94년 교육이수자인명록(인원 : 5,911명) 발간 · 배부
 - 1997년: '92~'97년 상반기 교육이수자인명록(대상인원 : 10,987명) 발간 · 배부
 - 교육이수자 및 해당 시·군청에 배부
 - 효과
 - 합리적인 교육대상자 선정의 기초자료 활용
 - 농업정책 및 농지정책의 홍보매체로 농지관리위원 역할 배양
 - 농지관리위원교육효과의 지속적 유지 및 전파
- 교육효과 향상 도모
 - 설문분석을 통한 농지관리위원들의 건의사항을 익년도 교육계획에 FEED-BACK노력
 - 연도별로 중요한 사안을 교과목으로 편성, 농업 및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 추구
 - '92년 : 농지관리위원들에게 교육비 등을 제공하여 교육참석을 독려하였음
 - '93년 : "UR농산물협상"에 대한 강사를 농업정책입안자로 초청함으로써 정부의 정책홍보 강화 및 농업의 대응전략 모색
 - '94년 : 농업인간의 정보교환 및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우수농업인 농업경영성공사례"시간을 신설
 - '95년 : 학생장 및 생활실장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생활이 되도록 하여, 위원으로서의 책임감 및 사명감이 고취되도록 노력
 - '96년 : 내용이 중복되는 과목을 통합편성하고 농지관리위원활동 및 농업인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과목을 편성, 실시
 - '97년 : 농업기반공사의 교육환경개선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서비스 제공 여건 마련
 - '98년 : 실제적으로 명예직이나 다름없는 농지관리위원들에게 교육여비를 현실적으로 재책정, 지급함으로써 위원회활동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유도함
 - '99년 : 21C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이용 및 환경농업에 대한 과목 신설

2.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

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지원 근거 및 재원

□ 농지법(중전 농지임대차관리법) 제49조에 의거 '91년부터 농어촌발전특별회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하다가 '99년부터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

□ 연도별 지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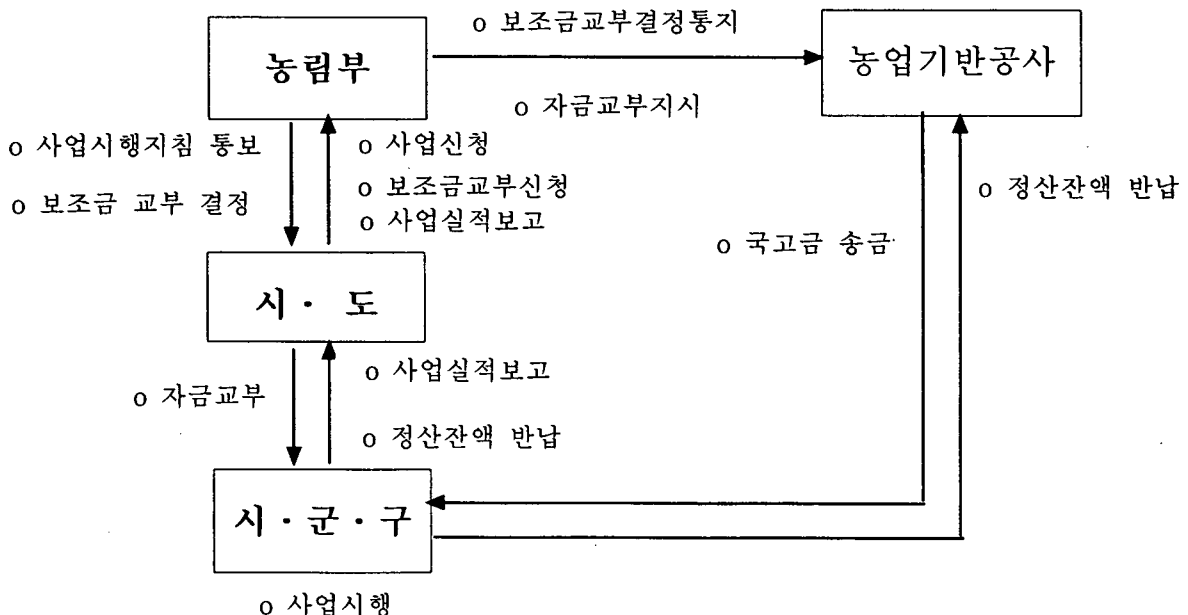
구 분	'91~'94	'95	'96	'97	'98	'99
- 사업량(개소)	6,193	1,549	1,550	1,551	1,547	1,547
- 총사업비 (백만원)	6,200	1,859	1,860	1,861	1,856	1,856

□ 2000년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내 용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기 금	지 방 비	
회의경비수당등	1,538개소	1,846	923	923	

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 시행 체계도



다. '99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적

- 위원회 개최실적 : 29,447회
- 참석인원 : 172,790명
- 안전처리 실적
 - 상정안전 : 54,497건 (100%)
 - 원안가결 : 53,413건 (98%)
 - 수정의결 : 472건 (1%)
 - 부 결 : 612건 (1%)

라. 사업목적 달성도

-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이용증진사업 계획수립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시 현지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농지보전에 크게 기여
- 농지관리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농지임대차 활성화
-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심의를 통해 식량자급도 증진 제고
- 100% 위원회 활동 결과라고는 볼 수 없지만 농지감소면적이 '96년도 이후 급속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관리위원회지원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임

<표 12 연도별 농지면적 감소내역>

(단위 : ha)

구 분	'94	'95	'96	'97	'98	'99
농 지	△22,000	△48,000	△40,000	△21,000	△14,000	△11,000

3.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사업

가. 목표설정기준

연수사업은 환율 및 연수국에 따라 연수인원이 다르므로, 연수사업비 대비 연수국가, 연수기간고려 목표 설정

나.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

□ 연도별 추진실적(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1996			1997			1999		
	예산	결산	실적율	예산	결산	실적율	예산	결산	실적율
○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	200	152	76.0	200	199	99.5	200	197	98.5

※ 96년도의 경우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 반납
98년도는 IMF영향으로 사업비 반납

□ 국가별·연도별 추진실적(인원)

구분	'96년도			'97년도			'99년도		
	국가	기간	인원	국가	기간	인원	국가	기간	인원
계	7	32	60	호,뉴	27	80	독,프	18	36
제1반	독,덴,스	8.26 ~9.6	20	호,뉴	7.9 ~7.17	20	독,프	8.31 ~9.8	18
제2반	일,대	9.11 ~9.18	20	독,덴	8.20 ~8.28	20	미,캐	9.28 ~10.6	18
제3반	미,캐	11.1 ~11.22	20	일,중	9.2 ~9.10	19			
제4반				네,프	10.8 ~10.16	21			1

□ 시·도별 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계	176	20	16	14	16	18	24	18	23	6	21
'96년	60	6	5	5	6	6	7	6	7	3	9
'97년	80	10	8	6	6	8	12	7	12	3	8
'98년	-	-	-	-	-	-	-	-	-	-	-
'99년	36	4	3	3	4	4	5	5	4	-	4

다.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서비스 개선 노력

□ 사업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연수 후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

- 여권 및 비자발급 안내
- 사전 구내교육을 통한 여행과 관련한 일반상식 교육

1. 농지관리위원 교육사업

가.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 설문분석결과 반영

- 설문분석을 통한 평가사항을 종합보고서로 발간·배부하여 교육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교육이수자 관련정보는 보안유지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제공함)

- 설문분석을 통한 계량지표지수를 중심으로 잘된 사항은 계속적으로 추진 미흡한 점은 개선하여 농지관리위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함

나. 성과평가결과의 조치 및 사후조치체계의 적정성

□ 종합보고서 발간·배부

- 설문분석을 통한 평가사항을 매년 종합보고서 발간·배부
- 효과
 - 농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분석·검토하여 관련기관에 알려주어 농업정책 수립 이바지
 -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반영, 적정하고 합리적인 교육개선 노력

□ 타 농업교육기관 견학 및 자료조사

- 교육수행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서 매년 타 농업교육기관 견학
- 효과
 - 타 농업교육기관을 통한 벤치마킹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및 효율성 제고

□ 교육개선 실무협의회 개최

- 농림부와 교육수행기관인 농업기반공사가 매년 교육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 효과
 - 교육관련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다음연도 교육에 반영하여 교육서비스의 질향상 노력
 - 농지관리위원교육을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방향으로 전환 추진

□ 교육인력의 체계적 관리

- 교육이수자 인명록 발간·배부
 - 94년, 97년 두차례에 걸친 인명록 발간·배부를 통하여 교육이수자를 농업관련기관 및 시·군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수요조사 실시
 - 99년 전국의 32,000여명의 농지관리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수요현황을 조사하여 농지관리위원회활동 및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함

□ 농지관리위원교육 사이트 구축

- 정보화시대인 21C를 선도할 수 있도록 농지관리위원교육사이트를 인터넷에 등재할 계획임
- 교육관련업무의 정보체계구축에 그치지 않고 2000년 5월까지 농지관리위원교육사업전반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완료 계획
- 자율적 농지관리체제확립을 위한 인력양성이 시급하나, 정부예산배정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 농지관리위원교육관련 정보제공 및 공유 도모

2.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

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평가계획 수립 (농지51300-581호)

□ 평가목적

-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당초 설치목적이나 기능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 보완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 제도적인 활성화방안 마련 시행

□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에 대한 시각

- 긍정적 시각 : 농림부, 학계, 농지관리위원, 일부 시민단체
 - 농지의 취득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중시하는 현행 농지법하에서는 지역주민등 농업인의 협조와 참여없이 경자유전원칙의 유지등을 위한 농지관리에 한계
 - 규제위주의 농지행정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해 주민자율에 의한 농지관리 및 보전 도모
 - 해당지역의 농지관리업무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농지보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 수행

- 부정적 시각 : 민원인, 규제개혁위원회, 일선 농지담당공무원
 - 농지취득 및 전용에 따른 확인거부 및 확인 대가로 농지관리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금품이나 기부금 요구
 - 농지관리위원들의 농지전용허가 등 확인업무 수행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므로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
 -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회의개최 및 소집에 따른 업무부담에 비해 심의가 소홀한 경향

□ 평가 및 조치계획

- 주요 평가사항
 - 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형태
 - 위원회의 업무추진 실태
 - 위원회 운영 및 문제점 분석
 -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 및 운영효율성 검토 등
-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농경연, 농업기반공사 및 농업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
- 평가일정
 - 4월중: 평가안 마련(관계기관과 협의)
 - 5월중: 평가를 위한 설문실시(농업인, 농지관리위원, 담당공무원 대상)
 - 6월중: 농지제도개선작업반 작업내용에 반영, 개선안 마련
- 평가후 조치계획
 - 제1단계 : 농지법령 개정시까지 운영효율방안 수립, 시행
 - 제2단계 : 법령정비가 필요한 경우 향후 농지법령 개정 추진

3.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사업

가. 해외연수실시 결과 평가보고

□ 보고서 발간 실적

- '96 농지관리위원 국외연수사업 평가보고서
- '97 농지관리위원 국외연수사업 평가보고서
- '97, 99 농지관리위원 국외연수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나. 평가보고서 주요내용

□ 주요 설문조사 실시결과를 통한 분석

- 문제점 및 제도개선 보완사항 도출
- 정책건의사항 도출
- 서비스 만족도 조사(숙소, 음식)
- 연수소감 및 느낀 점 등

□ 국가별 연수내용

- 수집자료 번역
- 환경적 측면의 농지제도 이해
- 국내와 비교한 외국의 농지제도 비교분석
- 연수국 농업인의 농지에 대한 인식도 파악
- 연수국 농업형태
- 농가의 생활환경실태

다. 사후관리체계의 적정성

□ 연수결과보고서 활용

- 농지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농업인 교육자료로 활용
- 익년도 연수계획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 연수방향 등 조정
 - 연수추진방법 등 개선

마. 한계농지정비사업

여 백

지표명

2.1 사업선정의 타당성

가중치
15점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촌정비과 서기관 남궁박(☎02-504-9404)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개발부 2급 주경노(☎0343-420-3392)

평 가 내 용

1. 기금설치 목적과의 적합성

가. 사업의 목적, 기금목적과의 일치여부

나. 사업지구 선정의 투명성

2. 예산 및 타 기금과의 사업중복

가. 예산 또는 타기금의 유사사업 존재

나.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1. 운용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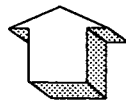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 우량농지의 잠식방지와 새로운 토지수요에 적극적 대처
- 시범사업의 조기정착으로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

2. 지표관리 방향

- 대내외 평가등에 의한 사업추진방향 정립
 - 관련규정의 이행절차 준수
 - 지구지정 절차의 적합성
-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성과 확보
- 시범사업의 효율적추진으로 사업의 발전적 추진방안 모색

3. 지표관리 체계도

한계농지와 주변산지등을 체계적으로 개발·정비하여
한정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활용방안 강구
- ◎ 지역특성에 맞는 관련사업 연계 개발로 토지이용을 제고



시범사업의 효율적 시행

- 관련법 및 규정등의 정비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추진방안 모색
- 사업지구 선정검토 및 유형별 개발방안 정립

사업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등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
- 타 관련사업과 연계추진 방안 강구
- 사업시행기관 담당자 연석회의

Ⅱ. '95~'99년도 추진실적 요약

1. 기금설치 목적과의 적합성

- 우량농지보전을 위한 적극적 방법으로 한계농지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업지원
 - 사업지원근거 및 사업시행근거법 제정
-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추진 방향 구상
 - 유휴·한계농지의 다목적활용방안 심포지엄 개최 결과에 의거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방안 강구
- 사업의 목적, 기금목적과의 일치여부 검토

2. 예산 및 타기관과의 사업중복

- 예산 및 타기금의 유사사업 중복투자 검토
 - 유사사업은 없으나 개발형태가 유사한 사업과 비교 검토하여 기금 지원 계획 수립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평가내용

1. 기금설치 목적과의 적합성

1. 농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추진 배경

- UR 협상이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운영됨에 따라 진흥지역 밖 농지를 방치한다는 사회적 비판 여론 제기
 - 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비 농업적 용도의 이용증대 및 각종규제 폐지 요구
 - 휴경농지 방치시 홍수 및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 우려
- 따라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진흥지역 밖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수행이 요구됨.

□ 사업지원 및 시행근거법 제정

- 사업지원근거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5호
 - 농지의 장식방지를 위하여 지구별 40억원 수준의 용자지원
- 사업시행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76조 내지 제85조(한계농지 등의 정비)
 - 한계농지의 정의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 경지의 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만제곱미터인 농지등을 말함.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목적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와 그 주변토지를 대상으로

- 효율적으로 개발·이용·관리하여 국토의 효율적 개발 이용을 도모하고
- 이들 토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량농지의 잠식방지와 새로운 토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 미 활용으로 인한 농지의 황폐화방지 및 국토 이용면적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기대효과

- 진흥지역 밖 농지의 정비로 농지이용을 제고 및 합리적 보전 관리
- 국토의 황폐화 및 지역인구 과소화 방지
- 도·농교류 촉진을 통한 농업·농촌의 이해증진 도모
-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토지수요에 적극 대처(우량농지 잠식 방지)

2.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 유휴·한계농지다목적 활용방안 심포지엄 개최

- 일 시 : 1995. 5. 19
- 장 소 : 서울 교육문화회관
- 목 적 : 농업생산성이 낮은 유휴·한계농지 등은 농어촌의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활용·개발하는 방안 모색
- 특별강연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이용의 효율화 방안
 - 유럽의 유휴 및 한계농지 활용방식
 - 일본의 유휴 및 한계농지 활용방식
 - 대만의 유휴 및 한계농지 활용방식

○ 주제발표 및 토의

- 한계농지의 농업적 이용방안
- 유향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방향
- 한계지(한계 농·임지)의 비농업적 이용방안
- 한계지 (한계 농·임지)개발과 산촌진흥

○ 심포지엄 결론 요지

- 한계농지의 개념이 지리적, 지형적 평면개념에서 사회·경제적 공간개념이 추진되어 재정립 필요
-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한계농지개발이 심포지엄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 공감대를 형성시킴으로서 시행착오를 줄임
-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를 농촌현실을 무시한 비농업적 이용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 선진외국과 같이 유리한 지역보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자원조달이 과제이다.
- 한계농지와 같은 농어촌부존자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용·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농어촌의 세부계획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함.

□ 한계농지정비 시범사업지구 선정의 객관성 유지

○ 목 적

농업진흥지역 밖 휴경농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국토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 선정방법

- 사업시행의 신청에 따라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설정

○ 선정기준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의 기준 및 지정요건 구비 검토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구선정시 고려사항 반영여부
 - 지역주민의 호응도(적극적 참여 및 개발의지)
 - 사업시행을 위한 용도변경가능성 및 용지매수 등 사업추진의 용이성
 - 발기반정비, 축산단지조성사업 등 타부문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 주변경관 및 환경보전과의 조화
- 관련 실과 협의 및 농정심의회 의견 반영
 - 한계농지 해당여부
 - 사업의 타당성
 - 지역주민 호응도
 - 사업시행을 위한 용도변경 가능성
 - 사업추진의 용이성 및 효율성
 - 타부문 개발계획과 연계성
 - 주변경관 및 환경보전과 조화여부
 - 제외지구 해당여부
 - 관련법상 제외 요인

○ 시범지구 현황

(단위 : 백만원)

지구별	위치	면적 (ha)	정비 유형	총 사업비			사업 시행자	지구 선정
				계	자체 자금	농지관리 기금		
계		36.1	다목적 이용형	23,202	6,874	16,328		
신계	충북 진천	4.2	다목적 이용형	3,059	629	2,430	농기공	'97
수락	충남 논산	9.8	다목적 이용형	5,998	1,998	4,000	농기공	'96
대곡	전남 화순	4.7	다목적 이용형	3,086	646	2,440	농기공	'97
상송	경북 포항	7.5	다목적 이용형	4,671	1,213	3,458	농기공	'96
가리네	강원 횡성	9.9	다목적 이용형	6,388	2,388	4,000	횡성 군수	'97

1. 예산 및 타기금의 유사사업 존재

- 한계농지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된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 경지의 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만제곱미터만 미터인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기타예산 또는 타 기금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없음.

2. 본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

- UR협상이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운영됨에 따라 진흥지역 밖 농지를 방치한다는 사회적 비판 여론 제기
- 진흥지역 밖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활용방안 제시를 위한 대책수립이 요구됨

기대효과

- 진흥지역 밖 농지와 정비로 농지 이용률 제고 및 합리적 보전관리
- 국토의 황폐화 및 지역인구 과소화 방지
- 도·농 교류 촉진을 통한 농업·농촌의 이해증진 도모 및 부가적 지역발전효과 거양
-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토지수용에 적극대처(우량농지 잠식방지)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촌정비과 서기관 남궁박(☎02-504-9404)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개발부 2급 주경노(☎0343-420-3392)

평 가 내 용

1. 용자대상 선정의 적정성

- 가. 용자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 나. 선정기준의 합리성
- 다. 선정기준 적용의 합리성

2. 용자조건 산정의 합리성

- 가. 용자조건 산정기준의 합리성
- 나. 용자조건 산정절차의 타당성
- 다. 용자조건 적용의 합리성

3. 부실채권 관리의 적정성

- 가. 부실채권 관리체계의 적정성
- 나. 부실채권 회수노력 및 실적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1. 운용 여건

- 신규 시범사업으로 인한 관련법 및 규정 적용의 합리성 유지
 - 사업시행에 따른 한계농지기준 및 지정요건 준수
- 지역주민의 사업 동참 유도 및 사업이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도록 추진
 -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반영 철저 시행

2. 지표관리 방향

- 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사업 활성화 노력
 - 사업시행체계 정립
 - 관련법 및 지침 등의 개정 등 제도 정립
- 사업목적이 부합되는 사업시행
 -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 환경친화적인 개발기법 수립
 - 지역주민 의견 반영 노력
- 농촌개발 관련사업과의 연계추진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타부문 농촌개발계획과 연계한 농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시범사업 조기 마무리

II. '95~'99년도 추진실적 요약

1. 용자대상선정의 적정성

- 사업시행자에게 선정기준 정립
- 한계농지정비지구 선정위원회 운영
- 사업시행을 위한 경영위원회 심의
- 사업대상지구 개발유형 선정을 위한 기본조사 시행
- 사업추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한계농지정비기획단 운영

2. 용자조건 산정의 합리성

- 농지관리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검토
 - 용자 기간, 사업의 성격, 수익성, 상환능력, 유사사업 비교

3. 부실채권 관리의 적정성

- 한계농지개발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및 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상환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평가내용

1. 용자대상 선정의 적정성

1. 사업시행자 선정기준

□ 선정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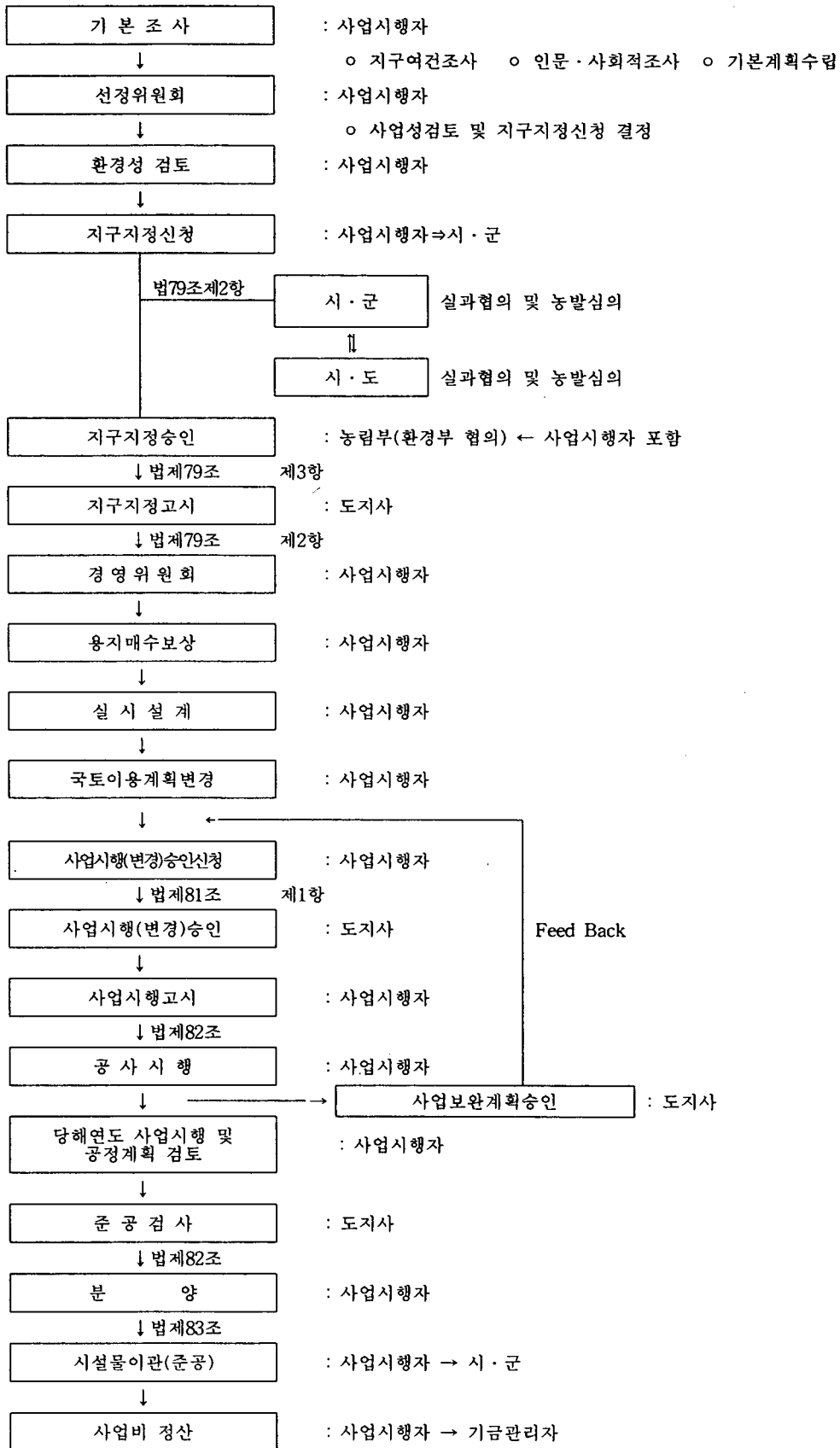
: 용자대상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지원

□ 용자대상자 선정단계별 업무추진 내역

- 한계농지개발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자는 시장, 군수, 농업기반공사, 농협, 축협, 임협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하면, 사업신청을 접수한 농림부는 한계농지 개발대상지 로써의 적합여부를 검토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함.
- 한계농지정비사업을 시행한자는 시범사업단계로서 대부분이 농업기반 공사로 농업기반공사는 사업신청전에 사업대상지구에 대한 기본조사와 한계농지정비지구 선정위원회, 환경성검토 등을 하여 사업성검토 및 지구지정신청 결정을 한후, 개발대상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 군수 에게 한계농지정비사업 지구지정신청을 함.

- 지구지정 신청을 받은 당해 시장, 군수는 타당성(사업목적,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사업대상지의 입지여건, 관련법 검토 등)등을 검토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의 농정심의회심의와 시도의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친후 농림부에 지구지정승인 신청을 함.
- 지구지정승인 신청을 받은 농림부는 환경부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후 지구지정승인을 함. 지구지정승인을 받은 농업기반공사는 도지사가 지구지정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 자체의 경영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시행함.
- 이와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신청을 하면 시·군, 도·농림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사업목적,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사업대상지의 입지조건, 관련법의 검토 등),융자금 상환능력 등 단계적,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후 한계농지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사업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한계농지개발사업은 농지라고 하는 토지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제반의 법적요건 등과 토지의 입지조건 등 물리적 조건과 인근주민의 참여도, 개발의지 등 인문적 조건검토 및 사업의 경제성의 경제적인 면 등을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분석검토하고 있음.

□ 사업시행 흐름도



2. 한계농지정비지구 선정위원회 운영

□ 목 적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여건을 각 분야별로 검토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구선정 위원회 구성 운영

□ 임 무

- 한계농지정비사업 지구로서의 지구선정 요건 검토
- 타 사업과의 연관성 및 사업효과 분석
- 기본조사지구의 분야별 기술사항 검토
- 기타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검토

□ 인원구성 : 사업시행기관 각 분야별 전문가 13명

3. 사업시행을 위한 경영위원회 심의

□ 목 적

-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 경영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확정지구에 대한 농지관리기금 차입 등 투자계획 심의

□ 임 무

- 사업선정지구 시행여건 및 사업성 검토 심의
- 자금의 조달 및 용자금 상환계획 검토 심의
- 사업시행 후 자금의 회수계획 검토 심의
- 사업손익 검토 심의

□ 인원구성 : 사업시행기관 부사장 및 임원 7인

4. 사업대상지구 개발유형별 표본지역 선정을 위한 기본조사 시행

□ 목 적

- 농업진흥지역 밖 휴경 농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국토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보전

□ 배 경

- 농발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시행에 따라 진흥지역 밖의 농경지는 협소하고 영농조건이 열악하여 유희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유희농지를 방치할 경우 홍수 및 산사태 등 국토자원의 황폐화가 우려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한계농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

□ 시행결과

- 한계농지개발사업 개발유형 정립 : 진흥지역 밖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모형개발과 법적·제도적 제약요인의 개선을 위하여 8개 유형 17개 지구 310ha에 대한 기본조사 결과에 의함.
 - 농림수산업적 이용형 :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조성 등
 - 농어촌휴양자원이용형 : 주말농원, 관광농원
 - 다목적이용형 : 농어촌주택, 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 문화, 체육시설 등

5. 한계농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일 시 : 1995. 5. 19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 심포지엄 결과에 의거 한계농지정비사업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계획 수립 추진

○ 기본목표 설정

- 한계농지 개발 유형중 사업성이 있는 다목적 이용형 중심으로 개발
- 개발이익금은 일정기간 적립후 농어촌지역에 재투자

○ 추진방향 정립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반공사(필요시 토지소유자 참여)
- 사업목적 : 택지 및 부속농지개발

○ 대상지역 선정요건 정립 :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서

- 인구가 과소하고 주위의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의지가 높은지역
- 용지매수보상이 용이하거나 지역주민의 능동적 참여의지가 높은 지역
- 타부문 개발계획의 연속성 및 지가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고려된 지역
- 중심도시와 연계가 편리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

6. 한계농지정비기획단 설치운영

목 적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임 무

- 사업시행기본방침 작성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요령(안) 작성
- 정비지구 합리적인 지정방안 강구
- 기간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강구
- 농지관리기금 용자 및 자체자금 조달계획 수립
- 중·장기계획 수립
- 교육·홍보계획 수립

운영기관 : 농업기반공사

운영인원 : 15명

1. 농지관리기금 용자조건 결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 운용심의회 심의결과에 의거 용자지원

가. 목 적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한계농지개발을 위한 농지관리기금 용자조건 결정 심의

나. 농지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농림부 차관
- 부위원장 :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 위 원 :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등 8명

다. 제안내용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지역특성에 따라 정비하여 농의소득증대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농지관리기금을 용자하기 위한 용자조건 결정

라. 주요 심의내용 : 용자조건

- 이자율 : 연리 3%
- 상환방법 : 2년거치 2년 상환

마. 용자조건 결정 검토

용자조건 결정을 위한 검토사항

- 용자기간은 사업의 착수에서 준공, 분양시까지의 기간을 고려, 최적의 기간으로 결정

- 이자율은 당해 사업의 성격, 수익성, 상환능력과 유사사업의 차입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
- 개발형태가 유사한 사업과의 비교

바. 관계법령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제1~4호 생략
제5호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보조, 융자 및 투자
- ②, ③ 생략

제36조(기금운용심의회 의 설치)

- ① 기금운용계획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용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에 농지관리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생략

○ 동법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융자)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 운용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심의회 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사업별 융자한도 및 조건,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부실채권관리의 적정성

- 한계농지개발에 따른분양대금 및 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있어 부실채권 없음.

지표명

2.3 사업목적의 달성도

가중치
15점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촌정비과 서기관 남궁박(☎02-504-9404)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개발부 2급 주경노(☎0343-420-3392)

평 가 내 용

1. 사업목적 달성 정도

가. 목표설정의 합리성

나. 목표대비 달성도

2.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합리성

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나. 성과평가 결과의 보고 및 사후조치 체계의 적정성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1. 운용 여건

- 사업목표 및 장기비전 제시로 계획의 완벽한 수행
-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 사업추진성과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유도

2. 지표관리 방향

- 사업추진체계 및 정립으로 조기정착 노력
-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분석으로 제도 정립
- 농촌개발 관련사업 연계추진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II. '95~'99년도 추진실적 요약

1. 사업목적 달성정도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추진현황 관리체계 구축
- 한계농지정비사업 시범사업추진
 - 5개지구 36.1ha

2.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합리성

- 농림업적이용형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향후 추진방안 정립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평가내용

1. 사업목적 달성 정도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추진 현황 관리체계 구축

- 사업시행승인(계획변경, 준공) 결과보고 : 시행계획승인(계획변경, 준공)시 보고
- 사업추진 상향보고 : 매분기말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 한계농지정비 시범사업 시행

1. 사업개요

가. 목 적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와 주변산지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정비하여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 이용·관리

나. 시행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76조 내지 제85조 (의원입법:'94.12, 시행일:'95.6)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제1항제7호, 제34조제1항제5호)

다.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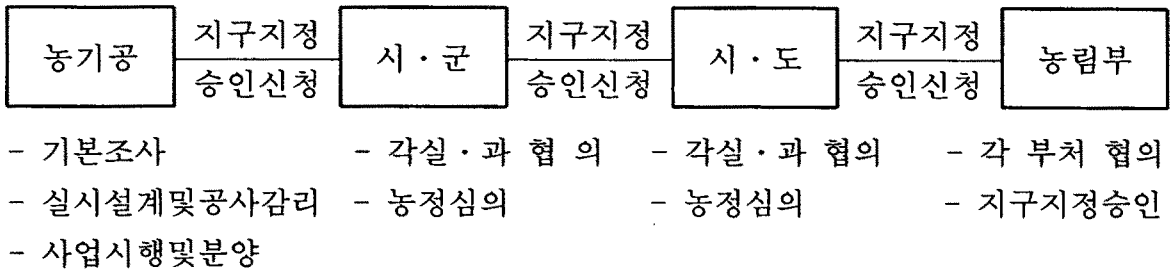
- 지역여건과 개발수요에 알맞게 다양한 유형별 개발·정비
- 체계적·계획적 개발·정비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
- 개발혜택이 최대한 지역주민에 환원되도록 추진

라.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협, 축협, 임협

마. 정비유형

- 농림수산업적이용형 :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조성등
- 농어촌휴양자원이용형 : 관광농원, 주말농원등을 조성
- 다 목 적 이 용 형 : 농어촌주택, 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 문화 및 체육시설용지로 활용

바. 시행체계



사. 재원 및 지원기준

- 지원근거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보조·투자 및 용자)
- 재 원 : 농지관리기금 용자 및 자체자금
- 지원기준 : 지구당 40억수준 용자(연 3%, 2년거치 2년상환)

2. 사업추진현황

가. 연도별 사업추진현황

구 분	계	'95	'96	'97	'98	'99	2000	비 고
예비(기본)조사	21	3	8	9	1	-	-	< >:지구지정해제신청 ◦ 사업시행자 자율개발 지구포함
지구지정승인	8	-	3	3	<2>	-	-	
실시설계	5	-	1	3	1	-	-	
공사착공	5	-	1	3	1	-	-	
공사준공	4	-	-	-	1	3	-	
분양	4	-	-	1	-	2	1	

나. 재원별 투자내역

(단위: 백만원)

지구 별	위 지	면적 (ha)	총사업비			'99까지			2000이후		
			계	자체 자금	농자관리 기금	계	자체 자금	농자관리 기금	계	자체 자금	농자관리 기금
계		36.1	23,202	6,874	16,328	17,059	3,931	13,128	3,755	555	3,200
신계	충북 진천	4.2	3,059	629	2,430	3,059	629	2,430	-	-	-
수락	충남 논산	9.8	5,998	1,998	4,000	5,998	1,998	4,000	-	-	-
대곡	전남 화순	4.7	3,086	646	2,440	3,086	646	2,440	-	-	-
상송	경북 포항	7.5	4,671	1,213	3,458	4,116	658	3,458	555	555	-
가리네	강원 횡성	9.9	6,388	2,388	4,000	800	-	800	3,200	-	3,200

다. 지구별 분양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위 지		개발 면적 (ha)	분양총액 (조상원가)	필지당 평균면적(평)			분양대상 필지수			분양공고	
	군	면			단독 택지	부속 농지	근린 상가	총 필 지 수	단독 택지	부속 농지		근린 상가
계			26.2	16,814				250	242	(243)	8	
신계	진천	이월	4.2	3,059	123	15	146	41	40	(41)	1	'99. 10. 11 (분양공고)
수락	논산	별곡	9.8	5,998	189	19	187	95	90	(90)	5	'97. 12. 29 (분양공고)
대곡	화순	도곡	4.7	3,086	170	6	159	47	46	(46)	1	'99. 9. 21 (분양공고)
상송	포항	송라	7.5	4,671	179	23	197	67	66	(66)	1	2000상반기

※ () 부속농지는 단독택지 분양자에게 포함분양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 사업참여 대상자의 확대를 통한 한계농지의 농림업적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 범위를 당초의 시장, 군수, 농업기반공사에서 농협, 축협, 임협 등 생산자 단체까지 확대하였음(1997.7).
- 지금까지의 사업실시 결과를 토대로 한계농지 활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 수립 추진

□ 성과평가 결과의 보고 및 사후조치 체계의 적정성

- 사업추진에 따른 추진현황보고 등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관리를 하고 있으며
- 본 사업이 사업예정지 조사부터 분양완료까지 최소한 3개년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과정상에서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용지매수보상 문제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주민설득 등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향후 지금까지의 제반사항을 재검토하고 시도의 사업 신청량, 주민호응도, 경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전적인 사업추진방향 정립

바. 기 타 사 업

1) 조성토지매각관리사업

- 조성토지매각관리
- 조성토지매각대징수
- 시설유지관리
- 일시위탁관리비

여 백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촌용수와 서기관 양기순(☎02-504-9406)
농업기반공사 용지보상부 3급 박상국(☎0343-420-3242)

조성토지 매각관리비 사업

간척지 매각관리

간척지 일시위탁 경작

매각대금·경작료 징수

완공된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평가내용

1. 기금 설치목적과의 적합성

- 가. 기금 설치목적과 매각관리사업의 부합
- 나. 간척지 매각등 수입 및 매각관리비 집행

2. 예산 및 타 기금과의 사업중복

- 가. 예산 또는 타 기금의 유사사업 존재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1. 운용 여건

- 조성토지 매각 및 일시위탁 경작
 - ⇒ 농업인의 영농규모화 촉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
 - 조성토지 활용을 위해 매각 이전에 일시위탁경작
 - 인근 농업인에게 조성토지 매각
- 조성토지 매각대금 등의 차질없는 징수관리
 - ⇒ 농지관리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
 - 조성토지 매각대금 및 일시위탁경작지 경작료 징수
 -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조성
- 농업기반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
 - ⇒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재해 예방

2. 지표관리 방향

- 조성토지의 적기매각 및 활용
 - 조성된 토지의 적기 매각으로 기금수입증대
 - 부분완공지구의 일시위탁경작으로 농지활용도 제고
- 조성토지 매각대금 및 일시경작료의 원활한 징수
 - 매각대금 장기분할상환에 따른 채권관리 및 징수
 - 징수대금의 농지관리기금 납입으로 기금재원 조달
- 완공된 농업기반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 적절한 시설유지관리로 재해 사전예방
 - 시설물의 적기 수선으로 대규모 유지관리비용 절감

3. 지표관리 체계도

< 목 표 >

조성토지의 적기 매각 및 효율적 관리로
『농지관리기금 제원』의 안정적 확충



조성농지 매각관리와 기금운용의 연계

- 간척농지매각 및 일시위탁경작을 통해
- 영농규모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 매각대금 징수 등으로 기금제원 조성

매각관리	매각대금징수	일시위탁경작	시설물 관리
조성토지 적기매각	매각대금 분할상환	준공전 일시경작	선량한 유지관리
영농규모화 촉진	매수자 채권 관리	농가소득 증대	농업용수 적기공급
농가소득 증대	매각대금 기금납부	경작료 기금납부	유지관리비 절감

Ⅱ. '95~'99년도 추진실적 요약

1. 기금설치 목적과의 적합성

□ 간척농지 매각을 통한 영농규모화 촉진 및 농가소득증대 매각대금 징수로 농지관리기금 재원확충

◇ 조성토지 매각

- 매각면적 : 9,096ha (8지구)
- 매각대금 : 354,450백만원
 - ※ '86~'99(누계) : 29지구 11,459ha

◇ 농지관리기금 재원조달 : 807억원

- 매각대금 : 76,218백만원
 - 원금 : 59,160 "
 - 이자 : 17,058 "
- 일시경작료 : 4,503백만원

◇ 매각관리비 집행 : 49억원

- 시행지구수 : 15지구
- 집행액 : 4,889백만원

2. 예산 및 타 기금과의 사업 중복

□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예산 또는 타기금 없음

※ 농지관리기금의 조성재원

- ① 정부출연금
- ② 재정투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③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④ 농지조성비 납입금
- ⑤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⑥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 등의 매각대금
- ⑦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평가내용

1. 기금 설치목적과의 적합성

1. 농지관리기금 설치목적과 매각관리사업의 부합

□ 농지관리기금의 설치목적

- 비농가, 전업 또는 은퇴농가가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쌀전업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와 농지의 집단지화, 농지장기임대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 농지관리기금은 농지매매사업 및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농지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으로 운용(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 조성토지 매각대금의 농지관리기금 납입

-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토취장 등 토지와 기타 물건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함.(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
- 국가가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한 매립지 등의 매각대금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

□ 조성토지의 매각관리 등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지원근거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제1항제8호
- 지원기준(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 농림부훈령)
 - 인건비 : 매각관리 및 일시위탁경작업무와 관련된 일용인부임 지원
 - 일반수용비 : 토지감정평가수수료, 토지등기수수료, 토지분할측량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시설장비유지비 : 양·배수장 및 용배수로 등 시설장비유지비(대규모수리비 제외)
 - 여비 : 국내여비(당일출장에 한함)
 - 업무추진비 : 매각관리 추진협의를 따른 비용

2. 조성토지의 매각으로 영농규모화 촉진

□ 추진 배경

-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간척지를 적기에 분배하고
- 매각대금은 3년거치 7년균등분할상환토록 하여 농업인 부담 경감
- 농업인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조성토지 매각업무 절차도

- ① 매각계획수립 승인신청·협의(사업시행자 → 승인권자)
- ② 매각계획승인·협의(승인권자 → 사업시행자)
- ③ 매각계약 체결(사업시행자 ↔ 농업인)
- ④ 매각결과 및 매각대금상환계획수립·보고(통보)
(사업시행자 → 승인권자, 농림부장관, 기금수탁관리자)
- ⑤ 매각대금 수납(사업시행자 ↔ 농업인)
- ⑥ 분기별 매각대금 수납현황 보고(기금수탁관리자 → 농림부장관)

□ '95 ~ '99 조성토지 매각현황(총괄)

(단위 : ha, 백만원)

지 구 명	매각년도	사업시행자	매각면적	매각금액
계		8지구	9,096.4	354,450
완도 월송	96	완도군수	21.8	337
보령 남포	97	보령농조	466.9	15,816
완도 약산	98	완도군수	158.4	2,817
고령 좌학	98	고령군수	34.6	6,148
대 호	98	농기공	3,345.7	119,636
영산강	'98~'99	농기공	4,188.1	179,371
고창 심원	99	고창군수	42.6	1,657
고흥 해창만	99	고흥군수	838.3	28,668

□ 사업효과

- 조성토지 일시경작 시행으로 유휴농지 활용 및 기금수입증대(45억원)
- 조성토지 9,096ha를 매각하여 영농규모 확대(농지매입농가당 0.6ha 증가)
- 완공된 농업기반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

3. 매각대금 등의 징수로 농지관리기금 자원 조달

□ 추진배경

- 분배농지 매입자의 채권관리 및 농지 지적·등기 등 사후관리 추진
- 매각대금 징수로 농지관리기금 재투자 재원조달
 ⇒ 기금목적사업인 농지조성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 연도별 매각대금 및 일시위탁경작료 수입('95~'99)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매각대원금		매각대이자		일시경작료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63,386	80,721	42,834	59,160	16,387	17,058	4,165	4,503
'95	4,673	4,136	2,599	3,225	1,332	632	742	279
'96	3,610	4,782	1,590	2,703	1,336	1,399	684	680
'97	5,363	12,923	3,037	10,542	1,512	1,620	814	761
'98	29,549	30,810	26,957	27,093	1,529	2,609	1,063	1,108
'99	20,191	28,070	8,651	15,597	10,678	10,798	862	1,675

□ 사업효과

- 조성토지의 매각대금 징수로 농지관리기금 자원 확보
 - '95~'99년중 매각수입 등으로 농지관리기금 80,721백만원 조성
- 농지조성계정의 조달총액중 매각대금 등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분	'95	'96	'97	'98	'99
농지조성계정 조달총액(A)	218,014	225,366	396,879	185,341	213,939
매각수입 등(B)	4,136	4,782	12,923	30,810	28,070
B/A(%)	1.9	2.1	3.2	16.2	13.1

주) 조달총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임

□ 매각관리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 조성토지 매각관리사업은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예산 또는 타기금이 없으며, 농지관리기금을 투자하여 조성된 간척지의 일시경작 또는 매각 등 마무리 업무와 준공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원
- 조성토지 매각대금 등은 전액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함으로써 농지관리기금 재투자재원 조달을 통한 기금목적사업에 직접 기여함

□ 조성토지 매각대금의 농지관리기금 납입

-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토취장 등 토지와 기타 물건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함.(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
- 국가가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한 매립지 등의 매각대금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

□ 조성토지 매각관리에 다른 필요경비 지원

- 지원근거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제1항제8호
- 지원대상(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 농림부훈령)
 - 매각 관리비 : 농지관리기금을 투자하여 조성된 토지의 매각계획을 수립 또는 준공 인가 후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구
 - 일시위탁경작비 : 시행중인 지구중 내부개답이 완료되어 일시위탁경작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구
 - 매각대금징수비 : 매각이 완료되어 매각대금을 징수하고 있는 지구
 - 시설물유지관리비 : 일시위탁경작을 시행하고 있는 지구내의 농업기반시설
- 집행기관 : 시·군, 농업기반공사

여 백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촌용수과 서기관 양기순(☎02-504-9406)
농업기반공사 용지보상부 3급 박상국(☎0343-420-3242)

평 가 내 용

1.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 가.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대상
- 나. 대상자 결정기준의 합리성

2. 사업내용의 적합성

- 가. 환경변화의 대응
- 나. 사업활동 내용
- 다. 사업의 성과와 추이

3.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가. 제도개선 사항
- 나. 운영의 효율성 제고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1. 운용 여건

- 조성토지 일시위탁 경작 및 매각관리 적기시행
- 조성토지 매각대금 등의 차질없는 징수·기금납입
- 매각관리 업무량 증대에 수반되는 제도정비 및 업무발전 필요성 대두

2. 지표관리 방향

- 조성된 토지의 적기 매각으로 기금수입증대
- 부분완공지구의 일시위탁경작으로 농지활용도 제고
- 매각대금 장기분할상환에 따른 채권관리 및 사후관리
- 매각대금의 농지관리기금 납입으로 기금재원 조달

3. 지표관리 체계도

◆ 목 표 ◆

**조성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지관리기금』 조성의 건설화**



- 조성토지 매각관리 지원
- 조성토지 활용 제고 및 기금 수익증대
- 기금 목적달성에 직접기여

사업대상의 선정
기금목적과 부합되는 사업비 집행
농지조성사업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

기금의 안정적 확보
조성토지 활용도 제고
조성토지 적기매각
기금수익의 안정적 조달

사업관리 효율화
조성토지 매각제도 개선
간척지정보시스템개발 업무 전산화
농업인 서비스 개선

Ⅱ. '95~'99년도 추진실적 요약

1.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매각관리비 지원의 필요성

-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 및 일시위탁경작, 시설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

매각관리비 지원대상

- 매각관리비, 일시위탁경작비, 매각대금징수비, 시설물유지관리비

2. 사업내용의 적합성

조성토지의 매각 및 일시위탁경작, 매각대금징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금에서 지원하여 조성토지의 활용성 제고와 기금수익 증대

○ 조성토지 매각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조성농지를 매각함으로써 영농규모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

○ 조성토지의 일시위탁 경작

- 내부 개답공사가 완공된 농지를 사업준공시까지 일시경작

○ 완공된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3.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조성토지 매각제도의 개선으로 기금조성의 효율성 제고

-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우선매각제도 폐지
- 부분준공 조성토지의 매각추진
- 조성토지 매각대금 기금납부 의무화, 필요경비 기금에 반영

간척지 관리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 인력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평가내용

1.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매각관리비 지원의 필요성

- 농지관리기금을 투자하여 조성된 토지의 매각 및 일시위탁경작, 시설유지관리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

조성토지 매각관리비의 지원대상

- 매각관리비
 - 농지관리기금을 투자하여 조성된 토지의 매각을 추진하는 지구
- 일시위탁경작비
 - 시행중 지구중 내부개답이 완료된 조성토지의 일시위탁경작을 시행하는 지구
- 매각대징수비
 - 조성토지 매각이후 매각대금을 징수하고 있는 지구
- 시설물 유지관리비
 - 일시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지구내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비

매각관리비의 지원근거 및 기준

- 지원근거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제1항제8호
- 지원기준 : 농지관리기금 100%

집행기관

- 시·군, 농업기반공사

기대효과

- 농업기반조성사업의 마무리 및 사후관리업무
 - ⇒ 농지관리기금 조성사업의 목적달성에 직접 기여

조성토지의 매각 및 일시위탁경작, 매각대금 징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금에서 지원하여 조성토지의 활용성 제고 및 기금수입 증대

1. 조성토지의 매각사업

□ 조성토지 매각의 목적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30조제5항에서 위임한 농지관리기금을 위임받아 조성한 농지를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분배대상자에게 매각(분배)함으로써 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시켜 쌀 자급기반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 조성토지 매각대상자(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4조)

- ① 전업농림어업인 및 농림어업인 후계자
- ② 당해 사업지역에 속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안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당해 매립지등의 시·군·자치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자
- ④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당해 매립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한 자
- 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에 대한 당해 매립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농·영어를 중단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자경할 자

□ 조성토지 매각방법(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5조 및 부칙 제4조)

- 공개경쟁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함
 - 집단농지 :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유자격자에게 공개경쟁방법으로 매각
 - 분산농지(미개답 자투리) : 최고가격 매입 희망자에게 제한경쟁 매각
- 일시경작자(피해농어가)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시행 당시에 매립지 분배대상자를 정하여 일시이용을 지정하는 행정행위나 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경작자에게 지정분양
 -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지 않은 조성토지는 공개경쟁으로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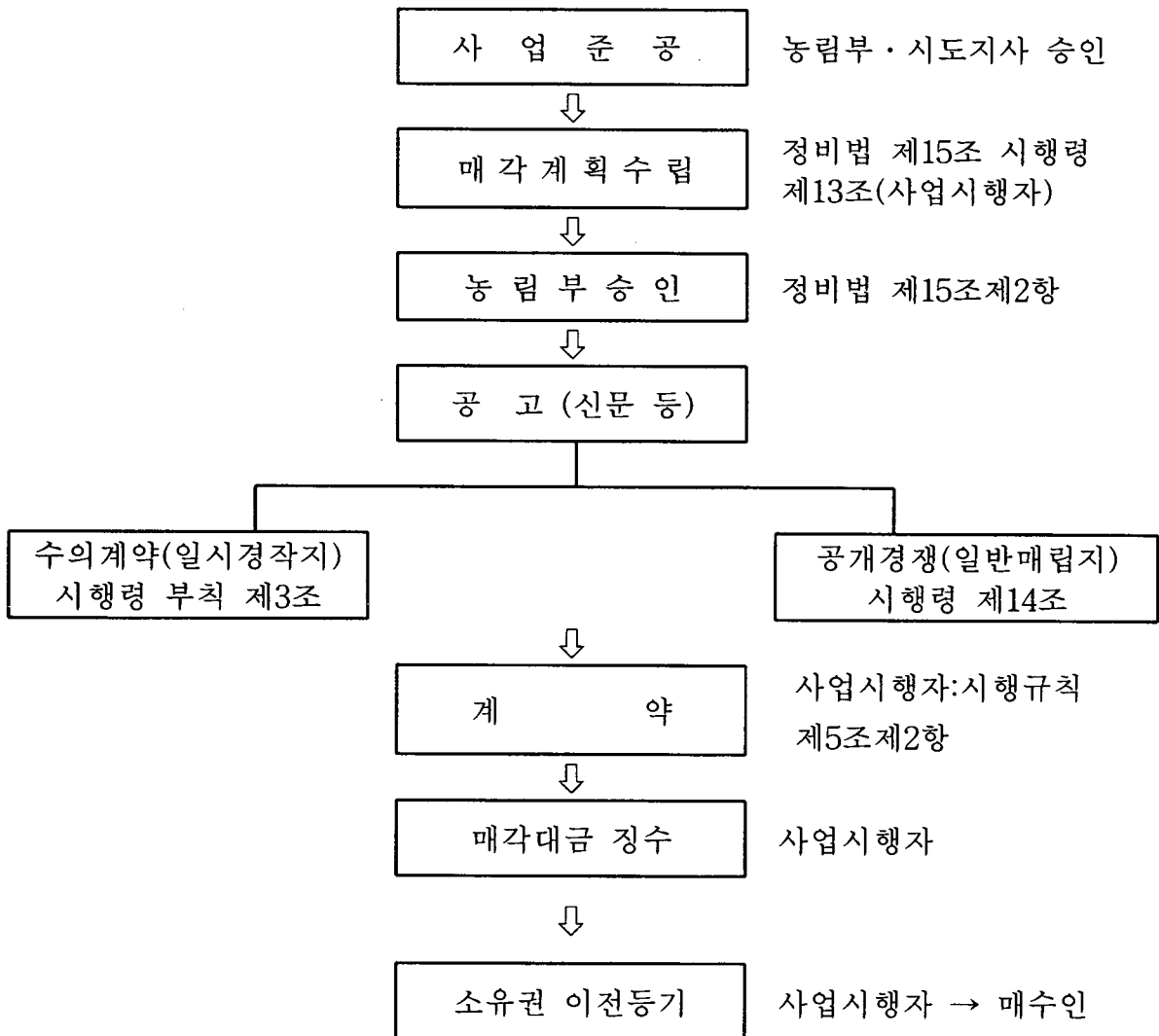
□ 가격결정 및 상환조건(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 매각가격은 매각이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과 인근 유사토지의 시가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
- 매각대금은 매수자가 대금의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10%를 일시 납부하고 잔액은 연 5%의 이자를 붙여 3년거치 7년이내의 기간내에 분할납부토록 함

□ 매각대금의 납부(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30조4항)

- 조성토지의 매각대금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함.

□ 조성토지의 매각절차



□ 조성토지의 매각실적

- '95 ~ '99년중 조성토지 9,096.4ha를 14,849세대에 매각하였고 세대 당 매입 규모는 0.6ha의 수준이었으며, 평당 평균 매각가격은 12,880원 임.
- 사업별 매각면적은 대단위사업 7,533.8ha, 서남해안간척사업 1,562.6ha 이며, 대단위사업의 평당 평균매각가격이 13,120원으로서 서남해안간척사업 11,730원에 비해 높았다.

<대단위 사업지구의 조성토지 매각 실적('95~'99)>

매각방법	지구별	매각면적 (ha)	세대수	평당단가 (원)	매각금액 (백만원)
계		7,533.8	11,714	13,120	299,007
공개경쟁	소 계	198.9	255	35,330	21,295
	영산강2	42.7	124	102,640	13,258
	대 호	156.2	131	17,010	8,037
수의계약	소 계	7,334.9	11,459	12,520	277,712
	영산강2	4,145.4	7,520	13,250	166,113
	대 호	3,189.5	3,939	11,570	111,599

<서남해안지역 조성토지 매각 실적('95~'99)>

연도	지구별	매각면적 (ha)	세대수 (세대)	평당단가 (원)	매각금액 (백만원)	회수액 (백만원)
계		1,562.6	3,135	11,730	55,443	5,044
1996	전남 완도 월송	21.8	33	6,760	337	19
1997	충남 보령 남포	466.9	939	11,200	15,816	1,582
1998	전남 완도 약산	158.4	189	5,880	2,817	287
1998	경북 고령 좌학	34.6	62	58,740	6,148	-
1999	전북 고창 심원	42.6	44	12,860	1,657	167
1999	전남 고흥 해창만	838.3	1,868	11,300	28,668	2,989

주) 좌학지구(유휴하천부지)의 매각대금은 경북도에 원지대로 납부하여 기금징수 없음.

2. 조성토지의 일시위탁경작사업

□ 일시위탁경작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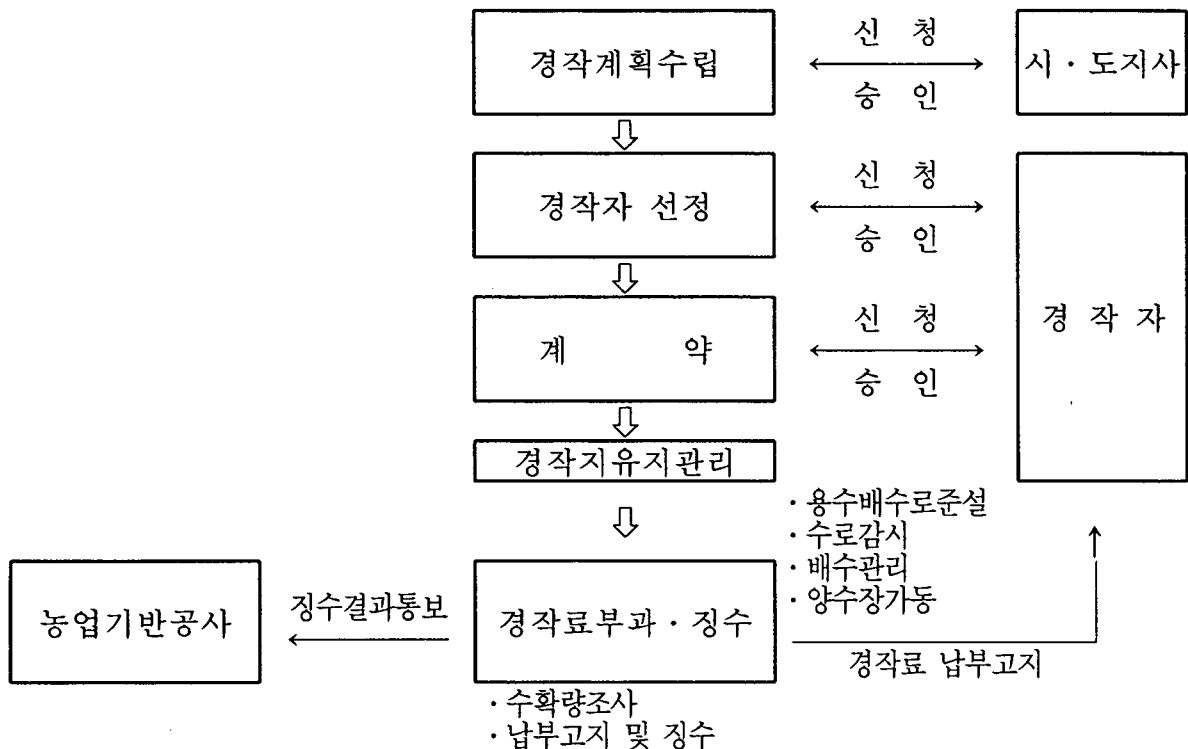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간척지 내부개발공사가 완공된 간척농지를 농업인에게 사업준공 인가시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식량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경작대상자의 자격기준(간척지일시경작지침)

- 당해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영농 영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농어가
- 당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유농지의 3분의 1이상 상실한 농가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일시경작 공고일 현재 간척지 인근에 3년이상 거주한 자
- 정부의 다른 공공사업계획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하여 간척지 주변으로 이주한 자

□ 경작자 선발 및 경작료 부과징수(간척지일시경작지침)

- 사업시행자가 일시경작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행정기관 통보 및 리·동 게시판 공고
- 일시경작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일시경작위원회는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장·군수는 최종 심사확정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사업시행자는 일시경작자로부터 당해년도 미곡 총수확량의 10%상당액(벼 2등급 품 수매각 적용)을 징수하여 농지관리기금에 납입



□ 일시위탁경작 면적 및 징수결정 현황('95~'99)

(단위 : ha, 백만원)

지구명	'95		'96		'97		'98		'99	
	면적	결정액	면적	결정액	면적	결정액	면적	결정액	면적	결정액
계	1,878	620	1,998	825	2,675	1,073	2,979	862	2,813	1,031
사 내	-	-	-	-	-	-	-	-	74	13
만 덕	-	-	-	-	-	-	-	-	208	46
해 남	679	201	785	367	1,260	587	1,529	722	1,778	796
해 창	961	346	961	369	961	372	961	31	195	64
강 산	115	46	115	46	115	45	115	38	115	33
구 암	59	5	73	20	73	24	80	16	80	17
약 산	-	-	-	-	145	19	-	-	-	-
양 사	3-	1	3	1	7	2	7	3	7	2
완 도	-	-	-	-	53	2	114	26	185	31
보 전	-	-	-	-	-	-	171	24	171	29
낙 산	61	21	61	22	61	22	2	2	-	-

3. 매각관리비 지원실적('95~'99)

(단위 : 백만원)

사업별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계	353	454	1,236	1,700	1,146	4,889
매 각 관 리 비	4	56	579	985	286	1,910
매 각 대 징 수 비	-	8	4	52	55	119
일시위탁경작비	349	390	653	465	530	2,387
시설장비유지비	-	-	-	198	275	473

1. 조성토지 매각제도의 개선

종 전	현 행 (개 선)	
<input type="checkbox"/> 조성토지의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피해어업인에게 우선 매각 ○ 지정매각 <input type="checkbox"/> 사업준공후 매각	➔	<input type="checkbox"/> 조성토지의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농어업인에 대한 분배자격 부여 ○ 공개경쟁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이상 미매각시 수의계약 매각 <input type="checkbox"/> 부분준공후 매각 추진

피해농어업인에 대한 우선매각제도 폐지

-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시행당시('95. 6.22까지)
 - 당해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농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농지피해를 받은 농가에 우선 매각(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시행이후('95. 6.23부터)
 -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농·영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자경할 자에게 매입 자격을 부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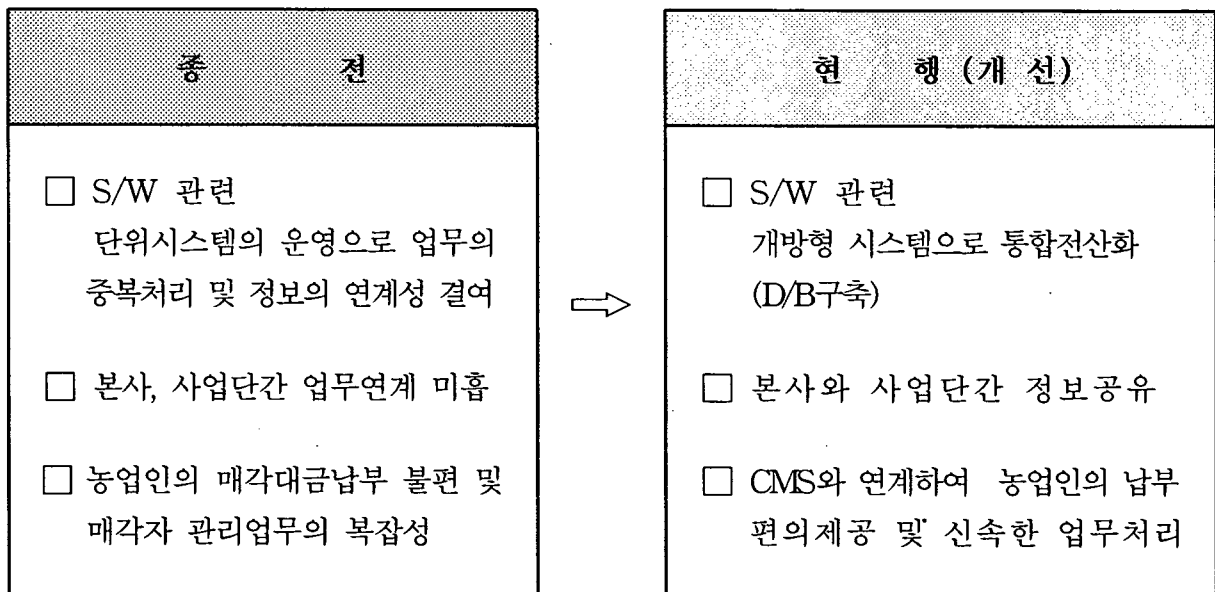
부분준공 조성토지의 매각 추진

- 종전의 “농지관리기금에의한조성토지의매각준칙”(농림부 훈령)에서는 부분준공지의 매각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 농지관리기금에의한조성토지의매각준칙 개정('97. 5.20)시에 부분준공 가능지역에 대하여 인근 지역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분준공 처리후 매각 추진토록 하여 조기에 농지관리기금 회수

□ 조성토지 매각대금의 농지관리기금납부 의무화

- '97.7월까지 간척지 매각대금은 사업시행자가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 농업 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상환 및 시설물 유지관리등에 사용해 왔으나,
- '97. 7.31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매각대금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토록 하고, 필요경비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사용

2. 간척지정보통합시스템 개발(농업기반공사)



□ 추진배경

- 간척지정보통합시스템 개발
 - 사업시행전의 용지매수와 어업보상, 사업시행후 조성된 간척지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간척지의 매각에 따른 사후관리 등을 통합하여 전산화
⇒ 인력절감 등을 통한 경영혁신을 도모
 - 정확한 자료관리와 본사·사업단간 정보공유 및 신속한 민원처리
⇒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개발프로그램을 CMS와 연계하여 실용화 ⇒ 간척지 매각대금 납부 편의제공

□ 추진실적

○ 추진경위

- '98. 4 ~ '98. 7 : 간척지정보통합시스템개발
- '98. 7 ~ '98.11 : CMS연결 실용화추진
- '98.11 ~ : 업무활용 및 대농업인 서비스제공 실시

○ 시스템 개발내용

- 시스템명 : 간척지정보통합시스템(Reclamation Information Integrated System)
- 개발범위 : 간척지관리, 유지관리(시설물 포함), 일시경작관리
용지매수보상관리
- 실용화추진 :
 - 간척지매입자의 매각대금 징수관리
 - 하구둑 등 대형수리시설물 유지관리
 - 평야부 유지관리
 - 일시경작지정에 따른 경작지, 경작자, 경작료징수 관리
 - 용지매수 및 어업보상업무(272지구)

○ 개발P/G, CMS와 연계 실용화 추진(농협과 계약시행)

- 납부자의 편의제공(전국 농협납부가능)
- 납부자관리 농협과 분담시행(업무간소화·인력절감)
- 신속정확한 자금 및 분배자관리(분산식→집중식관리)

□ 기대효과

- 경영환경변화에 적극대처, 업무처리의 효율성제고 및 능률화 도모
- 업무간소화 및 인력절감으로 경영개선에 기여
(유지관리인원 10%이상 절감가능)
- 농업인에 대한 편의제공

지표명

2.3 사업목적의 달성도

가중치
15점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촌용수과 서기관 양기순(☎02-504-9406)
농업기반공사 용지보상부 3급 박상국 (☎0343-420-3242)

평 가 내 용

1. 사업목적의 달성 정도

- 가. 공사준공에 따른 사업목표 설정
- 나. 목표대비 달성도
- 다. 대농업인 서비스 개선노력

2.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합리성

- 가.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
- 나. 성과평가결과의 보고 및 사후조치체계의 적정성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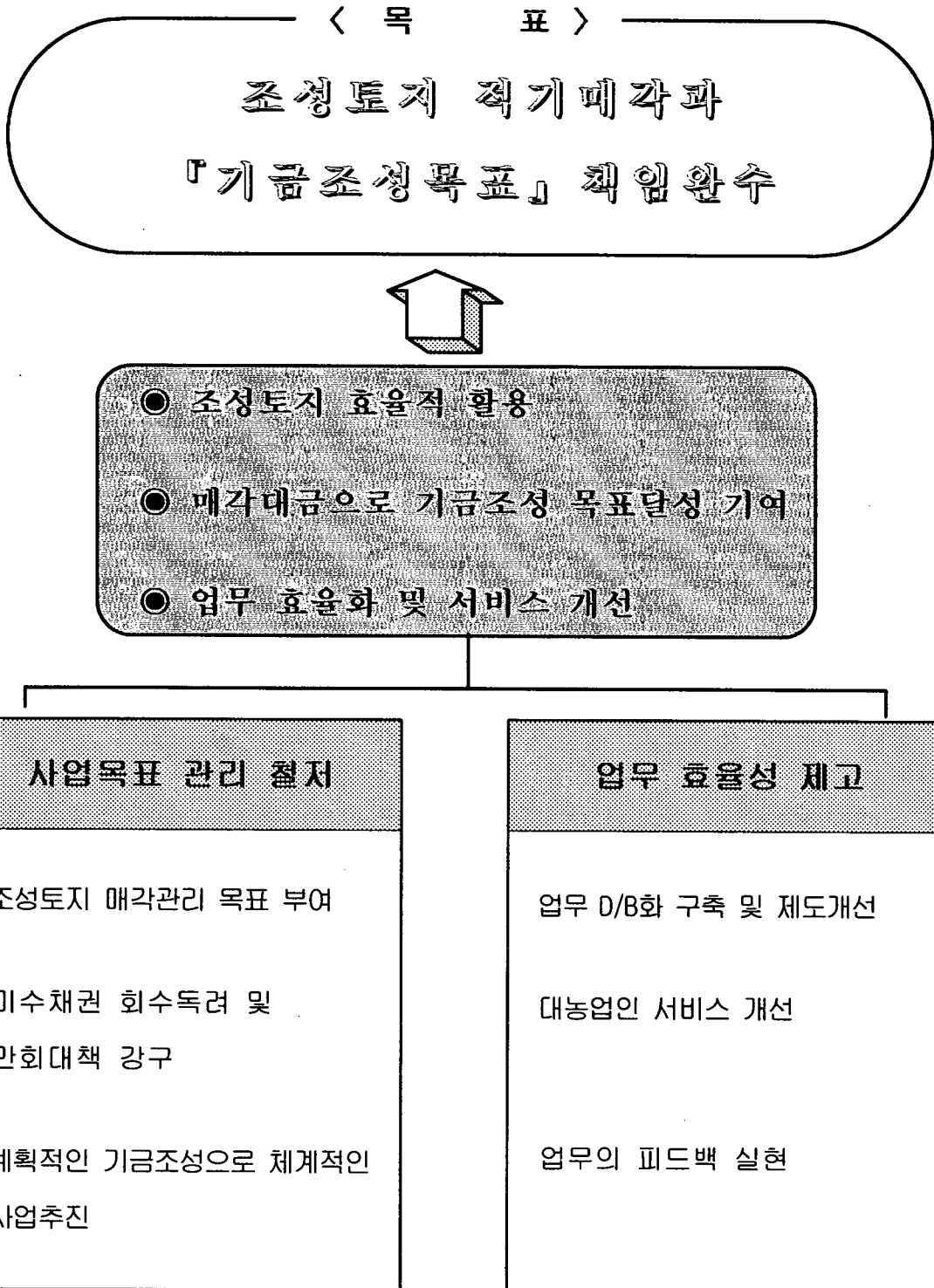
1. 운용 여건

- 조성토지 일시경작 또는 매각으로 식량증산과 소득증대에 기여
- 매각대금의 차질없는 징수와 채권관리로 기금재원의 안정적 조달 필요성이 증대
- 완공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용 지원

2. 지표관리 방향

- 매각계획 목표달성 및 매각대금 적기회수
- 매각대금 장기상환에 따른 채납대책 강구
- 매각대금 징수·납입으로 기금의 재투자 자원조달
- 업무전산화와 제도개선으로 대농업인 서비스향상

3. 지표관리 체계도



Ⅱ. '95~'99년도 추진실적 요약

1. 사업목표 달성 정도

- 사업목표 설정 관리
 - 공사준공지구 일시경작 및 매각관리 사업목표 설정
- 사업별 목표대비 달성도
 - '95~'99 매각대상토지 매각완료 및 매각대금 징수목표액 100% 초과달성
- 대농업인 서비스 개선
 - 매각대금 징수업무를 CMS와 연계 농업인의 납부편의 제공

2.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합리성

- 성과에 따른 개선노력
 - 간척지정보통합시스템을 개발 매각관리업무 전산화 구축
-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매각관리지침 제정으로 업무능률 제고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평가내용	1. 사업목적 달성정도
-------------	---------------------

1.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

조성토지 매각실적

(단위 : ha)

연도별	구분	매각계획	매각실적	비율	비고
계		9,096	9,096	100	
'96		22	22	100	월송
'97		467	467	100	보령
'98		6,652	6,652	100	약산, 좌학 대호, 영산강
'99		1,955	1,955	100	영산강, 신원 해창만

조성토지매각대 등 연도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획			실 적			실적율 (%)
	계	매각대금	일시경작	계	매각대금	일시경작	
계	63,686	59,221	4,164	80,721	76,218	4,503	126
'95	4,673	3,931	742	4,136	3,857	279	89
'96	3,610	2,926	684	4,782	4,102	680	109
'97	5,363	4,549	814	12,923	12,162	761	241
'98	29,549	28,486	1,063	30,810	29,702	1,108	105
'99	20,191	19,329	862	28,070	26,395	1,675	139

2. 대농업인 서비스 개선

간척지정보통합시스템 개발 운영을 통한 서비스 개선

○ 목 적

-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전의 용지매수 및 어업보상, 시행후 조성된 간척지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분양된 간척지의 매각 사후관리 등을 통합
 - ⇒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관리인력 절감
- 개발된 프로그램을 CMS(Cash Management Service)와 연결
 - ⇒ 농업인의 매각대금납부에 따른 편의 제공

○ 추진경위

- '98. 4~ 6월 : 간척지정보통합시스템 개발
- '98. 7~11월 : CMS연결, 실용화추진
- '98.11월이후 : 대농업인 서비스 제공 실시

○ 기대효과

- 납부자인 대농업인의 편의 제공(전국 농협 납부가능)
- 시설물 관련 지속적인 자료관리로 과학적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1.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

□ 조성토지 매각대금 회수실적

- '99.12.31까지 29개지구에 대한 조성토지 총매각대금 203,773백만원중 회수액은 총매각대금의 38.0%인 77,470백만원이며, 잔액 126,303백만원은 2000년중 4,475백만원, 2001년중 5,688백만원, 2002년중 9,717백만원, 2003년이후 106,423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임.(매각대금납부조건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구수	총매각대금	'98까지 회수액	'99회수		잔 액
				계획	실적	
계	29	203,773	61,873	8,651	15,597	126,303
기반공사	9	148,686	50,451	5,041	14,914	83,321
시·군	20	55,087	11,422	3,610	683	42,982

□ 매각대이자등 미수금 회수

- '99.12.31현재 매각대 이자 및 일시경작료 미수금은 695백만원으로서, '98년말에 1,405백만원에 비하여 절반정도 감소되었으며, 미수채권 관리대책 강구

<채무처별 매각대이자등 미수금 현황>

(단위 : 천원)

채무처	계	연 도 별				
		'94까지	'95~'96	'97	'98	'99
계	695	10	40	31	76	538
고흥군수	240	2			31	207
완도군수	182				5	177
신안군수	11				11	
김포시장	4					4
성주군수	76	7	39	30		
진도농조	42	1			2	39
의성군수	22		1	1	1	19
고령군수	26				26	
구미농조	3					3
강진군수	60					60
진도군수	29					29

2.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매각·관리지침의 제정으로 업무의 효율화

○ 목 적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중 농업생산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한 매립지·간척지·개간지·토취장 등 토지와 기타 물건 등에 관한 분양 대상자와 분양토지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농지분배 및 관리를 도모

○ 내용 :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매각 및 관리지침 제정('98. 1.26)

○ 기대효과

- 조성된 재산의 매각 및 관리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
⇒ 조성농지 매각 관리 업무능률 향상
- 민원해소 및 대농어업인의 서비스개선

여 백

2) 진흥지역밖 자원조사

여 백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전종철(☎02-500-2635)
농업기반공사 정주권계획부 2급 이기옥(☎0343-420-3403)

평가내용

1. 사업선정의 타당성

- 가. 기금설치 목적과의 적합성
- 나. 예산 및 타기금과의 사업중복

2. 사업운영의 적정성

- 가.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 나. 사업내용의 적합성
- 다. 사업운영의 효율적 제고 노력

3. 사업목적의 달성도

- 가. 사업목적의 달성 정도
- 나.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합리성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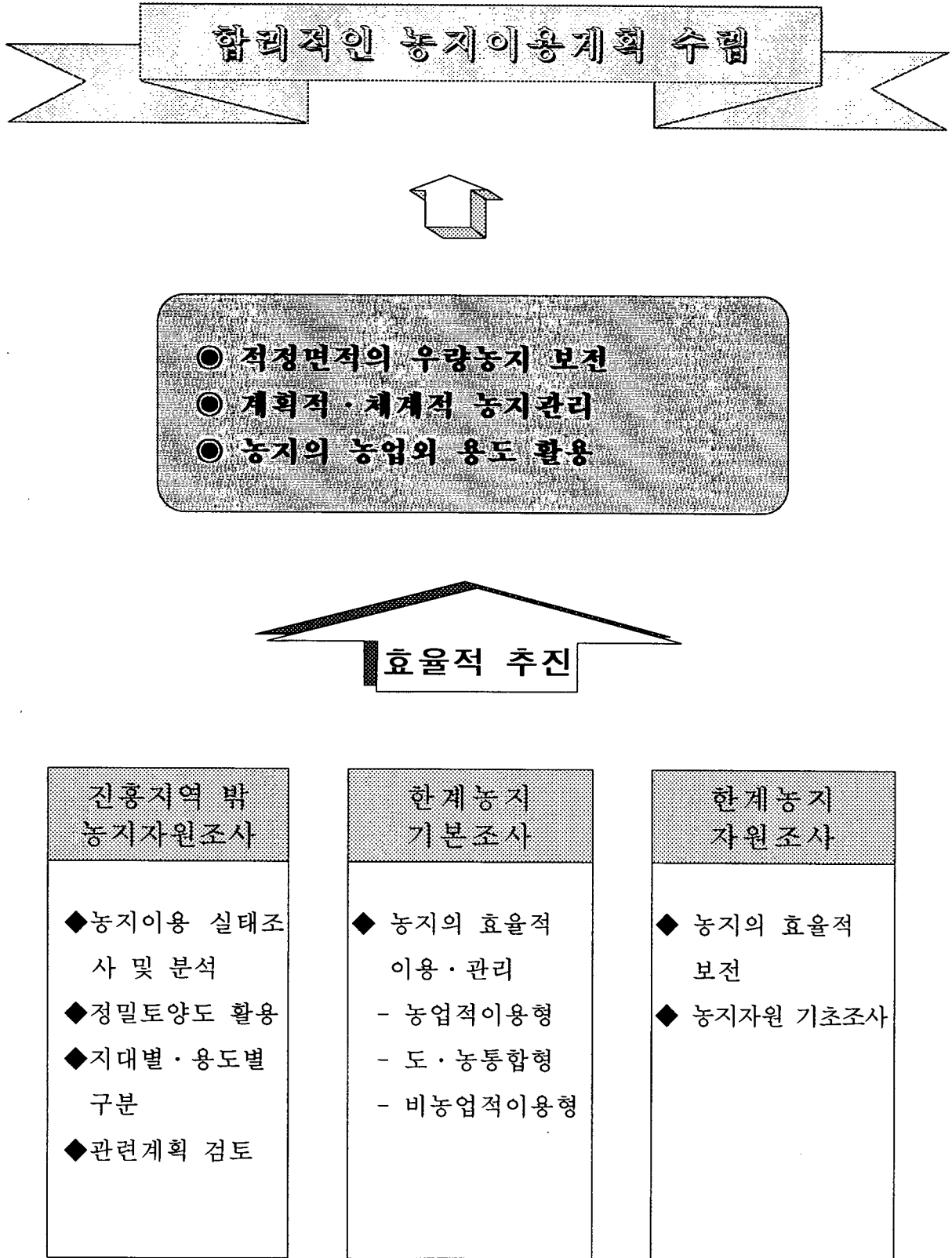
1. 운용 여건

- 농업진흥지역 지정('92)
 - 진흥지역밖 농지의 체계적 이용·보전·관리
- 무분별한 농지전용면적 증가
 - 체계적인 농지이용계획 수립
- 진흥지역밖 농지의 법적·제도적 정비 미흡
 - 농지관리의 제도개선 및 정립
- 전국단위 농지자원 조사
 - 식량안보를 위한 적정 면적의 우량농지 보전

2. 지표관리 방향

- 전국단위 농지이용계획 수립
 - 지대·용도별 권역범위로 계획
 - 지역특성이 감안된 합리적 농지이용계획 수립
- 국토관리 및 농업·농촌환경의 조화
 - 국토의 효율적 관리
 -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
 - 환경친화적 정비 유도
- 지역종합개발계획과 연계 추진
 - 인근지역개발계획과 타계획과의 연계
 - 지역주민 의견 적극 수렴

3. 지표관리 체계도



II. '95~'99년도 추진실적 요약

지표명	2.1 사업선정의 타당성	가중치
		15점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전종철(☎02-500-2635)
 농업기반공사 정주권계획부 2급 이기옥(☎0343-420-3403)

1. 기금설치 목적과의 적합성

- 농업진흥지역밖 한계농지의 농지이용을 제고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는 농업노동력 감소, 영농여건불리, 기계화영농의 어려움등으로 휴경농지가 늘어나고,
 -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농지의 타목적 전용이 늘어나는등 국토자원의 황폐화가 우려되므로 진흥지역밖 농지자원의 특성을 파악, 농지의 적성, 형상과 위치, 여건등 지역여건에 맞는 농지이용계획을 수립·운용함으로써 농지의 이용·보전 효율성을 제고시킴에 사업목적이 있음
 - 농지관리기금의 설치목적(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부합됨.

2. 예산 및 타 기금과의 사업 중복

-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를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는 '93~'96 기간에 걸쳐 시행한 진흥지역밖 농지자원조사외에는 없음.
 -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의 내용
 - 농지의 이용실태, 농지자원조사특성분석, 농지이용 구분(농지이용계획)등

지표명

2. 2 사업운영의 적정성

가중치
15점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전종철(☎02-500-2635)
농업기반공사 정주권계획부 2급 이기옥(☎0343-420-3403)

1.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 농지면적 3,000ha이상의 시·군·구 대상
 - 농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 실지조사 : 151개 시·군·구(도상조사 : 178 시·군·구)
 - 도상조사 → 유관기관 및 주민의향 조사 → 현지조사 → 농지이용계획 수립

2. 사업내용의 적합성

- 농지의 지대별 구분
 -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 농업유지구역, 다목적구역
- 농지의 용도별 구분
 - 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축산지구, 농업보호지구, 농업유지지구, 다목적 지구
- 생산기반종합 정비계획 수립
 - 농지이용계획을 토대로 농업유지구역에 대한 생산기반 종합정비계획 수립

3. 사업운영의 효율적 제고 노력

- 전국 농지의 도상조사를 토대로 현지조사 실시
 - 도상조사 : 178개 시·군·구 → 현지조사 : 151개 시·군·구
- 기존의 계획을 최대한 활용
 - 생산기반종합정비계획, 정밀토양도, 생활환경정비계획 등
- 기관별 역할분담 시행
 - 농림부, 시·군·구, 농업기반공사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전종철(☎02-500-2635)
농업기반공사 정주권계획부 2급 이기옥(☎0343-420-3403)

1. 사업목적 달성도

- 농지자원조사를 통한 농지의 합리적 정비
 - 무분별한 농지전용 억제(지자체)
 - 연도별 농지전용 면적 감소 : '95 16,279 ha → '99 12,017ha
 - 농지의 이용·보전·관리 지침 마련
 - 농업발전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 수립시
 - 농업관련 정책자금등 각종 지역개발계획 수립시
 - 농업관련 정책자금등 지원시
 -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시 반영
 - 농지이용증진사업과 연계 추진
- 농지제도개선 추진
 - 한계농지 기본조사 결과를 농어촌정비법에 반영
 - 한계농지 기준 정비
 - 한계농지 정비유형(3개유형) 정립
 - 농지법 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 전국 농지의 용도 지구별 면적 : 2,278천ha
 - 농지이용계획 수립 : 5년마다

2.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합리성

- 전홍지역밖 자원조사등을 거쳐 입안된 농지이용계획을 시장·군수는
 - 당해지역의 농업발전계획등 지역개발계획 수립과정에 활용
 - 농업관련 정책자금등 지원시 활용
 - 자율사업의 경우 신청자의 우선순위 결정
 - 공공사업의 경우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사업지구가 선정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 『조사결과』는 농지이용계획에 따른 시행과정에서 행정관청(시·군) 및 실수요자들에 의거 적정 여부 판단
 - 농지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조치

Ⅲ. 지표별 추진실적

지표명	2.1 사업선정의 타당성	가중치
		15점

평가내용	1. 기금설치 목적과의 적합성
------	------------------

가. 기금의 설치 및 용도, 조성

- 기금의 설치(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정부는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함
- 기금의 용도
 - 농지의 제도·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및 홍보
: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기술지원
: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 기금의 조성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즉,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

나. 사업추진 목적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는 농업노동력 감소, 영농여건 불리, 기계화영농의 어려움 등으로 휴경농지가 늘어나 국토자원의 황폐화가 우려되는 한편 도시화·산업화로 농지에 대한 타목적 이용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진흥지역밖 농지자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농지를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활용
- 농지의 적성, 형상과 위치, 여건등 지역실정에 맞는 농지이용계획수립·운용으로 농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 장래의 농지활용 용도에 맞게 생산기반정비 및 유통시설확충등 농업구조개선사업 추진으로 중복 및 불필요한 투자 방지
 -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농어촌발전 계획수립의 근간이 되는 농지이용 계획 수립

다. 사업추진의 필요성

- 농지전용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되므로 농지의 이용 및 보전·관리 필요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진흥지역밖 농지 소유농민의 불만 제기
- 농지의 휴경화 가속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보전·관리대책 필요
- 합리적 농지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가. 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2	'93	'94	'95	'96
계	7,545	1,069	1,863	1,191	1,500	1,922
한계농지 자원조사	553	553	-	-	-	-
한계농지 기본조사	650	516	134	-	-	-
진흥지역밖 자원조사	6,342	-	1,729	1,191	1,500	1,922

나. 사업개요

그동안 우리나라 농지제도는 종합적인 농지법이 없이 농지개혁법(1949년)과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72년)에 의해 다소 단편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따라서 대외적으로 농업부문의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경영규모의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농업노동력의 고령화·부녀화, 휴경화 가속, 우량농지 잠식등 농지의 보전·관리가 어려운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촌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농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제도 정립
- 농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면적의 농지확보 및 보전
- 농업과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농지의 체계적 정비
- 농지관련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를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활용 등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자원조사, 한계농지 자원조사, 한계농지 기본조사 등을 추진하게 되었음.

다. 사업별 비교

구분	진흥지역밖 농지 자원조사	한계농지 자원조사	한계농지 기본조사
사업기간	'93 ~ '96	'92	'92 ~ '93
사업량	151시·군·구 965,654ha	도상조사(전국) 및 현지답사	17지구 311ha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상조사 자료 활용 ○전국 현지조사를 통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이용실태조사 - 농지자원조사 특성 분석 - 농지이용적성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 - 농지분포 - 생산기반정비 - 관광자원 분포 ○행정 및 유관기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계농지 자원조사를 토대로 개발가능지에 대한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유형(생약단지, 특작단지, 과수단지, 화훼단지, 초지낙농축산단지, 주말농원, 휴양농원)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의 이용·보전·관리 ○지자체에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자원 분포 현황 조사 ○한계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대책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연구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전용 둔화 ○농어촌정비법 및 농지법 제정의 근간이 됨 ○비생산적 농지의 계획적 활용 유도 : 한계농지정비, 문화마을조성, 유통시설지 등 ○농지의 지대·용도별 이용계획 수립 ○농지정책 자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현황 파악 ○지역단위 농지자원 분포현황 조사 ○농지이용·관리·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94)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개발 유형별 모델정립 - 한계농지 기준정립

지표명	2. 2 사업운영의 적정성	가중치
		15점

평가내용	1.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	------------------------

가. 추진배경

- 농지의 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정비 미흡
- 진흥지역밖 농지의 이용을 제고 및 합리적 보전·관리
 - 농업노동력 부족, 영농기계화의 어려움, 우량농지 잠식
-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토지수요에 능동적 대처
- 진흥지역의 집중투자로 진흥지역밖 농지 소유농민의 불만 제기
- 휴경화 가속에 따른 농지의 보전·관리 대책 필요

나. 사업대상 선정기준

- 진흥지역밖 농지 자원조사후 농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농지면적 3,000ha 이상 시·군·구
 - 농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군단위로 시행하며, 도·농통합형 이전 시지역은 인접군에 포함 조사

다. 추진내용

- 농지의 이용계획수립을 위한 농지자원조사 실시
 - 조사대상: 151시·군·구(도상조사: 178, 진흥지역밖농지자원조사: 151)
 - 도상조사 → 유관기관 및 주민의향조사 → 현장조사 → 농지이용계획수립
 - 농지이용실태조사
 - 정밀토양도에 의한 농지능력유형구분(5개유형)
 - 토지적성등급 구분(경사도, 토성, 유효토심 등)
 - 지대별·용도별 구분
 - 관련계획 검토
 - 농지이용계획 수립
 - 보고서 및 도면 작성

라. 사업 추진실적

시·도	계	작성 시·군·구
계	151	151
부 산	1	기장군
인 천	2	강화, 용진군
대 구	1	달성군
광 주	1	광산구
경 기	19	안산, 오산, 남양주, 용인, 이천, 파주, 동두천, 고양시, 평택, 양주, 여주, 화성,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안성, 김포군
강 원	18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삼척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군
충 북	12	청주, 충주, 제천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음성, 단양, 진천군, 증평출장소
충 남	15	공주, 천안, 보령, 아산, 서산시, 논산군, 금산, 연기, 서천, 예산, 태안 당진, 부여, 청양, 홍성군,
전 북	14	익산,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군
전 남	21	순천, 나주, 여천, 광양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장성,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군
경 북	23	상주, 영주, 경산, 포항, 경주, 문경, 김천, 안동, 구미, 영천시, 고령, 칠곡, 봉화군, 점촌,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성주, 예천, 울릉, 울진군
경 남	20	진주, 울산, 마산,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시, 의령, 함안, 창녕, 창원, 양산,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제 주	4	제주, 서귀포시, 북제주, 남제주군

○ 농지개발 모델 정립을 위한 기본조사 추진

- 사업추진

- ① 후보지 추천(시·군) : 68지구 1,216ha
- ② 도상검토 및 현지답사(농기공)
- ③ 유형별 개발 우선순위 결정 : 17지구 310.5ha

- 기본조사 지구별 내역

개발유형	지구명	면적(ha)	주요시설	사업비(백만원)	입식작물
계(8유형)	17지구	310.5		34,032	
생약단지	평창 탐동	26.6	농로, 용수원, 용수로, 배수로	735	약초, 감자등
	제천 도기	21.6	농로, 용수원, 용수로, 배수로	1,139	황기, 당기
특작단지	홍천 자은	26.4	농로, 용수원, 용수로, 배수로	695	고냉지채소등
	진안 노촌	21.9	농로, 용수원, 용수로, 배수로	802	고추, 채소등
과수단지	곡성 만수	20.0	농로, 용수원, 용수로, 배수로	1,028	사과
	진도 길은	21.0	농로, 용수원, 용수로, 배수로	1,113	참다래
	거제 장좌	15.0	농로, 용수원, 용수로, 배수로	1,310	유자
화훼단지	예산 차동	13.0	농로, 용수원, 용수로, 배수로	718	백합등
	나주 월산	53.0	농로, 용수원, 용수로, 배수로	1,807	배, 국화, 장미
초지낙농	선산 신촌	29.5	농로, 용수원, 배수로	583	초지, 낙농
축산단지	임실 관기	12.6	농로, 용수원	1,703	양돈
	양산 내포	6.7	농로, 용수원, 용수로, 배수로	1,929	양계
주말농원	가평 상판	9.2	농로, 용수원, 관리소, 숙박시설, 주차장, 휴게소, 야영장	1,400	
	청원 금관	10.5	농로, 용수원, 관리소, 숙박시설, 주차장, 휴게소, 야영장	2,050	
	영천 청정	5.8	농로, 용수원, 관리소, 숙박시설, 주차장, 휴게소, 야영장	1,290	
휴양농원	천안 광덕	4.1	농로, 용수원, 관리소, 주차장, 휴게소, 운동시설	3,200	
	여주 용은	13.6	농로, 용수원, 관리소, 주차장, 휴게소, 운동시설	8,600	

1. 사업의 주요내용

가. 농지자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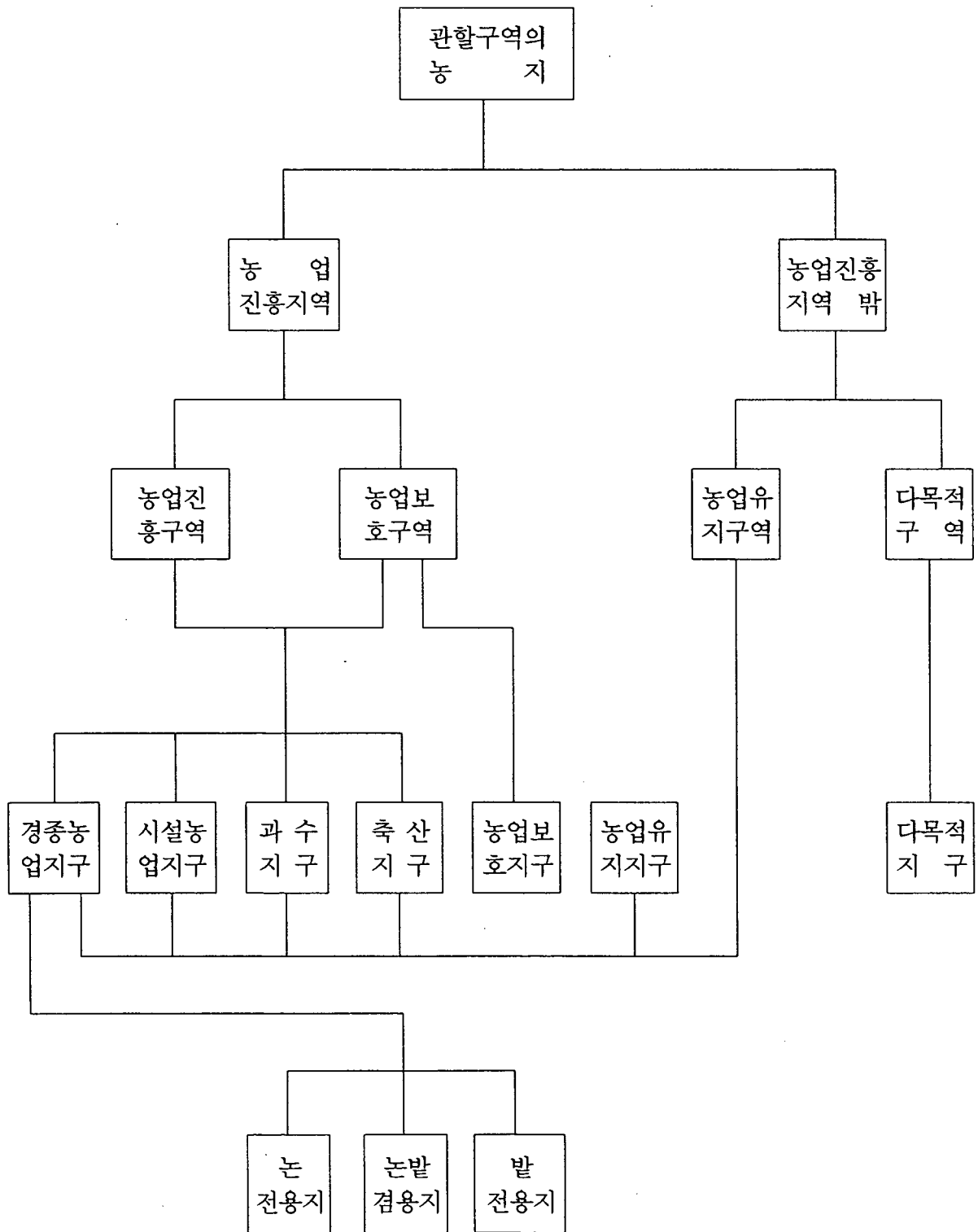
□ 기본방향

- 장래의 농지이용용도에 맞게 생산기반정비, 농업기계화, 품목별 시설현대화, 축산업구조개선, 유통시설확충, 전업농육성 등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투자효율을 높이고 농업경쟁력을 강화
- 농업적 활용가치가 적은 지역중에서 공장용지, 주택용지, 농어촌휴양지등 다목적지구를 설정하여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농지의 농업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 농지전용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농업환경을 보호

□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계획

- 농지의 지대구분
 - 농지의 지대별 구분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의 지대로 구분
 - 농업진흥지역밖은 농업유지구역, 다목적구역으로 분류
- 농지의 용도별 구분
 - 농지의 용도구분은 경사도, 토성, 토양배수, 유효토심, 토지적성등급등의 토양특성과 경지정리 가능성, 수리상태 등 자연적인 현황과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의 의향, 농지이용실태 등을 토대로 지역발전방향과 지역 농업구조 개선방향을 고려하여 분류
 - 농업진흥지역 : 경종농업, 시설농업, 과수, 축산지구 등 4개 지구로 구분하되 경종농업지구에 대해서는 논전용지, 발전용지, 논·밭겸용지로 세분함. 단, 농업보호구역중에서 경종농업, 시설농업, 과수, 축산지구등의 농업용지구로 구분할 수 없는 지역은 농업보호지구로 구분함
 - 농업진흥지역밖 : 농업유지구역은 경종농업, 시설농업, 과수, 축산, 농업유지지구등 5개 지구로 구분하되 경종농업지구에 대해서는 논전용지, 발전용지, 논·밭겸용지로 다시 세분하여야 하며, 다목적구역은 다목적지구로 구분함

나. 농지의 시대별 용도별 구분도



<용도별 구분기준>

(1) 경종농업지구

논이나 밭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되어야 할 지역으로 집약적 농업 경영이 가능하며 아래의 논 전용지, 밭 전용지, 논·밭겸용지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거나 동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역농업인이 희망하는 지역

□ 논전용지

- 집단화 규모 : 2ha이상인 지역
- 지형 및 토양조건
 - 농지집단화 지역으로 일괄기계화에 의한 수도작 재배 가능지
 - 토양경사도 7%이하인 지역
 - 논으로서 토지적성등급이 3등급이상인 지역
 - 표토층이 20cm이상으로 유효토심이 50cm이상인 지역
 - 벼 재배 이외의 작목선택에 심한 제한을 받는 지역
 - 배수불량으로 전작의 식부가 곤란한 지역
 - 수리시설이 양호, 개발이 가능하여 수리안전담으로 한발 피해가 없는 지역
- 개발여건
 - 농업용수가 확보되었거나 계획된 지역(농업용수 10개년계획 또는 농어촌용수 계획등)
 - 농기계 진입이 가능하거나 폭 3cm이상의 농로개설이 용이한 지역
 - 행정기관 또는 농조에서 논 경지정리 및 휴반정리 대상지역으로 계획한 지역

□ 밭전용지

- 집단화 규모 : 2ha이상인 지역
- 토양조건
 - 토양경사도 15%이하인 지역
 - 밭으로서의 토지적성등급 3등급 이상인 지역
 - 표토층이 15cm이상으로 유효토심이 30cm이상인 지역
 - 자갈 혼재비율이 35%이하인 지역

- 개발여건
 - 연중 침수에 의한 피해가 없으며 토양배수가 양호한 지역
 - 2일 연속강우에 대한 홍수배제가 가능하고 4시간 강우량 4시간 배제가 가능한 지역
 - 지하수위를 지표로부터 40cm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지하배수가 가능한 지역
 - 벼재배에 대하여 3년이상의 관개빈도 유지가 어려운 지역으로 발전환이 용이한 지역
 - 농기계 진입이 가능하거나 폭 3m이상의 농로개설이 용이한 지역
 - 발작물의 주산품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
 - 천수답으로 전전환이 가능한 지역
 - 발용수개발과 밭경지정리가 가능하며 주산단지화가 유리한 지역

□ 논·밭 겸용지

- 집단화 규모 : 2ha이상인 지역
- 토양조건
 - 토양경사도가 15%이하인 지역
 - 논과 밭으로서의 토지적성등급이 각각 3등급이상인 지역
 - 답은 배수상태가 양호하여 발전환이 용이한 지역
 - 표토층이 15cm이상으로 유효토심이 20cm이상인 지역
 - 자갈 혼재비율이 35%이하인 지역
- 개발여건
 - 농업용수가 확보되었거나 용이한 지역으로 논으로 개발여건이 구비된 지역
 - 배수가 양호하거나 배수개선이 용이하여 수도 또는 전작이 가능한 지역

(2) 시설농업지구

- 고정시설(철PET온실, 유리온실등)을 이용하는 기술집약적 시설 농업이 가능한 지역
- 현재 기술집약적 시설농업을 하고 있거나 발전추세에 있는 지역

- 지표배수가 용이하여 침수피해가 없으며, 지하배수가 용이하고 연중 양질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지역
- 교통이 좋고 시장접근도가 높은 지역
- 현재 비닐하우스 등 시설농업이 집단화된 지역
- 원예 및 화훼주산단지 고시된 지역

(3) 과수지구

□ 일반현황

- 과수로서 생산력이 높고 집약적경영이 가능하며 수종선택에 제한이 적은 지역
 - 토심이 깊고 토양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 및 양토
 - 전력 및 동력유입이 용이한 지역
 - 도로개발 및 관배수가 가능한 지역
- 현재 과수 및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는 지역
- 작목배치도상 과수추천 지역으로 배수가 양호한 집단화 가능지역

□ 자연적 조건

- 토양
 - 토성이 사질양토 및 양토인 지역
 - 토심은 유효토심 100cm이상
 - 배수가 양호한 지역(지하수위가 지표면으로부터 90cm이상)
- 지 형
 - 평지 또는 경사 0~15%지역(평지는 배수, 경사 15%이상은 토양침식, 지력척박, 기계화 등을 고려)
 - 경사면의 방향중 서향, 남서향은 일소가 우려되므로 가급적 제한
- 기온 및 강수량은 농촌진흥청발행 “과종별 재배지대 구분기준”에 따라 선정

□ 개발조건

- 도시근교지역
- 생산·판로를 위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
- 도로개발 및 관배수 가능지
- 생산기반시설(수원공, 용·배수로, 농로, 전기시설 등)이 완료된 지역
- 농업진흥지역내 과수계획지구에 인접하여 병행개발이 용이한 지역
- 용수원 확보가 용이한 곳

□ 사회적 조건

- 인근지역에서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지역
- 공동작업이나 협동경영이 가능한 지역
- 동력선 인입(引入)이 용이한 지역
- 농지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

(4) 축산지구

- 축산의 집단화가 필요한 지역
 - 토심이 깊고 토양배수가 양호하며, 용수공급과 집약적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교통이 편리하고 동력인입이 용이한 지역
 - 축산폐수등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농업용수원 및 농업진흥지역 등의 인근 농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용이한 지역
- 축산업시설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축산단지 예정지로 축산단지화가 필요한 지역
 - 현재 축사, 초지, 방목지인 지역이거나 축협에 축산단지로 추천된 지역으로 농어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지역

(가) 초지낙농(젖소, 한우)

□ 자연적 조건

- 지형
 - 경사도 35%이내를 대상으로 하되 경사도 15%이하의 면적이 가급적 많은 지역
 - 골짜기 밀도가 낮아 조성가능면적이 집단화되어 있는 곳 (다량의 토양 이동이 필요치 않은 곳)
 - 조성방향은 북향이 좋으며 해발표고가 높을 수록 목초성장 기후조건(목초의 알맞은 생육온도 18~21℃)에 알맞다
- 기상
 - 하절기의 고온장애등으로 하고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기온 30℃이상이 1주일이상 지속될 때 목초 생육에 지장을 초래)
- 토양
 - 구역내 유효토심(25cm이상)이 깊고 자갈함유량이 적으며 배수가 양호한 토질
 - 석력등 장애물 제거비용이 적게 드는 곳
 - 심한 토양침식을 받는 지역은 제외

축산경영 여건

- 현재 부업규모의 축산농가가 전업규모로 확대하여 정착축산농가로 육성 될 수 있는 지역
- 농후사료의 의존도가 높아 조사료 생산시설의 공급으로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지역

기간시설 여건

- 개설할 진입로의 길이가 짧고 개설이 용이하며 도로부지 확보가 용이한 곳
- 한전 외선공사비가 적게 드는 곳
- 축산용수, 생활용수 등의 용수원 확보가 용이한 곳

사회적 여건

- 개발시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곳
-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지소유분이 많고 부채지주의 소유분이 적은 곳
- 취약지역속에 산재한 축산농가가 주변환경을 저해하므로 원거리로 이전하여 농촌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 초지조성 구역에 경제조림지나 암목이 좋은 지역은 지양
- 도시근교의 낙농가가 한계농지 지역으로 이전 확대하고자 하는 곳

(나) 축산단지(양돈, 양계)

자연적 조건

- 경사가 완만하고 지형이 복잡하지 않은 지역(단지조성비가 경제적이며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
- 배수불량, 연약지반 등 가급적 단지조성에 지장이 없는 지역
- 단지의 하류에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

사회적 여건

- 법적 제한사항이 있거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어려운 지역은 가급적 제외
- 집단부락이나 공동상수원 지역은 피할 것
- 식품가공공장이나 관광유원지 부근은 피할 것

축산경영여건

- 현재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전업규모로 확대하여 정착축산농가로 육성될 수 있는 지역

- 가축의 질병관리, 사육에 필요한 의료수혜등 질병관리가 용이한 곳
- 사육기술정보 및 공동관리체계 전환이 쉬우며 공동구매 및 출하가 편리한 지역

□ 기간시설 여건

- 인근 도시와 교통이 편리한 지역
- 한전외선 공사비가 적게 드는 곳
- 진입도로 연장이 짧고 시설이 용이하며 도로부지 확보가 용이한 곳

□ 사업시행 여건

- 행정기관, 관련단체의 열의가 있고 입주희망자의 호응도가 높으며, 축산에 의욕이 있는 지역
- 휴경되었거나 농업포기 농민으로 농지매도 의사가 있는 농지 및 배후산지를 구입 공영개발 가능지역

(5) 농업보호지구

- 농업진흥지역내 농업보호구역중에서 경종농업지구(논전용지, 논·밭 겸용지, 밭전용지),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축산지구 등 농업용 용도지구로 구분할 수 없는 잔여 농지
 - 농업진흥지역내 농업보호구역은 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 지구, 축산지구 등 농업용용도 구분기준에 적합할 경우 최대한 농업용지구로 지정

(6) 농업유지지구

- 농업진흥지역밖 농업유지구역 농지중에서 토지생산성이 낮고 영농 기계화가 어려운 지역등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지
 - 농지집단화규모 2ha미만·토양경사도 15%이상·곡간폭 50m이내 등의 농지중에서 농지생산기반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

(7) 다목적지구

- 다목적지구는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를 주 택용지, 공장용지, 농어촌휴양지 등으로 활용할 지역으로 농업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적은 지역중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 관련 법령등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농지
 - 경종농업, 시설농업, 과수, 축산지구등 농업적 활용계획수립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이미 시가화(농지주변 일대가 취락·공장등 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함) 되었거나 향후 5년 이내에 시가화 될 것이 확실한 지역안에 있는 농지

다. 생산기반 종합정비계획

(1) 정비방향

농지이용계획을 토대로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지표, 지하)개선, 농조정비, 용배수로정비, 수리시설 개보수등으로 수립하되 마을 집단화, 취락배수등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종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업별 실시요령 및 농지개량 사업계획 설계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계획

(2) 정비계획

□ 경지정리계획

○ 계획수립시 고려사항

- 경지정리 구획의 확대, 농로확포장, 용배수로의 구조물화, 배수 개선사업등이 배후마을 정비와 연결하는 경지종합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계획
- 계획지역내의 영농규모화계획,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계획, 유통구조개선계획 등과 관련하여 구획의 형성, 면적, 주요도로등의 배치계획을 구상하고 정지공법, 농지의 교환·분합·환지계획 등을 고려

□ 배수개선계획

○ 계획방향

- 경종농업지구를 중심으로 홍수시 24시간 이상 침수피해가 있는 지역이나 토양배수가 불량하여 습해 및 농기계 작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계획
- 배후마을에 생활폐수가 농업용수와 농경지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은 취락배수와 병행하여 계획
- 경지정리 사업등과 병행 실시 지역은 관련계획에 포함하여 계획
- 정밀토양도상 지하배수 불량지는 지하배수개선 계획수립
- 지표 및 지하배수 예정지 조사에 의해 선정된 지역을 계획
- 배수계획은 지하배수를 감안하여 수립하되 지표배수는 홍수때를 대상으로 필요한 계획배수량을 배제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 허용담수로 인정한다. 지하배수를 감안하는 경우는 평상시를 대상으로 그때의 배수량을 배제할 수 있는 동시에 지하수위를 필요한 깊이까지 낮출 수 있도록 배수로의 계획수위를 알게 책정

□ 농어촌용수 개발계획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합리화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수용
- 「농어촌용수합리화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구역에서는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을 근거로 검토
- 농업진흥지역밖 농업용수개발계획은 경지정리 즉 생산기반정비가 필요한 지역중 기존수리시설로 용수가 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지역을 신규수리면적으로 하여 조사 계획

라. 농지의 농업환경보전

- 농지의 용도별 이용계획을 수립한 후 축산지구, 취락지구, 다목적지구(휴양자원, 공업용지등)로 계획된 지역에서는 농업환경보호 및 국토보전을 위하여 축산폐수정화·오폐수정화시설, 기타 농업환경보호시설계획등을 수립하여 주변의 농업환경 및 자연이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및 농지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시설물 설치, 수목실재등을 계획
- 준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이용 규제사항은 농업환경 보존차원에서 준수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농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가 무계획적, 산발적인 개발로 인한 중·대규모 개발대상지 잠식 및 훼손 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지 않도록 계획

2. 농지개발 모델정립을 위한 기본조사

가. 목 적

휴경화 되어가고 있는 한계농지지역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알맞은 개발유형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상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보전·관리를 하기 위함.

나. 기본방향

- 한계농지개발사업 추진상 문제점 도출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개발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
- 현행법 또는 제정되는 법에 의거 시행 가능지역 계획수립
- 지자체에서 추천한 지구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
- 농지관련 제도개선사항 도출

다. 사업 추진내용

□ 대상지구 선정

- 대상지역 : 진흥지역밖 농지로서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 및 주변임야
- 후보지구 추천 : 시·군 추천지구(68지구 1,216ha)
- 답사 및 지구선정 : 도상검토 및 현지답사후 우선순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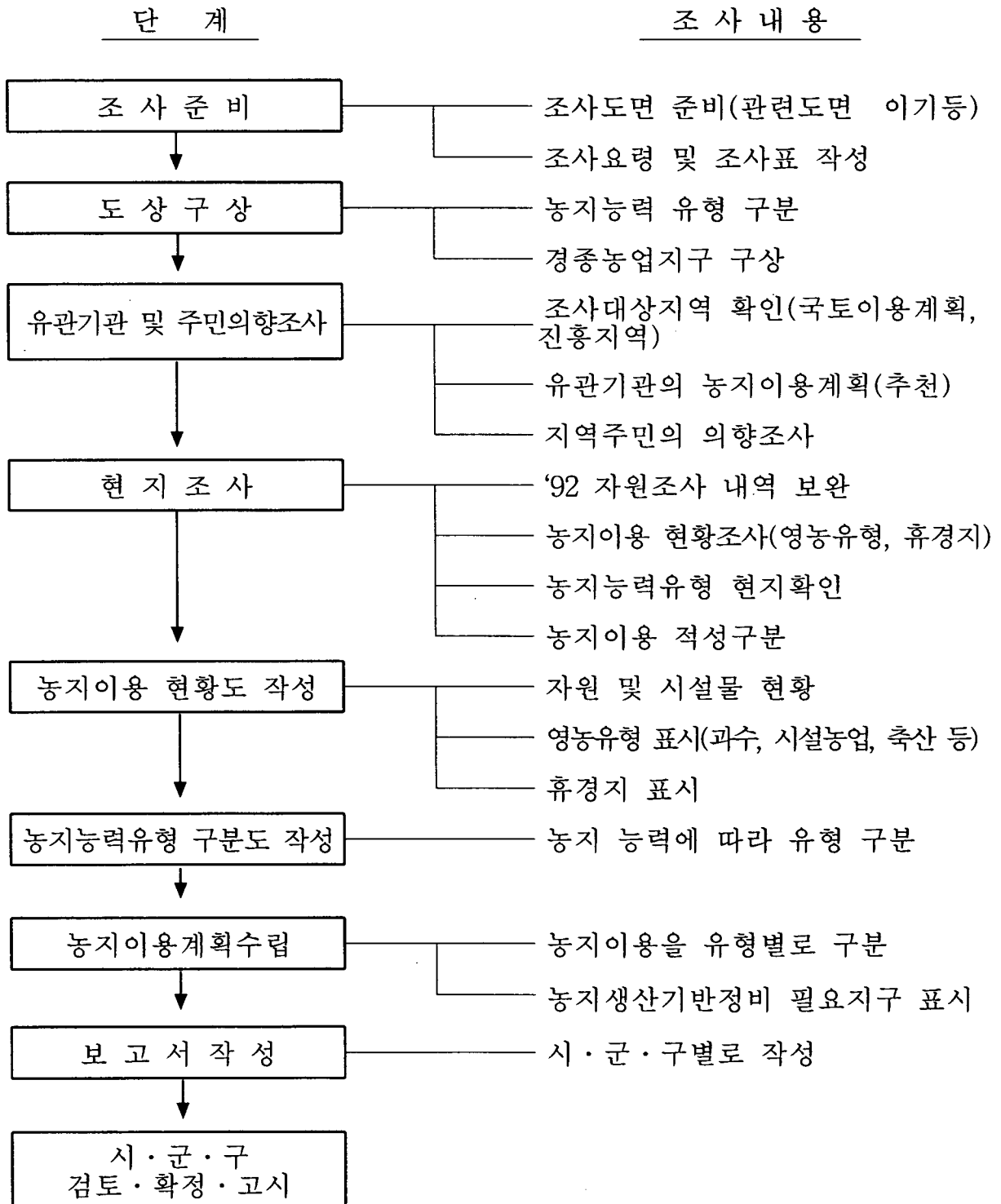
□ 대상지구 답사 및 개발계획 수립

- 주요 답사내용
 - 지구주변 입지여건 및 유역상황
 - 지형측량 및 지역조사, 수자원조사
 - 용지매수 및 지장물조사
 - 토양, 농업경제, 건축, 기계, 전기, 수문조사
 - 개발수요조사(도시농촌 교류형)
- 개발계획 구상
 - 한계농지개발사업 시행체계 및 지원방안 모색
 - 사업시행후 안정적 소득증대 방안 강구(농업적이용형)
 - 지역사회발전과의 연계 및 시설의 종류, 규모 결정(도농교류형 및 비농업적이용형)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강구
 - 지구별 개략사업비 산출
- 토론회개최 등 의견수렴 :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여 개발계획에 반영
- 사업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도출
- 분야별 답사 : 토목, 품셈, 농업경제, 토양조사, 기전

라. 개발유형별 모델정립

- 농업적이용형 : 과수, 특작, 생약, 초지·낙농, 축산단지 등
- 도·농교류형 : 효도농원, 주말농원, 체험농원 등
- 비농업적이용형 : 농어촌주택단지, 농공단지 등

1. 계획수립절차



2.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

가. 농림부

- 지침 발달
- 시·도, 시·군·구 담당자에게 대한 교육 총괄

나. 시·도

- 시·도 수립지원반 운영
- 시·군·구 농지이용계획 수립지도 및 조정
- 담당공무원 교육준비
- 시·군·구 농지이용계획 승인
 - 인접 시·군·구의 농지이용계획과 조화되는지 여부, 다른 토지이용계획과의 조화 및 농지이용계획수립지침등에 적합한지 연계 검토하여 승인
- 농지이용계획수립 결과 보고

다. 시·군·구

- 농지이용계획수립반 구성
- 농지이용계획수립에 필요한 관련자료 수립 및 분석
-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 농지이용계획수립
- 시·도지사가 승인한 농지이용계획 확정·고시

라. 농업기반공사

- 농업진흥지역밖 자원조사 : 151시·군·구
 - 보고서 및 도면작성
- 농지이용계획수립요령 작성
- 시·도, 시·군·구 담당자에게 대한 교육 및 홍보
- 농업진흥지역밖 자원조사 및 농지이용계획구상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제시하고 기술지도

지표명	2.3 사업목적의 달성도	가중치
		15점

평가내용	1. 사업목적 달성 정도
-------------	----------------------

가. 사업 추진목표

- 농지이용계획수립을 통한
 - 농업진흥지역에 집중투자로 인한 농민의 불만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밖 우량농지에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자료로 활용
 -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중 다목적구역에 대하여는 농업의 용도 활동으로 농외소득 증대
 - 농지의 체계적 관리로 휴경화 방지 및 영농규모화 촉진
 - 계획적 개발유도로 도시적용지 수요에 적극 대처
 - 농지용도별 집단화로 기계화영농 촉진 및 농지이용증진
 - 무분별한 농지전용은 억제하고,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농지전용 유도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면적의 우량농지 보존
- 농지제도개선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나. 사업 추진효과

- 농지전용 면적감소
 - '95 : 16,279ha '96 : 16,611ha '97 : 15,395ha '98 : 14,411ha, '99 : 12,017ha
- 농지의 자원조사·연구를 통한 농지제도개선 자료로 활용
 - 농촌근대화촉진법을 폐지하고 농어촌정비법 제정시('94) 기초자료로 활용
 -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법 제정시('95) 기초자료로 활용
-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의 계획적 개발 유도
 - 한계농지정비, 문화마을조성, 농공단지조성, 농산물유통시설 등

- 농지의 이용·보전·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계획 활용지침 시달(지자체)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도모
 - 적용범위 : 각종 지역개발계획 수립시, 농업관련 정책자금 지원시, 농지전용허가시, 농지이용증진사업 연계 등

- 농업과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농지의 체계적 활용 유도
 - 2, 3차 산업의 농촌입지를 유도하여 농어촌을 복합산업공간으로 육성 추진

- 식량자급을 위한 우량농지 보전 기틀 마련
 - ※ 농지이용계획 수립결과 : 덧붙임 참조

- 한계농지 기본조사를 통한 효율적 농지이용방안 마련
 - 한계농지에 한계농지정비사업을 통한 농지이용제도 마련
 - 한계농지란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밖의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지자원조사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제외
 -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 지역의 농지로서 토양오염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 한계농지 정비유형 정립
 -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조성등 농림수산업적 이용
 - 관광농원, 주말농원등 농어촌휴양자원 이용
 -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공업·문화 및 체육시설등 다목적 이용

<덧붙임>

농지이용계획 수립결과

○ 용도지구별 농지면적

(단위 : ha)

구 분	농지면적	경종 농업지구				시설농업 지 구
		소 계	논전용지	논밭겸용지	밭전용지	
계	2,277,844 (100%)	1,557,371 (68.4)	882,119 (38.7)	366,850 (16.1)	308,402 (13.6)	52,846 (2.3)
진 흥 지 역	1,069,583	909,931	660,862	163,763	85,306	41,402
진흥지역밖	1,208,261	647,440	221,257	203,087	223,096	11,444

(단위 : ha)

구 분	과수지구	축산지구	농업보호지구	농업유지지구	다목적지구
계	153,915 (6.8)	34,615 (1.5)	69,224 (3.0)	322,700 (14.2)	87,173 (3.8)
진 흥 지 역	43,895	5,131	69,224	-	-
진흥지역밖	110,020	29,484	-	322,700	87,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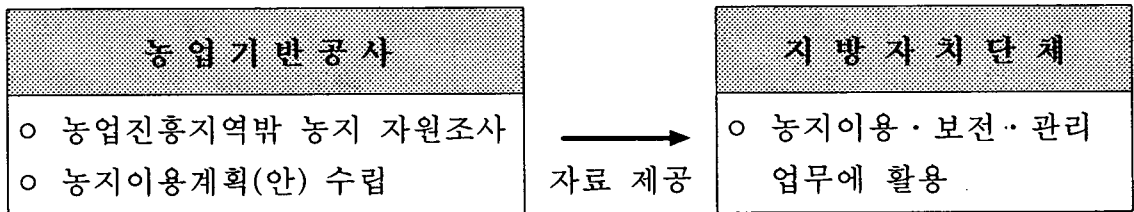
※ 기준연도 : 1996

○ 시·도별 수립결과

(단위 : ha)

시·도별	계	경중농업 지	시설농업 지	과수지구	축산지구	농업보호 지	농업유지 지	다목적 지
계	2,277,844 (100%)	1,557,371 (68.4)	52,846 (2.3)	153,915 (6.8)	34,615 (1.5)	69,224 (3.0)	322,700 (14.2)	87,173 (3.8)
부 산	11,236	9,631	962	102	64	10	-	467 (4.2)
대 구	6,288	2,945	25	35	48	190	2,181	864 (13.7)
인 천	23,162	20,350	123	90	61	89	1,795	654 (2.8)
광 주	11,321	9,447	804	223	56	-	216	3,575 (31.6)
대 전	4,226	2,289	112	118	-	-	809	898 (21.3)
경 기	259,974	198,580	6,034	5,054	4,607	6,861	29,145	9,693 (3.7)
강 원	184,482	74,572	2,115	1,355	2,912	1,827	93,442	8,259 (4.5)
충 북	163,528	111,851	2,986	14,268	2,379	2,562	21,114	8,368 (5.1)
충 남	318,469	245,815	7,815	14,089	5,740	16,108	21,231	7,671 (2.4)
전 북	255,864	199,947	4,184	6,326	4,420	9,721	124,332	6,934 (2.7)
전 남	365,920	301,209	6,816	15,929	3,052	15,175	15,175	6,934 (2.7)
경 북	374,400	212,023	10,772	53,982	6,671	13,139	61,514	16,299 (4.4)
경 남	245,228	154,461	9,738	18,274	4,410	3,509	39,324	15,512 (6.3)
제 주	53,746	17,251	360	24,070	195	33	10,693	1,144 (2.1)

가. 추진성과 활용



□ 농지이용계획 활용지침 마련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 후 농업기반공사가 작성한 농지이용계획구상(안)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지이용계획을 입안하여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및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농지이용계획 확정·고시
- 농업발전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 수립시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0조에 의한 「시·군농어촌발전계획」 수립시 투자사업이 농지이용계획상의 용도지구 내용과 조화되도록 작성 유도
 -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의해 시행되는 생산기반정비계획 등 농어촌 자원조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에 의해 농어촌취락 및 도로 등의 정비 개발을 위한 정주권개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농업관련 정책자금 등 지원시

- 자율사업의 경우,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훈령 제877호)제14조에 의해 시·군 등 사업부서는 시·군의 농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우선순위를 결정
-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주는 농지이용계획에 적합하게 사업지구가 선정되도록 사업을 계획
- 농림사업이 아닌 타 사업의 경우에도 신청사업이 용도지구에 적합하게 입지 되도록 유도

○ 농지보전업무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심사할 때에는 전용목적 사업이 농지이용계획상의 용도지구와 가급적 부합되도록 위치변경 등을 유도

○ 농지이용증진사업과 연계추진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법 제14조에 의한 농지의 용도별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때 활용

□ 농지제도개선 및 농지정책 결정 기초자료로 활용

3) 농지이용증진사업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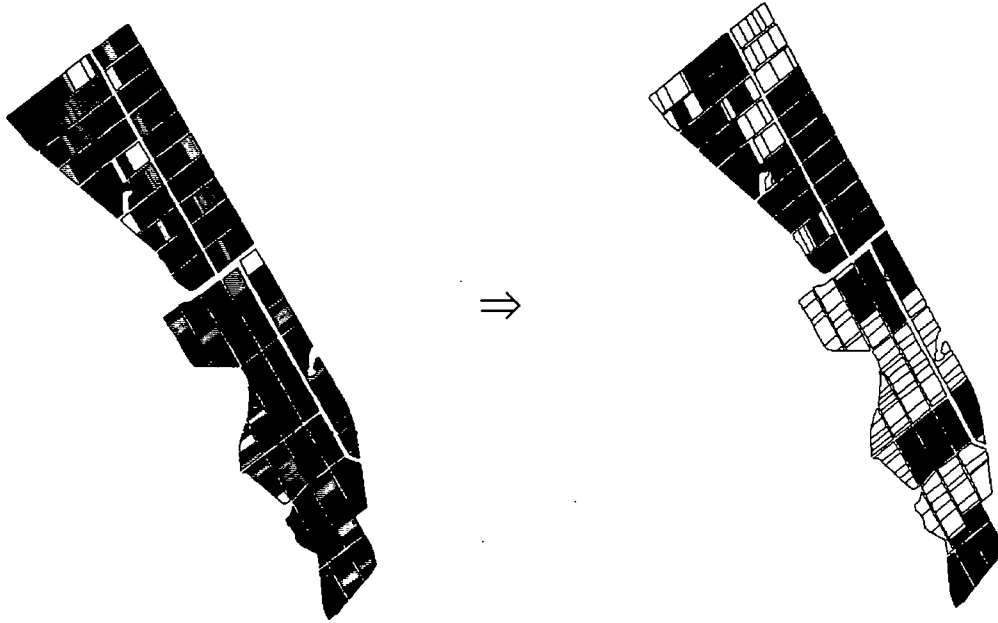
지표명

2.1 사업선정의 타당성

가중치

15점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전종철 (☎02-503-7264)
농업기반공사 경제조사부 2급 이형순(☎0343-420-3222)



평가내용

1. 기금 설치목적과의 적합성

- 가. 농지관리기금설치 목적
- 나.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목적
- 다. 기금설치 목적과의 적합성

2. 예산 및 타 기금과의 사업중복

- 가. 타 기금과의 사업 중복여부

I. 지표관리 방향

1. 운용여건

-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행계획서 필요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범적인 시행계획수립
- 지사·지부에서 참고로 할 수 있는 지침 필요
 -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시행계획수립요령 작성
-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농가별 적정영농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 시행계획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농가별 적정영농규모 추정
- 시범적인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와 지침제정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

2. 지표관리 방향

- 3개 시범지구 시행계획서 작성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수립요령 작성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GIS프로그램 개발

3. 지표관리 체계도

농가의 적정영농규모화 및
집단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



- 권역별 농지이용계획 수립
- 농가별 적정영농규모 추정
- 효율적인 농지집단화 계획



사업의 효과적 수행

- 시행계획수립요령 교육
- 프로그램사용방법 교육
- 사업시행방법 교육

사업성과확보

- 시행계획 수립요령 및 GIS P/G에 의거 8개지구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서에 의거 사업시행 철저

장기발전방안 모색

- 시·군영농계획수립 및 경영진단·지도와 병행하여 규모화사업 추진

II. '95~'99년도 추진실적 요약

1. 기금설치 목적과의 적합성

농지관리기금설치 목적

-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목적

-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계획에 의한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로 농지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용
- 성장 가능성 있는 전문가족농을 육성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제고 도모

기금설치 목적과의 적합성

-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였으므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농지관리기금설치목적에 부합됨.

2. 예산 및 타 기금과의 사업 중복

타 기금과의 사업 중복여부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립요령을 작성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다른 어떠한 기금과도 예산이 중복되지 않았음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평가내용

1. 기금설치목적과의 적합성

1. 기금설치 목적

□ 기금이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로서 기금을 설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매년 기금관리주체가 공공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 기획예산처장관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정부는 회계년도 개시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

□ 농지관리기금 설치 목적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

- 농지관리계정 : 영농규모화적정화 및 농지집단화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
- 농지조성계정 : 농지전용(잠식) 대체농지조성 및 농지개발자금의 공급

□ 농지관리기금 설치 근거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31조)

2.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목적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목적

-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계획에 의한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로 농지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용
- 성장 가능성 있는 전문가족농을 육성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제고 도모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필요성

- 집단화된 농지에 대한 이용증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의 효율적·체계적 이용도모
- 지역농업 특성 및 개별 경영체의 경영여건에 맞는 전문가족농육성
- 농어촌정비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연계한 패키지개발 유도

3. 농지이용증진사업의 기금설치목적과의 적합성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였으므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농지관리기금설치목적에 부합됨.

1. 예산 또는 타 기금과의 사업 중복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립요령을 작성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다른 어떠한 기금과도 예산이 중복되지 않았음

2. 본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 권역별로 집단화된 농지에 대한 이용증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의 효율적·체계적 이용도모,
 - 지역농업 특성 및 개별 경영체의 경영여건에 맞는 전문가족농 육성,
 - 농어촌정비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연계한 패키지개발 유도
- ⇒ 위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립요령을 작성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은 필요했음

여 백

지표명

2.2 사업운영의 적정성

가중치

15점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전종철(☎02-503-7264)
농업기반공사 경제조사부 2급 이형순(☎0343-420-3222)

평 가 내 용

1.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 영농규모화 사업의 목적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목적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대상

2. 사업내용의 적합성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1. 운용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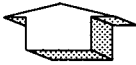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농지이용계획수립
- 쌀전업농에게 영농규모화사업 지원 시 농가별 적정영농규모에 의한 지원 필요
-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집단화 방법 제공

2. 지표관리 방향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행계획수립
- 시행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지사·지부에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지 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수립 요령 작성

3. 지표관리 체계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지이용계획서 작성



- 협소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 농가별 생산여건에 맞는 영농규모 지원
-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농지집단화 유도



시행계획서 작성

- 3개의 유형별로 조사후 시행계획서 작성
 - 영농규모화 유형
 - 관련사업개발유형
 - 경지정리사업유형

**실전업농별
적정영농규모 산정**

- 조사자료 분석
 - 농가별 생산여건에 맞는 적정 영농규모 산정

**시행계획서 수립요령
작성**

- 지사·지부에서 시행계획서 작성시 기준으로 활용

II. '95~'99년도 추진실적 요약

1.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영농규모화사업의 목적

- 규모화 · 전문화된 쌀전업농 육성
- 농지의 규모화 · 집단화로 농업생산성 증대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목적

- 지대별 · 용도별 이용계획에 의한 농지의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용
- 전문가족농을 육성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제고 도모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대상

- 3개 유형별 시행계획수립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 시행계획수립요령 작성
- ⇒ 따라서 유형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립요령을 작성하는 것을 농지이용증진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타당

2.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 시행계획 수립
 - 입력 및 분석을 위한 GIS프로그램 개발
 - 시행계획수립요령 작성
- ⇒ 영농규모화사업과 농지이용증진사업 내용에 적합함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평가내용

1.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1. 영농규모화사업의 목적

인력육성 측면

- 전문화된 쌀전업농을 육성하여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농업경쟁력 제고

농지의 규모화 및 집단화

-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로 생산비를 낮추어 농업경쟁력 제고

2.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목적

농지이용 측면

-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계획에 의한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로 농지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용

인력육성 측면

- 성장 가능성 있는 전문가족농을 육성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제고 도모

3.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대상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위한 GIS프로그램 개발

사업시행계획수립요령 작성

3개 유형별 사업시행계획수립

-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전문가족농을 육성하기 위해 유형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립요령을 작성하는 것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타당하였음

□ 3개 유형의 시행계획수립

- 관련사업 연계유형 : 강원 철원 상사지구(93ha)
- 영농규모화사업 연계유형 : 전북 김제 상월지구(193ha)
- 경지정리사업 연계 유형 : 경북 상주 소암지구(107ha)

□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위한 GIS프로그램 개발

- 입력 프로그램 내용
 - 조사자료의 입력 및 집계분석 프로그램
- GIS 프로그램 내용
 -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영농규모 추정 프로그램
 - 농지집단화 프로그램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프로그램

□ 사업시행계획수립요령 작성

- 농지이용증진사업 개요
- 시행계획 수립절차
- 조사요령
- 각종 조사표 양식

⇒ 시행계획 수립 시 3개의 유형구분은 사업내용에 적합하고, 입력 프로그램 및 GIS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적합하고, 수립요령내용도 역시 적합하였음

여 백

지표명	2.3 사업목적의 달성도	가중치
		15점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전종철(☎02-503-7264)
 농업기반공사 경제조사부 2급 이형순(☎0343-420-3222)

평 가 내 용

1. 사업목적달성 정도

- 가. 목표설정의 합리성
- 나. 목표대비 달성도

2. 성과평가의 합리성

- 가. 성과평가의 합리성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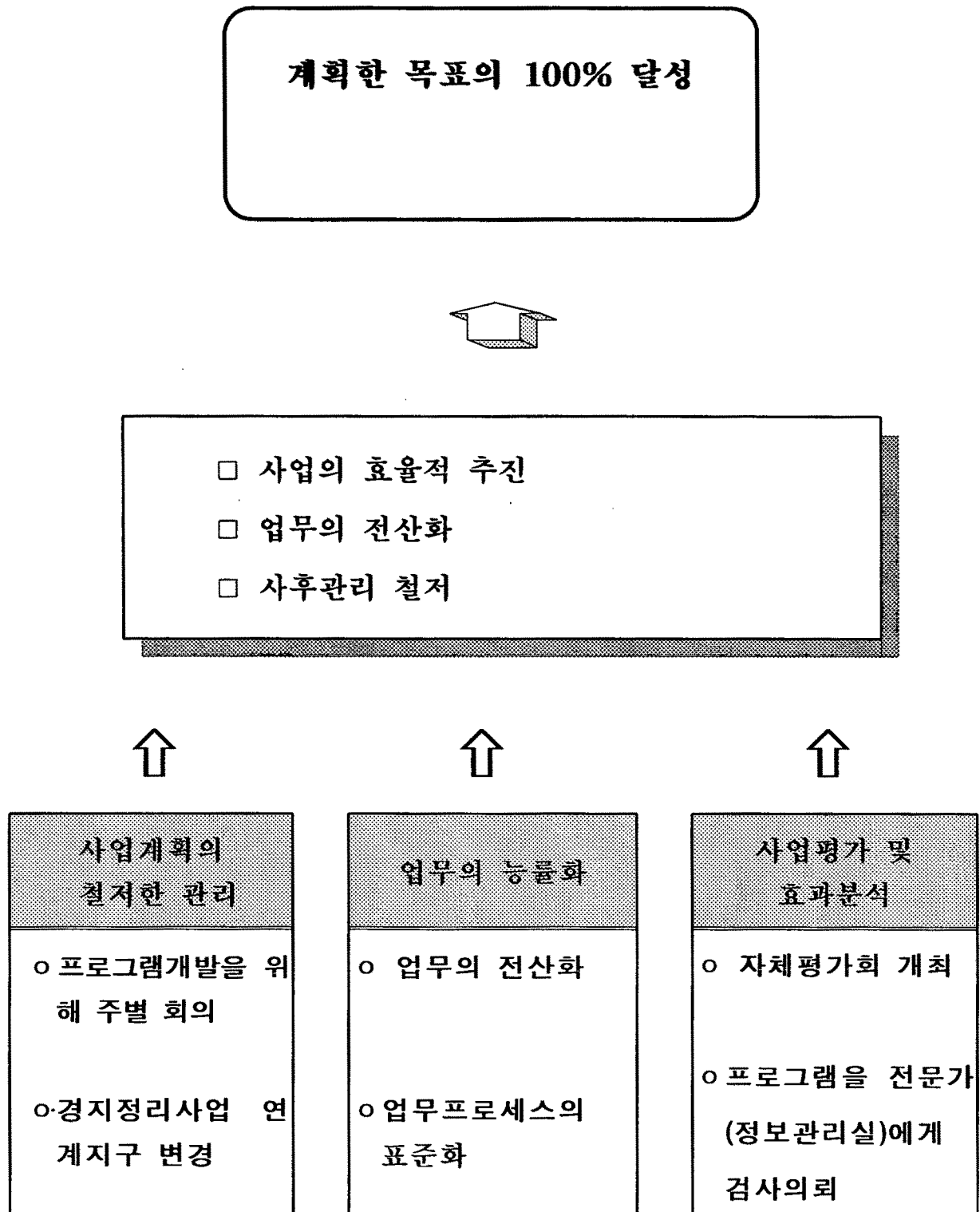
1. 운용여건

- 바람직한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노력
- 효율적인 사후관리 수행

2. 지표관리 방향

- 시범지구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지구의 유형분류
- 시행계획수립 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항목선정
-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계획수립요령 항목 선정

3. 지표관리 체계도



Ⅱ. '95~'99년도 추진실적 요약

1. 사업목적 달성 정도

목표설정의 합리성

규모화사업 추진 시 규모화 및 집단화가 가능한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사·지부에서 규모화사업을 위해 시행계획수립 시 분석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전산화하고, 지침을 작성하여 업무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목표설정이 합리적임

목표 대비 달성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이 모두 목표에 달성하였음

2. 성과평가의 합리성

성과평가의 합리성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에 대해 계획 대비 실적을 성과로 평가한 것은 합리적임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평가내용

1. 사업목적 달성 정도

1. 목표설정의 합리성

□ '98농지이용증진사업 목표

○ 시범지구 시행계획수립

-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시범사업시행계획 수립

· 관련사업 연계유형 : 강원 철원 상사지구(93ha)

· 영농규모화사업 연계유형 : 전북 김제 상곶지구(193ha)

· 경지정리사업 연계 유형 : 경북 상주 소암지구(107ha)

⇒ 규모화사업 추진 시 규모화 및 집단화가 가능한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목표설정이 합리적임

○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위한 GIS프로그램 개발

- 입력 프로그램

· 농가유형 구분

· 가족관계

· 향후 영농의향

· 지번별 소유 및 임대 관계

· 지구외 경영농지 면적

· 농기계보유대수

· 보유농기계 능력(마력, 조)

- GIS 프로그램

-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영농규모 추정 프로그램
- 농지집단화 프로그램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 지사·지부에서 규모화사업을 위해 시행계획수립 시 분석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전산화하여 업무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목표설정이 합리적임

○ 사업시행계획수립요령 작성

- 농지이용증진사업 개요
- 시행계획 수립절차
- 조사요령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 각종 조사표 양식

⇒ 지사·지부에서 시행계획수립 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조사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업무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목표설정이 합리적임

2. 목표대비 달성도

□ 계획대비 실적율이 100%로 목표달성

구분	계 획	실 적	실적율(%)
사업기간	'98.7~12	'98.7~12	100
사업비	250백만원	250백만원	100
사업내용	시행계획수립요령 작성	완료	100
	프로그램 개발	완료	100
	시범지구 시행계획서 작성	완료	100

1. 시범지구 시행계획수립

 3개지구 유형구분 평가

○ 관련사업 연계유형 : 강원 철원 상사지구(93ha)

○ 영농규모화사업 연계유형 : 전북 김제 상곶지구(193ha)

○ 경지정리사업 연계 유형 : 경북 상주 소암지구(107ha)

⇒ 규모화사업 추진 시 규모화 및 집단화가 가능한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성과평가가 합리적임

 적정영농규모추정 및 집단화 평가

⇒ 농기계 및 노동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농규모추정 및 집단화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성과평가가 합리적임

2.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적정영농규모추정 모듈 평가 집단화 모듈 평가 보고서 관리 모듈 평가 시스템 평가

⇒ 시행계획수립 시 분석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평가하였으므로 성과평가가 합리적임

3. 시행계획수립요령 작성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개요 평가
- 시행계획수립 절차 평가
- 조사요령 평가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평가하였음
으로 성과평가가 합리적임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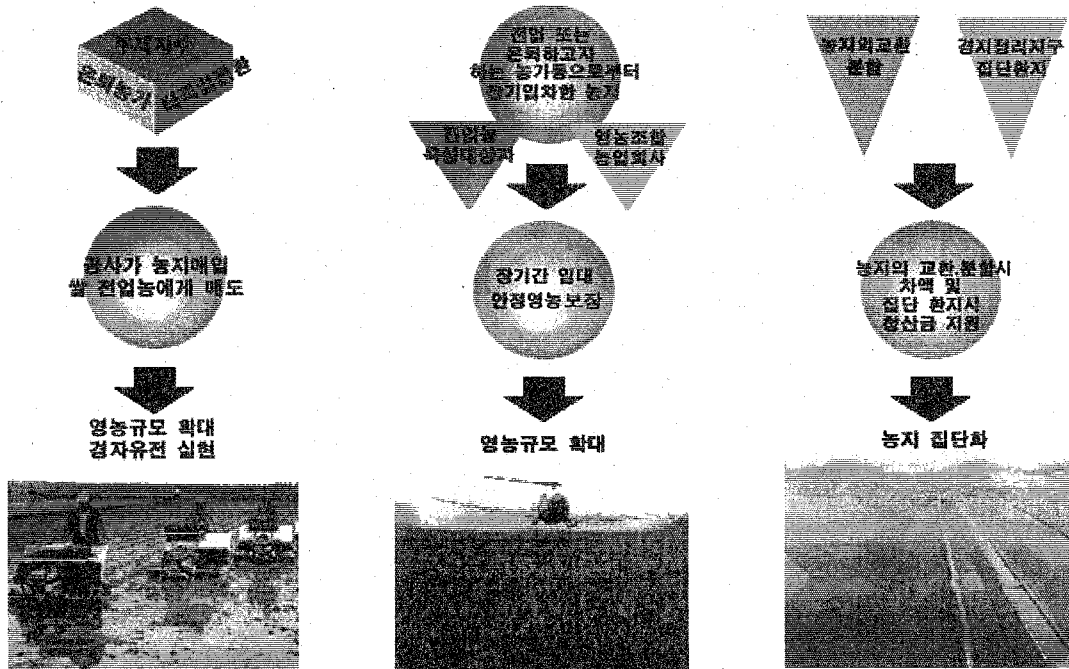
2. 사업간 자원배분의 적절성

가. 농지관리계정

여 백

지표명	2.4 사업간 자원배분의 적절성	가중치
		5점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서기관 전종철(☎02-503-7264)
 농업기반공사 농지관리부 2급 신현국(☎0343-420-3220)



평 가 내 용

- 가.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합리성
- 나. 우선순위 선정절차의 투명성
- 다. 우선순위 적용의 합리성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1. 사업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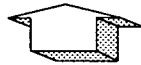
- 세계인구 증가 및 중국의 식량수입국 전환등 세계 곡물시장 불안정
- 뉴라운드 협상시 쌀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쌀전업농의 조기육성 필요성이 증대됨
- 농지관리기금 잠식의 심화로 영농규모화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적정 예산확보의 어려움 예상

2. 지표관리 방향

- 사업별 특성과 정책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우선순위 선정기준 마련
-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우선순위 선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별로 적정하게 자원을 배분

3. 지표관리 체계도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쌀생산전문경영체의 성공적 육성



적절한 자원배분으로
정책목적 달성도 제고



우선순위 선정
기준의 합리성

- ◆ 사업별 특성 분석
- ◆ 정책변화에 따른 정책목적 달성 추진
- ◆ 교환분합사업 실제 소요예산 반영

우선순위 선정
절차의 투명성

- ◆ 환경변화를 감안한 우선순위 설정
- ◆ 학계, 수요자등 각계의견을 수렴
- ◆ 기획예산처와 협의

우선순위 적용의
합리성

- ◆ 우선순위 적용시 선정기준을 준수
- ◆ 정책목적과 해당 사업특성을 접목
- ◆ 저비용 고효율 사업추진방향 유지

II. '95~'99까지 추진실적 요약

- 우선순위 선정의 합리성

□ 우선순위 선정기준

- 예산과 결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배분의 최적화 도모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의 계정간 구분계리원칙 반영
-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정책방향의 변화에 따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추진
- 각 사업별로 예산소요, 사업효과를 거양한 농업인에 대한 지원정도 등 개별특성을 감안
- 농지교환분합사업의 경우, 경지정리지구 집단환지청산금 지원과 연계되고 지원규모가 작으므로 실제 발생하는 경지정리 물량을 감안 규모 결정

구 분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 포함)	농 지 임 대 차	농지교환분합
◦ 사업비단가	◦ 사업비단가 높음	◦ 사업비단가 낮음	◦ 사업비단가 높음
◦ 예산소요	◦ 예산소요액 많음	◦ 예산소요액 적음	◦ 예산소요액 적음
◦ 주요사업효과	◦ 항구적 규모확대 ◦ 경자유전 실현	◦ 저비용으로 규모 확대 가능	◦ 집단화를 통한 생산비절감 가능 ◦ 경지정리를 통한 교환분합 촉진

□ 우선순위 선정기준 설정 합리적 논거

- 각 사업별 특성 분석 및 정책목적 변화를 반영
 - 각 사업별 특성 분석
 - 정책목적 변화 반영
 - '90년도 처음 경자유전 실현 정책목적에 맞게 농지매매사업에 우선지원
 - '96년 『쌀산업발전종합대책』에 의거 '97년부터 저비용 고효율의 임대차사업 우선지원
<매매/임대차 비율>
('97) 4:6 → ('98) 3:7 → ('99) 2:8

- 우선순위 선정절차의 투명성

□ 우선순위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과정별로 관련자 의견 수렴

□ 우선순위 선정 절차

- ① 농업환경변화 분석 : 대내·외적인 농업, 경제상황 분석
- ② 사업목표 설정 : 정책방향에 따른 사업목표 설정
- ③ 의견수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학계, 연구기관, 수요자등의 의견수렴
- ④ 농림부 자체 검토 :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기본으로 농지과, 기획관리실 등의 자체 검토 실시
- ⑤ 기획예산처와 협의 : 사업간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사업 우선순위 관련 협의
- ⑥ 우선순위 확정 :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 우선순위 확정

- 우선순위 적용의 합리성

□ 우선순위 적용 결과

- '90~'96년도중 농지매매사업의 면적비중이 87.4%를 차지하여 농지소유권 이동에 의한 규모확대를 우선순위 적용기준에 부합하게 추진 하였음
- '97~'99년도에는 농지임대차사업의 면적비중이 74.4%로 나타났으며, 이는 '90~'96년의 11.1%에 비해 5.7배가 증가한 것으로 매년 임대차사업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농지임대차사업 중심의 사업 추진이라는 우선순위 적용기준에 대한 적용 노력의 결과임

평가내용 - 우선순위 선정 기준의 합리성

1. 사업간 우선순위 선정 기준

□ 기본원칙 및 우선순위선정 기준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의 계정간 구분계리원칙 반영
 - 농지관리계정 :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 및 교환분합사업등
 - 농지조성계정 : 농지조성, 재개발사업등
- 농지관리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원배분
- 예산과 결산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배분의 최적화 도모
- 공공기금의 공익적 역할 증대
- 각 사업별로 예산소요, 사업효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정도등 개별특성을 감안
-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정책방향의 변화에 따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추진
- 농지교환분합사업의 경우, 경지정리지구 집단환지 청산금지원과 연계되고 지원규모가 작으므로 실제 발생하는 경지정리물량을 감안 규모 결정

2. 우선순위 결정과정

□ 우선순위선정 결정과정

- 각 사업별 특성 분석

구 분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 포함)	농지임대차	농지교환분합
사업비단가	○ 사업비단가 높음	○ 사업비단가 낮음	○ 사업비단가 높음
예산소요	○ 예산소요액 많음 (54.0백만원/ha)	○ 예산소요액 적음 (12.3백만원/ha)	○ 예산소요액 적음 (33.2백만원/ha)
주요사업효과	○ 항구적인 규모확대 실현 ○ 경자유전실현	○ 적은예산으로 많은 경영규모 확대에 기여	○ 집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가능 ○ 경지정리를 통한 교환분합 촉진

※ () 내는 '96년 단가임.

〈 1ha 규모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별 투자소요액 〉

구 분	농지매매사업(A)	농지임대차사업(B)	사업간비율(A/B)
1ha지원시 소요사업비	74백만원	18백만원	4배

* 소요사업비 : '99년도 사업실적기준

※ '95년도 12월 영농규모화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 실시결과 제한된 예산으로 규모화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은 농지임대차사업이므로 활성화할 것을 제시

○ 주요 정책목적

- 영농규모화사업이 본격 추진하게 시기는 '89년도 4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수립과 '90. 4.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정 및 동년 7월 농어촌진흥공사 설립부터이며, 영농규모화사업의 목적은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었음
-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경쟁력 있는 쌀생산 전문경영체를 본격 육성하기 위해 '96. 6. 발표된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2004년까지 쌀전업농 육성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성 있게 쌀전업농을 육성하는 것을 영농규모화사업의 목적으로 설정하였음
 - 육성인원 : 6만호
 - 육성규모 : 평균 8ha
 - 생산수준 : 쌀생산의 65% 담당

○ 사업별 특성 및 정책목적 변화에 따른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 '90년도 농어촌진흥공사 설립으로 영농규모화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정책목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매매사업 및 농지구입자금지원 등 농지소유권의 이동에 의한 규모확대를 중점 추진
- '97년도 부터는 '96년도 발표된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의 쌀전업농 육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제약하에 저비용으로 많은 면적을 지원할 수 있는 농지임대차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함

〈자원배분 비율 조정시 10,000ha 규모 확대를 위한 투자소요액 비교〉

(단위 : 억원)

매매대 임대차 비율	총사업비	매매사업비	임대차사업비
6 : 4	5,160	4,440	720
5 : 5	4,600	3,700	900
4 : 6	4,040	2,960	1,080
3 : 7	3,480	2,220	1,260
2 : 8	2,920	1,480	1,440

* 소요사업비 : '99년도 사업실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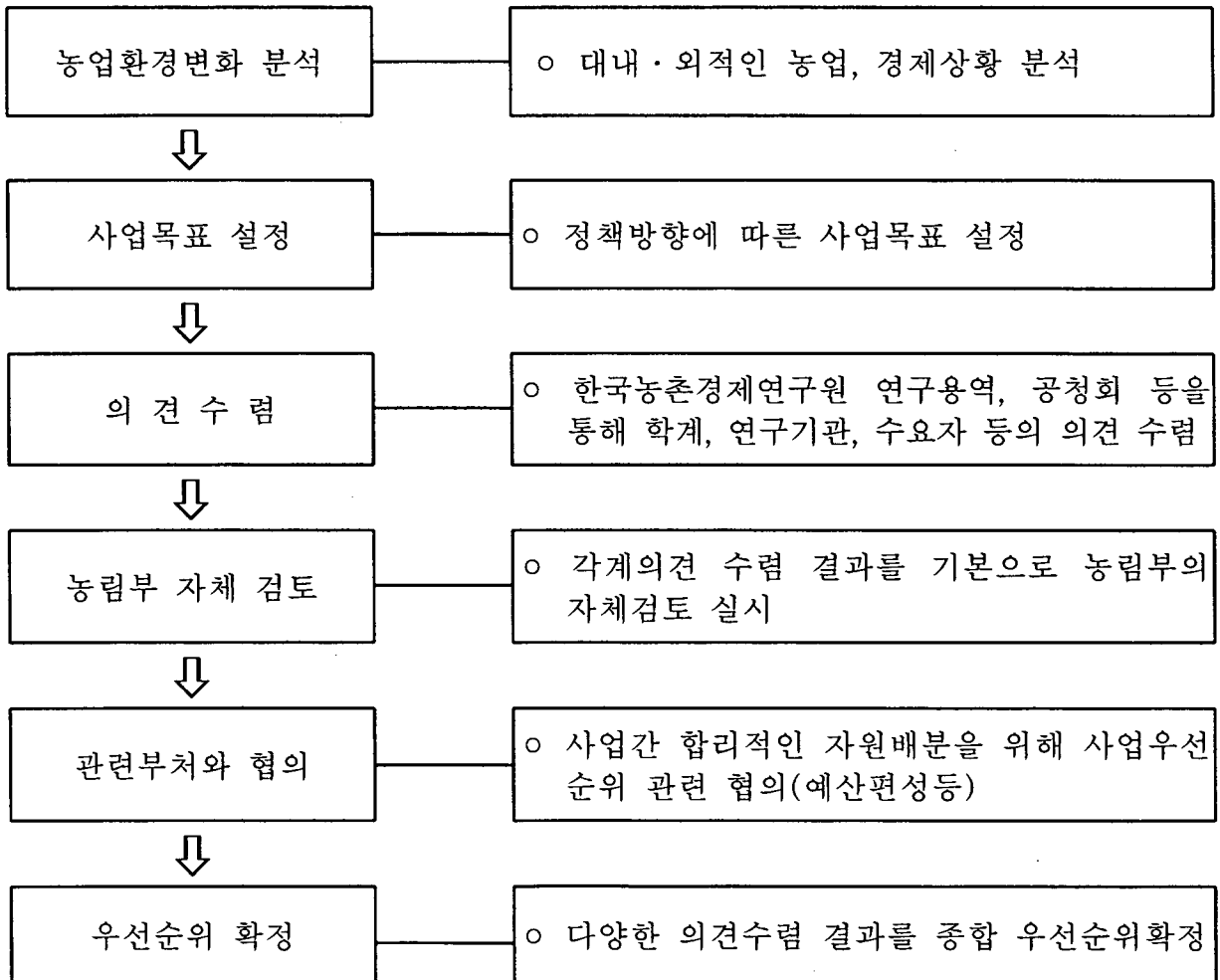
평가내용 - 우선순위 선정절차의 투명성

□ 우선순위 선정절차

○ 기본방향

- 대내외적인 농업환경변화를 감안한 사업목표 및 우선순위 설정
- 사업목표 및 우선순위에 대해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학계, 연구기관, 수요자 등의 의견을 수렴
- 기획예산처와 우선순위 선정 관련 협의 및 확정

○ 우선순위 선정절차



□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 '90년도~'96년까지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정책목적인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매매사업 및 농지구입자금지원등 농지소유권의 이동에 의한 규모확대를 중점 추진

< '90~'96년도 사업별 지원실적 및 투자비중 > (단위 : ha, 억원)

구분	계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 지원 포함)		농지임대차사업		교환분합사업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1990	7,258 (100.0)	2,330 (100.0)	7,255 (100.0)	2,330 (100.0)	3 (0.0)	0.48 (0.0)	- (-)	- (-)
1991	7,352 (100.0)	3,231 (100.0)	7,294 (99.2)	3,226 (99.8)	8 (0.1)	2 (0.0)	50 (0.7)	3 (0.1)
1992	7,107 (100.0)	3,316 (100.0)	7,053 (99.2)	3,306 (99.7)	36 (0.5)	8 (0.2)	18 (0.3)	2 (0.0)
1993	8,784 (100.0)	4,151 (100.0)	8,484 (96.6)	4,102 (98.8)	180 (2.0)	40 (1.0)	120 (1.4)	10 (0.2)
1994	5,394 (100.0)	2,382 (100.0)	4,354 (80.7)	2,152 (90.4)	792 (14.7)	200 (8.4)	248 (4.6)	29 (1.2)
1995	7,063 (100.0)	2,800 (100.0)	5,079 (71.9)	2,350 (83.9)	1,795 (25.4)	400 (14.3)	189 (2.7)	50 (1.8)
1996	7,890 (100.0)	3,365 (100.0)	4,932 (62.5)	2,665 (79.2)	2,806 (35.6)	650 (19.3)	152 (1.9)	50 (1.5)
계	50,848 (100.0)	21,575 (100.0)	44,451 (87.4)	20,131 (93.3)	5,620 (11.1)	1,300 (6.0)	777 (1.5)	144 (0.7)

* ()는 해당연도 전체지원실적에 대한 사업별 투자비중임

- '90~'96년도중 농지매매사업의 면적비중이 87.4%를 차지하여 농지소유권 이동에 의한 규모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기준에 부합하게 추진하였음

○ '97년도~'99년도에는 '96. 6.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에 의거 2004년까지 쌀전문경영체 6만호 육성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제약하에 저비용으로 높은 규모확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농지임대차사업 중심으로 추진

-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에 의한 2004년까지 쌀전문경영체 육성목표

- 육성인원 : 6만호
- 육성규모 : 평균 8ha
- 생산수준 : 쌀생산의 65% 담당

< '97~'99년도 사업별 투자비중 >

(단위 : ha, 억원)

구 분	계		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사업		교환분합사업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1997	13,338 (100.0)	3,484 (100.0)	3,447 (25.8)	2,112 (60.6)	9,701 (72.7)	1,295 (37.2)	190 (1.4)	77 (2.2)
1998	12,290 (100.0)	3,599 (100.0)	3,059 (24.9)	2,285 (63.5)	9,078 (73.9)	1,235 (34.3)	153 (1.2)	79 (2.2)
1999	8,138 (100.0)	2,480 (100.0)	1,702 (20.9)	1,257 (50.7)	6,324 (77.7)	1,165 (47.0)	112 (1.4)	58 (2.3)
계	33,766 (100.0)	9,563 (100.0)	8,208 (24.3)	5,654 (59.1)	25,103 (74.4)	3,695 (38.6)	455 (1.3)	214 (2.3)

* ()는 해당연도 전체지원실적에 대한 사업별 투자비중임

- '97~'99년도에는 농지임대차사업의 면적비중이 74.4%로 나타났으며, 이는 '90~'96년의 11.1%에 비해 5.7배가 증가한 것으로 농지임대차사업 중심의 효율적 사업추진이라는 우선순위 적용기준에 합치되는 결과임

○ 저비용 고효율의 임대차사업으로 자원배분을 늘이기 위해 '97년도에 임대차사업 비중을 대폭 확대한 이후에도 매년 점진적으로 임대차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여 백

나. 농지 조성 계정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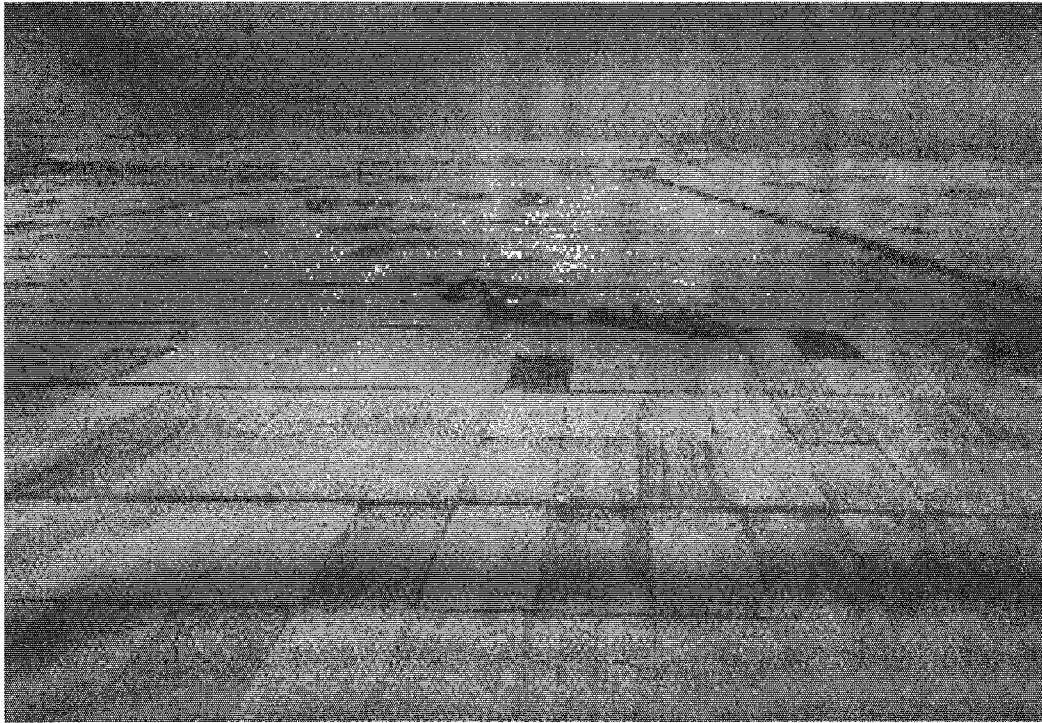
지표명

2.4 사업간 자원배분의 적절성

가중치

5점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서기관 강상구(☎02-500-2635)
농업기반공사 조성기금부 2급 장흥기(☎0343-420-3239)



< 관척사업 시행으로 잘 정비된 농경지 >

평 가 내 용

가.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합리성

나. 우선순위 선정절차의 투명성

다. 우선순위 적용의 합리성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1. 운용 여건

타 개발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종합개발계획 수립

- 완벽한 사전조사로 효율적 개발계획 수립
- 중복투자에 의한 예산낭비 억제

예산의 합리적 활용계획 수립 추진

- 합리적 공정관리로 사업효과 조기달성
- 종합적인 계획공정 관리

2. 지표관리 방향

관련기관·지자체·지역주민의견 최대한영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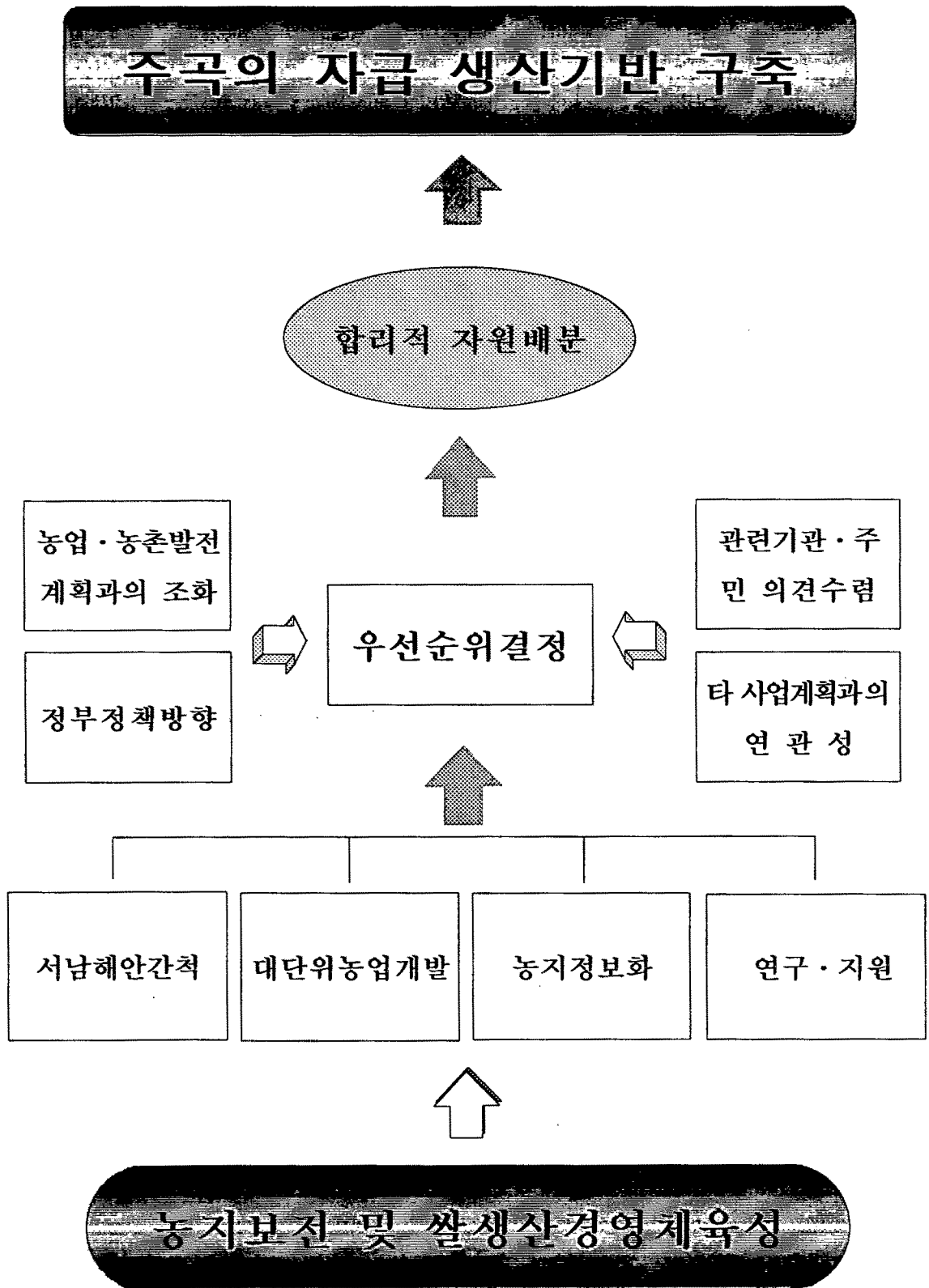
-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실시 및 반영

철저한 사업효과분석을 통한 대상지 선정

- 합리적인 대상지선정으로 사업효과 조기거양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우선순위적용의 투명성확보

3. 지표관리 체계도



II. '95~'99까지 추진실적 요약

- 우선순위 선정의 합리성

□ 우선순위 선정기준

- 농지조성사업을 주목적사업, 연구 및 기본조사사업, 경상적소요비용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선정
- 국민식량 자급기반 유지를 위해 우량농지 조성효과가 높은 사업에 자원 우선배분
 - 서남해안간척 및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집중투자
- 자원조사, 농지정보사업 등 목적사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연구분석사업 우선반영
- 철저한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대상지 선정
 - 합리적인 대상지 선정으로 사업효과 조기 거양

□ 우선순위 선정기준 합리적 논거

- 사업내용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결정
 - ① 조성토지 매각관리비, 기금위탁관리비 실소요액
 - ② 타당성조사, 농지관리위원지원 등 사전중장기계획에 의한 지원사업
 - ③ 정책목표달성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인프라구축사업
 - ④ 장기투자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농지조성사업
- 총 조성재원중 당해연도 필수적으로 투자하여야하는 연구 및 경상비를 최우선적으로 배분한 후 나머지 자원을 우선순위선정 기준을 정하여 배분
 - 농지조성사업 투자율 : 우선배정율 = 96 : 4

- 우선순위 선정절차의 투명성

□ 기본방향

-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의 투명성 확보
- 정책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사업우선순위 탄력성 조정
- 부실경영체의 무리한 사업참여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 3단계로 우선순위 선정기준 검토

- 제1단계 : 사업제안서 검토
 - 정부차원의 자금지원 필요성
 - 농업인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공청회 결과
 - 제반 법률적 저촉 여부
- 제2단계 : 사업 우선순위 검토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추가반영사항등 검토
- 제3단계 : 예산반영 우선순위 검토
 - 사업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결과 농업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

- 우선순위 적용의 합리성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우선순위 적용

- 우선순위 적용의 정형화, 공개화로 합리성 확보
- 자율성 확대 및 자조역량 향상에 기여

□ 공정계획에 일치되는 우선순위 적용으로 예산배분 정확도 제고

-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배정과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98			'99		
	예산	실적	실적율	예산	실적	실적율
계	2,839	2,826	99.5	2,029	2,029	100
○ 서남해안	1,295	1,290	100	1,100	1,100	100
○ 대단위	1,520	1,520	100	900	900	100
○ 유희지	24	16	66.7	29	29	100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 규정에 의한 합리적 예산집행

1. 우선순위선정 기준

□ 기본원칙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의 계정간 구분계리원칙 반영
 - 농지관리계정 :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 및 교환분합사업등
 - 농지조성계정 : 농지조성, 재개발사업등
- 농지관리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원배분
- 예산과 결산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배분의 최적화 도모
- 농지조성사업 관련 정책방향의 변화에 따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추진
- 각 사업별로 예산소요, 사업효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정도등 개별특성을 감안

□ 우선순위선정기준

- 농지조성사업을 주목적사업, 연구 및 기본조사사업, 경상적 소요비용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선정
- 국민식량 자급기반 유지를 위해 우량농지 조성효과가 높은 사업에 자원우선배분
 - 서남해안간척 및 대단위종합개발사업등 농지조성사업에 집중투자
- 자원조사, 농지정보사업 등 목적사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연구분석사업 우선반영
- 철저한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대상지 선정
 - 합리적인 대상지 선정으로 사업효과 조기거양

2. 우선순위선정 과정

가. 우선순위 적용범위의 기준

□ 우선순위 적용범위

구분	사업내용	자원배분	
농지조성사업	○ 서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석지와 유휴지를 우량농지로 개발 - 서남해안간척, 대단위농업개발, 유휴지개발	우선순위에 의거 자원 배분	
조사·연구	기본조사	○ 간척지자원조사 등 농지조성사업 시행전 사전 조사에 의함	사전검토 계획반영
	한계농지정비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 시범사업	"
	농지 정보화	○ 농지관리 전산화로 정보인프라 구축 - 제1단계 기반조성기(농지원부전산화) - 제2단계 활용보급기(지형정보 및 상세도면작성) - 제3단계 정착기(지번도전산화)	농지정보화 추진계획 반영
	농지제도이용,보전	○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관리위원회 지원 및 교육과 농지조성사업관련 각종 타당성검토 연구개발 투자	사전검토 계획반영
매각관리비등경상비	○ 조성토지관리 및 매각, 기금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실비보상적 지출	실소요액 반영	

□ 우선순위 적용기준

- 사업내용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결정
 - ① 조성토지 매각관리비, 기금위탁관리비 실소요액
 - ② 타당성조사, 농지관리위원회지원 등 사전 중장기계획에 의한 지원사업
 - ③ 정책목표달성과 기금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정보인프라구축사업
 - ④ 장기투자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농지조성사업
- 총조성재원중 당해연도에 필수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연구 및 경상비를 우선적으로 배분한후 나머지 자원을 우선순위선정기준을 정하여 배분
 - 농지조성사업 투자율 : 우선배정율 = 96 : 4

○ 5개년 사업·성질별 평균 배분 구성비

(단위 : 억원)

구분	5년 합계		연도별 내역				
	금액	구성비	95	96	97	98	99
합계	11,611	100	1,945	2,313	2,277	2,968	2,108
□ 농지 조성 사업	11,075	95.4	1,870	2,195	2,142	2,839	2,029
○ 서남해안	6,605	(56.9)	1,330	1,420	1,460	1,295	1,100
○ 대단위농업개발	4,405	(37.9)	540	775	670	1,520	900
○ 유휴지개발	65	(0.6)	-	-	12	24	29
□ 연구및관리사업	536	4.6	75	118	135	129	79
○ 농지정보화	135	(1.2)	21	21	30	47	16
○ 농지관리위원 지원	49	(0.4)	8	7	8	10	16
○ 한계농지정비	218	(1.9)	17	56	73	44	28
○ 매각관리비등경상비	134	(1.1)	29	34	24	28	19

- ※ 1) 농지조성사업에 조성재원의 96%를 배분하므로써 기금설치 목적실현
 2) 목적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정부분을 연구 및 정보화사업(전체자원에 4%) 투자하여 합리적 우선순위선정기준을 설정하므로써 자원배분 달성

나. 우선순위선정 결정과정

우선순위결정 요건을 갖춘 농지조성사업에 한하여
 간척자원조사 결과를 반영 우선순위 결정

(1) 간척자원조사사업 내용

□ 개요

- 조사구역 : 경기도 강화에서 남해안 부산광역시까지 우리나라 전 해안에 접하는 도·시·군
- 조사분야 : 토목, 수문, 해상, 환경, 토질 및 재료, 농업경제, 사회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현지조사와 유관기관, 주민청문, 환경조사 등

□ 조사목적

- 서남해안 일원의 간척개발가능 대상면적을 7개 전문분야별로 조사·분석하여 간척부존자원을 확정함과 동시에 간척부존자원을 재조명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지정과 개발 우선 순위를 결정 종합적인 개발방향과 이용방안을 수립하고 계획적인 개발 추진에 기여할 기초자료 제공

□ 조사결과 활용

- 자원조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기술자료를 획득하고 간척사업 방향설정에 활용
- 간척사업예정지구의 잠재력 평가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
- 중장기 개발계획자료로 활용
- 자원조사를 시행하여 21세기 산업화시대의 토지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한 우량농지확보 등 다목적 종합개발계획 수립활용
- 서남해안일원에 대한 수심 및 지형조건별 간척가능면적을 조사하고 조류, 조위 등 해상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수자원, 수산, 환경, 사회·경제적 영향 등의 개발이용 방안을 제시
- 조사자료의 전산D/B 구축으로 자료관리 체계확립
- 간척개발가능 적지선정 및 개발구상 적용으로 연안국토의 효율적 활용
- 사회환경 등의 영향으로 변화된 자연환경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간척사업의 제약조건 및 저해요인을 조사·분석
- 간척관련 유관기관에 수시로 자원조사 기초자료 제공

□ 간척자원조사 추진현황

- 간척지자원조사는 총 8차에 걸쳐 농림부와 건설부 주관으로 실시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4차조사
○ 조사년도	1962	1965	1966	1968~1972
○ 조사주관	농림부	건설부	건설부	건설부
○ 조사기관	NEDECO(화란)	제1기술단(용역회사)	제1기술단	제1기술단
○ 지구 수	71지구	116지구	182지구	149지구
○ 매립면적	225천ha	259천ha	262천ha	276천ha
○ 간척개답	165천ha	161천ha	163천ha	160천ha
구분	5차조사	6차조사	7차조사	8차조사
○ 조사년도	1975~1976	1979	1980	1987~1989
○ 조사주관	농수산부	건설부	농수산부	농림수산부
○ 조사기관	농진공	국토개발연구원	농진공	농진공
○ 지구 수	59지구	36지구	59지구	2,103지구
○ 매립면적	635천ha	727천ha	608천ha	810천ha
○ 간척개답	402천ha	121천ha	338천ha	461천ha

□ 간척대상면적

- 간척자원조사면적 중 농경지 수급전망 및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농경지 조성 및 수산, 환경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여 간척대상면적 결정

[간척대상면적]

(단위 : ha)

구 분	총대상면적 (246지구)	'99까지 준공 (185지구)	2000시행중 (16지구)	개발예정지 (45지구)
합 계	156,666	75,738	59,854	21,074
○ 정부시행	116,477	35,549	59,854	21,074
- 대단위	55,665	14,865	40,800	-
- 서남해안	60,812	20,684	19,054	21,074
○ 민간시행	40,189	40,189	-	-

(2) 우선순위 선정

- 제한된 투자예산 범위내에서 투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업의 적정성 결정
- 평점 및 평가기준에 의해 간척개발 예정지구를 유형별로 검토·분석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결정
- 평가등급 및 평점기준
 - 자연적·사회적·제도적·국가적·지역적·기술적·경제적조건등 제반조건에 해당하는 각각의 『평가항목』 별 『평가등급』 (A, B, C, D급) 및 『평점』은 지금까지 간척사업이 완공되었거나, 시행중인 간척지구들의 제반자료와 간척자원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을 작성
 - 평가 및 평점기준

구분	비중	제약조건	비중	평 가 항 목
사업시행의 가능성	30	자연조건	15	○ 방조제 단위연장당 농경지조성면적(ha/m) ○ 용수공급 가능량(담수호) ○ 수 심 ○ 간척지발달 ○ (갯골) 및 기복도 ○ 간만차 ○ 토양구성
		사회조건	7.5	○ 노동력 ○ 시장성 ○ 교 통 ○ 통 신 ○ 관련산업 ○ 점적지역 ○ 간척사업 주민동의율
		제도조건	7.5	○ 수산자원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 타사업 용도지정고시지역 ○ 천연기념물

구분	비중	제약조건	비중	평가항목
사업시행의 필요성	30	정책조건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개발계획 ○ 국토개발의 장기적 여건 ○ 도시계획 및 공단계획지구
		지역조건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계획
		사회조건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수단개선 ○ 수자원
사업시행의 타당성	40	기술조건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자연배수가부) ○ 공사시행의 용이성 ○ 안전성 ○ 개발면적과 유역면적비 ○ 재염기간 ○ 홍수조절능력 ○ 방조제단위연장당 매립면적
		경제조건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석채취 ○ 골재원 ○ 어업보상(양식장면적/개발면적) ○ 염전보상(염전면적/매립면적) ○ ha당 사업비 ○ I.R.R(투자수익율)
총 점			100	

1. 우선순위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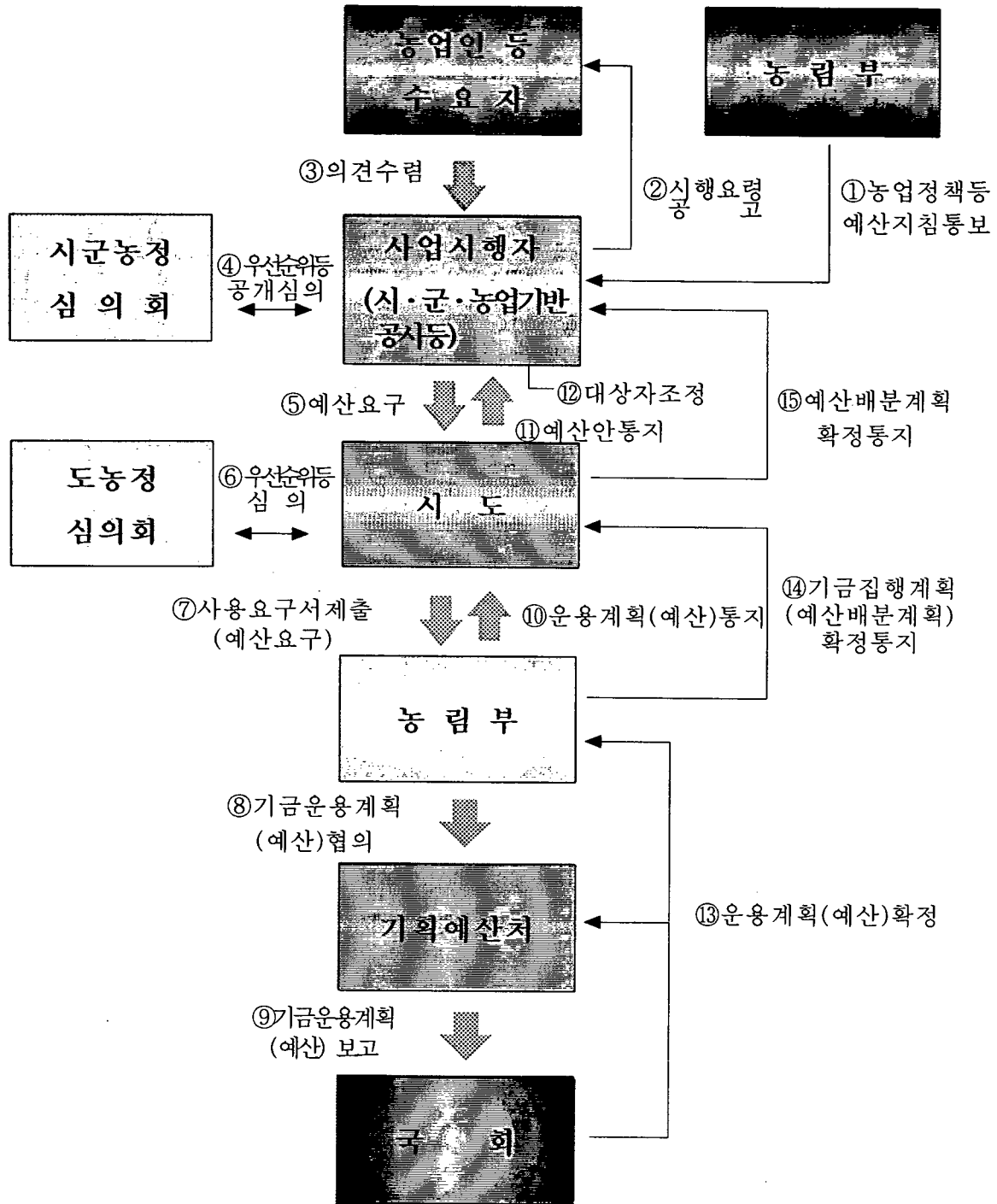
□ 추진배경

-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의 투명성 확보
- 정책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사업우선순위 탄력성 조정
- 부실경영체의 무리한 사업참여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 사업우선순위 선정절차

- 제 1단계 : 사업제안서 검토
 - 정부차원의 자금지원 필요성
 -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및 경제성
 - 농업인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공청회 결과
 -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여부
- 제2단계 : 사업추진 우선순위 검토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시도, 시군 등의 자체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여부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3단계 : 예산반영 우선순위 검토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시군등의 전체 계획과의 조화
 - 시군·농촌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여부
 -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 사업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 결과
 - 농업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 우선순위선정 절차도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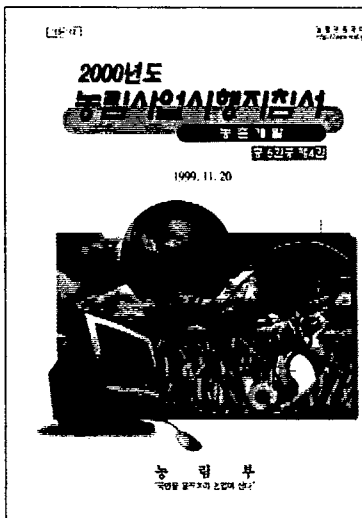
- 운영계획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지역개발계획과 연계된 종합적 개발계획 수립
-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지역개발 시행
- 사업의 효율적 선정과 사후관리강화를 통한 예산절감

1.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우선순위 적용

기본방향

- ▣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정수행
- ▣ 농림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참여기회 확대 및 자조역량 제고
- ▣ 상향식 농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
- ▣ 농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업인들의 불편사항 해소

□. 주요내용



- 1) 우선순위 적용의 정형화·공개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 통일된 원칙제시
 -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
 - 공개적 선정
- 2) 자율성 확대 및 자조역량 향상
 - 농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신청하면 시군 농정심의 회의공개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향식농정체제 확립

[농림사업시행지침서]

□ 기대효과

- 사업우선순위 선정의 투명성 및 타당성 제고
- 농업인 및 지자체의 자율성 및 사업시행의 투명성 제고
-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의견 수렴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실시
- 효율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절감

나. 합리적 예산배분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 추진배경

- 공정계획에 따른 적절한 예산배분으로 사업목적 조기달성
- 관련 지자체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예산배분
- 국토의 균형적발전 및 지역개발계획과 연계된 사업추진

□ 지구별 최근3년간 자원(예산)배분 및 집행현황

- 서남해안간척사업

(단위 : 백만원)

지구별	위 치	'97		'98		'99		2000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계		145,751	143,180	129,537	129,037	76,000	109,952	108,000
화 용	경기화성	51,287	51,287	36,195	36,195	26,284	26,284	21,494
해 남	전남해남	13,000	13,000	8,395	8,395	8,379	8,379	8,921
남 포	충남보령	5,469	4,600	5,358	5,358	6,649	6,649	5,989
석 문	충남당진	16,000	14,503	11,000	11,000	11,000	11,000	11,858
이 원	충남태안	8,152	7,947	4,060	4,060	4,155	4,155	5,514
군 내	전남진도	8,000	8,000	7,225	7,225	6,341	6,341	5,914
고 금	전남완도	2,400	2,400	3,612	3,612	3,755	3,755	4,182
완 도	"	3,976	3,976	4,169	4,169			
고 흥	전남고흥	20,000	20,000	21,675	21,675	17,787	17,787	16,139
사 내	전남강진	5,000	5,000	3,612	3,612	3,648	3,648	4,295
만 덕	"	2,967	2,967	1,700	1,700			
진 촌	인천옹진	5,500	5,500	3,974	3,974	4,271	4,271	4,784
삼 산	전남장흥	4,000	4,000	18,062	18,062	15,317	15,317	14,916
시화Ⅱ	경기시흥			500	0	2,414	2,366	3,994

○ 대단위농업개발

(단위 : 백만원)

지구별	위 치	'97		'98		'99		2000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계		67,000	67,000	152,000	152,000	90,000	90,000	75,500
영산강 2	전남해남	13,000	13,000	17,200	17,200			
영산강3-1	전남해남	12,000	12,000	23,000	23,000	15,000	15,000	28,500
영산강3-2	전남해남	2,000	2,000	8,800	8,800	8,000	8,000	10,000
새 만 금	전북부안	40,000	40,000	103,000	103,000	67,000	67,000	37,000

○ 유희지개발사업

(단위 : 백만원)

지구별	위 치	'97		'98		'99		2000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계		1,250	1,250	2,445	1,580	2,932	2,931	5,119
심 원	전북고창	1,250	1,250	1,445	1,445			
중 장	충남서산			1,000	135	2,850	2,850	3,749
산 촌	경남거제					82	81	1,370

□ 자원배분시 검토사항

- 공정계획상 당해연도 사업비 소요금액 검토
- 사업목적 조기달성 및 투자효과 극대화 검토
- 지역 숙원사업 및 우선투자사업 검토
-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지역민 의견수렴 결과반영
- 정부정책방향과의 적합성

□ 효 과

-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사업목표 조기달성
- 합리적 예산지원으로 공사비 절감
- 정확한 소요액 파악으로 예산불용 등 낭비요인 제거
-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

다.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에 의한 합리적 예산집행

□ 추진배경

-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통일된 기준 마련
- 사업자금의 신속한 지원도모
- 예산회계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응하는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제도 정립
- 사업자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유도

□ 주요내용

-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지원비율에 의한 사업자금 지원
 -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사업주관기관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서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집행
- 사업자금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 부당사용금액 회수
 - 부당사용금액의 크기 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에 따라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 지원을 중단
- 사업의 검정
- 예산의 이월 사용
 -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가능

□ 기대효과

- 사업목적에 적합한 자금집행 유도
- 사업자금의 신속한 지원으로 사업효과 제고